



www.mogef.go.kr

발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000133-10

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여
성
가
족
부



여성가족부

CONTENTS

제1편

2019년도 여성·아동권익증진지침 현황 및 방향 — 1

I. 전략목표	3
II. 여성·아동권익증진 추진연혁	4
III. 시설 및 상담소 현황	20
IV. 2019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 내용	21
IV-1. 2018년·2019년 주요사항 비교표	25
V.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 예산	54

제2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 57

I. 성폭력피해상담소	59
II.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83
II-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83
II-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114
III.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131
IV.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142
IV-1.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143
IV-2. 돌봄 비용 지원	162
IV-3.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168
IV-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178

제3편

아동·청소년성보호사업 운영지침

— 185

I.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187
I-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현황	187
I-2. 취업(예정)자 성범죄 경력 조회	197
I-3. 취업중인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200
I-4.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202
I-5. 종전 형 확정자에 대한 제도 적용 및 불복	203
II.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220
III.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226

제4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 247

I.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공통지침	249
II.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 및 이용	268
III.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개별지침	271
III-1. 일반 및 청소년 지원시설 운영	271
III-2.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	276
III-3.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운영	278
III-4. 자활지원센터 운영	280
III-5.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부설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285
III-6.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288
III-7.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	291
IV.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298
V.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기능보강	306
VI.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315
VI-1. 추진체계 및 기준	315
VI-2. 『열린터』 운영	328
VII.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기타 지원	330
VII-1. 성매매피해자 신용회복 지원	330
VII-2. 성매매피해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고용노동부)	331
VII-3.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지원 절차	332

CONTENTS

제5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 333

I. 가정폭력 상담소(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포함)	335
II.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353
III.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시 자립지원금	383
IV.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388
V. 여성긴급전화 「1366」	399
VI. 『긴급피난처』 지정·운영	411
VII.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413
VIII.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425
IX.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431
IX-1. 사업수행 체계	431
IX-2. 세부운영 지침	436
X.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443
XI.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447
XI-1. 사업수행 체계	447
XI-2. 세부운영 지침	453

제6편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 — 461

I.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	463
II.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480
III.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운영	492

제7편

북한이탈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 — 499

I.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501
----------------------------------	-----

제8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 509

I.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511
I-1. 사업 개요	511
I-2.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 절차	515
I-3.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518
I-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523
I-5.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조사 및 보고	531
I-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법률상담등 지원	532

제9편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지침 — 533

I.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535
-----------------------------------	-----

제10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 551

I.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개요	553
II.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558
III. 세부 사업 운영	562
IV. 예산의 지원 및 관리	569
V. 지도·점검 및 평가	573

※ 각 지침별 ‘서식 및 참고자료’는 동 지침에 인쇄하지 않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주요정책 → 정책자료실 → 인권보호)에 업로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2019년도 여성·아동권익증진지침 현황 및 방향

- I. 전략목표
- II. 여성·아동권익증진 추진연혁
- III. 시설 및 상담소 현황
- IV. 2019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 내용
- V.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 예산

I. 전략 목표

전략 목표

여성·아동폭력에 적극 대처 및 여성·아동인권
보호지원체계 구축

성과 목표

1.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확충
2.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확충
3.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4. 성매매 방지 및 피해여성의 자활기반 조성
5.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및 인권침해

Ⅱ . 여성 · 아동권익증진 추진연혁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992	- 성폭력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결의(3.2) * 여성정책심의위원회 - 성폭력근절 실무추진회의(4.28) * 국무총리실 - 시·도에 보호업무지침 시달(5.18) - 시·도에 보호시설 시범운영지침 시달(8.31) •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서울 자매복지회관 지정)
	1994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 성폭력상담소 설치(11월)
	1995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1월) -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1월)
	2000	- 장애인성폭력전문상담소 신설(9월)
	2001	- 여성부 신설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이관(1월) -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 위촉(10월) • 경찰병원 등 7개소
	2002	- 성폭력체크리스트(진료기록) 및 성폭력응급 키트 개발(2월) - 시·도별 종합병원급 전담의료기관 확대 지정(11월) • 부산의료원 등 12개소 지정
	2003	- 아동성폭력전담기구 설립 추진기획단 구성·운영
	2004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4월, 5월)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6.18), 연세의료원 위탁·운영 - 성폭력피해자 치료보호제도 개선 • 가정·성폭력 치료비 통합운영 • 시·군·구 치료비 집행 및 치료비집행절차 간소화 • 성폭력응급키트 처치비 75,000원 신규 인정
	2005	- 영남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6. 9), 경북대병원 위탁·운영 -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6.29), 전남대병원 위탁·운영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설치추진(8개소)
	2006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설치(6개소) 및 운영(14개소) -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2007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의 사업수행방식 전환(지자체보조)
	2008	-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수립·추진('08.4~) ※ 총리실을 중심으로 9개 부처 합동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구성·운영
	2009	-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 수립·추진('09.10~)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2010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시범 운영지역 선정('10.7월) - 지역연대 표준모델 개발 연구('10.10월~)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사업 실시 - 보완된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설치·운영(2개소) ※ 경남(창원)전용쉼터(8.24개소), 경북(김천)전용쉼터(9.1개소) -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4개소 신설(부산, 강원영동, 전남, 서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10.4.15)
	2011	-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2개소 신설(경북, 울산)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표준운영모델 개발·보급 - 아동안전지도 제작 매뉴얼 개발·보급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11.1.1)
	2012	- 정부위탁형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 전환(부산, 광주, 충북) - 강원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개소(12월, 원스톱 및 아동센터 통합) -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교육(205명) - 성폭력 피해자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교육(150명) -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 방법 등 개선에 관한 연구」 완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3.6월 시행 예정) • 보호시설 종류 세분화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신고제 등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로 명칭 변경
	2013	- 원스톱지원센터 3개소 신규 개소(부산, 인천 북부, 경기 서부) - 경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개소(12.23, 기존 경기 원스톱 기능 확대) -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5개소 신규 지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축 및 개소 추진 • 장애인 보호시설 2개소 신규 개소(전남, 충남) 및 특별지원시설 신축 추진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개소 신규 개소(경남) - 2013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 2013년 전국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평가 실시(여성폭력평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6.19)
	2014	-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신규 개소(고양시) 및 거점센터(아주대학교병원) 개소 - 성폭력상담소 4개소 신규 지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5개소 신규 개소 • 장애인 보호시설 2(대전, 제주), 일반(전남), 특별지원 2(경기, 대전) - 피해자 간병비 및 돌봄비용 지원, 치료동행서비스 신규 실시 -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사업비(생활지원비 등) 및 직업훈련비 신규지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21, 5.28)
	2015	-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서울) 및 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경북 김천) 신규 개소 - 성폭력상담소 4개소 신규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자립공동생활시설 2개소 신규 지원(경북, 경남) - 피해자 돌봄비 지원 대상 13세 이상 1~3급 장애인까지 확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 - 지역안전프로그램 사업 17개 시·도 실시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2016	-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서울) 신규 개소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신규 지원(제주)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시행('16.6.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16.9.3)
	2017	-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전북) 신규 개소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충북) 신축 추진 - 피해자 돌봄비 지원 대상 피해아동의 13세 미만의 형제·자매까지 확대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추진('17.9.26.~)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시행('17.6.2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17.10.30)
	2018	-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강원) 신규 개소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충북) 개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소('18.4.30.)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상담소 등의 장, 상담원뿐만 아니라 그 밖의 종사자도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18.3.13. 시행)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및 구상권 행사 근거 신설('18.9.14.시행) - 성폭력 피해자 비급여 심리치료 지원 단가 상향(1회당 15만원 → 1회당 20만원) - 외국인 등록과 상관없이 성폭력피해자라면 의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 -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업 종료('19년 법무부로 이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2006	- 성범죄자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제한 제도 도입·시행('06.6.30) • 취업제한기간: 5년(형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 • 적용시점: 2006.6.30~2008.2.3 기간 중의 성범죄자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신설('06.6.30)
	2008	-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및 대상기관 등 확대 시행('08.2.4) • 취업제한기간: 10년(형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 • 적용시점: 2008.2.4 이후 성범죄자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사업 실시
	2010	- 취업제한대상기관장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조회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10.1.1) - 취업제한 대상 기관 및 성인대상 범죄까지 대상자 확대 등('10.4.15) • (추가)대상기관: 개인과외 교습자 • 대상자 확대: 아동청소년대상은 물론 성인대상 성범죄까지 • 경력조회 대상자 확대: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10.1.1)
	2012	-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관서 확대('12.3.16)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시행('12.8.2) • (추가)대상기관: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12.8.2)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2013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시행('13.6.19) • (추가)대상기관: 경비업법인(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실을 갖춘 연습장업의 시설,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2014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책자 제작·배포('14.4)
	2015	-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및 회신서 출력 가능('15.1.2) -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장도 민감정보처리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가능('15.4.20)
	2016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시행('16.11.30) • (추가)대상기관: 위탁교육기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 연1회 점검·확인 의무 법제화 및 본인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 추가('16.11.30)
	2018	- 취업제한 신고 방식 변경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최대 10년) * 종전 성범죄로 인한 형 확정자의 경우 형량에 따라 5년, 3년, 1년 차등적용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시행('18.7.17) • (추가)대상기관: 대학, 위스쿨, 위센터, 드림스타트, 장애인 특수 교육 지원 센터, 어린이회관 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2002	- 관련부처 합동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수립·추진 - 현장상담센터 등 여성복지상담소 운영지침마련
	2003	- 국무총리 산하 민·관합동 「성매매방지기획단」 설치(6월) - 탈성매매자활지원사업 및 외국인여성쉼터 시범사업 실시 -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2004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3.22), 시행령(9.23), 규칙(11.5) 제정 - 성매매방지종합대책확정(3월) -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구성(11월) - 성매매 집결지 시범사업 추진(11월) -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 실시(11~12월) - 성매매피해자 창업자금 지원사업 추진(11월)
	2005	- 성매매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1월) - 성매매피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개시(3월) - 성매매집결지 시범사업 중간평가(5월) * 2005. 미국무부 국제인신매매보고서의 1등급 분류, 국제모범사례 선정(6월) - 그룹홈 제도 시범도입(6월) -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1차 확대(9월) -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운영지침 수립(9월) -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2차 확대(10월)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개소(11.23)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12.29) • 시설 입소기간 연장(1년), 피해자치료 전담병원 지정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2006	-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3차 확대(3월)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5.2) • 그룹홈 설치 규정 마련 등 - 의료·법률·직업훈련 통합지원 가능, 간병인 지원 가능토록 지침 개정(8.14) - 자활지원센터 정식 사업운영(3개소) 및 운영지침 수립·시행 -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국제회의 개최(9.6) - 「자활지원가이드」 발간(9월) - 전국 집결지현황 실태 기초조사 실시(2~11월) - 「상담, 의료, 법률지원 매뉴얼(3종)」 발간(12월) -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 교과과정 가이드북 발간(12월)
	2007	-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정책 이행평가 실시(1월) - 자활지원센터 일자리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최장 3년까지, 1월)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서비스대상을 입소자 이외에 “이용자”로 확대(1월) - 성매매예방교육 전문강사 위촉(2월, 12월)·운영(120명) - 2007 전국 성매매실태조사(3~11월) - 동료상담원 일자리 사업(부처공모형) 시행(8월) - 성매매방지법 시행3년 소책자 발간(9월) - 성매매피해자 자활정책 심포지엄 개최(9.17) -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강화책 마련(12월) - 청소년 성매매 예방교육 영상물 제작(12월) - 대학생 성매매 예방교육 자료집 발간(12월) - 성인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발간(부록 CD포함~12월) - 성인 성매매 예방교육 영상물 제작(12월)
	2008	- 장애인 대상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비 추가 지원(1월) -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재원 일반회계로 변경(1월)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3.21, 6.13),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9.10, 9.14, 9.22)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설치 법적근거 마련(6월)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기준 완화(9월) •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초·중·고 → 국가기관·지자체·공공단체까지) •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 실시(3년 주기) - 성매매피해자 지원안내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12월) -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성과 진단척도 및 종합지원시스템 개발(3~11월) -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확대방안 마련(12월) - 성매매방지 종사자 양성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연중) - 해외 성매매방지를 위한 UCC 공모(8월) - 성인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발간(12월) - 성인 성매매 예방교육 영상물 제작(12월)
	2009	-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도입(1월, 7월) • 5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 운영(1월~) 후 10개 지역으로 사업확대(7월~) - 성매매집결지 열린터 8개소 설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23) • 수습종사자 자격제도 법적근거 마련 • 성매매피해자 의료지원범위에 치아손상 치료비용 포함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2009	-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지침수립 및 기관통보(3월)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진학지원 개선방안 마련(4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운영(5월) - 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 설치(6월) - 공공기관 성매매예방교육 전문강사 워크숍 개최(7월)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1개소 신규설치(경기 / 6월) - 자활지원센터 2개소 신규설치(대구, 전남 / 10~12월) - 성매매예방 종합관리시스템 운영(10월~12월)
	2010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7.21) • 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규정 신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8.3) • 보수교육의 교육내용,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평가 규정 신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의 학습 결손 보완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1개소) -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확대(10 → 15개소) - 자활지원센터 일자리 제공사업 지원 강화 • 센터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자수 탄력적 배정 (센터별 동일 → 센터별 10~30명) •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인상(월 485천원 → 월 504천원)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기간의 현실화 • 최장 3년의 지원기간 산정 시 공백기간 제외 - 성매매피해자 관련 지원시설 시설평가 실시(82개소)
	2011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3.30) • 성접대 정의 및 성접대 실태조사 규정 신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4) • 성접대 실태조사 내용 규정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확대(청소년, 자활, 그룹홈, 대안교육위탁교육 각 1개소)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심리프로그램 시범 운영 -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및 근무시간 연장 ※ 월 504천원, 월 130시간('10년) → 월 529천원, 월 140시간('11년) - 성매매피해자 종사자 상해보험 필수가입(상담소) - ‘열린터’ 프로그램 운영비 신규 지원(개소당 월 50여만 원) - 성매매 방지정책 홍보 캠페인 전개(9.24) 및 국·영문리플렛 제작·배포
	2012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1) 및 동법 시행령(8.2) 개정 • 유흥주점 내,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업무·연락처 등의 정보를 게시하도록 의무화 • 미 게시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청소년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및 근무시간 연장 ※ 월 529천원, 월 140시간('11년) → 월 545천원, 월 150시간('12년) - 성매매피해 상담소 성매매예방 업무 확대 •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사이버포래상담, 청소년 밀집지역 아웃리치 등 - 시도별 구조지원사업비 중 35% 이내에서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 집행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2013	- 전체 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 확대 - 종사자 양성교육 실습을 소속기관에서 가능한 교육대상자에 '수습종사자' 포함 - 법률소송 중인 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자의 자활지원센터 공동작업장 지원 - 자활지원센터 인턴십 지원기간 연장 가능 - 시도별 구조지원사업비 중 40% 이내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 집행 - 지원시설 입소자 '진정함' 설치·운영 의무화(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2조)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입소자 포함
	2014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3.27) • 성매매 예방교육 점검 강화,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 성매매추방주간 신설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면개정(9.28)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제정(12.29) -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청소년,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상담소 각 1개소) - 성매매피해자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12월) - 외부자원을 활용한 자활매장 활성화 지원(미용실, 카페 등)
	2015	-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증액(※ 시간당 6,030원 → 6,170원) -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간병비 지원 근거 마련 - 펄택자활지원센터 1개소 설치·운영(고령 성매매피해자 중점 지원) - 자활사례집 '내가 제일 잘한 일' 발간 - 자활지원 가이드북 제작 - 청소년지원시설 1개소 폐지('15.6월)
	2016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2.20) • 온라인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내용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 포상금 안내문 추가 규정 • 여성가족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의 숙박업 등 업소 출입 지도 근거 마련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8.12) • 상담소등 휴·폐지시 보조금·후원금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제출 의무 규정 • 상담소등 폐지시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폐지신고서와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신고관청과 세무서에 모두 제출한 것으로 처리 •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과정 교육시간을 1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단축 • 별지서식 중 '상담기록카드' 및 '입소·이용자 카드'를 삭제하고 지침으로 이관 - 고령 성매매피해자 중점 지원을 위해 동두천자활지원센터 지정·운영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확대(상담소 1, 자활지원센터 1) - 각 상담소는 보수교육 과정에 매년 최소 1명의 상담원이 '청소년지원 전문과정'에 연 1회 이상 참석 의무화 -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의 월 임차료(월 25만원 한도) 집행 가능 - 의료급여·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 및 의료 지원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지원 - 자활지원사례집 '언니, 같이 가자!' 발간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2017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요건 완화 ※ 장애인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지원시설장이 입소자의 피해회복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보고하면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의 폐지·휴지 신고 처리 기한 변경(즉시 → 10일) • 신고 수리 간주제도 도입 ※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월 임차료(월25만원 한도) 집행 가능 - 자활지원센터 1개소 확충(93개소 운영 지원) -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인상(시간당 6,170원 → 6,470원) - 자활지원센터 인턴십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비용 집행 가능 - 성매매피해상담소의 간병비 지원규정 신설
	2018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입소기간 연장(3개월→1년) - 상담소 업무시간 규정 완화(09:00~18:00→8시간) - 금융기관 계좌개설 불가능할 경우 직업훈련 수당 현금지급 가능 - 기능보강비 상담소 시설임차료(전세보증금) 지원 규정 신설 - 현장지원사업 상담활동비 지급 규정 신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1997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12월)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12월)
	1998	- 가정폭력상담소 설치(7월)
	1999	- 가정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1월) - 가정폭력피해자 일반치료비 지원(1월)
	2001	- 여성부 신설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이관(1월)
	2002	- 가정폭력·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3월)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가정폭력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사업 협약(12월)
	2003	-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개발·보급(12월)
	2004	-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89개 상담소)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1월, 4월, 5월) • 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 신고·인가권 → 시군구 자치단체장에게 부여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구상권 행사요건 완화 등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사업 협약(12월)
	2005	- 여성폭력피해자 진료지원 협약식 체결(1월) •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동반아동에 대하여 무료진료 지원
	2006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4월, 10월) • 정기(3년) 실태조사 및 초·중·고 예방교육 실시 • 피해아동 거주지의 취학지원 • 상담소 설치·운영기준 강화 등 • 교육훈련시설 신고제 도입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구상권 임의규정으로 변경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2007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용역 실시('06.8~'07.8)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의 폭력 재발률과 배우자 만족도 등 효과성 검증
	2008	- '08년 주거지원사업 시범실시 • 서울, 부산 2개 지역에 임대주택 21호 공급
	2009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09.11.9 시행) •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국가나 지자체에서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 보호시설 입소·퇴소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 • 여성긴급전화 1366 법적 근거 마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1.1월 시행예정) •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 및 동반아동에 대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지원 근거 마련 - 폭력피해여성 지원서비스 개편 추진
	2010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1월, 5월, 11월) •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 및 동반아동에 대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의료비 등 지원 근거 마련 • 피해자 긴급구조시 경찰관 동행 • 가정폭력관련 시설평가 및 평가결과 지원 등에 반영 • 가정폭력예방, 제도 등을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배포·송출 근거 마련 • 각급 학교에서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통합실시 • 장애인 가정폭력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 개선 -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 • 전국 16개 시·도 3,800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조사 등 - 2010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 상담소, 보호시설, 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등 363개소 평가실시
	2011	-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마련(5월, 법무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협의) • 사법경찰관의 긴급입시 조치권 도입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 주거지원시설 3개 지역 추가 확대(대구, 경기(안산), 제주) - 가족보호시설 설치 지원 •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설치운영기관 선정(8개소) - 보호시설 운영비를 절감하여 입소자중 비수급자에게 생계비 지원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118개 상담소)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 가정폭력 상담프로그램 운영인력 역량강화 교육 : 390명(양평원 위탁) ※ 성폭력 상담운영인력 포함 참여인원 : 744명 - 가정폭력을 막는 힘(홍보동영상) 제작, 배포 - 가정폭력 사건 수사관계자를 위한 인권의식교육 시범실시(52회 2,272명)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201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경찰관의 현장출입 및 조사권 도입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용역(3~9월) -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지원안내서 제작(50,000부) - 가정폭력 사건 수사관계자를 위한 인권의식교육 확대(36,239명) - 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추가 확충(5개)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36호) - 보호시설 입소 아동 교육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수혜자 확대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치료회복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12.5~12, 11개 지역별 1개소 운영) - 여성폭력피해 상담소 관리 및 서비스 수준향상 방안연구(9~12월) - 가정폭력 피해 대상과 유형별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발연구('12.7~'13.1월)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122개 상담소)
	2013 - 8개 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마련(6월) - 2013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 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추가 확충(3개소)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40호)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연 5만원 이내) - 아동교육비, 교복비 지원대상 확대 • 아동교육지원비(부교재비: 초등·중학생, 학용품비: 초등·중·고등학생) • 교복비(중·고등학교 신입생, 전학생) - 보호시설에 입소한 비수급자에 대한 비일상적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추가
	2014 -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 시행('14.1.31) • 경찰관 현장출동 의무화, 가정폭력 의무대상기관 확대(학교 →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경찰관 현장출입·조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 시행('14.7.22) •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점검 및 부진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 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추가 확충(2개소)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38호)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신규지원('14.1월~)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취·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비 신규지원('14.1월~)
	2015 - 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추가 확충(2개소)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43호) -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스트레스 치유프로그램 신규운영 지원 -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 시행('15.12.23) • 가정폭력 추방주간(매년 11.25~12.1) 신설 등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2016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30호)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16.9.3) • 가정폭력관련 시설 휴·폐지 시 시설 이용자의 권익보호조치 시행 • 가정폭력관련 시설 폐지 시 관할 세무서와 시·군·구 중 한 곳에 폐지 신고서 제출 가능
	2017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20호) -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 국회의결('17.12.5 / '18.6월 시행) • 가정폭력피해자 인권보호 관점의 권리보장 강화의 기본이념 신설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 강화 • 가정폭력상담소를 외국인·장애인 대상 특화 운영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수사·재판과정 동행 등 다양한 지원 규정 • 가정폭력범죄 관련,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 시 벌칙 조항 신설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17.11.29) • 긴급전화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및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절차 완화
	2018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18.6.13) • 가정폭력피해자 인권보호 관점의 권리보장 강화의 기본이념 신설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 강화 • 가정폭력상담소를 외국인·장애인 대상 특화 운영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수사·재판 과정 동행 등 다양한 지원 규정 • 가정폭력범죄 관련,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 시 벌칙 조항 신설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20호) -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절차 간소화 등 건강지원 강화(1월) -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국비 지원 10개소 확대(10→20개소) -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다양한 여성폭력 관련 교육 추진
여성긴급전화 「1366」	1997	- 위기여성 상담 특수전화번호 지정(12월)
	1998	- 위기여성 상담특수전화 「1366」 운영 개시(1월) - 120권역에 확대 설치(12월)
	1999	- 142권역에 확대 설치(12월)
	2000	- 144권역에 확대 설치(6월) - 전화권역의 광역화에 따라 권역별 통합 추진 • 144권역 → 56권역으로 통합·조정(12월)
	2001	- 여성부 신설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이관(1월) - 전화권역의 통합·조정 완료(6월) : 56권역 → 16권역 - 전담직원 144명 배치 및 인건비 신규지원으로 365일 24시간 운영체계 구축(7월) - 시·도별 지역협의체 운영(7월)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여성긴급전화 「1366」	2002	- 외국인성매매·성폭력피해자보호를 위한 동시통역시스템 도입·운영(11월) • 제공언어 :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2003	- 여성긴급전화1366 주요상담사례집 발간(12월)
	2006	- 이주여성 긴급전화1366센터 설치(11월)
	2007	- 시군구 차원에서 지역협의체 확대(3월) - 1366 상담시스템 통계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4월)
	2009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09.11.9 시행) • 여성긴급전화 1366 법적 근거 마련
	2010	- 현장상담원 센터별 2명 배치
	2011	- 긴급전화 1366센터 외국어 응대 매뉴얼 발간(2월) -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북부센터 개소(6월)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개최(6월)
	2012	- 1366 중앙센터(위기여성을 위한 전국단위 대응체계) 설치(9월) - 여성긴급전화 중앙지원단 설치(9월)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센터의 연계 및 지원기능 강화
	2013	- 여성긴급전화 중앙센터 해외성매매피해자지원을 위한 UIFN 서비스 운용 -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초기지원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매뉴얼 개발
	2014	- 지역센터당 상담원 1명씩 증원(총 17명) - 중앙센터 긴급피난처 신규설치
	2015	- 센터당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1명씩 신규배치(총 18명)
	2016	- 센터당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1명씩 증원(총 18명 증원)
	2017	- 센터당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1명씩 증원(총 18명 증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예방	2018	- 1366지역센터 상담인력 증원(총 34명) - 1366통합상담시스템 구축 및 운영(1월)
	2004	-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시작 : 2개소
	2006	-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설치·운영(11월) • 7개 국어 지원
	2007	-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확대 : 4개소 -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 홈페이지 오픈(1월)
	2008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으로 센터 명칭 변경(6월)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원 및 지원언어를 8개 국어로 확대(7월) -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교육 실시 • 프로그램 연구·개발(8월) • 4개 지역 시범교육 실시(7월) • 전국 확대 실시(12월)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예방	2009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권역별 지역센터 설치(1~2월) • 4개소(수원, 대전, 광주, 부산) -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확대: 18개소 -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으로 명칭 변경(11월) - 이주여성자활공간터 설치 계획 수립 및 부지선정(서울시 시흥동)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3주년 성과 및 실적분석(12월)
	2010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권역별 지역센터 설치(1~7월) • 2개소(구미, 전북)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지원언어를 8 → 10개 국어로 확대 - 이주여성 쉼터 18개소 운영 및 기능보강을 통한 환경개선 -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10년 11월, 서울시 시흥동) - 이주여성 그룹홈 운영 1개소(서울) -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운영(2,742명)
	2011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야간상담팀 신규 운영(5월) - 이주여성쉼터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전국 확대실시
	2012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야간상담팀 기능 강화(3월) • 야간상담원 및 상담지원언어 확대: 12명, 8개 국어
	2013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언어 확대(2개 국어) • 네팔, 라오스 확대: 총 13개 국어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착신 전환(7월) - 이주여성상담원 수기집 발간(11월) - 이주여성쉼터 확대 운영(4개소): 총 22개소 - 이주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2014	- 이주여성긴급지원(1577-1366)센터 다누리콜센터 통합운영 - 이주여성쉼터 확대 운영(2개소): 총 24개소 - 이주여성그룹홈 확대 운영(1개소): 총 2개소 • 보호시설 27개소: 쉼터(24개소), 그룹홈(2개소), 자활지원센터(1개소)
	2015	- 이주여성쉼터 확대 운영(1개소): 총 25개소 • 보호시설 28개소: 쉼터(25개소), 그룹홈(2개소), 자활지원센터(1개소)
	2016	- 이주여성 폭력예방 홍보 책자 제작·배포
	2017	- 이주여성쉼터(1개소), 그룹홈(1개소) 확대 운영 • 보호시설 30개소: 쉼터(26개소), 그룹홈(3개소), 자활지원센터(1개소) - 의료지원비(산후조리비) 및 아동양육비(학교준비물비) 지원 내역 확대 - 설치기준 완화(건조장 삭제)
	2018	- 이주여성쉼터(2개소) 확대 운영 • 보호시설 32개소: 쉼터(28개소), 그룹홈(3개소), 자활지원센터(1개소)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2013	- 심리치유센터 8개소 지정 (상담실적 실인원 261명, 연인원 1,176명, 프로그램 운영실적 1,391명)
	2014	- 심리치유센터 10개소 지정 (상담실적 실인원 1,318명, 연인원 4,374명, 프로그램 운영실적 1,007명)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2015	- 심리치유센터 10개소 지정 (상담실적 실인원 1,626명, 연인원 4,481명, 프로그램 운영실적 1,359명)
	2016	- 심리치유센터 10개소 지정 (상담실적 실인원 1,811명, 연인원 4,591명, 프로그램 운영실적 1,219명)
	2017	- 심리치유센터 10개소 지정 (상담실적 실인원 1,674명, 연인원 3,215명, 프로그램 운영실적 1,699명)
	2018	- 심리치유센터 10개소 지정 * 실적은 집계 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1991	- 국내최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당시 67세) 기자회견
	1993	-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제정('93.6.11 제정·시행)
	1998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특별지원금 인상(5,000천원 → 43,000천원) 및 특별지원금 기 지급자에 대한 추가 지급(38,000천원)
	2001	-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업무 이관('01.1월)
	2002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기념사업 등 지원 등 근거 신설('02.12.11 개정) - 월 평균 지원금 623천원 ※ 생활안정지원금 월 535천원, 건강치료 등 월 평균 88천원
	2003	- 월 평균 지원금 719천원(전년대비 96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600천원, 건강치료 등 월 119천원
	2004	- 월 평균 지원금 754천원(전년대비 35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640천원, 건강치료 등 월 평균 114천원
	2005	- 피해자 국적회복 등 지원 및 간병인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05.7.29.개정, '06.1.30.시행) - 월 평균 지원금 822천원(전년대비 68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700천원, 건강치료 등 월 평균 122천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개관 및 운영
	2008	- 월 평균 지원금 1,088천원(전년대비 63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800천원, 간병비 월 평균 137천원, 건강치료 등 월 평균 151천원 - 독립기념관내 일본군'위안부' 피해 관련 전시물 보강 예산(5억원) 지원
	2011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맞춤형 치료사업 개편 ※ (개편 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시설 등에 개별지원 → (개편 후) 한국여성인권 진흥원(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에서 사업 수행 및 지원체계 일원화 - 월 평균 지원금 1,259천원(전년대비 59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908천원, 간병비 월 평균 168천원, 건강치료 등 월 평균 183천원
	2012	-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12.12.18.개정·시행) - 월 평균 지원금 1,322천원(전년대비 63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953천원, 간병비 월 평균 177천원, 건강치료 등 월 평균 192천원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2013	-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13.5.28.개정, '13.11.29.시행) - 월 평균 지원금 1,383천원(전년대비 61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982천원, 간병비 월 평균 182천원, 건강치료 등 월 평균 219천원
	2014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을 부양의무자 등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14.3.24.개정, '14.9.25.시행)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지방자치단체간 1대 1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월 평균 지원금 1,640천원(전년대비 257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1,012천원, 간병비 월 평균 328천원, 건강치료 등 월 평균 300천원 - 나눔의 집 역사관 리모델링 및 추모관 건립 등 예산(12억원) 지원
	2015	- 월 평균 지원금 1,853천원(전년대비 213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1,043천원, 간병비 월 454천원, 건강치료 등 월 356천원
	2016	- 월 평균 지원금 2,694천원(전년대비 841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1,260천원, 간병비 월 1,055천원, 건강치료 등 월 379천원
	2017	- 월평균 지원금 2,775천원(전년대비 81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1,298천원, 간병비 월 1,087천원, 건강치료 등 월 390만원
	2018	- 월평균 지원금 3,237천원(전년대비 462천원 인상) ※ 생활안정지원금 월 1,337천원, 간병비 월 1,120천원, 건강치료 등 월 780만원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2010	-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예방교육』 교사용 교안 개발
	2011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2개 시·도 시범 운영 실시
	2012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4개 시·도 확대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4개 시·도 시범 실시 - 장애유형별 성 인권 교육 매뉴얼(지적, 시각, 청각 장애) 매뉴얼 개발
	2013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5개 시도 확대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12개 시·도 확대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초등 고학년용) 교사용 교수·학습안 및 학생용 핸드북 제작
	2014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7개 시도 확대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14개 시·도 확대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유아용, 초등학교 저학년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총 4종) 교사용 교수·학습안 및 학생용 핸드북 제작(~'15년)
	2015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전국(17개 시·도) 확대
	2016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8개 시·도 확대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청소년성문화 센터 설치·운영	2007	- 청소년성문화센터 표준콘텐츠 개발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07년 21개소) - 노동부 지원 사회적일자리창출<청소년성교육전문가>사업 지원(20억, 175명)
	2008	- 신규시설 8개소 설치(고정형 29개소)
	2009	- 신규시설 설치 및 전문강사 예산추가확보(고정형 35개소, 전문강사 64명)
	2010	- 신규시설 설치 및 전문강사 3명(고정형 38개소, 전문강사 108명)
	2011	- 이동형 신규시설 1개소 설치(고정형 40개소, 이동형 2개소 등 42개소)
	2012	- 이동형 신규시설 2개소 설치(고정형 42개소, 이동형 2개소 등 44개소)
	2013	- 신규시설 6개소 설치(고정형 43개소, 이동형 7개소 등 50개소)
	2014	- 신규시설 4개소 설치(고정형 45개소, 이동형 9개소 등 54개소)
	2015	- 신규시설 4개소 설치(고정형 48개소, 이동형 9개소 등 57개소) *1개소 폐쇄 -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SAY매뉴얼)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리뉴얼
	2016	- 신규시설 2개소 설치(고정형 48개소, 이동형 11개소 등 59개소)
	2017	- 고정형 48개소, 이동형 10개소 등 58개소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2018	- 고정형 47개소, 이동형 11개소 등 58개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2013	- 폭력예방 교육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 - 비의무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 전국 10개 권역별 지역 교육지원기관
	2014	-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법적근거 신설 -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2015	- 15년 지역 교육지원기관의 전국 확대 및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전환 - '17개 시·도별 18개 지역 교육지원기관
	2016	- 도서벽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시범운영 실시
	2017	- 도서벽지, 안전취약지역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
	2018	- 문화예술인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규 교육 대상 발굴 실시

Ⅲ. 시설 및 상담소 현황

(2019년 1월 기준)

번호	시 설 별	시설수	대 상	보호기간(최대)	비고
1	성폭력피해 상담소	170	성폭력 피해자		이용 시설
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자립지원 공동생활)	31	성폭력 피해여성	• 일반(1년+1년6월) • 장애인(2년+회복시) • 특별지원(18세+2년) • 자립지원(2년+2년)	생활 시설
3	해바라기센터	39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이용 시설
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일반·청소년)	40	일반성인 성매매피해자 등	• 일반(1년+1년6월) • 청소년(19세가 될 때까지+2년)	생활 시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2 (11)	탈성매매 한 자로서 자활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자	• 2년+2년	생활 시설
6	대안교육 위탁기관	2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	• 1년(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이용 시설
7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1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 1년(수사·소송진행 중인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생활 시설
8	자활지원센터	12	자활의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탈성매매 여성		이용 시설
9	성매매피해상담소	29	성매매피해자 등		이용 시설
1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시설	32	가정폭력 등 피해이주여성과 동반자녀	• 2년 이내	생활 시설
11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207 (40)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성폭력 등 피해자)		이용 시설
1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6	가정폭력피해여성과 아동	• 6월(+3월 2회) ※ 장기시설 : 2년 이내	생활 시설
13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8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이용 시설
14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314호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 2년(+2년)	생활 시설
15	청소년성문화센터	58	유아·초·중·고생 부모 등 전국민		이용 시설

※ 해바라기센터 1개소 신규 설치('18.하반기),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자립형 보호시설 1개소 신규 설치('18.하반기),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20호 추가 지원('19.상반기~), 통합상담소 10개소 추가 지원('19. 1월~), 일반상담소 15개소 추가 지원('19. 1월~)

IV. 2019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 내용

1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 개정내용

(법률 '18.9.14. 시행, 시행령 '17.6.22. 시행, 시행규칙 '18.9.14 시행)

-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뿐만 아니라 그 밖의 종사자 경우에도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법률 '18.3.13. 시행)
- 상담소 등의 폐지·휴지 시 이용자 전원조치 의무화(법률 '18.3.13. 시행)
- 정보통신망에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및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근거 마련(법률 '18.9.14. 시행)
 -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내용 및 구상금 청구 관련 절차 규정(시행규칙 '18.9.14. 시행)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규정(법률 '18.9.14. 시행)
-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 시 수리 명시(법률 '18.9.14. 시행)
- 상담원 교육시설 변경신고 사항 등 변경신고 절차 규정(시행규칙 '18.9.14. 시행)

나.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부산) 개소로 피해자 접근성 강화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상담원(1명) 추가 배치하여 현장대응력 강화

2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가. 성매매피해자 상담·보호·자활시설 운영 공통지침

- 종사자 인건비 : 26,448천원 → 27,187천원('18년 대비 2.8% 증액)
- 보조금 지원 대상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95개소
 - ('19년) 청소년 지원시설 15개소(+1),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2개소(△1)
- 시설의 건축물 용도 규정 신설
 - 이용시설(상담소, 자활지원센터 등)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등으로, 생활시설(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등)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안내

나. 성매매피해자 상담·보호·자활시설 운영 개별지침

- 외국인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
 - ('18년) 3개월 → ('19년) 1년

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 직업훈련수당 현금지급 가능 규정 신설
 - 금융기관 계좌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라. 성매매피해자 상담·보호·자활시설 기능보강

- 시설임차료 지원대상에 상담소 추가

마.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 상담활동비 지급기준 신설
 - 현장상담원 대상 지급하는 상담활동비 1일 최대 10,000원 지급 가능

3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20호 신규 공급
-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국비 지원 10개소 확대(20 → 30개소)
- 가정폭력 일반상담소 국비 지원 15개소 확대(83 → 98개소)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실시('19.1월~)

4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계속적 보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기간을 '9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 보호하는 경우로 연장
- 비밀전학과 관련하여 친권자라 하더라도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피해 학생의 전학 사실(전학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알리지 않도록 유의해야함을 명시
- 긴급지원비 중 아동양육비 항목에 동반아동의 교복비 등을 포함하고, 생활용품 구입비 등도 기타 항목에 포함
- 동반자녀가 아닌 동반가족(여성)에게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출국지원비 추가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매월 정액, 월 1,404천원)
 - * ('18) 월 1,337천원 → ('19) 월 1,404천원
 - 간병인 지원금 지급(이용 실적에 따른 사후정산, 월 평균 1,360천원)
 - * ('18) 월 평균 1,120천원 → ('19) 월 평균 1,360천원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결정시 특별지원금 지급(일시금, 43,000천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의료비·비급여 의료비 지원 한도
 - * ('18) 연 936만원 → ('19) 연 983만원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지원

6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성과목표 설정
 - 이용자수 2,259천명(전년실적 대비 0.1% 증가한 목표)
- 예산편성 및 집행
 - 시설 종사자 인건비 증액
 - ※ 센터장 30,312천원 → 30,867천원 / 팀장 22,931천원 → 23,350천원 / 팀원 21,423천원 → 21,815천원
 - ※ 이동형(독립형) 센터장 26,676천원 → 27,164천원 / 운전기사 26,456천원 → 26,940천원

7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 교육 대상자들로 하여금 폭력예방을 위한 실천적 행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동기부여에 초점을 두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통합 교육 강화

현 행		개 선	
분야별	성폭력 예방교육	통합교육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 성희롱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 성매매 예방교육

1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가. 성폭력피해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운영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상담소 개요	가. 상담소의 업무 ○ 피해자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나. 상담소의 업무 ○ 피해자들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상담소 설치 기준	다. 설치기준 등 ○ 구조 및 설비: 사무실, 면접상담실, 전화상담실, 보호실(임시보호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 비상재해대비시설 등	나. 시설기준(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1) ○ 구조 및 설비: 사무실, 면접상담실 (<u>사생활이 공개되지 않도록 방음 시설을 갖추어야 함</u>), 전화상담실, 보호실(임시보호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 비상재해대비 시설 등
	상담소 인력 및 복무	〈2. 운영 개요〉 다. 설치기준 등 ○ 종사자 수: 상담소장 1인, 상담원 2인 이상	가. 종사자 배치기준 ○ 상담소의 장 1인, 상담원 2인 이상 ※ 단, 국비를 지원받지 않는 상담소의 경우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음
	상담소 인력 및 복무	〈2. 운영 개요〉 다. 설치기준 등 ○ 개별기준 - 상담원 ③ <u>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u> ※ 종사자 자격에 명시된 “사회복지단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사회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함	다. 설치기준 등 ①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상담소 인력 및 복무	〈3. 상담소 관리 및 운영〉 ○ 종사자 채용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사자가 될 수 없음 〈생략〉	나. 종사자 자격기준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결격 사유</td><td>〈상동〉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td></tr></table>	구분	내용	결격 사유	〈상동〉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구분	내용					
	결격 사유	〈상동〉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상담소 인력 및 복무	〈3. 상담소 관리 및 운영〉 나. 종사자 채용 및 임면권자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u>시설의 대표자</u>	라. 종사자 채용 및 임면보고 등 ○ 설립주체에 따른 종사자 임면권자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u>시설의 장</u> * <u>종사자 임면권자는 법인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달리정할 수 있음</u>				
행정 처분 및 벌칙	〈신 설〉	가. 행정처분의 요건 나. 행정처분의 주체 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라. 추가 조치사항 〈참고〉 과태료 부과기준					
재무 회계 관리 및 2019년 국고 보조금 지원 내역	〈4. 국고보조금의 지원기준〉 나. 국비지원 대상 선정기준 ○ 시·도지사는 국비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서 시·군·구가 신청한 국비 지원 대상 상담소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상담활동 등 사업수행능력과 지역 안배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 ○ <u>기존 지원상담소의 경우에도 법령 및 지침 준수여부, 운영실적 등을 확인하여 예산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u>	○ 시·도지사는 국비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서 시·군·구가 신청한 국비 지원 대상 상담소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상담활동 등 사업수행능력과 지역 안배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함 ※ <u>국비지원 대상 선정 시 운영주체(법인 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확인 필요</u>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재무 회계 관리 및 2019년 국고 보조금 지원 내역	다. 국고지원 대상 선정 시 유의사항 ○ 기존 국비지원 상담소의 운영이 부실하거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종사자 임면의 허위 보고 등 행정 처분 사유가 발생하는 등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국비지원 중단 - 국고지원 상담소가 1개월 이상 휴지 시,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함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가. 2018년도 지원내역 및 금액 등 (단위: 천원) <table><tr><th>구분</th><th>일반상담소</th><th>장애인상담소</th></tr><tr><td>인건비(3명) 및 운영비</td><td>79,416</td><td>79,416</td></tr><tr><td>추가지원</td><td>-</td><td>34,239</td></tr><tr><td>합계</td><td>79,416</td><td>144,516</td></tr></table>	구분	일반상담소	장애인상담소	인건비(3명) 및 운영비	79,416	79,416	추가지원	-	34,239	합계	79,416	144,516	다. 2019년 보조금 지원 단가 (단위 : 천원) <table><tr><th>구분</th><th>일반상담소</th><th>장애인상담소</th></tr><tr><td>인건비(4명) 및 운영비</td><td>107,513</td><td>107,513</td></tr><tr><td>장애인 상담소 추가 지원</td><td>-</td><td>37,003 (상담지원인력 및 교통비)</td></tr><tr><td>합계</td><td>107,513</td><td>144,516</td></tr></table> ※ 신규 추가 지원인력(개소당 1명)의 인건비는 채용기간을 고려하여 9개월분 인건비만 반영	구분	일반상담소	장애인상담소	인건비(4명) 및 운영비	107,513	107,513	장애인 상담소 추가 지원	-	37,003 (상담지원인력 및 교통비)	합계
구분	일반상담소	장애인상담소																							
인건비(3명) 및 운영비	79,416	79,416																							
추가지원	-	34,239																							
합계	79,416	144,516																							
구분	일반상담소	장애인상담소																							
인건비(4명) 및 운영비	107,513	107,513																							
장애인 상담소 추가 지원	-	37,003 (상담지원인력 및 교통비)																							
합계	107,513	144,516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재무 회계 관리 및 2019년 국고 보조금 지원 내역	○ <u>종사자 인건비는 지원 예산총액의 80~9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기본급, 4대보험 자부담분 및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이 2018년 기준 최저임금액(7,530원×209시간=1,573,77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u>	라. 보조금 집행기준 1) 인건비 및 운영비 ○ <u>종사자 인건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총액의 80~9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u> - 상담소 개소당 4명(장애인 상담소는 5명)의 인건비를 지원함(전년대비 1명의 인건비 추가 지원, 단 추가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채용기간을 고려하여 9개월분의 인건비만 반영) ※ 상담소는 인력 총원이 됨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법률 동행 지원, 데이트·스토킹 피해에 대한 조기 위기 개입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 <u>인건비는 기본급, 4대보험 기관 부담금, 퇴직급여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함.</u> - <u>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은 2019년 기준 최저임금액(8,350원×209시간=1,745,15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u> - <u>개인이 운영주체이거나 법인·단체대표(운영주체)와 시설장이 동일한 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퇴직급여는 별도로 적립하지 않음.</u>(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생략〉 - <u>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은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준용</u>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관련 ○ <u>개인이 운영주체이거나 법인대표(운영주체)와 시설장이 동일한 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퇴직급여는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며~</u> ○ <u>국비지원 상담소의 인건비는 소장 1인 및 종사자 2인으로 책정하며, 이는 최소 지급기준으로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음</u> 〈신 설〉	
		○ <u>운영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총액의 10~20% 내에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함</u> - <u>수용비(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하 생략)</u>	○ <u>운영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총액의 10~20% 내에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포함함</u> - <u>수용비(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여비, 간행물 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하 생략)</u>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재무 회계 관리 및 2019년 국고 보조금 지원 내역	라. 종사자 소진방지 지원 관련 ○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비 내에서 종사자 소진 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 상담, 치료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원 가능 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심리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은 참여 가능(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 - 지원 가능 금액: 연간 1인당 20만원 범위 내	-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비 내에서 <u>슈퍼비전</u> 또는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치료 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종사자 소진방지 관련은 연간 1인당 20만원 범위 내 사용 가능) * 지원 가능 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심리 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은 참여지원 가능(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 단 <u>여행·영화관람도 소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화한 경우 가능</u>) - '19년 인력이 충원됨에 따라 사무 물품 등 구입 한시적 허용(연간 20만원 범위 내)
		나. 장애인상담소 별도 지원 ○ 장애인 방문상담 등 상담소 업무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연간 12,012천원 별도 지원 - 이하 생략 (신설)	2) 장애인상담소 추가 지원 ○ 장애인 방문상담 등 상담소 업무에 소요되는 교통비(연간 12,013천원)를 별도 지원 - 좌동 * 근무지 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왕복)가 12km미만인 출장을 의미함. 출장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사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함. * 일반 상담소 여비 지급 시에도 해당 규정 준용함
	그 밖에 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상담소의 회계 등 업무 관리 ○ 관리규정 - 상담소의 장은 상담소의 운영 방침, 직원의 업무분장, 상담소의 이용수칙, 그 밖에 상담소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상담소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	가. 관리규정 제정 및 장부의 비치 ○ 관리규정 제정 - 상담소의 장은 상담소의 운영방침, 직원의 업무분장, <u>상담소 이용자의 대응요령</u>, 상담소의 이용수칙, 그 밖에 상담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상담소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그 밖에 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상담소의 관리 및 운영〉 라.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임기 및 운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다.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임기 및 운영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u>연임</u>할 수 있음												
		〈신 설〉	라. 시설의 안전점검 등 ○ 보험 가입 ○ 자체 안전점검 ○ 지자체 안전점검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 시설 사고예방 및 조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보호 시설 개요	나. 보호시설의 업무 ○ <u>피해자</u>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u>피해자</u>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신 설〉	나. 보호시설의 업무 ○ <u>피해자등</u>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u>피해자등</u>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다. 보호시설의 유형 <table border="1"> <tr> <th>종류</th> <th>기능</th> </tr> <tr> <td>일반</td> <td>피해자에게 보호,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제공</td> </tr> <tr> <td>장애인</td> <td>장애인 피해자에게 보호,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제공</td> </tr> <tr> <td>특별지원</td> <td>19세 미만의 친족성폭력피해자에게 보호,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제공</td> </tr> <tr> <td>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td> <td>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자립자활교육, 취업정보 등 제공</td> </tr> <tr> <td>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td> <td>장애인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자립자활교육, 취업정보 등 제공</td> </tr> </table>	종류	기능	일반	피해자에게 보호,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제공	장애인	장애인 피해자에게 보호,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제공	특별지원	19세 미만의 친족성폭력피해자에게 보호,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제공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자립자활교육, 취업정보 등 제공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	장애인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자립자활교육, 취업정보 등 제공
		종류	기능												
일반	피해자에게 보호,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제공														
장애인	장애인 피해자에게 보호,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제공														
특별지원	19세 미만의 친족성폭력피해자에게 보호,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제공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자립자활교육, 취업정보 등 제공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	장애인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자립자활교육, 취업정보 등 제공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보호 시설 설치 기준	다. 보호시설 설치기준 및 절차 ② 규모 〈이하 표 생략〉 ※ 부득이한 경우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최과 입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사·군·구청 장에게 보고 ③ 구조 및 설비 - 〈이하 생략〉	다. 보호시설 설치기준 및 절차 ○ 보호시설 종류별 시설 규모: 〈좌동〉 ※ 보호시설의 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피해자나 가족구성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수용 가능.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사·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구조 및 설비 - 〈좌 동〉 -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을 향하도록 함														
	보호 시설 인력 및 복무	마. 종사자 수 등 <table><tr><th colspan="2">시설의 종류</th></tr><tr><td rowspan="4">일반 보호시설</td><td>시설장</td></tr><tr><td>상담원</td></tr><tr><td>보조원</td></tr><tr><td>총 계</td></tr></table> 〈이하 생략〉	시설의 종류		일반 보호시설	시설장	상담원	보조원	총 계	가. 종사자 배치기준 <table><tr><th colspan="2">시설의 종류</th></tr><tr><td rowspan="5">일반 보호시설</td><td>시설장</td></tr><tr><td>상담원</td></tr><tr><td>상담원 및 보조원</td></tr><tr><td>총 계</td></tr></table>	시설의 종류		일반 보호시설	시설장	상담원	상담원 및 보조원	총 계
	시설의 종류																
일반 보호시설	시설장																
	상담원																
	보조원																
	총 계																
시설의 종류																	
일반 보호시설	시설장																
	상담원																
	상담원 및 보조원																
	총 계																
	보호 시설 입소자 관리	카. 성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우선 입주 신청자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의 무주택 세대주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① 지원대상: 이하 생략 ② 지원요건(다음 중 어느 하나) - 이하 생략	다. 성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신청자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 하고~ ① 〈좌동〉 ② 지원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성폭력피해자(친족, 아동·청소년)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좌동〉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보호 시설 입소자 관리	○ 우선 공급대상 임대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 우선 공급대상 임대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재무 회계 관리 및 2019년 보조금 지원 내역	라. 국비지원 대상 선정기준 ○ 여성가족부는 국비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시·도가 신청한 국비지원 대상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심사·선정할 수 있음	나. 국비 지원 보호시설 선정 ○ 여성가족부는 국비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시·도가 신청한 국비지원 대상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심사·선정할 수 있음 ※ 국비지원 대상 선정 시 운영주체(법인 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확인 필요
		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액 기준 ○ 종사자 인건비는 사업비를 제외한 지원 예산액의 80~9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기본급, 4대보험 자부담분 및 기관 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보조원을 포함한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이 2018년 기준 최저임금액(7,530원×209시간=1,573,77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라. 보조금 집행기준 1)인건비 및 운영비 ○ 인건비는 사업비를 제외한 보호시설 지원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19년 시설당(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제외) 1명의 인건비를 추가 지원함. 단 채용기간을 고려하여 9개월분의 인건비만 반영됨 - 인건비는 기본급, 4대보험 기관 부담금, 퇴직급여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함. - 보조원을 포함한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은 2019년 기준 최저임금액(8,350원×209시간=1,745,15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적립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운영비로 사용 가능(여타 종사자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 -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은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준용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재무 회계 관리 및 2019년 보조금 지원 내역		- 단,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소자의 특성 등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 가능함 • 아동·청소년 입소자 많은 등의 입소자의 특성으로 인해, 학습지원비, 의료·법률지원 부대비용 등이 부족할 경우, 프로그램비와 직업훈련비지원액 합계의 15% 범위 내에서 생활지원비·학습지원비·의료법률지원 부대비용으로 사용 가능
	그 밖에 보호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임기 및 운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나. 종사자 및 시설 사고 예방 및 조치 -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해빙기 안전점검 철저 (보일러·가스·전기 등)	라.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임기 및 운영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사. 시설 사고 예방 및 조치 -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해빙기 안전점검 철저 (보일러·가스·전기 등) ※ 가스경보기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 미연에 방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기능 보강	지원 대상 및 내역 세부 기준	(나) 시설 매입 및 기존시설 리모델 (2) 지원내용 ○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증·개축 또는 개·보수 및 리모델링비 지원 ○ 건물 감정평가액과 시설 리모델링비 포함하여 시·도별 예산범위내에서 국비지원한도액(120,000천원)까지 지원 가능 ※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2-1. 보호시설 확충 나. 리모델링 (2) 지원내용 ○ 기존 건물 매입(건물 감정평가액) 및 리모델링비 지원 (3) 지원규모 ○ 시설 유형별 지원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공사견적이 기준으로 지원 ○ 지원단가(국비·지방비 포함) - 기존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 1,272천원/㎡ - 한국토지공사 등이 취약계층 공동 생활가정형태로 공급하는 주택 리모델링 : 70,000천원 / 개소 ※ 설계용역비는 지원하지 않음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기능 보강	지원 대상 및 내역 세부 기준	<u>〈신 설〉</u>	2-2. 보호시설 환경개선 <u>다. 임차보증금 지원</u> <u>(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u> ○ 기존 보호시설 중 노후화 및 안전성의 문제가 있고, 개·보수보다 이전이 효율적일 경우 지원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시설에는 지원하지 않음 ※ 특별한 사정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 이하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필요시 등 ※ 최근 3년 이내 : 2016년 이후(포함) 지원 시설
			<u>(2) 지원 조건</u> ○ 신규시설 설립에 대한 임차료 지원은 불가하며, 지원 가능한 임차형태는 다음 경우에 한정함.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취약계층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공급하는 주택 ② 공공기관·단체 소유의 유희공간 임대(이 경우 임차보증금이 ①의 유형과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더 낮아야 함) <u>(3) 고려사항</u> ○ 지원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함. ○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임차료 지원액 중 국비로 지원된 금액은 국고로 반납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지원은 1회에 한함.

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 피해자 의료비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료기관 부설 클리닉 혹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상담심리학, 아동심리치료학,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u>클리닉도 집행 가능</u> ※ 피해자가 종전부터 이용해온 기관이거나 피해자가 사는 지역 인근에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 없는 경우 <u>박사학위 수료자도 예외적으로 집행 가능</u>	▶ 피해자 의료비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료기관 부설 클리닉 혹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상담심리학, 아동심리치료학,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u>심리상담기관도 집행 가능</u> ※ 피해자가 종전부터 이용해온 기관이거나 피해자가 사는 지역 인근에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 없는 경우 <u>박사학위 수료자가 운영하는 기관도 예외적으로 집행 가능</u>																								
	돌봄 비용 지원	라. 지원금액 <table><tr><th>구 분</th><th>시간당 기준 단가(예시)</th></tr><tr><td>일반단가</td><td>시간당 평균 7~8천원</td></tr></table>	구 분	시간당 기준 단가(예시)	일반단가	시간당 평균 7~8천원	라. 지원금액 <table><tr><th>구 분</th><th>시간당 기준 단가(예시)</th></tr><tr><td>일반단가</td><td>시간당 평균 8~9천원</td></tr></table>	구 분	시간당 기준 단가(예시)	일반단가	시간당 평균 8~9천원																
구 분	시간당 기준 단가(예시)																										
일반단가	시간당 평균 7~8천원																										
구 분	시간당 기준 단가(예시)																										
일반단가	시간당 평균 8~9천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 그램 운영	세부 운영 지침	라. 프로그램별 운영기준 ○ 심신회복캠프 • 강사비 단가 <table><tr><th></th><th>최초 1시간</th><th>매1시간 초과</th></tr><tr><td>전문(Ⅱ)</td><td><u>70천원</u></td><td>35천원</td></tr><tr><td>전문(Ⅲ)</td><td>150천원</td><td>50천원</td></tr><tr><td>보조진행</td><td colspan="2">1인당 70천원(1회)</td></tr></table>		최초 1시간	매1시간 초과	전문(Ⅱ)	<u>70천원</u>	35천원	전문(Ⅲ)	150천원	50천원	보조진행	1인당 70천원(1회)		라. 프로그램별 운영기준 ○ 심신회복캠프 • 강사비 단가 <table><tr><th></th><th>최초1시간</th><th>매1시간 초과</th></tr><tr><td>전문(Ⅱ)</td><td><u>100천원</u></td><td>35천원</td></tr><tr><td>전문(Ⅲ)</td><td>150천원</td><td>50천원</td></tr><tr><td>보조진행</td><td colspan="2">1인당 70천원(1회)</td></tr></table>		최초1시간	매1시간 초과	전문(Ⅱ)	<u>100천원</u>	35천원	전문(Ⅲ)	150천원	50천원	보조진행	1인당 70천원(1회)	
		최초 1시간	매1시간 초과																								
전문(Ⅱ)	<u>70천원</u>	35천원																									
전문(Ⅲ)	150천원	50천원																									
보조진행	1인당 70천원(1회)																										
	최초1시간	매1시간 초과																									
전문(Ⅱ)	<u>100천원</u>	35천원																									
전문(Ⅲ)	150천원	50천원																									
보조진행	1인당 70천원(1회)																										
		라. 프로그램별 운영기준 ○ 심신회복캠프 • 장소사용료 1회 150,000원 숙박비 2인 1실 <u>70,000원</u>	라. 프로그램별 운영기준 ○ 심신회복캠프 • 장소사용료 1회 150,000원 숙박비 2인 1실 <u>100,000원</u>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사업 대상 및 지원 절차	○ 변호사 수임료 기준 100만원	○ 변호사 수임료 기준 120만원																								
		○ 구조 지원 한도액 및 유의사항 - 1인당 구조비용액이 <u>총 400만원 초과 시</u>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여부 결정	○ 구조 지원 한도액 및 유의사항 - 1인당 구조비용액이 <u>총 500만원 초과 시</u>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여부 결정 <u>※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진행(심사로 등 사업비로 지출 가능)</u>																								

2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가. 성매매피해자 상담·보호·자활시설 운영 공통지침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인건비 편성기준	○ 인건비 지원액 : <u>26,448천원</u> / 1인 (<u>'17년 대비 2.5%증</u>)	○ 인건비 지원액 : <u>27,187천원</u> / 1인 (<u>'18년 대비 2.8%증</u>)
시설 설치기준	<u>〈신 설〉</u>	※ 이용시설(상담소, 자활지원센터 등)은 근린 생활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등으로, 생활 시설(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등)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등으로 분류 될 수 있음
지원·상담· 자활시설의 안전관리	<u>〈신 설〉</u>	○ 24시간 생활시설에 가스경보기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행정사항 (성희롱 예방교육)	<u>〈신 설〉</u>	○ 국비지원 대상 선정 시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성희롱예방 교육 실시 여부 확인 필요

나. 성매매피해자 상담·보호·자활시설 운영 개별지침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외국인 지원 시설	입소 기간 ○ <u>3개월</u>	○ <u>1년</u>

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직업 훈련 지원	집행 방법	〈신 설〉	○ 금융기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수령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수령증을 관련 서류에 증빙으로 첨부

라. 성매매피해자 상담·보호·자활시설 기능보강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지원 내용 및 대상	시설 임차료	•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 자활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 자활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 <u>상담소</u>

마.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제경비 집행 지침	상담 활동비	○ 상담활동비는 <u>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지므로</u> 상담원 양성교육 등 외부 교육 참가 일수는 상담활동비 지급 일수에서 제외하여 일할 계산	○ 상담활동비는 <u>현장상담원을 대상으로 지급(1일 최대 10,000원)</u> 하며 상담원 양성교육 등 외부교육 참가 일수는 상담활동비 지급 일수에서 제외하여 일할 계산

3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가.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운영지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가정 폭력 상담소	업무	○ 그 밖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 <u><신설></u> 가정폭력피해자 보호관련 내용 명시	○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 ○ <u>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u>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지원 : 열람·발급 제한에 필요한 서류 중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가 포함됨
	상담소 설치 신고	<u><신설></u> 시행규칙 상 내용 기한 명시	○ 신고증 교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1호
	상담소 변경	<u><신설></u> 시행규칙 상 내용 기한 명시	○ 변경신고 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 후 5일 이내에 처리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별지3호
	상담소 폐지·휴지·재개	<u><신설></u> 시행규칙 상 내용 기한 명시	○ 휴·폐지신고 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 후 6일 이내에 처리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10호
	시설 설치 기준	○ 일반상담소 - 종사자 수: 상담소장 1인, <u>상담원 2인 이상</u> ○ 통합상담소 - 상담소장 1인 - <u>상담원 4인(가정폭력상담원 2인, 성폭력상담원 2인 이상) 이상</u>	○ 일반상담소 - 종사자 수: 상담소장 1인, <u>상담원 3인 이상</u> ○ 통합상담소 - 상담소장 1인 - <u>상담원 5인(가정폭력상담원 2인 이상, 성폭력상담원 2인 이상) 이상</u>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가정 폭력 상담소	종사자 자격 기준	○ 통합상담소 상담소장 - 가정폭력 상담소장 또는 성폭력 상담소장의 자격 중 하나만 갖추면 가능(각각의 교육과정은 모두 수료 하여야 함) <u><신설></u> 내용 명확화	○ 통합상담소 상담소장 - 가정폭력 상담소장 또는 성폭력 상담소장의 자격 중 하나만 갖추면 가능(각각의 교육과정은 모두 수료 하여야 함) ※ <u>하나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나머지 교육과정은 1년 이내 수료 필요</u>
	시설의 안전 관리	○ 종사자의 안전관리 <u><신설></u> <u><신설></u> <u><신설></u> ○ 재난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 교육 실시 <u><신설></u>	○ 종사자의 안전관리 ○ <u>자체 안전점검</u> ○ <u>지자체 안전점검</u> ○ <u>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u> ○ 재난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 교육 실시 <u>나. 사고 예방 및 조치</u> • <u>시설 내·외 CCTV 설치, 가스충 등 구비</u> • <u>경찰관서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u>
	상담소 및 보호 시설 운영 위원회 구성· 운영	○ 운영위원회 구성 • 시설의 장 • 시설 이용자 대표 •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임기 및 운영) 위원 임기는 3년 으로 함 <u><신설></u> 연임 규정 신설	○ 운영위원회 구성 • 시설의 장 • 시설 이용자 대표 • <u>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삭제)</u>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임기 및 운영) 위원 임기는 3년 으로 하며, 연임 가능함.
	상담소 업무 관리	○ 개인정보 보호 - 상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목적용 외에 수집 또는 제공할 수 없음 <u><신설></u> 개인정보 및 피해자 정보 보호 강화 법규정 안내	○ 개인정보 보호 - 상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목적용 외에 수집 또는 제공할 수 없음 - <u>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u> - <u>가정폭력 상담소와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됨</u> ※ <u>가정폭력방지법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20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u> ※ <u>비밀을 누설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으로 동법 제78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u>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가정 폭력 상담소	상담소 보호 시설 종사자 채용 및 임면 보고	○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 상담소 종사자의 육아휴직시 대체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은 상담소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국고지원 상담 소의 경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u>국고지원금</u> 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 상담소 종사자의 육아휴직시 대체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은 상담소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국고지원 상담 소의 경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u>보조금</u> 으로 지급할 수 있음												
	국비 지원 상담소 지원 기준	○ 국비지원 대상 선정기준 <u><신설></u>	○ 국비지원 대상 선정기준 - <u>선정절차 명시</u>												
	국고 보조금 지원	○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단위 : 천원) <table><tr><th>통합상담소 (종사자 5인 기준)</th><th>일반상담소 (종사자 3인 기준)</th><th>장애인 상담소 추가지원</th></tr><tr><td>117,593</td><td>73,690</td><td>28,672 (상담지원인력 인건비 및 교통비)</td></tr></table>	통합상담소 (종사자 5인 기준)	일반상담소 (종사자 3인 기준)	장애인 상담소 추가지원	117,593	73,690	28,672 (상담지원인력 인건비 및 교통비)	○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단위 : 천원) <table><tr><th>통합상담소 (종사자 6인 기준)</th><th>일반상담소 (종사자 4인 기준)</th><th>장애인상담소 (종사자 5인 기준)</th></tr><tr><td>174,730</td><td>116,158</td><td>상담원(1인) : 25,230 교통비 : 12,099</td></tr></table>	통합상담소 (종사자 6인 기준)	일반상담소 (종사자 4인 기준)	장애인상담소 (종사자 5인 기준)	174,730	116,158	상담원(1인) : 25,230 교통비 : 12,099
	통합상담소 (종사자 5인 기준)	일반상담소 (종사자 3인 기준)	장애인 상담소 추가지원												
	117,593	73,690	28,672 (상담지원인력 인건비 및 교통비)												
	통합상담소 (종사자 6인 기준)	일반상담소 (종사자 4인 기준)	장애인상담소 (종사자 5인 기준)												
	174,730	116,158	상담원(1인) : 25,230 교통비 : 12,099												
국고 보조금 지원	○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이 2018년 기준 최저임금액(7,530 원×209시간= 1,573,77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 2019년 기준 최저임금액(8,350원× 209시간=1,745,15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운영비 관련	※ 여성가족부 지원 운영비는 피해자,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내부강사로 명목으로 입금된 상담소 자체 운영비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u>수용비, <추가> 공공요금 및 제세 ...</u>	※ 국비지원 운영비는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내부강사로 명목 으로 입금된 상담소 자체 운영비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u>수용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전국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비 등)</u>													
수용비	<u>공공요금 및 제세</u>	<u>공공요금 및 제세(전국가정폭력상담소 협의회비 등)</u>													
업무 추진비	<u><신설></u> 보조사업 비목 관리 규정 준수	- <u>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등)</u>													
인건비 관련	○ 국비지원 상담소의 인건비는 소장 1인 및 종사자 2인으로 책정하며 (* <u>통합상담소 별도</u>), 이는 최소 지급기준으로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 할 수 없음 <u><신설></u> 인력 확대에 따른 추가업무명확화	○ 국비지원 상담소의 인건비는 소장 1인 및 종사자 3인으로 책정하며 (<u>통합상담소의 경우 소장 1인, 종사자 5인</u>), 이는 최소 지급기준으로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상담소는 인력 총원이 됨에 따라, 가정 폭력피해자에 대한 초기 현장 동행지원, 데이트·스토킹 피해에 대한 초기 위기개입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가정 폭력 상담소	장애인 상담소	○ 상담지원인력(1명) 인건비 연간 <u>22,228천원</u> 추가 지원 - 1인당 지원액은 기본급, 4대보험 자부담분 및 기관부담금, 퇴직 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이 2018년 기준 최저임금액(<u>7,530원</u> × 209시간 = <u>1,573,770원</u>)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 상담지원인력(1명) 인건비 연간 <u>25,230천원</u> 추가 지원 - 1인당 지원액은 기본급, 4대보험 자부담분 및 기관부담금, 퇴직 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이 2019년 기준 최저임금액(<u>8,350원</u> × 209시간 = <u>1,745,150원</u>)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관련	○ 개인이 운영주체이거나 <u>법인대표</u> (운영주체)와 시설장이 동일한 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퇴직급여는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며~	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관련 ○ 개인이 운영주체이거나 <u>법인·단체 대표</u>(운영주체)와 시설장이 동일한 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퇴직급여는 별도로 적립하지 않음.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조)
	상담소 보호 시설 소진 방지	라. 종사자 소진방지 지원 관련 ○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비 내에서 종사자 소진 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 상담, 치료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원 가능 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심리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은 참여 가능(<u>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u>) - 지원 가능 금액: 연간 1인당 20만원 범위 내	라. 종사자 소진방지 지원 관련 ○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비 내에서 <u>슈퍼비전</u> 또는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치료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종사자 소진방지 관련은 연간 1인당 20만원 범위 내 사용 가능) ※ 지원 가능 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심리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은 참여지원 가능(<u>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 단 여행·영화 관람도 소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화한 경우 가능</u>)
	기타 행정 사항	○ 상담소 종사자가 다른 지자체 소속 상담소로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도 근속연한으로 인정함	○ 상담소 종사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상담소로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도 근속연한으로 인정함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보호 시설 업무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퇴소 관리	□ 퇴소 ○ 타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 퇴소 ○ 타 입소자 및 상담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자해, 폭력 등)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입소 기간	○ 단기보호시설(가족보호시설 포함) : 6월 이내 -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단기보호시설(가족보호시설 포함) : 6개월 이내 - 각 3개월의 범위에서 <u>두 차례 연장</u> <u>가능</u>
	운영비 기준	○ 운영비는 사업비를 제외한 지원 예산액의 10~20% 범위 내에서 탄력 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종사자 상해보험료(1인당 보험료 연 5만원 이내) - 수용비(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통신시설 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회의비 - 숙직비(1일 1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등	○ 운영비는 사업비를 제외한 지원 예산액의 10~20% 범위 내에서 탄력 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종사자 상해보험료(1인당 보험료 연 5만원 이내) - <u>수용비(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 시설협의회비 등),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통신시설 유지비), 차량비, 재료비</u> * 10만원 이내의 소모성 물품 구입(입소 자를 위한 물품, 집기 등) 가능 * 입소자를 위한 타지역 출장여비 지급 가능 - <u>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등)</u> - <u>숙직비(1일 2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등</u> - <u>종사자의 숙직, 연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활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활용 가능. 단, 대체 인력이 가정폭력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u>
	장애인 보호 시설	〈신설〉	※ 장애인보호시설 별도 지원예산 집행 방법 교통비, 일비 기준, 인건비 추가지원기준 명시
	직업 교육 훈련	○ 지원항목: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직업 교육비 또는 학원비, 교통비(필요시 1인당 월 5만원) • 직업훈련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교통비, 재료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 이 판단하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교통비 지원방식은 훈련생의 계좌로 입금	○ 지원항목: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직업 교육비 또는 학원비, 교통비(필요시 1인당 월 10만원) • <u>직업훈련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등에 대한 교통비, 재료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이 판단 하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u> ※ 교통비 지원방식은 훈련생의 계좌로 입금 (입금 시 시설명 노출에 유의)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주민 등록 변경 제도 안내	〈신설〉	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보호 시설 퇴소시 자립 지원금	-	〈신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침 신설
여성 긴급 전화 1366 센터	운영 주체	〈신설〉	○ 위탁 심사 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확인 필요
	운영 위원회 구성· 운영	〈신설〉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필요
	인력 배치	○ 인력배치 - 센터장 및 상담원: 시도별 여성 인구수에 따라 인력 차등 배치 ※ 센터당 15~16명	○ 인력배치 - 센터장 및 상담원: 시도별 여성 인구수에 따라 인력 차등 배치 ※ 센터당 15~20명
	현장 상담 서비스 지원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여성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긴급피난처 피신 및 관련기관 연계 등을 위해 '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서비스 지원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여성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긴급피난처 피신 및 관련기관 연계 등을 위해 '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서비스 지원
	운영 체계 및 방법	○ 24시간 Hot-Line 운영 - 365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위해 8시간 3교대 근무체제로 전문 상담원 배치	○ 24시간 Hot-Line 운영 - 365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위해 8시간 3교대 근무체제로 상담원 배치
	국고 보조금 의 지원	〈신설〉	○ '19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 안내 - 지자체 직영 또는 출자·출연기관 센터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 동 목적 외 타 용도 사용 불가, 전환 대상 인력 중 특별한 사유로 정규직 미 전환 시 전액 반납 조치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가정 폭력 상담원 교육 훈련 시설	설치 신고	- 신고·수리 시 검토사항 • 신고자격(비영리법인 여부 및 정관상 목적사업 부합 여부 등) 적정 여부 <신설>	- 신고·수리 시 검토사항 • 신고자격(비영리법인 여부 및 정관상 목적사업 부합 여부 등) 적정 여부 ※ 정관이나 규약 등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 내용이 포함
	기타 행정 사항	<신설>	○ 현장점검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가정 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18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한함)의 의료비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 없이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18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한함)의 의료비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지원
	의료비 지급	○ 피해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 소재지의 피해자 지원기관과 시·도 또는 시·군·구, 가해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신설>	○ 피해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 소재지의 피해자 지원기관과 시·도 또는 시·군·구, 가해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 <u>피해자의 주소지가 가해자와 다를 경우, 피해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u>
	배정 방법	○ 예산의 일부를 자체 보유(<u>전체 의료비 예산의 10% 정도</u>)하여 직접 집행 및 시설별 배정 예산의 부족에 대비 (예산 배정 규모, 자체보유 규모 등은 관내 의료기관 등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판단)	○ 예산의 일부를 자체 보유하여 직접 집행 및 시설별 배정 예산의 부족에 대비(예산 배정 규모, 자체보유 규모 등은 관내 의료기관 등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판단)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 그램	심신 회복 캠프	□ 심신회복캠프 - <u>건강한 가정회복</u> ※ 장소사용료: 1회 150,000원 - 숙박비: 2인1실 70,000원 - 식비: 1인 5식, 1식 10,000원 - 교통비: 실비 * 시설차량이용시 유류대, 주차료, 도로통행료 포함 - 다과비: 1인 5,000원 기준 ※ 교통비는 2가지 이상의 교통수단 이용 가능 <신설>	□ 심신회복캠프 - <u>문화체험·여행을 통해 자연과 접하여 정서함양과 심리적인 휴식을 취하며, 집단 속에서 관계성 훈련, 친목도모와 유대감 강화</u> ※ 장소사용료: 1회 150,000원 - 숙박비: 2인1실 100,000원 - 식비: 1인 5식, 1식 10,000원 - 교통비: 실비 * 시설차량이용시 유류대, 주차료, 도로통행료 포함 - 다과비: 1인 5,000원 기준 ※ 교통비는 2가지 이상의 교통수단 이용 가능 ※ 매 식비는 전체 식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 그램	집단 상담	전문(Ⅰ): 최초 1시간 35,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15,000원 전문(Ⅱ): 최초 1시간 7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35,000원 전문(Ⅲ): 최초 1시간 10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50,000원	전문(Ⅰ): 최초 1시간 5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15,000원 전문(Ⅱ): 최초 1시간 10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35,000원 전문(Ⅲ): 최초 1시간 15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50,000원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운영 관련	사.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 - 심사위원은 시·도의 5급 이상 업무 담당 공무원,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관련 단체·시설협의회의 임직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호선	사.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 - 심사위원은 시·도의 업무담당 공무원, 지역의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단체·시설협의회의 임직원 으로 구성, 위원장은 호선
가정 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 그램	상담 대상	○ 상담대상 행위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감명령 처분자 • 가정보호사건 중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담(교육) 위탁 처분을 받은 아동학대 행위자(지역 별로 법원·검찰 등 관련기관으로 부터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위탁 기관으로 지정(협력) 여부 확인 필요) 또는 아동보호전문 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유관기관 의뢰자 및 희생자 - 기타 경찰 등 유관기관 의뢰자 및 희생자	○ 상담대상 행위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원의 상담위탁 대상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담위탁 처분을 받은 아동학대 행위자(지역별로 법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아동 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위탁 기관 으로 지정(협력)여부 확인 필요) - 경찰관서에서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가 요청된 자

4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구 분		2018년	2019년
센터	종사자	〈신설〉	○ 종사자 소진방지 -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자체 운영비 내에서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치료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원 가능 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심리 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은 참여지원 가능(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 단 여행·영화 관람도 소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화한 경우 가능) ※ 지원 가능 액수: 연간 1인당 20만원 범위 내
	보호기간	○ 9개월 이상 보호하는 경우, 시설장은 계속적 보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상자 및 사유 등을 지체없이 보고함	○ 1년 이상 보호하는 경우, 시설장은 계속적 보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상자 및 사유 등을 지체없이 보고함
	비밀전환	〈신설〉	○ 친권자라 하더라도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피해 학생의 전학사실(전학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알리지 않도록 유의
	운영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3년 이상 보관)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5년 이상 보관)
	안전관리	〈신설〉 〈신설〉	○ 가스경보기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 미연에 방지 ○ 재난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 교육 실시 의무(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구 분		2018년						2019년																																																											
센터	지원금액	○ 지원 금액(지방비 포함) (단위: 천원) <table><tr><th rowspan="2">정 원</th><th colspan="2">종사(재)명</th><th colspan="4">지원 금액</th></tr><tr><th>시설장</th><th>상담원</th><th>계</th><th>인건비·운영비</th><th>긴급 지원비</th><th>치료·회복 프로그램</th></tr><tr><td>11인 이상 30인 이하</td><td>1</td><td>3</td><td>153,245</td><td>113,245</td><td>24,000</td><td>16,000</td></tr><tr><td>5인 이상 10인 이하</td><td>1</td><td>2</td><td>120,894</td><td>88,894</td><td>18,000</td><td>14,000</td></tr></table> ※ 운영비는 인건비·운영비 합계의 10~2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책정 가능						정 원	종사(재)명		지원 금액				시설장	상담원	계	인건비·운영비	긴급 지원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11인 이상 30인 이하	1	3	153,245	113,245	24,000	16,000	5인 이상 10인 이하	1	2	120,894	88,894	18,000	14,000	○ 지원 금액(지방비 포함) (단위: 천원) <table><tr><th rowspan="2">정 원</th><th colspan="2">종사(재)명</th><th colspan="4">지원 금액</th></tr><tr><th>시설장</th><th>상담원</th><th>계</th><th>인건비·운영비</th><th>긴급 지원비</th><th>치료·회복 프로그램</th></tr><tr><td>11인 이상 30인 이하</td><td>1</td><td>4</td><td>170,732</td><td>130,732</td><td>24,000</td><td>16,000</td></tr><tr><td>5인 이상 10인 이하</td><td>1</td><td>3</td><td>137,213</td><td>105,213</td><td>18,000</td><td>14,000</td></tr></table> ※ 운영비는 인건비·운영비 합계의 8~2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책정 가						정 원	종사(재)명		지원 금액				시설장	상담원	계	인건비·운영비	긴급 지원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11인 이상 30인 이하	1	4	170,732	130,732	24,000	16,000	5인 이상 10인 이하	1	3	137,213	105,213	18,000	14,000
	정 원	종사(재)명		지원 금액																																																															
		시설장	상담원	계	인건비·운영비	긴급 지원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11인 이상 30인 이하	1	3	153,245	113,245	24,000	16,000																																																												
	5인 이상 10인 이하	1	2	120,894	88,894	18,000	14,000																																																												
정 원	종사(재)명		지원 금액																																																																
	시설장	상담원	계	인건비·운영비	긴급 지원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11인 이상 30인 이하	1	4	170,732	130,732	24,000	16,000																																																													
5인 이상 10인 이하	1	3	137,213	105,213	18,000	14,000																																																													
운영비	○ 운영비: 수용비(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공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통신비, 종사자 여비, 종사자 상해보험료, 종사자 소진 방지 등 <신설> <신설>						○ 운영비: 수용비(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전국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협회의회비 등),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공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통신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등), 종사자 여비, 종사자 상해보험료, 종사자 소진방지 등 ○ 종사자의 숙직, 연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활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활용 가능. 단, 대체인력이 가정폭력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 ○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적립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운영비로 사용 가능(여타 종사자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																																																												
긴급 지원비	○ 긴급지원비: 개별 입소자를 위해 지급되는 비용 ○ ⑦ 아동양육비: 동반아동의 위생용품, 학습준비물 등 <신설> ○ 동반자녀가 아닌 동반가족(여성)의 경우, 긴급지원비 중 생계비, 교통·통신비, 의료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기타 항목은 지급 불가)						○ 긴급지원비 ○ ⑦ 아동양육비: 동반아동의 학습준비물, 교복비 등 ○ ⑨ 기타: 생활용품 구입비 및 위생용품비 등 ○ 동반자녀가 아닌 동반가족(여성)의 경우, 긴급지원비 중 생계비, 교통·통신비, 의료비, 출국지원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기타 항목은 지급 불가)																																																												

구 분		2018년	2019년
쉼터	행정사항	〈신설〉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동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침의 관련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음
자활 지원 센터	운영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3년 이상 보관)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5년 이상 보관)
	안전관리	〈신설〉	○ 가스경보기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 미연에 방지
		〈신설〉	○ 재난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 교육 실시 의무(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지원금액	○ 872,279천원(국비·지방비 포함) - 인건비 : 231,996천원 - 운영비 : 155,283천원 - 사업비 : 485,000천원	○ 881,324천원(국비·지방비 포함) - 인건비 : 241,041천원 - 운영비 : 155,283천원 - 사업비 : 485,000천원
	운영비	○ 운영비: 시설 경비, 공공요금, 난방 연료비, 건물유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화재보험료, 종사자 여비, 종사자 상해보험, 4대 사회보험료, 현판설치 등 시설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운영비: 시설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국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협의회비 등), 임차료, 난방연료비, 건물유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업무 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등), 화재 보험료, 종사자 여비, 종사자 상해보험, 종사자 소진방지, 4대 사회보험료, 현판설치 등 시설의 관리 운영에 소요 되는 비용
		〈신설〉	○ 종사자의 숙직, 연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활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활용 가능. 단, 대체인력이 가정폭력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
		〈신설〉	○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적립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운영비로 사용 가능(여타 종 사자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

구 분		2018년	2019년
그룹홈	종사자수	○ <u>종사자 수: 2명</u> - 입소자의 자립 및 직업알선·연계를 지원하는 <u>상담원 2인</u> 을 두어야 함	○ <u>종사자 수: 3명</u> - 입소자의 자립 및 직업알선·연계를 지원하는 <u>시설장 1인</u> 및 <u>상담원 2인</u> 을 두어야 함
	운영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u>3년 이상 보관</u>)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u>5년 이상 보관</u>)
	안전관리	<신설>	○ <u>가스경보기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 미연에 방지</u>
		<신설>	○ <u>재난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 교육 실시 의무(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u> - <u>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u>
	지원금액	○ <u>61,140천원(국비·지방비 포함)</u> - <u>인건비: 42,600천원</u> - <u>운영비: 18,540천원</u>	○ <u>81,162천원(국비·지방비 포함)</u> - <u>인건비: 62,622천원</u> - <u>운영비: 18,540천원</u>
	운영비	○ 시설운영비 - 시설 경비, <u>공공요금</u> , 난방연료비, 건물유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화재보험료, 종사자 여비, 종사자 상해보험, 현판설치 등 시설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시설운영비 - 시설 경비, <u>공공요금 및 제세(전국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협의회비 등)</u> 임차료, 난방연료비, 건물유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업무추진비(<u>기관운영비, 회의비 등</u>), 화재보험료, 종사자 여비, 종사자 상해보험, <u>종사자 소진방지</u> , 현판설치 등 시설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 <u>종사자의 숙직, 연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활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활용 가능. 단, 대체인력이 가정폭력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u>
		<신설>	○ <u>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적립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운영비로 사용 가능(여타 종사자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u>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구 분	2018년	2019년																																		
월 평균 지원금	○ 생활 안정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 월 <u>1,337천원</u> - 간병비 월 평균 <u>1,120천원</u> - 건강치료비 등 월 평균 <u>780천원</u>	○ 생활 안정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 월 <u>1,404천원</u> - 간병비 월 평균 <u>1,360천원</u> - 건강치료비 등 월 평균 <u>819천원</u>																																		
간병비 지원	• (지원단가) 종일 또는 시간제 이용 으로 구분 <table><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2">1일 지원 한도</th></tr><tr><th>종일제</th><th>반일제(12시간)</th></tr><tr><td rowspan="2">병원</td><td>일반 단가</td><td>82,000원</td><td>59,000원 (주·야간 12시간 기준)</td></tr><tr><td>특수 단가</td><td><u>88,000원</u></td><td><u>65,000원</u> (주·야간 12시간 기준)</td></tr><tr><td>가정</td><td>일반 단가</td><td><u>82,000원</u></td><td><u>59,000원</u> (주·야간 12시간 기준) * 가정간병의 경우 1시간 단위로 지원 가능하며, 시간당 단가는 <u>7,600원</u> 으로 함(8시간 이상 이용 시 반일제 적용)</td></tr></table>	구 분		1일 지원 한도		종일제	반일제(12시간)	병원	일반 단가	82,000원	59,000원 (주·야간 12시간 기준)	특수 단가	<u>88,000원</u>	<u>65,000원</u> (주·야간 12시간 기준)	가정	일반 단가	<u>82,000원</u>	<u>59,000원</u> (주·야간 12시간 기준) * 가정간병의 경우 1시간 단위로 지원 가능하며, 시간당 단가는 <u>7,600원</u> 으로 함(8시간 이상 이용 시 반일제 적용)	• (지원단가) 종일 또는 시간제 이용 으로 구분 <table><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2">1일 지원 한도</th></tr><tr><th>종일제</th><th>반일제(12시간)</th></tr><tr><td rowspan="2">병원</td><td>일반 단가</td><td>82,000원</td><td>59,000원 (주·야간 12시간 기준)</td></tr><tr><td>특수 단가</td><td><u>93,000원</u></td><td><u>70,000원</u> (주·야간 12시간 기준)</td></tr><tr><td>가정</td><td>일반 단가</td><td><u>88,000원</u></td><td><u>65,000원</u> (주·야간 12시간 기준) * 가정간병의 경우 1시간 단위로 지원 가능하며, 시간당 단가는 <u>8,400원</u> 으로 함(8시간 이상 이용 시 반일제 적용)</td></tr></table> ※ 종일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의도적인 주·야간 교대는 지양 ※ 간병비 단가를 초과하여 신청된 금액은 자 부담으로 함 ※ 간병인은 간병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하며(필요 시 증빙) 다만 간병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간병이 가능한 자도 예외적으로 인정가능하나 사전 협의 요망 ○ 지원 방법 및 절차 - 시·도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개인별 계좌로 간병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사정상 필요시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 간병서비스제공자 등에 직접 지원 가능하며, 매월 <u>간병비 지급 현황</u>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함	구 분		1일 지원 한도		종일제	반일제(12시간)	병원	일반 단가	82,000원	59,000원 (주·야간 12시간 기준)	특수 단가	<u>93,000원</u>	<u>70,000원</u> (주·야간 12시간 기준)	가정	일반 단가	<u>88,000원</u>	<u>65,000원</u> (주·야간 12시간 기준) * 가정간병의 경우 1시간 단위로 지원 가능하며, 시간당 단가는 <u>8,400원</u> 으로 함(8시간 이상 이용 시 반일제 적용)
	구 분			1일 지원 한도																																
종일제			반일제(12시간)																																	
병원	일반 단가	82,000원	59,000원 (주·야간 12시간 기준)																																	
	특수 단가	<u>88,000원</u>	<u>65,000원</u> (주·야간 12시간 기준)																																	
가정	일반 단가	<u>82,000원</u>	<u>59,000원</u> (주·야간 12시간 기준) * 가정간병의 경우 1시간 단위로 지원 가능하며, 시간당 단가는 <u>7,600원</u> 으로 함(8시간 이상 이용 시 반일제 적용)																																	
구 분		1일 지원 한도																																		
		종일제	반일제(12시간)																																	
병원	일반 단가	82,000원	59,000원 (주·야간 12시간 기준)																																	
	특수 단가	<u>93,000원</u>	<u>70,000원</u> (주·야간 12시간 기준)																																	
가정	일반 단가	<u>88,000원</u>	<u>65,000원</u> (주·야간 12시간 기준) * 가정간병의 경우 1시간 단위로 지원 가능하며, 시간당 단가는 <u>8,400원</u> 으로 함(8시간 이상 이용 시 반일제 적용)																																	

구 분	2018년	2019년
의료비· 비급여 의료비	• (1인당 지원한도) <u>연 936만원</u>	• (1인당 지원한도) <u>연 983만원</u>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 -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u>매월 건강관리 등 사례관리를</u> 통해 지원 필요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방문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고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정서 안정을 지원하여야 함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 -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u>분기별 1회 이상 정기방문 등을</u> 통해 지원 필요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방문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고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정서 안정을 지원하여야 함 * 정기방문 후 결과보고서를 여성가족부로 제출

6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교육지원기관 운영 인력관리	○ 기관장, 전담인력 등 내부직원에 의한 강의는 ‘시도별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사업량의 10% 이내에서 가능	○ 기관장, 사업 담당자 등 내부직원에 의한 강의는 ‘시도별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사업량의 15% 이내에서 가능
교육 내용	〈신 설〉	○ 성 평등 관점의 이해 및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성 평등교육’을 연계 하여 실시
강사풀 구성 및 운영	○ 강사 자격기준 ④ <u>상담소·보호시설·긴급전화센터의 장으로서</u> 3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강사 자격기준 ④ <u>상담소·보호시설·긴급전화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강사로서</u> 3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예산의 지원 및 관리	○ 교육 규모별 보조금 차등 지원 - 도서벽지 <u>3개 등급 / 9개 시도</u>	○ 교육 규모별 보조금 차등 지원 - 도서벽지 <u>4개 등급 / 10개 시도</u>
	○ 도서벽지 교육 시간보상 수당 등을 <u>강사지원비 항목에 편성</u>	○ 도서벽지 교육 시간보상 수당 - <u>기본운영비 항목에 편성</u>
사업평가	○ 사업평가 배점 기준(100점) - <u>정량평가(50점), 정성평가(50점)</u>	○ 사업평가 배점 기준(100점) - <u>정량평가(40점), 정성평가(60점)</u>

V.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8년	2019년	비고
합 계	94,187	109,716	
□ 일반예산	16,525	14,509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4,482	2,781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	1,217	1,225	
－ 일반국민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872	872	
－ 성 인권교육 및 성인권 교과개발	556	556	
－ 성폭력 추방주간 및 예방 홍보	128	128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1,509	－	
－ 성희롱 실태조사	200	－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7,029	7,441	
－ 신상정보 인터넷공개제도	234	234	
－ 신상정보 우편고지	5,711	6123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192	192	
－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524	524	
－ 성범죄 예방 및 홍보	368	268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3,920	3,940	
－ 생활안정지원	1,134	972	
－ 피해자 지원사업	757	649	
－ 피해자 기념사업	1,904	2,180	
－ 기타 경상경비	125	139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	740	1,662	
○ 여성폭력 실태조사	－	1,372	
○ 권익증진기본경비(총액)	88	85	
○ 권익증진기본경비	266	262	

사 업 명	2018년	2019년	비고
□ 양성평등기금	45,314	55,375	
○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사업	3,845	5,180	
-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3,353	3,978	
- 상담소 운영지원	-	684	
-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	71	71	
- 시설 종사자 교육	35	35	
- 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홍보	76	76	
-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310	336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 통합)	15,849	15,904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11,397	11,614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1,543	1,543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849	861	
- 지원시설 기능보강	602	428	
-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 운영	1,458	1,458	
○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2,772	1,477	
- 가정·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2,290	879	
- 가정폭력 예방 홍보	100	100	
- 성폭력 가해청소년 교육	382	498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22,848	31,683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운영지원	4,160	5,052	
- 여성긴급전화 중앙지원단 설치·운영	2,521	2,802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4,846	8,411	
- 가정폭력보호시설 운영지원	6,643	9,405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	889	976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1,904	1,904	

사 업 명	2018년	2019년	비고
- 여성폭력관계자 교육지원	251	151	
-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치유	40	40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1,594	2,941	
○ 성희롱 등 직장내 여성폭력 방지지원	-	1,131	
□ 청소년육성기금	5,330	5,453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5,330	5,453	
-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운영	4,294	4,417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	1,036	1,036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7,018	31,345	
○ 성폭력 피해자 지원	27,018	31,345	
-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4,539	6,038	
- 성폭력보호시설 운영지원	3,824	4,452	
-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기능보강비	310	310	
- 성폭력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12,653	13,959	
-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운영	1,229	1,452	
- 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907	907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	1,985	1,985	
- 성폭력 응급키트 제작	140	164	
-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354	-	
- 돌봄비용 및 치료동행서비스 지원	1,067	1,110	
-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10	16	
- 장애인 보호시설 신규설치	-	308	

0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 I. 성폭력피해상담소
- II.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III.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 IV.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I . 성폭력피해상담소

1 상담소 개요

가.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고현황	전체	170 (39)	21 (3)	6 (5)	4 (2)	4 (1)	8 (1)	5 (1)	4 (2)	2 (1)	36 (3)	9 (5)	8 (2)	17 (4)	7 (1)	9 (1)	11 (5)	15	4 (2)
	일반	145 (36)	17 (3)	5 (5)	3 (1)	2 (1)	7 (1)	3 (1)	3 (2)	2 (1)	33 (3)	9 (5)	7 (2)	15 (4)	6 (1)	8 (1)	9 (5)	14	3 (2)
	장애인	25 (3)	4	1	1 (1)	2	1	2	1		3		1	2	1	1	2	1	1
예산지원		104 (9)	13	3 (2)	2	3	3	3	2	1	18	4 (1)	5	9 (2)	6	8	10 (4)	12	2

* '18년 9월 기준/예산 지원 상담소 현황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지원된 상담소 수
 ** ()는 통합상담소 수이며, 휴지기관은 제외 / 장애인상담소는 전체 국비 지원

나. 법적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다. 상담소의 업무(법률 제11조)

- 성폭력피해,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
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예의 동행
-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
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개정예 따라 친족 성폭력 피해자로서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성폭력 피해 상담을 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침 참조)

2 상담소 설치기준

가. 설치·운영 주체(법률 제10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

나. 시설기준(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1)

- 규모 : 연면적 49.59㎡ 이상
- 구조 및 설비 : 사무실, 면접상담실(사생활이 공개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함), 전화상담실, 보호실(임시보호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 비상재해 대피시설 등

3 상담소 설치 신고 등

가. 설치·변경 및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신청서류

구 분	신 청 서 류
설치	- 신청서 :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지침 [서식1] - 첨부 서류 •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 •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상담소장의 자격증명 서류 • 상담소 종사자 명단 및 자격증명 서류 •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구 분	신 청 서 류
변경	- 신청서 :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3호서식] 지침 [서식2] - 첨부 서류 •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 또는 변경사유서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고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상담소 장의 자격증명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상담소 신고증
폐지·휴지·운영재개	-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서 :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8호서식], 지침 [서식3] - 첨부 서류(폐지 또는 휴지 시에만 해당) •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 • 상담소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제외) • 상담소 신고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 상담소 종사자 인사기록카드(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

나. 상담소 설치신고(시행규칙 제3조)

○ 설치신고 및 수리 절차

- 신청서 제출: 신청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심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수, 종사자 자격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 특히 상담원이 법령상 시·군·구에 신고된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3의2]의 교육시간, 과목 등)을 이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 교육기관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등 설치요건의 준수여부 확인 강화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정 구비서류 외에 설치신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나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특히 시설장의 요건) 및 건축법,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하여 주무부서와의 협조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신고수리 여부 결정

※ 상담소는 노유자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분류됨

- 신고증 교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인
 - ※ 신고증 서식은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2호서식] 참조
 - ※ 상담소 설치 신고수리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지사를 경유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시·도명	상담소명	소재지(연락처)	운영주체(시설장명)	신고일
				0000.00.00.

- 유의사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관내 타 상담소 등의 설치운영 및 상담수요, 향후 예산지원 전망 등을 사전 설명하고 해당지역의 상담소의 적정 공급수준을 유도
 - 신고수리 후 상담업무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안내

다. 상담소 변경신고(시행규칙 제3조)

- 사유(변경신고 신청 대상) :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또는 상담소의 장 변경
- 변경신고 및 수리 절차
 - 신청서 제출 : 신고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변경사항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소재지 변경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 등본 확인
 - 상담소 신고증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교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인
 - ※ 상담소 변경 신고수리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지사를 경유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 유의사항
 - 상담소 운영 주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폐지신고 후 새로이 설치신고를 해야 함. 단, 상담소 운영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지속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존 시설에 준하는 예산지원이 가능함
 - 개인상담소의 경우 ‘상담소의 장 변경’은, 운영주체가 동일한 경우(신고인(대표자)은 변경되지 않고 별도 고용된 소장이 변경에 한함

- 지역을 달리하여 상담소를 이전할 경우, 기존 관청에 상담소 폐지신고 후 이전하고자 하는 관청에 신규 설치 신고하여야 함. 단, 운영실적, 운영기간 등은 개소일부터 계속 인정하며 지원여부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지 않음.

라. 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시행규칙 제10조)

-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휴지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함)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신고 및 수리 절차
 -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서류 제출 : 신고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폐지·휴지 신고 시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 후 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수리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참고)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15.2.3.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상담소에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음
- 상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별표5의 가항에 따라 상담소 업무의 폐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상담소가 폐쇄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폐쇄되는 상담 서류 일체를 당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송토록 조치하고 5년 동안 보관 후 폐기 조치
 - ※ 단, 상담일지는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 조치하되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전연령 대상 강간살인죄 등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담관련 자료 폐기에 신중하여야 함. 단, 피해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피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자료 폐기 가능

4 상담소 인력 및 복무

가. 종사자 배치기준(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 상담소의 장 1인, 상담원 2인 이상

※ 단, 국비를 지원받지 않는 상담소의 경우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음

나. 종사자 자격기준(시행령 제7조 [별표 1])

구 분	내 용
자격기준	①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2호)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장〉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폭력 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 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상담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보호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상담소만 해당) ②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구 분	내 용
결격사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종사자 자격 중 각종 경력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영수증, 소득세 원천 징수부 등)를 첨부하여야 함. 단,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시설장의 서명 또는 직인으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로 증명할 수 있음

상담원 자격요건의 예외(수습직원)

-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 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다. 운영시간 및 종사자 복무

- 주 5일, 평일 8시간 이상 운영(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 상담소의 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근무시간 중 대학출강 등 타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는 겸직으로 보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의 장은 상담소의 장 중 겸직자가 있는지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겸직일 경우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상근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단,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겸직이 필요한 경우는 시·군·구청장의 승인 하에 겸직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은 인건비가 타 기관과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해당 시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함
 - ※ 겸직가능사유: 대학부설시설에 해당교수가 소장에 임명되는 경우, 법인부설 상담소의 소장을 해당법인 대표가 겸직하는 경우,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장(동일법인·단체에 한함)과 겸직하는 경우
- 학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예방교육,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를 위하여 상담을 나가는 등 상담소 고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출장은 가능함
 - 이 경우 반드시 관련자료(근무상황부, 상담일지, 출장대장, 교육대장 등)를 비치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함
 - ※ 근무상황부, 출장대장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인사현황자료(출장현황, 휴가현황, 교육현황 등)로 대체 가능함
 - 잦은 출장으로 인해 피해자 상담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 업무 분담, 교육비 활용 기준 등에 관하여 형평성 있는 상담소 자체 규정을 구비하여야 함
 - ※ 상담소 종사자가 외출, 조퇴 등 이석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를 비치

라. 종사자 채용 및 임면보고 등

- 설립주체에 따른 종사자 임면권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장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시설의 장
 - 개인: 시설의 대표자
 - ※ 종사자 임면권자는 법인의 내규 규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종사자의 채용
 -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 시 임금·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함
 - ※ 종사자는 교육훈련과정(100시간) 이수뿐만 아니라 시행령 상의 개별 기준도 갖추어야 하므로 채용 시 수료증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필히 확인함.
 - ※ 상담소 종사자가 다른 지자체 소속 상담소로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도 근속연한으로 인정함
 - 장애인 상담소에 추가 지원되는 '상담지원인력'의 자격기준은 성폭력피해상담원 자격 기준을 갖춘 자이며, 경력자 등을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음

- 종사자 결원 시 1월 이내에 신규 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함

(참고) 종사자 결격조치 관련 시스템 활용

- (국가 및 지자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조회
- (국가·지자체 외)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통한 조회
- ※ 결격조치와 관련된 관련법령을 명확하게 등록하여야 함

○ 종사자 임면보고

-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권자는 종사자 채용 시 반드시 사회 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상담소의 장은 국비(지방비 포함)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종사자 채용 시 관련시스템에 따라 종사자 임면보고(사유: 종사자 경력인정여부의 증명서류 제출 시 증빙자료로 활용)

○ 종사자의 대체 인력 지원

- 상담소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대체 인력의 자격은 상담소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국고지원 상담소의 경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무료법률 지원 사업 활용 가능

- 상담소 종사자가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역고소 등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음

5 행정처분 및 벌칙

가. 행정처분의 요건(법률 제23조)

-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법 제22조)

-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상담원 등이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신고한 휴지기관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나. 행정처분의 주체(법률 제23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행정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11조 [별표 5])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상담소·보호시설을 양도·상속하거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지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한다.
-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업무의 폐지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보호시설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보호시설의 입소자를 전원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보호시설이 없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당소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나.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당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당소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상당소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라. 추가 조치사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당소 업무가 폐지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1조의2)
 - 이용자가 다른 상당소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 조치
 -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 법 제23조에 따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 명령이나 인가취소를 받고도 상당소 등을 계속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의 폐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 ※ 「행정절차법」 상 처분 및 청문 절차 참조
 - ※ 그 외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참조

〈참고〉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 2])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위반
가. 법 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2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8조 제2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8조 제2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마. 법 제33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 제2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6 재무회계 관리 및 2019년 국고보조금 지원 내역

가. 재무회계 원칙

- 상담소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재무회계 관리는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 법령 준용(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참고)
- 상담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 후 집행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는 5년 이상 보존

나. 국비 지원 상담소 선정

- 지원요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신고된 상담소로서 상담소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준수하여 3년 이상 운영한 상담소
 - 단, 일부지역 및 도서벽지 등 3년 이상 운영 상담소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판단 하에 1년 이상 운영 상담소 선정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운영기간 기산일은 상담소로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실제 상담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함
 - ※ 위 사항은 국고 지원의 최소요건으로써 운영기간 최소연수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지원요건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님
- 선정절차 및 검토사항

단계	국비지원	담당기관
1단계	■ 상담소 국비지원 선정 계획 통보	여성가족부
2단계	■ 국비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희망 상담소 → 시·군·구)	지원희망 상담소
	■ 시·도에 지원 신청 (시·군·구 → 시·도)	시·군·구
3단계	■ 현장실사, 추천심사위원회 개최, 국비지원기관 추천 (시·도→여성가족부)	시·도
4단계	■ 상담소 국비지원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정	여성가족부
5단계	■ 상담소 국비지원기관 최종결과 통보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는 신규 국비지원 상담소 선정을 위해 시·도가 신청한 상담소에 대하여 심사·선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국비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서 시·군·구가 신청한 국비지원 대상 상담소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상담활동 등 사업수행능력과 지역 안배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함

※ 국비지원 대상 선정 시 운영주체(법인 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여부 확인 필요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상담소에 대해 상담일지 기록상태 및 관련서류 비치여부, 상담활동 및 대외 홍보 등 업무실적을 현지 확인을 통해 사전에 검토하여 국비지원 대상을 선정·신청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비지원대상 선정 시 내부 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 상담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활용

○ 유의사항

- 동일한 운영주체(법인 또는 개인)가 동일 시·군·구 내에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피해 상담소를 각각 개설하거나, 동일분야 상담소를 2개소 이상 운영하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함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최소 1개소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안배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함

※ 「2016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결과 반영

○ 국비지원 중단(보조금관리법 제31조의2)

- 국고지원 상담소가 1개월 이상 휴지 시,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함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여성가족부에 서면보고

다. 2019년 보조금 지원 단가(국비+지방비)

(단위 : 천원)

구 분	일반상담소 (4명)	장애인상담소 (5명)
인건비(4명) 및 운영비	107,513	107,513
장애인 상담소 추가지원	-	37,003 (상담지원인력 및 교통비)
합 계	107,513	144,516

※ 금액은 국비,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국고보조율은 50%임. 단,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70% 국비 지원함

※ 각 지자체는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신규 추가 지원인력(개소당 1명)의 인건비는 채용기간을 고려하여 9개월분 인건비만 반영

라. 보조금 집행 기준

1) 인건비 및 운영비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는 여건에 따라 국비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 책정을 할 수 있음
- 종사자 인건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총액의 80~9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상담소 개소당 4명의 인건비를 지원함
(전년대비 1명의 인건비 추가 지원, 단 추가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채용기간을 고려하여 9개월분의 인건비만 반영)
 - ※ 상담소는 인력 총원이 됨에 따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법률 동행 지원, 데이트·스토킹 피해에 대한 조기 위기개입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 인건비는 기본급,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함.
 -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은 2019년 기준 최저임금액(8,350원×209시간=1,745,15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 중도 퇴직자 및 신규 채용자 인건비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 일할계산 산식: 월 고정급(보험료 제외)÷ 209시간×8시간×월 근무일수
 - ※ 월 근무일수는 중도 퇴직일 또는 신규 채용일이 해당하는 월의 근무일수를 말함

- 개인이 운영주체이거나 법인·단체대표(운영주체)와 시설장이 동일한 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퇴직급여는 별도로 적립하지 않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적립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운영비로 사용 가능(여타 종사자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
-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은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준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환 : 시설장 65세 (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종사자 60세

특례 :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 ①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복지넷, 워크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2곳 이상에 15일 이상 공개모집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해당 종사자의 근로계약을 연장 하고자 한다면 그 근로계약의 완료 전에 위의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 반드시 실시할 것
 - ②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내에서 청년 인력(만 29세 이하)을 채용하는 경우
 - 신규 채용 및 인력 운용 계획을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이사회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 위의 계획에는 60세 초과 종사자 및 신규 채용 인력 2인의 인건비를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100% 내에서 지급하되, 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청년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 적용
- ※ ①, ②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

- 운영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총액의 10~2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포함함
 - 종사자 상해보험료(1인당 보험료 연 5만원 이내)
 - 수용비(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협회비 등),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건물 및 건축 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통신시설 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등
- ※ 장애인 상담소의 경우 운영비에서 교통비 지급 불가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 사무실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월 25만원 이내, 단 25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가 집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승인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
 - ※ 단, 해당관청 관할 공공기관 건물 내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입주하도록 검토·조치할 수 있음
-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비 내에서 슈퍼비전 또는 종사자 소진 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치료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종사자 소진방지 관련은 연간 1인당 20만원 범위 내 사용 가능)
 - ※ 지원 가능 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심리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은 참여지원 가능(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 단 여행·영화관람도 소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화한 경우 가능))
- '19년 인력이 충원됨 따라 사무용품 등 구입 한시적 허용(연간 20만원 범위 내)
- 기타 유의사항
 - 운영비(홍보비, 관리비 등)를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여부는 향후 상담소 운영 평가에 직접 반영되므로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함
 - 여성가족부 지원 운영비는 성폭력피해자 치료프로그램 내부강사로 명목으로 입금된 상담소 자체 운영비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 시·군·구는 상담소로부터 연간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 및 지급신청을 받을 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집행하도록 유도

2) 장애인 상담소 추가 지원

- 장애인 방문상담 등 상담소 업무에 소요되는 교통비(연간 12,013천원)를 별도 지원 하며, 아래와 같이 집행 가능함
 - 장애인 대상 성폭력 상담 및 예방교육 등 상담원의 업무에 소요되는 출장비(일비 및 교통비) 지급
 - 근무지 내: 일비 4시간 이하 10,000원, 4시간 초과 20,000원
 - 근무지 외: 일비 20,000원, 식비 20,000원, 교통비 실비지급
 - ※ 근무지 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 특별자치도는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왕복)가 12km미만인 출장을 의미함. 출장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함
 - ※ 근무지 내 출장 시에는 교통비 별도 지급하지 않음
 - ※ 근무지 외 출장에 개인 차량 이용 시에도 실비 지급 가능

- 이밖에 업무 차량유지비(유류비, 차량보험료 및 수선비, 자동차세·환경부담금 등),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업무와 관련한 홍보에 필요한 경비(홍보물 제작 및 배포, 광고비 등)로도 집행 가능
- 상담지원인력(1명)의 인건비(연간 24,990천원) 추가 지원함
 - 기본급,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기본급이 2019년 기준 최저임금액(8,350원×209시간=1,745,15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마. 후원금품의 관리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발급(의료·사회복지·종교·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통해 후원금 또는 지정기탁금을 수령한 경우 포함)
 - ※ 금융기관 등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발급 가능
 - ※ 후원금 전용계좌는 시설 명칭이 부기된 시설 고유의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두어야 함
- 후원자가 후원금품의 용도를 지정했을 경우 지정 용도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후원자(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통보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 참조)
- 상담소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제출 후 20일 이내에 상담소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함(단, 후원자 성명은 비공개)

7 그 밖에 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관리규정 제정 및 장부의 비치(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1)

○ 관리규정 제정

- 상담소의 장은 상담소의 운영방침, 직원의 업무분장, 상담소 이용자의 대응요령, 상담소의 이용수칙, 그 밖에 상담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상담소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

○ 장부의 비치

구분	관리에 관한 장부	사업에 관한 장부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장부 종류	- 상담소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직원 관계철(인사기록카드, 이력서, 사진 등) - 회의록 관계철 - 소속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 및 관계 결의 기록 -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행정 기관과의 문서철) - 문서 접수·발송대장 - 종사자 근무상황부, 출장 대장, 교육대장 등 각종 대장	- 상담소의 이용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지원 기록 등) -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 상담원 교육관계서류 - 기타 운영실적 등	- 총계정원장 - 수입 및 지출보조부 - 금전출납부 및 증빙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비품수불대장 - 비품관리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각종 증빙서류

○ 상담소 신고증 게재

- 시설 이용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신고 시설임을 알릴 수 있도록 시설 내에 신고증 게재

○ 각종 기록 등의 보존 및 관리

- 상담내용은 반드시 상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
- 상담관련 자료는 10년 이상 보관
 -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전연령 대상 강간 살인죄 등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담관련 자료 폐기에 신중하여야 함
 - 단, 피해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피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자료 폐기 가능
- 상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목적용 외에 수집 또는 제공할 수 없음

나. 업무의 전자화(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정책에 협력하여야 함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호시설의 장은 사회복지통합 관리망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지급·정산 등 회계 업무, 종사자 인사업무, 통계관리업무 등 가능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여야 함

다.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목적 : 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시설운영 위원회를 설치·운영
- 구성 :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단, 각 부분별 인원은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의 장
 -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기능 : 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 심의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임기 및 운영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운영
 - 운영위원회 운영일지를 작성·보관

다. 현장점검 및 감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 등은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일지 등을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불가피하게 상담일지 제출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 입소자대장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범죄피해자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이 상담소 운영실태, 이용자 및 운영비 집행상황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담소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시설의 안전점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 보험 가입
 -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함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가 가해자 등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는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 자체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시설장은 소관시설에 대하여 매 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시안전점검: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에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안전점검기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
 -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지자체 안전점검

- 시·도 및 시·군·구는 하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여성가족부에서 통보하는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대상 교육훈련, 안전점검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
-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 상태, 보험가입 여부, 시설거주자 건강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며, 취약시기의 특성에 따라 급식시설 위생상태,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 추가 점검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별도 신청 및 직권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4)
 - ※ 주요 점검내용: 시설물 기초지반 침하 및 벽면 균열 발생 여부, 시설물 주변 석축·옹벽, 비탈면의 결함 발생여부 등
- 지자체에서는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보수 등이 시급히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능보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시설 사고 예방 및 조치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자,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
- 소화시설·장비는 소방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종사자가 수시로 확인·점검
- 시설장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평상시 종사자들에게 사고예방의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도록 지도하여 사고발생 예방
-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당해 지자체(시·군·구 → 시·도에 보고)는 여성가족부에 지체 없이 보고 [서식 4]

8 보고사항

가. 보고사항

○ 정산 및 운영실적 보고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각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운영실적 등 관련 통계자료를 지정서식에 의거하여 상반기 실적 및 정산내역은 2019년 7월 20일까지, 연간 운영실적 및 정산내역은 2020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 상담소 신고 내역 등 보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변경, 휴업·폐업·운영재개 신고사항 등을 수리 후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 보고

○ 안전점검 결과 및 시설 사고 발생 시 보고

- 시·도 및 시·군·구는 하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여성가족부에서 통보하는 안전 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대상 교육훈련, 안전점검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
-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당해 지자체(시·군·구 → 시·도에 보고)는 여성가족부에 지체 없이 보고 [서식 4]

○ 현장점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 현장점검 및 입소자 만족도 조사 시기·방법, 결과보고 일정 등 상세 내용은 추후 통보

나. 협조사항

- 학교 밖 청소년 발견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협조
 - 입소자와의 초기 상담과정 등에서 해당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정보 연계

연계 절차

- ①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안내
-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음
- ③ 주소지 또는 시설소재지 시·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공문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를 통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센터) 연계 시 필요사항
 - 연계방법 : 상담소에서는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촬영물 원본 및 다운로드 받은 유포물, 게시물 URL 및 캡처본, 게시물 제목, 검색키워드 등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확인하고, 연계의뢰서[서식 4]와 함께 제출
 - 유의사항
 -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촬영물만 삭제 가능(라인,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유포된 피해촬영물은 삭제 불가)
 - 피해당사자의 촬영물만 삭제 가능
 - 센터에서는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로 삭제하므로, 삭제 지원을 요청하는 피해자(미성년자 포함)는 센터 연계 후 삭제신청서류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을 안내
- ※ 미성년자의 경우, 센터 연계 후 삭제 지원 신청 시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란

- 주요 업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
- 상담 신청 및 방법
 - 상담신청 :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 또는 전화(02-735-8994)
 - 상담시간 : 전화 상담은 평일 10:00~17:00 / 온라인 게시판 상담신청은 상시 이용 가능
- 삭제절차 : 초기 상담을 통해 삭제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유포물 자료와 삭제신청서류 수령, 각 플랫폼(웹하드, 성인사이트, SNS, P2P,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등)별로 유포 피해를 검색하여 삭제 작업 진행, 3~6개월간 집중삭제지원 기간을 거쳐 모니터링 기간으로 전환(집중삭제지원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매월 1회 삭제지원 보고서 발송)

Ⅱ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Ⅱ-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 보호시설 개요

가. 설치현황

(2019년 1월 인가시설 수 기준 / 개소)

구 분	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 체	31	2	2	1	1	2	2	1	-	5	1	2	1	2	2	2	2	2
일반	16	2	1	1	1	1	-	1	-	3	1	1		2	1	-	-	1
장애인	8	-	1	-	-	1	1	-	-	1	-	1	1	-	1		-	1
특별지원	4	-	-	-	-	-	1	-	-	1	-	-	-	-	-	1	1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3	-	-		-	-	-	-	-	-	-	1	-	-	-	1	1	-

※ 31개소 모두 국비 지원 / ()는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나. 법적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상담소의 설치·운영 및 종류)

다. 보호시설의 업무(법률 제13조) 및 보호 내용

-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의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지원 요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 그 밖에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직업훈련비 지원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보호
 - 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지원(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 등)
 -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초등학교) 취학 요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하고,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그 밖의 각급학교)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취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
 - 이 경우 그 지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전학·편입학을 승낙하여야 함

- 관계기관은 시설입소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학교장에게 전·입학 요청
 - ※ 상담소,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연계망 구축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라. 보호시설의 유형(법률 제12조)

종류	기능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보호,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제공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 피해자에게 보호,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제공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 미만의 친족성폭력피해자에게 보호,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제공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자립자활교육, 취업정보 등 제공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자립자활교육, 취업정보 등 제공

2 보호시설 설치기준

가. 설치·운영 주체(법률 제1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시설기준(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2)

- 입지조건 : 시설의 적정한 분포,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

※ 보호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로 분류됨

- 보호시설 종류별 시설 규모

시설의 종류	정원 규모별 연면적			
	7인 이하	8인 이상 10인 이하	11인 이상 15인 이하	16인 이상 20인 이하
일반보호시설	-	99㎡ 이상	165㎡ 이상	198㎡ 이상
장애인보호시설	-	132㎡ 이상	198㎡ 이상	264㎡ 이상
특별지원 보호시설	-	132㎡ 이상	198㎡ 이상	264㎡ 이상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70㎡ 이상	99㎡ 이상	165㎡ 이상	198㎡ 이상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03㎡ 이상	132㎡ 이상	198㎡ 이상	264㎡ 이상

※ 보호시설의 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수용 가능. 이 경우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구조 및 설비

- 침실 및 거실은 적당한 난방, 통풍 및 일조량을 갖춰야 함
-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을 향하도록 함.
-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 장애인보호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함

3 보호시설 설치 인가 등

가. 설치·변경 인가 및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신청서류

구 분	신 청 서 류
설치인가	- 인가신청서: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지침 [서식5] - 첨부 서류 • 법인의 정관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 •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보호시설 장의 자격증명 서류 • 보호시설 종사자 명단 및 자격증명 서류 •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변경인가	- 변경인가신청서: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6호서식], 지침 [서식6] - 첨부 서류 •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고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보호시설 장의 자격증명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보호시설 인가증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서: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8호서식], 지침 [서식3] - 첨부 서류(폐지 또는 휴지 시에만 해당) •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 • 보호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제외) •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 보호시설 종사자 인사기록카드(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 조치계획서

나. 보호시설 설치인가(시행규칙 제5조)

- 인가 신청 자격 :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 인가 절차
 - 인가신청서 제출 : 신청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심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수, 종사자 자격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정 구비서류 외에 설치인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나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특히 시설장의 요건) 및 건축법,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하여 주무부서와의 협조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인가 여부 결정
 - ※ 보호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로 분류됨
 - 인가증 교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인
 - ※ 인가증 서식은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 참조

다. 보호시설 변경인가(시행규칙 제5조)

- 사유(변경인가 신청 대상)
 - 보호시설의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 보호시설의 장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
- 변경인가 절차
 - 변경인가신청서류 제출 : 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사항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소재지 및 입소정원 변경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 등본 확인
 - 보호시설 인가증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교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법인

라. 보호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시행규칙 제10조)

- 보호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휴지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함)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신고 및 수리 절차
 -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서류 제출 : 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폐지·휴지 신고 시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 후 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참고)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15.2.3.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보호시설에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음
- 상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별표5의 가항에 따라 보호시설 인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보호시설이 폐쇄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 관계서류 일체를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송하여 보존 조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시설 설치인가 또는 시설 종류의 변경, 입소정원 변경 시 운영비 등 예산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와 사전 협의

4 보호시설 인력 및 복무

가. 종사자 배치기준(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2)

시설의 종류		보호시설 정원			
		7인 이하	8인 이상 10인 이하	11인 이상 15인 이하	16인 이상 20인 이하
일반 보호시설	시설장		1	1	1
	상담원		2	2	2
	보조원		1	1	2
	총 계		4	4	5
장애인 보호시설	시설장		1	1	1
	상담원		3	3	3
	보조원		1	2	3
	총 계		5	6	7
특별지원 보호시설	시설장			1	1
	상담원			4	4
	보조원			2	2
	총 계			7	7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시설장	1	1	1	1
	상담원	1	1	1	2
	보조원	-	1	1	1
	총 계	2	3	3	4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시설장	1	1	1	1
	상담원	1	3	3	3
	보조원	1	1	2	3
	총 계	3	5	6	7

※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다만, 일반·장애인·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장은 소속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음

※ 특별지원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자립지원 전문상담원 1인을 상담원으로 배치하여야 함

※ 주거지원시설을 운영하는 보호시설은 자립상담원 1인 정원으로 추가

나. 종사자 자격기준(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보호시설의 장과 상담원의 자격기준 및 종사자 결격사유는 상담소와 동일함

☞ “1. 성폭력피해상담소 - 4. 상담소 인력 및 복무 - 나. 종사자 자격기준” 참조

상담원 자격요건의 예외(수습직원)

-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 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다. 운영시간 및 종사자 복무

- 24시간 체제로 365일 무휴 운영함
- 시설기준의 종사자 수에 포함된 시설의 장, 상담원 및 보조원은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근무시간 중 대학출장 등 타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는 겸직으로 보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의 장은 상담소의 종사자 중 겸직자가 있는지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겸직일 경우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상근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법인의 대표자(이사장 포함)가 시설장을 겸할 수 없음
 - 다만,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또는 특별지원보호시설의 장은 소속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또는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음
- 학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예방교육,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 상담 등 보호시설 고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출장은 가능함
 - 이 경우 반드시 관련자료(근무상황부, 출장대장, 교육대장, 상담일지 등)를 비치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함
 - ※ 근무상황부, 출장대장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인사현황자료(출장현황, 휴가현황, 교육현황 등)으로 대체 가능함
 - 잦은 출장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 업무 분담, 교육비 활용 기준 등에 관하여 형평성 있는 보호시설 자체 규정을 구비하여야 함
 - ※ 보호시설 종사자가 외출, 조퇴 등 이석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비치

라. 종사자 채용 및 임면보고 등

- 설립주체에 따른 종사자 임면권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기관의 장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시설의 장
 - ※ 종사자 임면권자는 법인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종사자 채용
 -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 시 임금·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함
 - ※ 종사자는 교육훈련과정(100시간) 이수뿐만 아니라 시행령 상의 개별 기준도 갖추어야 하므로 채용 시 수료증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필히 확인함
 - 종사자 결원 시 1월 이내에 신규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함

(참고) 종사자 결격조치 관련 시스템 활용

- (국가 및 지자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조회
- (국가·지자체 외)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통한 조회
- ※ 결격조치와 관련된 관련법령을 명확하게 등록하여야 함

- 종사자 임면보고
 -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권자는 종사자 채용 시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보호시설의 장은 국비(지방비 포함)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종사자 채용 시 관련시스템에 따라 종사자 임면보고(사유 : 종사자 경력인정여부의 증명서류 제출 시 증빙자료로 활용)
- 종사자의 대체 인력 지원
 - 보호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은 상담원 등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무료법률 지원 사업 활용 가능
 - 보호시설 종사자가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역고소 등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음

5 보호시설 입소자 관리

가. 입소 관리

○ 입소 대상자(법률 제12조, 제15조)

시설 종류	입소대상자
공통기준	- 성폭력피해자로서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필요)
일반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성폭력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 만 19세 미만의 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친족성폭력피해자 ※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함(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 ※ 특별히 피해자 보호자가 동행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숙식 및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가능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성폭력피해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5.1.)에 따라 외국인보호시설 근거 규정 마련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일반·장애인·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장애인보호시설 퇴소자

○ 입소 보고(법률 제15조 제2항) 및 입소 승인(법률 제15조 제3항)

- 입소보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의 현황을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입소승인: 친족성폭력피해자, 지적장애인 등을 보호자의 입소 동의 없이 입소시킨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입소 기간 및 연장(법률 제16조, 시행령 제5조의2, 시행규칙 제7조의2)

유 형	입소 기간		
	원 칙	연 장	
		기 간 (원칙기간 도과 후 추가 기간)	대 상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1년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1회당 2년 이내)	입소자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심리 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지원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18세까지)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입소자가 초·중·고·대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각종 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입학확정자 포함)
외국인 보호시설	1년 이내	1년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입소자가 취업 및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이수중인 경우
【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 특례】 - 일반보호시설 입소자 중 아래의 <특별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기 연장기간 도과 후에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함 ①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③ 여성가족부장관이 피해자의 보호필요성, 생활환경,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보호시설 입소기간 추가 연장】 - 외국인보호시설 입소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상기 연장기간 도과 후에도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2년의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이 가능함 • 피해자의 보호필요성, 생활환경,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소 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소기간 연장 방법】 -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장기간 및 사유 보고 - 단, 장애인 보호시설 입소자가 2회 이상 연장 시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의 정도 또는 피해자의 입소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승인 필요			

나. 퇴소관리(법률 제17조)

-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음
- 보호시설의장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퇴소를 명할 수 있음
 - 보호목적의 달성 또는 입소기간 만료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자
 - 타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자해, 폭력 등). 이 경우, 독단적으로 결정하여서는 안 되며, 시·군·구와 협의한 후 퇴소토록 조치함.
- ※ 장애인 입소자가 보호기간 만료로 퇴소 시 계속적인 시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시설장은 해당 시·군·구에 장애인시설로의 연계를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시·군·구 보호시설담당 공무원은 장애인시설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장애인시설로 입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다. 성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신청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4]에 의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① 지원대상

-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가해자 제외)
 - ※ 친족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름
-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 아동·청소년의 범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② 지원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성폭력피해자(친족, 아동·청소년)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 1년) 입소한 피해자. 다만 퇴소하였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다만 퇴거하였을 경우 그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우선 공급대상 임대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다음 중 어느 하나)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개월(특별지원보호시설의 경우 1년) 이상 입소 확인서
 -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 증거서류 신청·발급 절차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 (피해자)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식 8]
- (시·군·구청장) 보호시설 또는 주거지원시설에 발급신청서 내용 확인 요청
- (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발급신청서 내용 확인 후 시·군·구청장에 제출:[서식 9]
- (시·군·구청장) 신청자(피해자)에게 확인서 발급:[서식 10]

- (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시 피해자가 입소·입주한 사실이 있는 보호시설 등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장에 신청서[서식 8]를 작성하여 신청
- (시·군·구청장)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해당 보호시설 등에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 또는 확인 요청
- (보호시설 등) 시·군·구청장의 확인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확인서[서식 9]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청장) 보호시설 등의 확인서 내용을 관련 보고서류 등과 확인하여 최종 검토 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입소 확인서」[서식 10]를 피해자에게 발급

보호시설 퇴소사유 기재요령(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1. 피해자 본인 의사 또는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
2.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3.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4.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5.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등

주거지원시설 퇴거사유 기재요령: 다음 중 어느 하나로 기재

1. 입주 목적이 달성된 경우(사회복귀, 자립 등)
2.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4. 그 밖에 관리비 체납 등 입주자 준수사항 위반 등

※ 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의 장은 반드시 국민임대주택 관련 서류를 「시설 입소 확인서 발급 대장」을 만들어 관리

라. 협조사항

- 학교 밖 청소년 발견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협조
 - 입소자와의 초기 상담과정 등에서 해당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정보 연계

연계 절차

- ①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안내
-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음
- ③ 주소지 또는 시설소재지 시·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공문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를 통보

[참고자료]

친족 성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신청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 열람·발급 제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친족 성폭력피해자로서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성폭력 피해 상담을 한 사실이 있거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친족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 등)한 경우
 - 열람·발급 제한신청 방법(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의2, 시행규칙 제13조의2)
 - 친족 성폭력피해자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및 증거서류를 제출
- ※ 피해자는 열람·발급을 제한신청 후 같은 방법으로 해제신청도 할 수 있음

열람·발급 제한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택일,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3조의2)

-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별지 [서식 2])
- ※ 위 두 가지 증거서류의 경우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친족성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 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친족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직권 등록사항 말소 등 제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에 있어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에 입소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함

정신질환자의 입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50조)

- (자의 또는 동의 입원) 입소 이후 정신병리적 특성이 발견되어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입원 조치할 수 있음.
- (특별자치시장 등에 의한 입원)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나, 자의 또는 보호자에 의한 입원이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요원을 통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
-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음

6 행정처분

가. 행정처분의 요건(법률 제23조)

-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법 제22조)

-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상담원 등이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나. 행정처분의 주체(법률 제23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행정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11조 [별표 5])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상담소·보호시설을 양도·상속하거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지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업무의 폐지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보호시설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보호시설의 입소자를 전원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보호시설이 없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나.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상담소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라. 추가 조치사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업무가 폐지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11조의2)
 - 이용자가 다른 상담소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 조치
 -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 법 제23조에 따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 명령이나 인가취소를 받고도 상담소 등을 계속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의 폐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 ※ 「행정절차법」 상 처분 및 청문 절차 참조
 - ※ 그 외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참조

〈참고〉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 2])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제2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8조제2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8조제2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마. 법 제33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제2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7 재무회계 관리 및 2019년 국고보조금 지원 내역

가. 재무회계 원칙

- 보호시설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재무회계 관리는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 법령 준용(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참고)
- 보호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 후 집행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는 5년 이상 보존

나. 국비 지원 보호시설 선정

- 여성가족부는 국비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시·도가 신청한 국비지원 대상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심사·선정할 수 있음
 - ※ 국비지원 대상 선정 시 운영주체(법인 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여부 확인 필요

다. 2019년 보조금 지원 단가(국비+지방비)

(단위 : 천원)

구분	일반(인원수)		장애인(인원수)		특별 지원	장애인 자립 지원	자립 지원
	비위탁	위탁	비위탁	위탁			
인건비 및 운영비	(10인) 134,835 (15인) 137,735	167,235	187,835	217,035	238,416	195,555	92,674
교통비 추가 지원			15,500	15,500			
사업비 1	(10인) 20,000 (15인) 22,000	22,000	28,000	28,000	33,400	22,800	16,600
사업비 2 (비수급자 생계비 등)	‘세부내역’ 참조						
총계 (비수급자 생계비 등 제외)	(10인) 154,835 (15인) 159,735	189,235	231,335	260,535	271,816	218,355	109,274

※ 금액은 국비,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국고보조율은 서울 50%, 그 외 지역은 70%임. 단 비수급자 생계비·교육비·퇴소자립지원금은 국고보조율 100%임

※ 신규 추가 지원인력(30명)의 인건비는 채용기간을 고려하여 9개월분 인건비만 반영

〈사업비 세부내역〉

(1) 사업비 1 세부내역(국고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단위: 천원)

구분	용도	일반	장애인	특별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자립 지원
생활지원비	입소자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	(10인) 13,400 (15인) 15,400	19,200	25,200	20,600	14,400
학습지원비	학습·학원비, 방과후 학습비, 교통비 등					
의료· 법률지원 부대비용	건강검진비, 교통비, 감기 등 가벼운 치료소요비용,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증거수집 등 소송관련 비용					
프로그램비	치료회복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비용	4,400	6,600	6,000		
직업훈련비	직업훈련비	2,200	2,200	2,200	2,200	2,200
합계		(10인) 20,000 (15인) 22,000	28,000	33,400	22,800	16,600

(2) 사업비 2 세부내역 (국고보조율: 100%)

구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횟수	지급방법
생계비	비수급자	252,812원	12회 (월 1회)	시설 지원
교육비 (교복 등 학습지원)	비수급자	250,000원	2회 (반기별 1회)	시설 지원
퇴소자립지원금	퇴소자	5,000,000원	1회	퇴소자 지원

라. 보조금 집행 기준

1) 인건비 및 운영비

- 상기 인건비 및 운영비 총액은 보호시설 1개소 당 최소 지원 금액으로 임의로 지급 단가를 감액 조정하여 지원할 수 없음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국비지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 책정을 할 수 있음(상담원은 생활복지사 수준 적용)

- 인건비는 사업비를 제외한 보호시설 지원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19년 시설당(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제외) 1명의 인건비를 추가 지원함. 단 채용기간을 고려하여 9개월분의 인건비만 반영됨
- 인건비는 기본급,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함
- 보조원을 포함한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은 2019년 기준 최저임금액(8,350원×209시간 = 1,745,15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적립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운영비로 사용 가능(여타 종사자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
-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은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준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환: 시설장 65세 (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종사자 60세

특례: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 ①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복지넷, 워크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2곳 이상에 15일 이상 공개모집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해당 종사자의 근로계약을 연장 하고자 한다면 그 근로계약의 완료 전에 위의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 반드시 실시 할 것
- ②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내에서 청년 인력(만29세 이하)을 채용하는 경우
 - 신규 채용 및 인력 운용 계획을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이사회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 위의 계획에는 60세 초과 종사자 및 신규 채용 인력 2인의 인건비를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100% 내에서 지급하되, 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청년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 적용
 - ※ ①, ②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6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

-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내부강사 명목으로 입금된 자체 운영비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 종사자 상해보험료(1인당 보험료 연 5만원 이내)
- 수용비(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협회비 등),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가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통신시설 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등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보호시설과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겸직하는
시설장의 직책보조비)
 - ※ 단, 직책보조비는 1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숙직비(1일 1인 1만원,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등
- 종사자의 숙직, 연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활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활용 가능. 단, 대체인력이 성폭력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
-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비 내에서 슈퍼비전 또는 종사자 소진
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치료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연간 1인당 20만원 범위 내)
 - ※ 지원 가능 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심리치료, 힐링
프로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은 참여지원 가능(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 단 여행·영화관람도 소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화한 경우 가능))
- 장애인 보호시설의 경우, 장애인 방문상담, 학교 방문 등 보호시설 업무에 소요되는
교통비(연 15,500천원)를 별도 지원하며, 아래와 같이 집행 가능함
- 방문상담 등 장애인 보호시설 업무에 소요되는 출장비(일비 및 교통비) 지급
 - 근무지 내: 일비 4시간 이하 10,000원, 4시간 초과 20,000원
 - 근무지 외: 일비 20,000원, 식비 20,000원, 교통비 실비지급
 - ※ 근무지 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
특별자치도는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왕복)가 12km미만인 출장을
의미함. 출장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의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함
 - ※ 근무지 내 출장 시에는 교통비 별도 지급하지 않음
 - ※ 근무지 외 출장에 개인 차량 이용 시에도 실비 지급 가능
- 이밖에 업무 차량유지비(유류비, 차량보험료 및 수선비, 자동차세·환경부담금 등),
운전기사 인건비, 성폭력 방지를 위한 홍보에 필요한 경비(홍보물 제작 및 배포,
광고비 등)로도 집행 가능

2) 사업비

○ 생활지원비, 프로그램비, 직업훈련비 등

- 생활지원·학습지원·의료·법률지원부대비용, 프로그램비 및 직업훈련비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위: 천원)

구분	용 도	일반	장애인	특별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자립 지원
생활지원비	입소자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	(10인)12,500 (15인)15,000	17,000	20,000	18,500	13,000
학습지원비	학습·학원비, 방과후 학습비, 교통비 등					
의료· 법률지원 부대비용	건강검진비, 교통비, 감기 등 가벼운 치료소요비용,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증거수집 등 소송관련 비용					
프로그램비	치료회복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비용	4,000	6,000	5,500		
직업훈련비	직업훈련비	2,000	2,000	2,000	2,000	2,000
합 계		(10인)18,500 (15인)21,000	25,000	27,500	20,500	15,000

- 단,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소자의 특성 등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 가능함
 - 생활지원비, 학습지원비, 의료·법률지원 부대비용은 시설 입소자의 특성에 맞게 적정히 배분해서 사용
 - 프로그램비와 직업훈련비는 시설 입소자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 가능
 - 아동·청소년 입소자 많은 등의 입소자의 특성으로 인해, 학습지원비, 의료·법률지원 부대비용 등이 부족할 경우, 프로그램비와 직업훈련비지원액 합계의 15% 범위 내에서 생활지원비·학습지원비·의료법률지원 부대비용으로 사용 가능
- 직업훈련비는 국공립 직업훈련기관, 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모든 외부 훈련기관 포함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피부미용, 요리, 미용, 디자인, 컴퓨터 관련 실질적 취업 창업이 가능한 직업교육 및 진학교육비를 우선 지원함. (출석률 80% 이상 일 경우만 집행함. 시설이 교육 기관에 입금하되, 교육기관이 발행한 수강료 청구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리)
 - ※ 입소자가 자립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제도(내일배움카드제)를 이용할 경우,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서식 2)를 고용노동센터에 제출할 경우 자부담분 면제(고용노동부 협의, '13년~)

○ 비수급자(입소자) 생계비 및 교육비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횟수	지급방법
생 계 비	비수급자	252,812원	12회(월 1회)	시설 지원
교 육 비 (교복 등 학습지원)	비수급자	250,000원	2회 (반기별 1회)	시설 지원

- 생계비: 입소자 중 비수급자로 확인된 경우 입소일부터 소급하여 지급가능
- 교육비: 입소자 중 비수급자로 확인된 경우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지급하되, 소급 지급 가능(교복, 교과서대, 부교재, 학용품 등에 사용)
- ※ 보장시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및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지원

○ 퇴소자립지원금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횟수	지급방법
퇴소자립지원금	퇴소자	5,000,000원	1회	퇴소 시점 전후 2개월 내에 지원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보호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만 19세 이상 도달한 자(단, 취업 또는 대학 입학 등으로 인해 조기 퇴소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인 자도 지급 가능)가 퇴소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수급자 또는 비수급자 구분 없이 지급
- ※ ‘입소 후 1년 이상 기간’은 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의 입소기간에 한함
- ※ 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로 입소할 경우에는 퇴소 자립지원금을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퇴소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인당 1회 지원이므로, 지자체는 해당자가 이전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당시 퇴소자립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지급해야 함
- ※ 퇴소자립지원금은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준비 등을 위해 퇴소 시점을 전후로 2개월 내에 지원 가능함. 다만,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함. 예를 들어 '19.11.1.이 퇴소일인 경우 이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내인 '19.9.1.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20.1.1.은 회계연도가 초과하므로 지원 불가 하며 '19.12월까지 지원을 완료해야 함

마. 지자체 집행 시 유의사항

- 지자체는 보호시설당 책정된 예산을 월별 적정 배정하여야 하며, 매월 초 지급 원칙
- 지자체 직영 보호시설의 경우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배정
- 상반기 집행실적과 하반기 예산전망을 고려하여,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비수급자 생계비 등' 기초 지자체 또는 보호시설 간 배정액 적시 조정

바. 후원금품의 관리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발급(의료·사회복지·종교·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통해 후원금 또는 지정기탁금을 수령한 경우 포함)
 - ※ 금융기관 등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발급 가능
 - ※ 후원금 전용계좌는 시설 고유의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두어야 함
- 후원자가 후원금품의 용도를 지정했을 경우 지정 용도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후원자(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통보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 참조)
- 보호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 시 인터넷 공개 생략 가능)
- 같은 기간 동안 보호시설의 장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단, 후원자 성명은 비공개하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 시 인터넷 공개 생략 가능)

8 그 밖에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관리규정 제정 및 장부의 비치

○ 관리규정 제정(시행규칙 [별표 2])

-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방침, 직원의 업무분장, 입소요령, 이용수칙, 입소자에 대한 소방·재난·보건 등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해야 함

○ 장부의 비치(시행규칙 [별표 2])

구분	관리에 관한 장부	사업에 관한 장부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장부종류	- 보호시설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직원관계철(인사기록카드, 이력서, 사진 등) - 회의록관계철 - 소속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 및 관계결의 기록 -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행정 기관과의 문서철) - 문서 접수·발송대장 - 종사자 근무상황부, 출장대장, 교육대장 등 각종 대장 - 시설안전교육일지, 시설안전 점검일지, 시설안전 사고보고서, 차량운행일지 등	- 입소자 관계서류(신상조서서, 입소확인서, 입소자·퇴소자 명단, 지원기록 등) -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 (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 관련 서류) - 종사자 교육·훈련 관계 서류 - 운영실적 관련자료 등 • 의료비지원관련 서류 • 법률지원관련 서류 • 학업지원관련 서류 • 기타 보호시설 사업에 관한 자료 등	- 총계정원장 - 수입 및 지출보조부 - 금전출납부 및 증빙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비품수불대장 - 비품관리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후원금수입 및 사용내역서 - 정부보조금명세서 - 사업비명세서, 사무비 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 각종 증빙서류

※ 기타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된 각종 서식 및 자료는 별도로 비치 활용

○ 각종 기록 등의 보존 및 관리

- 입소자와 관련된 상담내용은 반드시 상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
- 입소자 상담 관련 자료는 10년 이상 보관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전 연령 대상 강간 살인죄 등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담관련 자료 폐기에 신중하여야 함. 단, 피해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피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자료 폐기 가능

나. 보호시설 정보 비공개

- 시설장은 시설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는 사례(종사자 채용공고, 법인홈페이지 등)가 없도록 주의
- 특별지원 보호시설 홍보 및 안내 시, 보호시설명만으로도 입소 피해자의 피해 유형(친족성폭력에 의한 피해자)이 유추가능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청소년 보호 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내
 - 다만, 개별 안내 시에는 입소 가능 대상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도록 함

다. 업무의 전자화(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함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호시설의 장은 사회복지통합 관리망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지급·정산 등 회계 업무, 종사자 인사업무, 통계관리업무 등 가능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여야 함

라.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목적: 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시설운영 위원회를 설치·운영
- 구성: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단, 각 부분별 인원은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의 장
 -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기능: 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 심의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임기 및 운영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운영
 - 운영위원회 운영일지를 작성·보관

마. 현장점검 및 감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 등은 보호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입소자대장 등을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하게 입소자대장 제출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 입소자대장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범죄피해자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호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이 보호시설 운영실태, 입소자 및 운영비 집행상황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시설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시설의 안전점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 보험 가입

-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함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가 가해자 등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는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 자체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시설장은 소관시설에 대하여 매 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시안전점검: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에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안전점검기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 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
 -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지자체 안전점검

- 시·도 및 시·군·구는 하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여성가족부에서 통보하는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대상 교육훈련, 안전점검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
-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 상태, 보험가입 여부, 시설거주자 건강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며, 취약시기의 특성에 따라 급식시설 위생상태,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 추가 점검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별도 신청 및 직권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4)
 - ※ 주요 점검내용: 시설물 기초지반 침하 및 벽면 균열 발생 여부, 시설물 주변 석축·옹벽, 비탈면의 결함 발생여부 등
 - 지자체에서는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보수 등이 시급히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능보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사. 시설 사고 예방 및 조치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 소화시설·장비는 소방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종사자가 수시로 확인·점검
- 시설장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평상시 종사자들에게 사고예방의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도록 지도하여 사고발생 예방
 - 주간 및 야간근무자 지정 및 근무 철저
 -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해빙기 안전점검 철저(보일러·가스·전기 등)
 - ※ 가스경보기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 미연에 방지
 - 화재대피 훈련 등 방재훈련을 시설별로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
 -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보고, 의료조치, 초기대응(화재진화 등), 외부연락 등에 대한 종사자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종사자들이 유사 시 자신의 임무를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설장은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고에 빠른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당해 지자체(시·군·구 → 시·도에 보고)는 여성가족부에 지체 없이 보고 [서식 1]

9 보고사항

가. 정산 및 운영실적 보고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각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등 관련 통계자료를 지정서식에 의거하여 상반기 실적 및 정산내역은 2019년 7월 20일까지, 연간 운영실적 및 정산내역은 2020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나. 보호시설 인가 내역 등 보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변경 인가, 휴업·폐업·운영재개 신고사항 등을 인가 또는 수리 후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 보고

다. 안전점검 결과 및 시설 사고 발생 시 보고

- 시·도 및 시·군·구는 하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여성가족부에서 통보하는 안전 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대상 교육훈련, 안전점검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
-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당해 지자체(시·군·구 → 시·도에 보고)는 여성가족부에 지체 없이 보고 [서식 1]

라. 현장점검 및 입소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 현장점검 및 입소자 만족도 조사 시기·방법, 결과보고 일정 등 상세 내용은 추후 통보

마. 예산지원 가능 여부 사전 협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시설 설치인가 또는 시설 종류의 변경, 입소정원 변경 시 운영비 등 예산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와 사전 협의

1 사업 개요

가. 목적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비,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입소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 제공

나. 지원내용 및 대상

구 분	정 의	지원대상	주요 참고사항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일 경우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확인 후 예산교부 신청
증·개축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임차시설 제외 ▶ 비영리법인일 경우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확인 후 예산교부 신청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임차시설 제외 ▶ 비영리법인일 경우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확인 후 예산교부 신청
개·보수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 및 기능 향상 등을 위해 시설 건물의 내·외부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임차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 하되, 필요시 예외 인정 * 예외: 방염설비 및 개·보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안전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안전진단서 등 첨부)와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 누수 등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에 보고한 후 개·보수비 지원

구 분	정 의	지원대상	주요 참고사항
장비(기자재) 구입	장비 또는 기자재를 확충 또는 교체하는 것	• 모든 보호시설	▶ 가구·비품 등 노후화 된 장비, 사무용품 교체비용 등
공통			▶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 중인 시설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 불가

다. 주요사항

- 보호시설 확충은 부지확보를 통한 시설 신축방안 이외에 건물 매입,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공동주택 내 보호시설 전환 등 다양한 확충방안 지속 추진
- 보호시설의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하여 개원 운영 중인 보호시설 현황을 사회복지통합 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행
- 시설 신축 등 기능보강사업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개별법 준수
- 시설 기능보강비는 상반기 중에 국고보조 및 착공이 이루어짐으로써 연내 개원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추진하되, 공사내역서, 설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
- 시설 신축 또는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기획 및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의 건축 설계 자문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2 지원 대상 및 내역 세부기준

2-1. 보호시설 확충

가. 신축

(1)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되는 비영리법인에 한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 ※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부지를 미 확보하였더라도 부지 소유주에 부지사용승낙서 등을 구비한 개인도 가능하나 대상자 확정 후 예산교부 신청 시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와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이 설립되어야 함
- 보호시설 미설치 지역 등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함
 - ※ 특히 장애인 보호시설은 기피시설임을 감안하여 장애인 보호시설을 적극 설치
- 최근 3년 이내에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지원하지 않음
 - ※ 특별한 사정 : 갑작스런 성폭력피해자의 수요 증가, 기존 장애인 보호시설 폐·휴지 등
- 기존 보호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하여 신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나, 정원을 증원시키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2) 지원규모

- 개소당 전용면적 : 264㎡까지 지원(입소정원 20명까지)
- 지원단가 기준 : 1,272천원/㎡(국비·지방비 포함)
 - ※ 토지구입비 및 설계용역비는 지원하지 않음
 - ※ 지원 단가는 시설입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고려사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입지조건 등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함
- 해당지역의 건축제한 여부, 부지의 재산권 행사 하차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검토하여 시설 신축에 따른 제반문제를 사전에 제거
 - ※ 특히 법인기본재산이 근저당 설정 등 부채가 있을 경우 신축비를 지원할 수 없음
- 시설의 입지조건, 용도별 법정규모, 입소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입소자의 보호에 적합하게 설계·건축되어야 하며, 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
 - ※ 보호시설의 설치지역이 입소자 또는 보호자 등이 통원이 어려운 지역이나 위험시설 인접 지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고지원에서 제외

보호시설 확충 등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 기존 보호시설의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 시·도 및 시·군·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신축, 증·개축 시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정비 조성사업에 보호시설 또는 보호시설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나. 리모델링

(1) 지원대상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비영리법인에 한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축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기존 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하여 보호시설을 신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기능보강비 지원 가능 (예 : 동사무소 등 리모델링)
-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취약계층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태로 공급하는 주택을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보호시설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리모델링비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기존 건물 매입(건물 감정평가액) 및 리모델링비 지원

(3) 지원규모

- 시설 유형별 지원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공사견적가 기준으로 지원
- 지원단가(국비·지방비 포함)
 - 기존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 1,272천원/m²
 - ※ 지원 단가는 시설입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한국토지공사 등이 취약계층 공동생활가정형태로 공급하는 주택 리모델링 : 70,000천원 / 개소
 - ※ 설계용역비는 지원하지 않음

(4) 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신축 이외에도 기존 건물 매입·리모델링하여 보호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
-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존 보호시설을 위탁형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기존시설 운영자 등과 적극 협의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함
- 위탁형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의 보호시설을 우선함
- 기존 공동주택 내 보호시설의 경우 위탁형으로 전환 후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공개 경쟁하지 않고 전환하기 전 그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개원 예정인 보호시설 기자재 또는 장비 구입비 지원 기준

- (1) 지원대상 : 2019년 중에 준공 가능하거나, 개원 예정인 보호시설
 - ※ 리모델링 또는 건물 매입 경우 사업비와 동시 신청 가능, 신축의 경우 착공한 경우에 지원 가능
- (2) 지원단가(국비, 지방비 포함)
 - 장애인·특별지원 보호시설 : 80,000천원 / 개소
 - 일반 보호시설 : 60,000천원 / 개소
 - 기존시설 이전에 따른 증·개축, 개·보수(리모델링 포함) 등 : 30,000천원 / 개소
- (3) 고려사항
 -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지자체 등을 구매하며, 차량구입비 및 시설 공사비로 사용 불가
 - ※ 다만, 차량구입비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별도 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원
 - 민간 건물 매입 또는 기존공동주택 보호시설의 경우 당초 사용하던 기자재 재사용 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되, 추가적으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 사업자 선정 절차

- 국고보조사업자 조사계획 시달(여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 조사 실시(시·군·구)
 - 사업자 신청 공고(2주 이상)
 - * 사업자 공고시 지자체 홈페이지, 보호시설협의회 등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고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 신청 접수(세부 사업계획서 3부 제출)
 - 보호시설 설치·운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드시 공개경쟁을 통하여 사업자 선정
 - * 기존 보호시설 운영 및 법인시설의 중복 지원 지양
 - * 시·군·구의 사업대상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부지 변경은 불가
 - * 선정 당시와 상황이 변경되는 것으로 상대비교에 의한 공개경쟁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대상자 선정 시 부지 등 사업추진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민원 소지 방지)
- 조사결과 보고(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 사업계획서, 현장확인 결과, 검토 의견 등 첨부
- 현장점검 실시 및 최종사업자 선정(여성가족부)
- 확정내시 → 국고보조금 교부
 - ※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별지로 첨부한다.
 - 성폭력피해자 현황 및 성폭력관련 상담실적 등
 - 기존 보호시설 및 관련 유사시설 설치현황
 - 운영계획(부지확보, 정원, 종사자 수 및 채용계획, 개원 예정일 등)
 - 건축설계도, 공사일정 및 비용 산출 내역
 - 시설장비 및 기자재 등 제반 설비 구입계획 및 산출내역
 - 총 재정소요 산출내역 및 조달계획
 - 법인재산 출연 계획(증빙서류 포함)
 - 국고 보조금 조건의 이행 여부
 - 기타 국고보조금교부에 필요한 서류

2-2. 보호시설 환경개선

가. 증·개축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기존 보호시설 중 증·개축이 필요한 시설. 단 임차시설은 제외
- 영세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장애인이 입소하여 있는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

(2) 지원내용

- 보호환경 개선 등 입소자에게 편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의 증·개축비를 지원(창고 증축 등은 제외)

(3) 지원규모 및 단가

- 개소당 99㎡까지 지원하며 증·개축 면적에 따라 지원
- 지원단가 기준 : 798천원/㎡
 - ※ 지원 단가는 시설입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토지구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4) 고려사항

- 증축의 경우 기존건물의 안전도 등을 면밀히 검토
- 개축의 경우 부분 개축을 지양하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전체적인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
- 지원대상시설 설치 연도, 지원횟수, 시설의 자체 환경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증·개축 대상시설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음
-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증축비 지원은 지양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음
 - ※ 특별한 사정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 이하 시설 등
- 시설 증·개축 시 입소자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규정 준수 여부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기준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
- 증·개축 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을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시설은 비공개)

나. 개·보수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기존 보호시설 중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단 임차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필요 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 예외: 방염설비 및 개보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안전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안전진단서 등 첨부)와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에 보고한 후 개·보수비 신청
- 특히 입소자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의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지원
-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가능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위탁형으로 전환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 가능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음
 - ※ 특별한 사정: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 이하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필요시 등
 - ※ 최근 3년 이내: 2016년 이후(포함) 지원시설
- 개·보수 대상시설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 시켜 선정할 수 있음
- 개보수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시설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시설은 비공개)

(2) 지원규모 및 단가

- 시설의 규모, 개·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실제 개·보수 금액을 지원하되 관계공무원 확인 후 결정
- 지원단가: 40,000천원 / 개소당(국비·지방비 포함)
 - ※ 지원 단가는 시설입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임차보증금 지원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기존 보호시설 중 노후화 및 안전성의 문제가 있고, 개·보수보다 이전이 효율적일 경우 지원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중·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시설에는 지원하지 않음
 - ※ 특별한 사정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 이하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필요시 등
 - ※ 최근 3년 이내 : 2016년 이후(포함) 지원시설

(2) 지원 조건

- 신규시설 설립에 대한 임차료 지원은 불가하며, 지원 가능한 임차형태는 다음 경우에 한정함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취약계층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태로 공급하는 주택
 - ② 공공기관·단체 소유의 유희공간 임대(이 경우 임차보증금이 ①의 유형과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더 낮아야 함)

(3) 고려사항

- 지원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함
-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임차료 지원액 중 국비로 지원된 금액은 국고로 반납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지원은 총 1회에 한함

라. 장비비 지원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기존 보호시설 중 장비비가 필요한 시설
- 장비 노후화 및 입소자 증가의 경우 우선 지원 가능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장애인이 입소하여 있는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 가능

(2) 지원단가 : 20,000천원 / 개소당(국비·지방비 포함)

※ 지원 단가는 장비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장비내용

○ 내용 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10만 원 이상인 물품

※ 안전용품(소화기, 가스누출탐지기, 화재탐지기 등), 급식용품(조리기구, 자외선 살균기 등), 사무용품(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등), 실내공기질 개선물품(공기청정기 등), 기타(손씻기 시설 등)

(4) 고려사항

○ 입소자의 안전과 급식개선을 위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 기존 보호시설에 지원한 장비비로 구입한 장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

3 사업수행

사업 흐름도

사업계획서 제출(전년도 4월) → 현지점검(전년도 8~9월) → 가내시 통보(전년도 10월)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전년도 12월) → 국고보조금 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집행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서식 11-1]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내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비를 일괄 작성하여 '19년 1월 10일까지 신청

※ 여성가족부는 확정 내시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지방비 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단기간에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시·도로 변경 내시할 수 있음

○ 보조사업계획(사업변경 포함)에 대한 사업자의 수행능력과 타당성·효율성 등을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시·도지사의 의견서[서식 11-2]를 반드시 첨부

○ 시설 신축 및 증·개축, 개·보수(리모델링 포함) 등은 사전에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무허가건물 여부와 건축가능 여부 및 건축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의 건축규모는 입소자 수(정원) 및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신청

- 시설 신축 및 증·개축, 개·보수(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서[서식 11-4]에는 시설 설치장소(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조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지사가 검토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다만, 시설의 건축허가기관이 다르거나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설계도서는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
 - ※ 경미한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검토의견서 생략 가능
- 시설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부지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시설기자재 보강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기자재명, 소요량, 사업비, 사용용도 및 기자재 보유현황 등을 포함시켜야 함

나. 교부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

사 업 별	제 출 서 류
공통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서식 11-1] ☐ 시·도지사의 의견서 : [서식 11-2] ☐ 기능보강사업 신청내역서(총괄표) : [서식 11-3]
시설신축·리모델링, 매입 및 증·개축비	☐ 보호시설 신축·리모델링·증개축 계획서 ① 시설 신축 - 보호시설 신축 계획서[서식 11-4], 사업자 조사표 [서식 11-5] - 기술직공무원 또는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의 설계검토 의견서 1부(시·도 보관) [서식 11-7] ② 기존건물 매입 - 보호시설 매입계획서[서식 11-4], 사업자 조사표 [서식 11-5]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사본 각 1부(건물, 토지분 매입가격 구분표시 된 것) - 리모델링 필요시 기술직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공사견적서 1부(시·도 보관)

사 업 별	제 출 서 류
시설신축· 리모델링, 매입 및 증·개축비	③ 공동주택 및 기존건물 리모델링 - 보호시설 리모델링 계획서[서식 11-4], 사업자 조사표[서식 11-5] -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공사견적서 1부(시·도 보관) ④ 증·개축 - 증개축 사업 계획서 [서식 11-11] - 기술직공무원 또는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자의 설계검토 의견서 1부(시·도 보관) [서식 11-7] ※ 설계도 등 기타 서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검토 후 각 1부씩 보관
기자재 구입비	□ 기자재 구입 계획서 [서식 11-10] ① 신축시 - 공사계약서 또는 감리원·공사감독관 공정확인서 - 공사현장 사진 1부 ② 리모델링 또는 건물 매입시 - 리모델링 또는 건물 매입 사업비 신청시 동시 신청 가능 (단, 기존 기자재를 매입할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사본 각 1부)
시설 개·보수비	○ 보호시설 개·보수 계획서 [서식 11-8]
장비비 지원	○ 보호시설 장비구입계획서 [서식 11-9]

다. 국고보조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사업변경)

-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 할 경우, 아래의 사항은 사전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서식 11-11]
 - 사업추진방법(예 : 신축 → 민간매입), 시설명, 소재지, 비용분담내용 등
 - 낙찰차액 활용사업
 - ※ 입찰결과 등에 따라 차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이 원칙이나, 관급자재비 변동·법정경비·
 안전시설물 설치·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등 시·도지사가 해당 시설과 관련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음
-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 지사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아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동일 시·군·구 내에서의 사업부지 변경
 - 공기연장,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 사업량의 변경

라. 기타

- 신·증축비를 지원받아 시설을 운영 중인 법인은 법인해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으로 설치된 건축물 등을 10년 이상 보조금의 목적사업 수행만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 선금 지급 등 계약에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4 사업 수행실적 보고 및 정산

- 사업 수행실적 보고 및 점검
 - 국고 보조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비 집행 및 사업 추진현황을 매분기별 다음달 10일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 여성가족부는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여 단기간 착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정산
 - 시설의 신축 사업후보자 및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지원대상 시설 선정 시 사업 계획서에 자부담 금액이 포함된 경우 사업완료 후 정산 시에는 당초 사업계획서의 비용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 처리

예시

- ① 보호시설 사업후보자 선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비용 분담 내역
 - 총사업비(533,200천원) :
국비(216,600천원), 지방비(216,600천원), 자부담(100,000천원)
 - 분담비율 : 국비(40.7%), 지방비(40.7%), 자부담(18.6%)
- ② 사업 완료 후 정산처리
 - 총사업비 : 490,000천원
 - 총사업비 감소로 분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정산
 - 국 비 : $490,000\text{천원} \times 40.7\% = 199,430\text{천원}$
 - 지방비 : $490,000\text{천원} \times 40.7\% = 199,430\text{천원}$
 - 자부담 : $490,000\text{천원} \times 18.6\% = 91,140\text{천원}$
 - 국비집행반납처리 : 17,170천원

○ 사업비 반납 및 이월

- 사업수행이 어려울 때에는 사유서 및 사업자의 포기서를 첨부하여 반납조치 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이월은 불가하나, 아래의 사유로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 동 공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는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얻어 이월할 수 있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인건비 등 정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5 보호시설의 폐지 시 설치비 등 반납

○ 대 상

- 법인(민간 포함)에서 설치비·임차보증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던 보호시설 등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폐지하는 경우 시설설치비·임차보증금을 반납
- 기자재비 및 장비비 등을 지원받아 구입한 물품은 시설의 폐지 시 시·군·구에 반납 하여 타 시설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반납기준

- 시설공사비(칸막이, 보일러 등)는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
- 장비(기자재)가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내용연수는 2년을 기준으로 함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시행령 제4조 관련)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용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 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 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들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 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들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 중 택시 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신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 이상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1)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 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16) 생략	-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Ⅲ.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1 개요 및 현황

-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원 양성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 신고 시설 현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요정책-정책자료실-인권보호) 참고

2 교육훈련시설 설치 개요

가. 설치주체 및 설치방법(법 제19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직접 설치
 - ※ 단, 지방자치단체 외의 각급 정부기관에서 설치 시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과 사전 협의할 것
-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 여성가족부 또는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위탁하거나 이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 가능

나. 설치 기준(법 제19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3의2)

- 교육훈련시설에는 강의실, 실습실, 교수연수실, 사무실 등을 갖추야 함
- 강의실은 교육인원 1인당 연면적 1m² 이상의 공간을 갖추야 함
 - ※ 자체 강의실을 확보하여야 함. 다만 교육공간이 부족할 경우 교육에 적합한 다른 장소 활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교육인원 1인당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사무실은 교수연구 및 사무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야 함
- 기타 화장실·급수시설·소방시설·방음장치·채광·환기·냉난방·조명시설 및 교재·교구 등을 갖추야 함

3 교육훈련시설의 설치·변경·폐지·휴지 및 재개 신고

가. 설치 신고(시행규칙 제8조의3)

- 신고 자격 :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 신고 및 수리 절차
 - 설치신고서류 제출 [서식 12]
: 법인 등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사항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처리기한 :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
 - 확인사항 : 신고자격(비영리법인 여부 등), 시설기준 준수, 시설 종사자 확보 여부 및 강사의 자격,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관계법령 규정 준수 여부 등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1항에 의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등본의 내용을 확인
 - ※ 법정 구비서류 외 설치신고 검토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
 - 신고증 발급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법인 등
 - ※ 신고증 서식은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지 제7호의5서식] 참조

나. 변경 신고(시행규칙 제8조의3)

- 사유(변경 신고 대상)
 - 교육훈련시설의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 교육훈련시설의 장 또는 교육정원의 변경
- 신고 기한 :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 및 수리 절차
 - 변경신고서류 제출 [서식 13]
: 법인 등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사항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처리기한: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 검토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1항에 의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등본의 내용을 확인
- 교육훈련시설 신고중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교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법인 등

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시행규칙 제10조)

- 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휴지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함)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신고 및 수리 절차 [서식 3]
 -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서류 제출: 법인 등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폐지·휴지 신고 시 아래의 사항 확인 후 수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
 - 수강 중 환불을 요청한 교육훈련자에 대한 환불조치 여부, 교육훈련과정 수료 및 교육훈련실적 보고 완료 여부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
 - ※ 교육훈련자에 대한 불이익 발생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교육기간 중에는 휴·폐지신고 수리 불가

(참고) 시정명령

-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15.2.3.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교육훈련시설에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음

[참고자료]

구 분	설치·변경·폐지·휴지 및 재개 신고 신청서류
설치신고	- 설치신고서 : 시행규칙 제8조의3 [별지 제7호의4서식], 지침 [서식 12] 참조 - 첨부 서류 •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에는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강사 등 확보 계획 등에 대한 관련사항을 포함
변경신고	- 변경신고서 : 시행규칙 제8조의3 [별지 제7호의6서식], 지침 [서식 13] 참조 - 첨부 서류 •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장의 변경의결서 •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서 :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8호서식], 지침 [서식 3] 참조 - 첨부 서류(폐지 또는 휴지 시에만 해당) •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 •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제외) • 교육훈련시설 신고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 •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 조치계획서

4 교육훈련 위탁 및 교육훈련시설 지정

가.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 위탁(법 제19조의2)

- 위탁 가능 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법률구조법인
 - 사회복지법인,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 상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위탁방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시·도별 별도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위탁 규정 준용

나. 교육훈련시설 지정(법 제19조의2)

- 지정권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지정받을 수 있는 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법률구조법인
 - 사회복지법인,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 상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 관할 지자체에 신고된 교육훈련시설에 한함
- 지정 신청서류
 -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 제출서류
 -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 대장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 지정신청서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처리
- 처리 시 유의사항: 지정신청기관의 지리적 여건, 연간 상담원 양성교육인원 및 관내 수요, 교육훈련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교육훈련 시설로 지정
 - 시·도별 지정 수: 관내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의 개소 수 및 수요를 감안하여 1~3개소(서울·경기는 5~7개소) 범위 내에서 지정 가능
 - 지정서 발급: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5 교육훈련시설의 운영

가. 교육 강사의 자격기준(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3의2)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 동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예의 입학학력으로 인정되는 학교만 해당)에 따른 학교(또는 「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포함)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성폭력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밖에 유사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 예외적으로 여성인권, 성(性)인권 등과 관련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과목에 한해 강의할 수 있음

※ 교육훈련시설의 종사자

- 교육훈련시설의 시설장이나 종사자에 대한 별도 자격기준은 없음. 다만, 운영주체는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 및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함

나.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3의2)

-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

교육 분야	교육 과목	이수 시간
소양분야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성폭력의 개념과 특징의 이해 여성인권과 폭력 행정실무(문서작성 및 회계 등)	15
전문분야 I	성폭력의 이해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법률구조실무(수사절차의 이해 포함) 법적 절차 및 대응방식 피해자 등 의료지원 실무	30
전문분야 II	상담심리개론 상담원리와 기법 상담의 기법과 프로그램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대상별 상담과정	35
전문분야 III	상담 사례 연구 및 실무실습 역할연습 등	20
총계		100

-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 교육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1일 강의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20퍼센트 범위에서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조정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 이수시간은 최소 100시간 이상이어야 함
-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분야 III의 경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서 실무실습을 10시간 이상 포함해야 함
- ※ 사이버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 교육과목 강좌당 수강생은 70명 이하로 하여야 함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상한의 범위(1인당 35만원 이내) 안에서 교육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음
- 강사 1인이 4과목 이상 강의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매 교육기간별 강사의 인적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 상세 보고사항은 '다. 교육훈련시설 운영 일반' 참조
- 타 법령에 의해 교육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
 - 「아동복지법」 제 2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사항(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의거하여,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한 사항(신고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등)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함
-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폭력 상담원 등 다른 교육훈련과정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없음
 - ※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원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150시간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별도로 각각 100시간을 운영하여야 함

○ 중복수강 과목의 인정

- 가정폭력 또는 성매매피해 상담원 양성교육 과정 중에서 성폭력 상담원 양성교육과 중복되는 3개 과목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어느 한 과정에서 수강하고 수료한 적이 있으면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 과정 일부 수강 면제

〈중복 교과목〉

- 소양분야 2과목 :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여성인권과 폭력
- 전문분야 1과목 :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 ※ 중복이수자는 이전에 교육을 받았던 교육훈련시설로부터 교과목 이수확인서[서식 19]를 발급받아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 제출
- ※ 수강 면제 신청을 받은 기관은 확인서를 제출한 수강생이 실제로 그 과목에 출석을 했는지 여부와 중복 수업을 인정할 교과목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수강 면제 인정 가능(이수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더 적은 수의 시간만 인정 가능)

다. 교육훈련시설 운영 일반

○ 수강생 모집

- 수강생 : 별도 기준 없음
 - 수강생에게 교육과정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
- 모집방법 : 광고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모집 가능
 - ※ 교육훈련시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강생 모집을 위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강료 환불 등을 하여야 함

○ 수강 등록

- 교육훈련시설은 교육희망자가 수강등록 하기 전 교육의 목적·과정 및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잘못 등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교육수강신청서[서식 14]는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접수 완료하여야 함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수강생 명부[서식 15]를 작성하여야 함

○ 수료 인정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교육과목 총 이수 시간(100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7서식, [서식 16])을 발급하도록 함
- 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 처리함

○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보고: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매 교육과정별 운영계획서[서식 17], 수업시간표, 수강료 책정 금액, 강사 인적사항, 수강생명부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교육훈련시설은 교육과정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실적보고서 [서식 18], 수료자명단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수강료 수납 및 환불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상한 범위(1인당 35만원 이내)에서 수납할 수 있음

- 수강료를 수납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가급적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교육훈련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이 중단되어 교육 전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교육생들이 수료를 못한 경우 교육훈련시설은 전액환불 조치하여야 함
 - 교육훈련시설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에 따라 교육생이 교육 개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하고, 교육개시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이후 : 미환급
- ※ 다만,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는 질병, 주거지의 이전 등 교육생이 부득이한 귀책사유로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 교육 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여야 함

라. 벌칙 및 과태료(법 제36조 및 제38조)

- 벌칙 : 아래 해당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교육훈련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경우
 - 시정명령(설치·지정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되거나, 강사의 수가 부족한 경우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 교육훈련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한 경우
- 과태료 : 아래 해당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6 행정사항

- 교육훈련시설은 교육훈련실적에 관한 기록물 및 재무·회계 기록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교육훈련시설은 교육훈련실적, 재무·회계 서류 등을 폐지신고서에 첨부하여 당해 시·군·구청장에게 폐지 신고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 시·도, 여성가족부장관이 교육훈련 실적 등을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음

Ⅳ.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사 업	내 용
의료 지원	○ 성폭력 피해의 치료, 임신여부의 검사,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성병 감염 여부 검사,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치료 보호에 소요된 비용 지원 ○ 병원 간병서비스 이용에 따른 간병비 지원 ○ 사업 기관: 전담의료기관,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돌봄 비용 지원	○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 사업수행기관: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지방자치단체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사업기관: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법률 지원	○ 성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 형사사건의 대리 및 변호를 무료로 제공 ○ 사업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연계)
주거지원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참고
보호 지원	○ 일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친족성폭력피해미성년자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치료·보호·학업 및 자립 등 지원 ○ 사업기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연계)

Ⅳ-1.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1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1 사업 개요

- 목적: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지원 대상: 성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
 - ※ 단, 피해자 가족의 의료지원은 성폭력피해와 관련된 증상의 강도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지원
 - ※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한함)의 의료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지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2 의료지원의 범위

- 성폭력피해자의 의료상담 및 지도
- 성폭력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 등 포함)
- 성매개감염 질병검사 및 예방치료(피부과, 비뇨기과 등)
-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평가와 관리
-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또는 출산
 - ※ 낙태로 인한 부검 및 화장 비용 지원 가능
 -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3호에 의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은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만 가능하므로 그 밖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음. 다만, 성폭력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나, 정신 장애인으로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호(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및 의료비 지원 가능

- 진단서 발급, 기타 의료적 평가(신체사정) 및 법적증거 확보(응급키트 등)
 - ※ 진단서는 일반진단서를 원칙(수사기관·재판 등 특별한 경우에는 상해진단서 발급 가능)으로 하며, 그 용도는 학교·직장·수사·법원 제출용 등에 한정하고 개인 보험과 관련된 진단서 발급 비용은 지원 불가

3 의료지원 원칙

-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 지원(비급여 심리치료 제외)하되,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 100만원(누적금액) 이상 고액의 검사 또는 고액의 비급여 항목 지원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과 내부회의 등을 거쳐 지원 여부 결정
 - 500만원(누적금액) 이상 의료비 지급의 경우 주치의 소견서와 내부 사례 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급 적정성 검토 의견을 첨부(단, 외상치료에 대한 비용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외)
- 비급여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회기당 20만원 이내로 함(회당 20만원 초과 시 자부담)
 - ※ 비급여 심리치료 지원은 6개월, 최대 400만원을 원칙으로 함. 단, 6개월(400만원) 초과 시 해바라기센터 또는 상담소 등에서 주치의 소견, 내부회의 등을 거쳐 치료기간 연장을 위한 의견서를 첨부한 경우 지원 가능
 - ※ 초기 심리평가 비용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400만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 단순한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지원 제외(다만, 내·외과적 손상을 입어 성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입원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기준병상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병실이 없거나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거나, 의사의 소견서 또는 상담원(간호사 등 의료지원 담당자 포함) 의견서 등 사유서를 첨부하여 상급병실 사용 가능
 - ※ 긴급 시 사유서를 사후에 첨부 가능
 - ※ 상급병실 사용 필요: 13세 미만의 성폭력피해자 또는 심각한 외상 피해,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 되는 사건,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필요한 피해자 등

-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값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폭력피해자 등이 긴급하게 구입하여 사용한 약값 등 의료비에 대하여는 지원(의료기관의 투약 및 조제료는 의료비에 포함)
- 성폭력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영양제, 배변주머니 등 피해자 본인이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지원 가능
- 의료보조기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단 임차 사용이 가능한 경우 가급적 임차료만을 지원
- 한방치료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한해 본인부담분만 지원
 - ※ 의료비 지원은 성폭력과 관련된 외상·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응급의료지원의 성격을 지니므로 고가의 한방 첩약이나 탕약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성폭력피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원칙으로 함(단,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통보 제외대상인 특수상병군 적용 강화)
- 저소득 의료급여(1, 2종) 수급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급여로 집행
 - ※ 특히 성폭력피해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의료비는 의료급여로 집행한 후 본인부담금 등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에서 지원

▶ 피해자 의료비는 ‘의료법’ 제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료기관 부설 클리닉 혹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상담심리학, 아동심리치료학,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심리상담기관도 집행 가능

※ 피해자가 종전부터 이용해온 기관이거나 피해자가 사는 지역 인근에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 없는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가 운영하는 기관도 예외적으로 집행 가능

4 의료비 지원기간

- 피해발생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함
 - 단, 피해발생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여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피해사실과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성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의 의료지원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지원 기관과 당해 지자체(시·도, 시·군·구)가 협의(유선 또는 문서)를 통해 계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하되, 의료지원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5 의료비 지원 체계

가. 의료비 예산배정(선금급, 개산급)

○ 배정대상

- 시·도, 시·군·구
-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이하 ‘피해자 지원기관’)

○ 배정방법

- 시·도는 지원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에도 예산을 배정하고, 설치된 시·군·구는 지원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되, 예산의 일부를 자체 보유하여 직접 집행 및 시설별 배정 예산의 부족에 대비(예산 배정 규모, 자체보유 규모 등은 관내 의료기관 등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판단)

- 다만, 시·도는 예산 수요 및 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지원기관이 설치된 시·군·구의 모든 사업수행기관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당해 관할구역 내 거점 상담소 등을 지정하여 예산 배정하거나 직접 집행이 가능함

※ 2~5개 시·군·구를 합하여 거점 기관(상담소 등)을 지정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지방비 부담액 중 당해 시·군·구비의 경우 당해 시·군·구에서 직접 집행토록 조치

-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해당 센터가 속한 의료법인이 아닌 센터로 직접 예산 배정

- 지원기관에 예산 배정 시, 운영비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전년도 의료비 예산 집행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정(전년도 실적이 없는 상담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정 대상에서 제외 원칙)

※ 시·도는 관할구역내의 치료보호 실적이 특히 높은 상담소를 비롯하여 해바라기센터 및 피해자 진료에 적극적인 대형 ‘전담의료기관’ 등의 예산소요를 반드시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 배정 또는 보유

○ 배정시기: 매 분기 초에 배정

※ 시·도 및 시·군·구는 관할 지역 내 피해자 지원기관의 의료비 집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과부족에 의한 지원 불능, 집행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변경(조정) 배정 조치

나. 피해자에 대한 치료요구(의뢰)

- 지원시설의 장은 내담자에게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자의 성폭력 피해사실 확인 후 의료기관에 피해자 치료를 의뢰
-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수사기관 등에서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치료를 요구

‘성폭력피해상담 사실확인서 등’이란?

-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명의로 발행한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사본
-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 군 피해자의 경우 군에서 제출하는 성폭력 신고 확인서로도 증빙 가능

상담소 등의 ‘피해 상담 사실 확인(확인서 발행)’ 절차는 다음의 경우에 생략

- ① 피해자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고발·진정 등) 접수증 사본을 진료 받을 의료기관에 제출하거나,
- ②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 등의 사실 확인(확인서 작성 후 서명)이 있는 경우
- ③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 전담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경우(해당 병원은 진료기록을 자체 보관하고 상담소 등 혹은 시·도, 시·군·구에 의료비 청구서만 제출)

다. 의료비의 청구

- ① 의료기관(심리치료 기관 포함)에서 청구하는 경우: [서식 22]
 - 성폭력피해자 등을 치료한 의료기관은 진료비 명세서*(간이영수증은 불가),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서식 20]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치료를 의뢰한 피해자 지원 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에 의료비(본인부담액)청구
 - ※ 해바라기센터에서 진료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 명세서, 상담사실 확인서 제출 불요(②~③ 동일)
 - ※ 전담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경우에는 상담사실 확인서 제출 불요(②~③ 동일)
- ②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서식 23]
 -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를 보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은 불가)과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서식20]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에 의료비(본인부담액) 보전 청구

③ 성폭력응급키트 처치료의 청구

- 의료기관에서 응급키트 사용 후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에 청구
 - ※ 성폭력응급키트 처치료는 피해자 1인당(개당) 75,000원을 해당 병원 원무과, 또는 해바라기 센터를 경유하여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에게 지급

응급키트 처치료 지급 관련

- 응급키트 처치료는 응급키트를 시행한 전문의 등 의사 개인에게 병원 내부 지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원활한 증거채취 및 응급 진료 협조를 위해 가급적 의사에게 직접 지원토록 노력하여야 함
- 일반적인 의료비 청구 절차와 동일하지만 피해자 본인은 청구 불가

라. 의료비의 지급

- 지급청구를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시·도 또는 시·군·구로부터 선급 받은 예산중에서 이를 집행한 후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의료비를 직접 집행하는 경우, 지급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최소화하는 등 치료보호 활성화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조관계에 유의하고,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
 - ※ 피해자 등이 지원기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지자체로 의료비를 청구한 경우, 지자체는 중복 지급 여부나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내역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이나 관련 분야전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급 여부 결정

마. 집행 및 정산

- 시·도 및 시·군·구, 지원기관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예산을 별도로 운영(집행 내역 사업별 분리 정산·관리)
 -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지급하거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급은 불가능
 -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거나 예산이 부족한 상담소 등은 필요 시, 해당 예산이 배정된 상담소 등 또는 시·군·구에 의료비 지급을 의뢰하여 피해자의 치료보호 조치 (예산의 수시배정 조치 없이도 지원기관을 통하여 의료비의 과부족분 해소)

- 성폭력 피해 발생지역 또는 피해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 소재지의 지원기관과 시·도 또는 시·군·구, 피해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의료비 예산을 배정(선급)받아 이를 집행한 지원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집행 내역을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시·군·구에 보고(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하고, 시·군·구에서는 이를 자체 집행 내역과 함께 관리

6 의료비 과다청구 해소

-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경우,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심리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및 진료)와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피해를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유도
- 의료비 중복 지원 등의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사전 고지
 - 피해자가 타 기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동일 폭력 피해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며, 피해자 및 가족이 성폭력 피해 상황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 전체를 환수할 수 있음
 - ※ 단순 재판결과의 무죄가 아닌 고의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중복지원을 요청한 경우에 한함
 - ※ 비용 환수 절차: 의료비를 지급한 피해자 지원 기관(상담소, 해바라기센터)의 의료비 통장으로 수령인이 지급받은 의료비를 반납하도록 함. 의료비 지급 기관은 반납 받은 의료비를 여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집행잔액은 지자체에 반납함
- 피해자가 지원받은 의료비 중 일부를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으로 환급받은 경우 의료비를 지급한 기관에 반드시 통보하고 환급금을 반납
 - ※ 본인부담액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은 의료비가 과다지급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7 간병비 지원

가. 목적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간병 비용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 지원

나. 지원대상

- 성폭력피해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자로서 가족으로부터 간병 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
 - ※ 예시) 피해자가 1인 가구, 세대 구성원 중 성인인 구성원이 본인밖에 없는 경우, 한부모, 조손, 장애부모가정의 자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기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지원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 가능

다. 지원 내용 : 병원 간병비 자부담 비용 지원

라. 지원 기간 : 최대 1개월

- ※ 당해 지자체(시·군·구)가 심의를 통해 피해정도, 가정환경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

마.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기준 단가 참고)

- ※ 불가피하게 지원액을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심의 필요

구 분		1일 기준 단가(예 시)	
		종 일	시 간 제
병 원	일 반 단 가	8만원	5만 7천원(주·야간 12시간 기준)
	특 수 단 가*	8만 5천원	6만 3천원(주·야간 12시간 기준)

- ※ 특수단가 적용 기준 : ① 사지마비, 편마비에 준하는 보행 불가능 상태인 경우
 - ② 응급실, 폐쇄병동에 입원한 경우
 - ③ 그 외 특수단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소견서 첨부)
- ※ 종일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도적인 주·야간 교대 지양
- ※ 간병비 예시 단가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자부담으로 함

바. 지급 절차

- 간병비 지원 안내
 -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의 장, 시·군·구에서 성폭력 내담자에게 간병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폭력 피해사실 확인 후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원 안내
 - 간병비 청구
 -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간병 서비스 이용 후 이미 지불한 간병비를 보전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자 지원기관, 관할 시·군·구에 피해자 부담액에 대한 간병비 보전 청구 가능
 - 제출서류
 - 간병비 지급 신청서 1부(서식 24)
 - 진료비(간병비) 계산서, 입원 확인서 각 1부
 - 1인 가구·한부모 가정·조손 가정·장애부모 가정 등 관련 증명서류
 -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확인서 예시)
 - 간병비 지원
 - 지급청구를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시·도 또는 시·군·구로부터 선급 받은 예산중에서 이를 집행한 후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 내역을 보존 관리
 - 간병비는 성폭력 피해 발생지역 또는 피해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 소재지의 지원 기관과 시·도 또는 시·군·구, 피해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간병비를 직접 집행하는 경우,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지급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최소화하는 등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 내역을 보존 관리
- ※ 간병인은 간병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함. 단, 간병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간병이 가능한 자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가족, 친인척은 제외함

- 지급, 환수 규정

지 급	환 수
▶ 간병비의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6개월 이내에 간병한 사안에 대하여 지급 처리(단, 사안이 인정되는 경우 사유서 제출 시 당해 연도에 한하여 6개월이 지나도 지급 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비가 지급된 경우와 과·오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 ▶ 시·군·구청장은 간병비 회수결정서 및 납입 고지서를 납입일 1월전까지 환수대상자에게 통보 ▶ 환수는 이자를 적용치 않고 원금만 회수

- 간병비 지원은 간병비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지능력 부족, 기타 사정상 필요시에는 보호자 또는 간병인에게 직접지원 가능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추가 확인 및 실태관리 철저 요망)
- 본인부담 후 보전이 원칙이며, 피해자의 가정형편 등 불가피하게 간병비를 우선 지원 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피해자 지원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우선 지원 여부 결정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여부 결정

8 비밀준수 의무

-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준수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준수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 및 상담소 등의 종사자는 직무상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함(특히,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9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및 간병비 지원 실적을 보고서식[서식 25]에 의하여 상반기 실적은 2019년 7월 31일까지, 연간 운영실적은 2020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 필요
(특히 경찰서, 의료기관 등)
- 의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 경찰,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에서도 관련 절차 숙지 및 안내에 유의
- 의료비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예산 5% 이내에서 시·도별 관내 성폭력전담 의료기관 등에 대한 홍보비로 사용가능
- 의료비 혹은 간병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배정 총액 내에서 조정 가능

1 정 의

○ 성폭력 증거채취 등을 위한 응급 의료용품

－ 의료기관 등에 무상 보급

※ 2004. 10. 부터 성폭력 응급키트 사용에 따른 처치료를 의료기관에 지급

2 구성 물품

구분	구성물품 목록	수량
1단계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국문, 영문 2종)	1부
	관계인 동의서(국문, 영문 2종)	1부
2단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부
3단계	겉옷(Outer Clothing)봉투	2개
	속옷(Inner Wear)봉투	2개
	이물질(Foreign Material) 봉투	1개
	종이보	1개
	종이팬티	1개
	비닐소독장갑	1개
4단계	성폭력 피해자 신체의 부스러기 채취(DEBRIS COLLECTION)	
	종이봉투	1개
	손톱깎이	1개
	스크럽 도구	1개
	손톱수거 표시용 왼쪽·오른쪽 라벨(주황색)	각 1개
	종이보	2개
	비닐소독장갑	1개

구분	구성물품 목록	수량
5단계	가해자의 얼룩 및 타액 채취(STAIN COLLECTION)	
	종이봉투	1개
	증류수	1개
	멸균면봉(E.O GAS 멸균팩)	4세트
	면봉보관함(고정테이프 포함)	4개
	비닐소독장갑	1개
6단계	가해자가 흘린 음모 채취(PUBIC HAIR COMBINGS)	
	종이봉투	1개
	빗	1개
	종이수건	1개
	비닐소독장갑	1개
7단계	생식기 증거 채취(GENTALIA SWABS AND SMEARS)	
	종이봉투	1개
	멸균면봉(E.O GAS 멸균팩)	4세트
	면봉보관함(고정테이프 포함)	4개
	슬라이드글라스	1개
	슬라이드글라스보관함	1개
	비닐소독장갑	1개
8단계	항문직장 내 증거 채취(ANORECTAL SWABS)	
	종이봉투	1개
	멸균면봉(E.O GAS 멸균팩)	2세트
	면봉보관함(고정테이프 포함)	2개
	비닐소독장갑	1개
9단계	구강 내 증거 채취(ORAL SWABS)	
	종이봉투	1개
	멸균면봉(E.O GAS 멸균팩)	4세트
	면봉보관함(고정테이프 포함)	4개
	비닐소독장갑	1개
10단계	혈액 채취(BLOOD SAMPLE)	
	종이봉투	1개
	EDTA Tube	3개
	비닐소독장갑	1개

구분	구성물품 목록	수량
11단계	소변 채취(URINE SAMPLE)	
	종이봉투	1개
	소변통	2개
	지퍼백	1개
	부착 테이프	2개
	비닐소독장갑	1개
12단계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3장)	1부
기타	경찰보관용 봉투(상자 뚜껑 겉면 상단 부착)	1부
	수술용 고무장갑(Latex Surgical Gloves(Gamma 멸균)) (진찰용)	1개
	일회용 질경(7단계에서 사용)	1개
	증거물(EVIDENCE) 표시 라벨(주황색)	3개
	생물학적 위험(BIOHAZARD) 표시 라벨(주황색)	1개
	마스크	2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사용 안내서	1부
	기록 받침대	1개
	포장 상자	1개
	검사필 스티커	1개

3 성폭력 응급키트의 적정한 배분 및 관리

- 각 시·도 및 시·군·구는 응급키트의 배포 및 사용현황에 대한 관리 강화
 - 사용실적에 비하여 과다 배포되었거나, 치과, 신경정신과, 정형외과 등 응급키트 사용이 예상되지 않는 의료기관 등에 배포된 키트는 회수하여 적정하게 재배분(종합 병원 및 산부인과 위주 보급)
 - 배포 후 장기간 활용하지 않은 채 성폭력상담소 등에 보관된 키트는 회수 조치하고, 장기간 사용실적이 없는 의료기관 등에는 1~2개 기준으로 비치(과다 비치하지 않도록 조치)
- 응급키트 처치료(개당 75,000원) 지급 및 배포현황 반기별 파악
 - 시·도에서는 시·군·구를 통해 병원별 응급키트 사용량 및 처치료 지원내역 파악 등 사용실태 점검

- 사용실적이 저조한 병원에 대해서는 최소 보관분(1~2개)을 제외한 잉여 응급키트를 시·군·구에서 회수, 관내 부족한 의료기관에 신속히 배분
- 시·도에서 여성가족부로 응급키트 신청시 기준 강화
 - 시·도는 분기별 시·군·구 사용실적 점검결과, 잔량이 전체 배포 수량의 10% 미만일 경우 추가 소요량 신청
 - ※ 시·도 잔량이 10% 이상일 때는 시·군·구별 수급조절(시·도)
- 응급키트 사용 시 주의사항
 - 응급키트는 의사의 지시 없이 상담원 등이 자의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됨
 - ※ 다만, 키트를 통한 증거 채취 과정에서 상담원 등 비의료인은 의료행위가 아닌 단계(1, 3, 4, 5, 6, 12단계)만 실시할 수 있음

단 계	내 용
1단계	동의서 작성
2단계	진료기록 작성
3단계	겉옷, 속옷, 이물질 수집
4단계	신체 부스러기 채취
5단계	가해자의 얼룩 및 타액 채취
6단계	가해자가 흘린 음모 채취
7단계	생식기 증거 채취
8단계	항문 직장 내 증거 채취
9단계	구강 내 증거 채취
10단계	혈액 채취
11단계	소변 채취
12단계	체크리스트 작성

- 응급키트 사용 후 사용되지 않은 잔여물과 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해 채취한 검체,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은 키트상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 사용 후 키트 상자와 기타 증거물 등은 담당경찰관에게 인계
- 의료기관 보관용 기록(1, 2, 12단계)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제1항 제9호 규정에 준하여 3년간 보존

1 사업개요

-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관리

2 근 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3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가. 지정대상

-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또는 보건지소,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

나. 지정신청 방법(규칙 제13조)

- ① 신청서 제출: 의료기관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서 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지침 [서식 26] 참조(전자문서 포함)
 - 신청서 첨부 서류(전자문서 포함)
 -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 지정대상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② 검토: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 수리시 검토사항
 - 지정대상 기준 적합 여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의 정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 ③ 전담의료기관 지정서 발급 [별지 제9호 서식]
 -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의료기관

다. 취소기준

- 성폭력방지법 제27조제3항제1~3호의 전담의료기관 취소기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반드시 취소)
 -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3.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4.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지정현황(334개소)

(2018년 9월 기준)

시·도별	지정기관수	시·도별	지정기관수
서 울	46	강 원	36
부 산	22	충 북	7
대 구	9	충 남	22
인 천	12	전 북	20
광 주	5	전 남	33
대 전	4	경 북	28
울 산	3	경 남	29
세 종	2	제 주	5
경 기	51	전 국	334

※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해제절차

- 지정절차: 의료기관(신청, 별지 제8호의2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지정서 교부) → 시·도지사 → 여성가족부장관
의료기관(신청, 별지 제8호의2서식)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지정서 교부) → 여성가족부장관
- 해제절차: 의료기관(신청, 서식 27) ↔ 시장·군수·구청장(해제 통보) → 시·도지사 → 여성가족부장관
의료기관(신청, 서식 27)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해제 통보) → 여성가족부장관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참고사항

- 종합병원(준종합병원 포함)을 중심으로 전담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 해당 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에는, 응급실 및 야간당직실이 갖추어져 있는 산부인과(여성병원), 성폭력피해자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도 예외적으로 지정 가능
- 서비스 이용수요 및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 개소수를 시·군·구별(시·도별)로 관리

5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내용

-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 성폭력피해자가 전담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절차 생략
 - 성폭력응급키트 처치 시 처치료 지급: 개당 75,000원
 - ※ 집행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의료비 지원 지침 부분 참조
- 「성폭력 응급키트」 보급
 - 시·군·구 및 시·도를 경유하여 여성가족부에 신청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와 책자 발간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 이용 홍보, 정보제공을 위한 가이드북·매뉴얼 등의 보급
 - ※ 성폭력피해를 준응급 증상으로 지정(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02. 2. 8)
 - 응급실 관리료의 건강보험 적용
 -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시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응급실에서 원내 조제·투약
 -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받더라도 진료내역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통보되지 않음
 - ※ 성폭력은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통보 제외대상 특수상병군에 포함

6 행정사항

- 전담의료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 또는 취소된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 또는 취소현황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제27조 3항에 따른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함
- 각 시·군·구에서는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와 연계된 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상담소 등과 의료기관간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 전담의료기관에서는 성폭력피해자 진료대장 [서식 28] 및 성폭력응급키트 관리대장 [서식 29] 비치
- 관내 해바라기센터, 지방의료원을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지정하여 관리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범피기금) 의료비의 5% 내에서 관내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홍보비로 사용 가능

Ⅳ-2.

돌봄 비용 지원

1 목 적

-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을 통해 성폭력피해 아동 등의 건강한 보호 및 조속한 피해회복 지원

2 사업 대상 및 내용

가. 지원대상 : 아래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지원

-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및 피해아동의 13세 미만의 형제·자매
-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자의 13세 미만 자녀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연령제한없이 1~3급)
 - ※ 예시) 한부모, 맞벌이, 조손가정, 장애부모,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기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 폭넓게 인정

나. 지원내용

- 돌봄서비스 이용 시(민간베이비시터,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아양육지원, 활동보조인 등) 자부담 비용분에 대해 지원
 - ※ 돌보미는 돌봄 서비스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함(가족 제외)
 - ※ '15년 6월부터 활동보조인 이용 장애등급 확대(기존 2급에서 장애 3급까지(복지부))

다.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원칙, 연장 12개월 포함 최대 18개월까지 가능

라.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원칙, 연장 6백만원 포함 최대 9백만원까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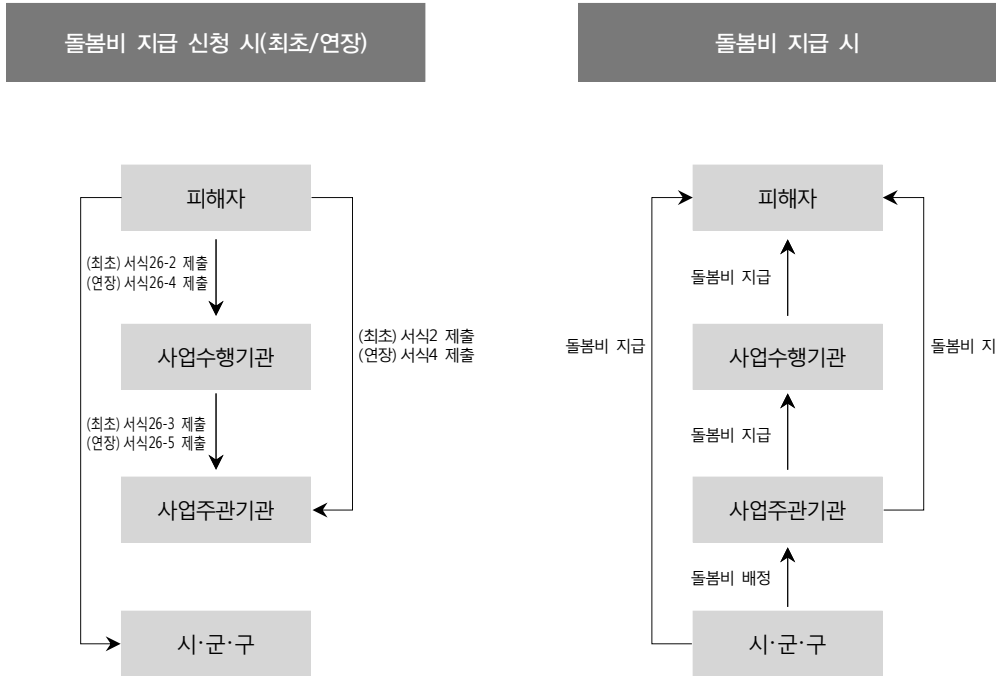
- ※ 지원기간 및 금액 한도 지원 후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일 경우, 시·군·구청장 및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 가능

구 분	시간당 기준 단가(예시)
일 반 단 가	시간당 평균 8~9천원

- ※ 상기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 돌봄서비스의 시장가격, 야간·주말 추가요금, 돌봄 제공자의 교통비(시의외의 경우 등)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단가 초과 시 관련 서류에 사유를 반드시 명기

- ※ 가사 베이비시터도 허용함

3 지원 절차



○ 돌봄 비용 지원 안내

-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시·군·구에서 성폭력피해자(또는 피해자의 자녀)에게 돌봄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폭력 피해사실 확인 후 돌봄비용 지원제도 안내

○ 비용 청구

-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돌봄 서비스 이용 후 이미 지불한 돌봄 비용을 보전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본인이 지원받고 있는 사업수행기관에 피해자 부담액에 대한 보전 청구
- 제출서류
 - 돌봄비용 지급 신청서 1부 [서식 30-1]
 - 돌봄비용 본인부담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계산서, 입금증 사본)
 -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 사업수행기관은 피해자로부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 뒤 각 시·도별 사업주관기관에 지급 신청 [서식 30-2]

○ 비용 지원

- 지급청구를 받은 사업주관기관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와 중복지급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도 또는 시·군·구로부터 선급 받은 예산중에서 이를 사업수행기관에 지급한 후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
-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돌봄 비용을 지급받은 사업수행기관은 이를 피해자(또는 대리인)에게 지급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돌봄 비용을 직접 집행하는 경우,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와 중복지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 집행(사업주관기관을 통한 집행도 가능)하고, 지급절차 및 구비 서류 등을 최소화하는 등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 내역을 보존 관리
- 지급, 환수 규정

지 급	지급 중단 및 환수
▶ 돌봄 비용의 지급은 피해 발생 후부터 치료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서 최대 6개월 지원(심의를 통해 연장 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비용이 지급된 경우와 과오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 ▶ 환수방법 -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환수 여부 결정 ※ 심의위 구성 및 소집절차는 연장결정방법과 동일 - 돌봄비용 환수결정서 및 납입고지서를 납입일 1월전까지 환수대상자에게 통보 ※ 환수는 이자를 적용치 않고 원금만 회수 - 시·군·구청장은 환수한 돌봄 비용을 당해연도 지원분과 과년도 지원분으로 구분 • 징수 당해연도 지원에 대한 징수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 처리 • 과년도 지원에 대한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 돌봄 비용지원은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지능력 부족, 기타 사정상 필요시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 회사 등에 직접 지원 가능(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추가 확인 및 실태관리 철저요망)

- 본인부담 후 보전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돌봄 비용을 우선 지원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피해자 지원기관과 주관기관 또는 지자체가 협의하여 우선지원 여부 결정 가능
- 연장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 한도 및 방법은 아래와 같음

① 1차 연장

-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시·군·구청 장(피해자가 시·군·구로 직접 연장신청한 경우)이 최대 6개월, 3백만원 한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시·군·구청장(피해자가 시·군·구로 직접 연장신청한 경우)은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정도, 평소 생계곤란 여부(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일상생활 복귀곤란 여부(의사 소견서 등)를 고려하여 지원 연장 결정

② 2차 연장

- 심의위원회가 최대 6개월, 3백만원 한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심의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사유, 지원 연장기간 및 지원 내용 등을 기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
 - ※ 심의위원회는 시·군·구 담당자,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를 포함하되, 위원 중 1/3을 아래와 같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됨
 1. 사회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심의위원회의 의결(서면의결 가능)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 의결은 심의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함

※ [서식 30-3, 4] 참조

- 사업주관기관 및 지자체는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가정형편 등에 따라 우선 지원 여부 결정 가능
- 사업수행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과 함께 돌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 확인

4 행정 사항

- 사업수행기관은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안내
 -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 등이 친족 관계일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음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서비스(장애인 활동보조인, 장애아 양육지원사업) 등 정부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정부 지원받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본인 자부담액에 대해서만 지원함(중복지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가능)
 - 피해자 본인에 대한 돌봄 비용만 지원하므로, 피해를 입지 않은 형제·자매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비용까지 지원 불가
- 돌봄서비스 제공자(아이돌보미 등)에게 유의사항 안내
 - 아동의 피해 후유증이 심각한 경우에는 가급적 부모 등 보호자가 돌보는 것이 바람직함을 설명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보호자 등과 면담, 전화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월 1회 이상)
 -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아동의 심리 상태 및 정서적 어려움 등을 돌봄서비스 제공자에게 설명하고, 피해 아동을 돌볼 시의 유의사항, 2차 피해 방지 등을 안내하여야 함
 - 아동의 피해 후유증이 심각한 경우 돌봄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의 상태에 대해 알릴 것인지 보호자와 협의
- 시장·군수·구청장은 성폭력 피해자 돌봄비 지원 실적을 보고서식[서식 31]에 의하여 상반기 실적은 2019년 7월 31일까지, 연간 운영실적은 2020년 1월 31일까지 시·도 지사를 경유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5 사업주관기관

< 시도별 사업주관기관 >

구 분	시도내 사업 수행기관 명단	연 락 처
서 울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형)	02-3274-1375
부 산	부산해바라기센터	051-244-1375
대 구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형)	053-421-1375
인 천	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형)	032-423-1375
광 주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형)	062-232-1375
대 전	대전해바라기센터	042-280-8436
울 산	울산해바라기센터	052-265-3117
세 종	세종시 여성가족과	044-300-3714
경 기	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형)	031-708-1375
강 원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	033-652-9840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033-252-1375
충 북	충북해바라기센터	043-272-7117
	충청해바라기센터(아동형)	043-857-1375
충 남	충남해바라기센터	041-567-7117
전 북	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형)	063-246-1375
전 남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	061-285-1375
경 북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	054-278-1375
	경북북부해바라기센터	054-843-1117
	구미여성종합상담소	054-463-1386
	경산로템성폭력상담소	053-853-5276
경 남	경남해바라기센터(통합형)	055-754-1375
제 주	제주해바라기센터	064-749-5117

Ⅳ-3.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1 사업 수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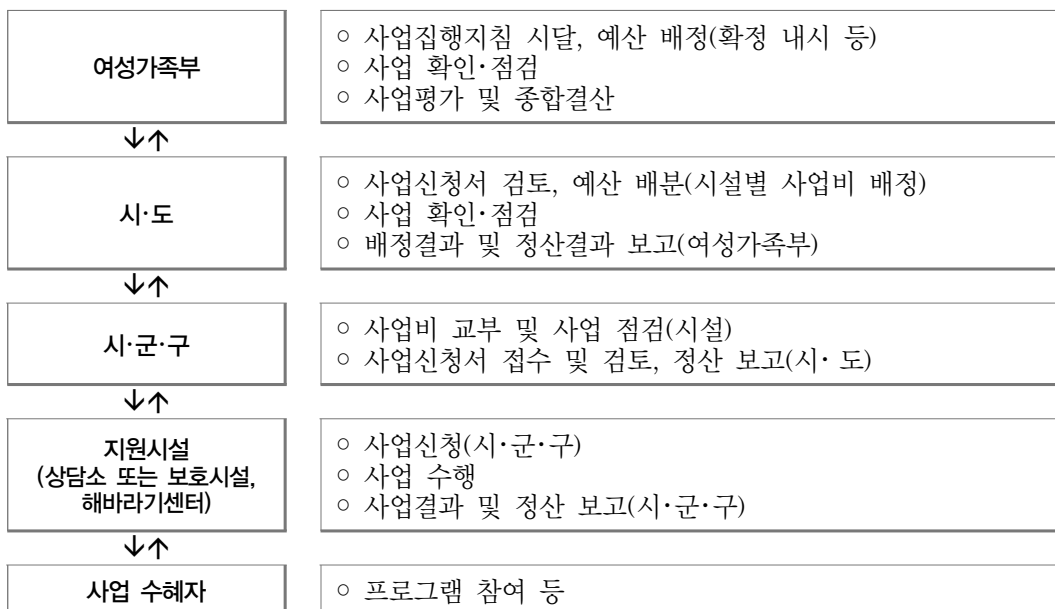
1 사업 개요

- 목적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손상된 심신 및 정서의 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신속한 복귀를 도모
- 법적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사업내용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 ※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심신회복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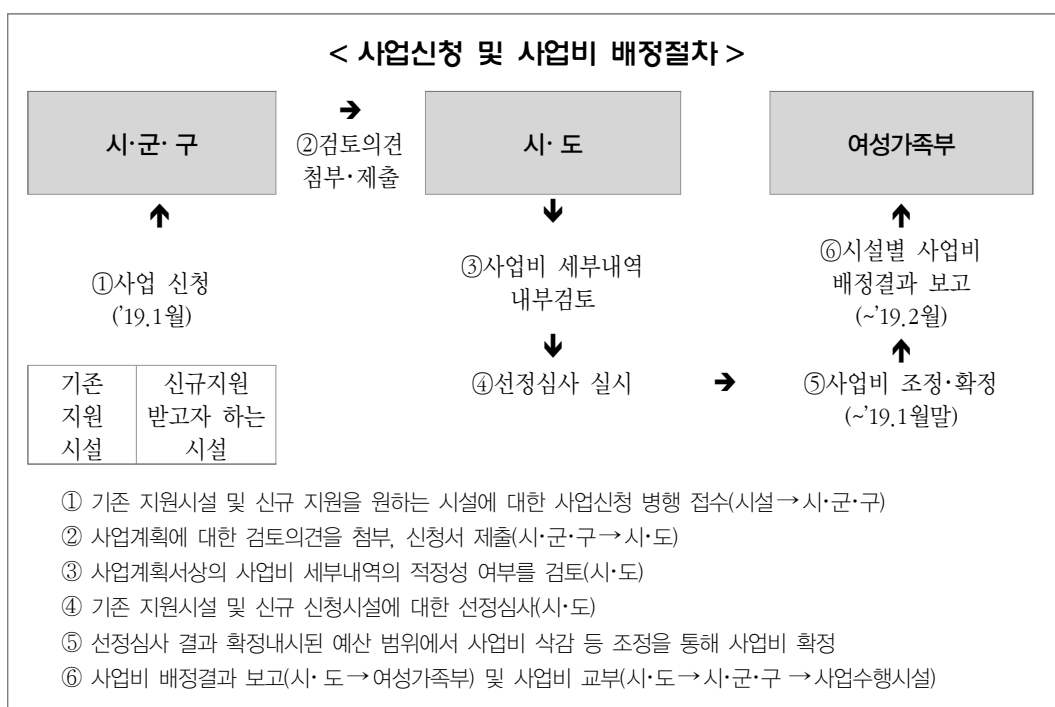
2 사업수행 기관

- 사업 신청대상
 - 2018년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존시설(이하 “기존 지원시설”이라 함)
 - ※ 기존 지원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의 유형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성폭력 시설에서 가정폭력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불가
 - 기존 미지원시설 중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해바라기센터
 - ※ 프로그램에 참여할 피해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사업추진체계



4 사업비 배정절차



① 사업 신청

- 신청대상 시설에서 관할 시·군·구에 필요한 프로그램 사업을 신청
- 제출서류 : [서식 32-1] ~ [서식 32-3]

② 사업신청서 검토 및 시·도 제출

- 시·군·구에 접수된 사업신청서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사업신청서 시·도 제출
- 제출서류 : [서식 32-1] ~ [서식 32-4]

③ 사업비 세부내역 사전 검토

- 시·도에서는 접수된 사업신청서상 사업비 세부내역이 사업별 기준단가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사전 검토

④ 프로그램별 사업수행시설 선정 심사

- 심사주체 : 시·도 직접 수행 또는 시·도에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또는 가정·성폭력 관련으로 구성된 기존 위원회 활용)하여 수행
- 심사방법 : 기존 지원시설·신규신청시설에 대해 별도의 선정심사표에 의해 심사하되, 최종 점수에 따라 기존·신규 구분없이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배정
 - ※ 필요시 신청 시설에 대해 사전 현장점검 실시
 - ※ 전년도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행정기관의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누적된 기관은 예산 배정에서 제외

⑤ 시설별 사업비 조정·확정

- 프로그램별 사업수행시설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내시된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삭감 등 조정을 통해 사업비 확정

⑥ 사업비 교부

- 시·도는 조정·확정한 사업수행시설별 사업비 배정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시·군·구에 사업비를 교부
- 보고서류 : [서식 32-5, 6]

5 사업 수행 및 정산

⑦ 사업 수행 및 결과보고

- 시·군·구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수행시설별 사업 수행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종료 후 사업 운영실적을 시·군·구로 제출
- 보고서류: [서식 32-7]

⑧ 사업비 조정 및 정산

- 상반기 이후 중간 정산 실시, 시·도 내 사업비 재배정
- 2019년 사업결과를 사업수행기관 →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로 보고
(2020. 1월말까지)

6 사업추진일정

- 확정내시 통보: 2018. 12월(여성가족부)
- 사업신청서 접수, 검토 및 배정: 2019. 1월말까지(시·도)
- 사업비 배정결과 제출: 2019. 2월 10일까지(시·도 → 여성가족부)
- 사업수행: 연중(사업신청서를 전년도 접수하는 등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음)
* 사업수행 기간동안 진행된 프로그램 진행비(강사로 포함)에 대해서는 사업비 교부 이후 소급 적용 가능
- 사업결과보고: '20. 1월말까지

7 행정사항

가. 강사 및 강사로 지급 기준

- 외부 전문강사를 총 프로그램시간의 최소 40% 이상 구성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함(이 경우 최소 외부전문 강사가 30% 이상은 되도록 하여야 함)
- 내부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시설 별도의 통장(기타수입)*으로 입금하여 자체적인 집행 기준에 따라 시설 운영비로 활용함

- 단, 근무시간 외에 프로그램을 수행한 내부강사 및 시설의 업무와 관련한 종사자의 시간 외 근무수당 등**으로도 사용 가능함

**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은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을 말함

※ 과도한 시간외 근무를 통한 프로그램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의 시간 외 근무 시간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내부강사에 대한 실비(식비 및 교통비)는 사업비 내에서도 지급 가능함
- 타 지역의 강사 활용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 숙박비: 실비(서울 7만원, 광역 6만원, 기타 지역 5만원 한도 내)
 - 식 비: 1일 20,000원
 - 교통비: 실비(철도는 일반실 기준, 자동차는 실비 기준)

나. 기타 행정사항

- 사업계획 변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되, 단순한 프로그램 내용·횟수 등의 변경은 상담소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 단 “개별상담”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변경은 불가함
 - 지역 특성상 집단상담 성원 구성이 곤란한 경우 3인 이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집단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단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 상황 등을 현장 확인·점검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 프로그램 홍보를 위하여 리플릿, 팸플릿 등의 제작·배부 비용을 연간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 각 시설에서는 만족도 조사 설문지(서식 33) 를 항상 비치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 참여자에게 설문에 응하도록 적극 권장
 - 반송용 봉투 수취인은 해당 시·도(여성정책 부서)로 하며, 해당 시·도에서는 설문지를 취합하여 만족도 조사결과를 여성가족부로 보고
- 기타 '19년 사업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전년도 기준에 준하여 처리함

가. 프로그램 운영 기준 및 방법

- 상담 장소
 - 관련법상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장소
 - 상담내용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
- 상담 형태
 -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 일상적인 상담과 구별하여 피해자별로 개별화·전문화된 치유프로그램 적용
 - ※ 단,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보호시설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게 치료회복프로그램 구성 요망

○ 집단상담 운영 기준

가) 진행자

- 대상자 10인을 기준으로 주진행 1명, 보조진행 1~2인의 강사로 운영
 - 주진행자: 전문강사 II, III 중 1인이 진행
 - 보조진행자: 전문강사 I 기준으로 2인까지 활용 가능
(1인은 진행기록을 담당)
-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것은 일상적인 상담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전문성이므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강사를 적극 활용

나) 프로그램 운영 방법

(1) 집단 구성: 집단은 5~8명 내외

- (폐쇄집단) 종료 시까지 동일 성원으로 유지하는 폐쇄집단형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후에 신규 입소자 발생 시에 집단에 추가 가능
 - ※ 가능한 나이, 피해정도, 피해경험 등이 비슷한 그룹으로 구성
 - ※ 주제별로 운영할 때, 피해자의 연령(청소년 vs 성인), 결혼 여부(기혼 vs 미혼), 피해유형(친족 vs 비친족), 피해의 노출 여부, 피해자의 주요 증상, (원)가족과의 관계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

- (2) 필수 회기 : 최소 10회기(20시간) 이상 운영
- (3) 시간 : 회기당 90분~120분 배정
- (4) 운영방식
- ① 분산형 운영(매주 1회기씩, 15주간(대략 4개월) 진행)
- ② 예외적으로 통합형 운영 가능
- ※ 통합형 : 초기 집중형 운영으로 초기 친밀감과 정서적 안전감 확보 후 분산형을 운영하여 재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습득, 일상생활의 적응력 제고와 정체성 확립
- (5) 상담기록 관리 : 프로그램별로 기록자를 지정하거나 보조강사 1인이 프로그램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여 편철
- ※ 강사의 강의계획서, 상담(치료)기록부, 단계별 프로그램 진행기록부, 사진자료 등을 기록·보관
- (6) 사후평가 : 각 상담소는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실적보고 제출 시에 함께 제출

나. 프로그램별 운영기준

종 류	상담내용 및 목표	상담횟수 및 방법	강 사	운영 단가
개별 심리상담	- (목표) 피해자 개개인의 개별적 욕구와 필요에 따라, 피해 상황과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실시하며 심리적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도모 - (내용) 개인별 상황에 따른 삶의 방향 탐색 및 지원 1) 치유 결정 2) 견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3) 기억 재생 4) 사실로 인정하기 5) 침묵 깨기 6) 내 책임이 아니란 걸 깨닫기 7) 내부의 어린아이와 접촉 8) 슬픔작업 9) 분노작업 10) 폭로 후 대면하기 11) 용서하기	- 1회 1시간 내외 - 횟수는 피해자 상황에 따라 조정 - 8~10회 진행 후 평가, 슈퍼비전 받은 이후 지속할지 협의	전문(Ⅱ, Ⅲ)	전문Ⅱ : 50천원(1회) 전문Ⅲ : 100천원(1회)

종 류	상담내용 및 목표	상담횟수 및 방법	강 사	운영 단가												
개별 심리상담	12) 내면세계의 힘과 만나기 등의 단계로 진행 - (기타) 전문가 심리평가 및 정신과 치료 등 필요시 적용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사용)															
여성주의 집단상담 -자조 (self-help) 와 힘 돋우기 (empowerment)	- (목표) 성폭력 피해 경험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 나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고, 성역할 분석, 힘의 분석, 주장훈련, 의식향상훈련, 인간관계기법, 독서요법, 재구성, 재명명 등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 * 피해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고 실현 하며 성폭력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나아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 요한 기술들을 배우게 됨 * 또한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확립 하며, 성폭력의 개인적 의미를 긍정적 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됨 - (내용) 삼리교육 및 행동 훈련* 등을 이용하여 자기이해와 관계 형성을 도움 * 성교육, 집단토론, 집단 내 개인상담, 빈의자 기법, 내면화된 메시지 교환하기, 어린 시절 사진 보기, 읽기와 시청각 교육, 대인관계도 만들기, 신체작업, 비폭력대화 미술치료, 타로, 애니어그램, MBTI) ** 아동, 장애인 대상 집단상담의 경우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구성 가능	- 5~8인(연령, 피해 유형 등이 비슷한 그룹으로 구성) - 주 1~2회(1회 90분 ~120분 배정) - 최소 10회기 (20시간)이상 운영 - 분산형 운영, 숙박형 불인정	• 주진행(1인) : 전문(Ⅱ, Ⅲ) • 보조진행 (2인) : 전문 (Ⅰ)	• 강사비 단가 <table><tr><td></td><td>최초 1시간</td><td>매1시간 초과</td></tr><tr><td>전문(Ⅰ)</td><td>50천원</td><td>15천원</td></tr><tr><td>전문(Ⅱ)</td><td>100천원</td><td>35천원</td></tr><tr><td>전문(Ⅲ)</td><td>150천원</td><td>50천원</td></tr></table> • 장소사용료 : 100천원(1회)		최초 1시간	매1시간 초과	전문(Ⅰ)	50천원	15천원	전문(Ⅱ)	100천원	35천원	전문(Ⅲ)	150천원	50천원
	최초 1시간	매1시간 초과														
전문(Ⅰ)	50천원	15천원														
전문(Ⅱ)	100천원	35천원														
전문(Ⅲ)	150천원	50천원														
심신회복 캠프	- (목표) 문화체험, 여행을 통해 자연과 접하여 정서 함양과 심리 적인 휴식을 취하며, 집단 속에서 관계성 훈련, 친목도모와 유대감을 강화	- 10명 내외 (자녀 등 가족 동반 가능, 퇴소자 참여 가능) - 1박 2일~2박 3일	• 주진행(2인) : 전문(Ⅱ, Ⅲ) • 보조진행 (3~4인) : 전문 (Ⅰ)	• 강사비 단가 <table><tr><td></td><td>최초 1시간</td><td>매1시간 초과</td></tr><tr><td>전문(Ⅱ)</td><td>100천원</td><td>35천원</td></tr><tr><td>전문(Ⅲ)</td><td>150천원</td><td>50천원</td></tr></table> 보조진행 1인당 70천원(1회) • 장소사용료 1회 150,000원 숙박비 2인 1실 100,000원 식비 1인 5식, 1식 10,000원 교통비 실비기준 다과비 1인 5,000원 기준		최초 1시간	매1시간 초과	전문(Ⅱ)	100천원	35천원	전문(Ⅲ)	150천원	50천원			
	최초 1시간	매1시간 초과														
전문(Ⅱ)	100천원	35천원														
전문(Ⅲ)	150천원	50천원														

종 류	상담내용 및 목표	상담횟수 및 방법	강 사	운영 단가
기 타	- (목표) 성폭력 피해를 직접 다루지 않는 심성 계발을 위한 일반 프로그램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인식하고 확산시키고 이끌어 내도록 긍정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내용)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한계성을 가진 개인의 행동이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사회적 상호 작용 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진로교육, 양성평등교육, 경제교육, 공예, 원예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춤/동작치료, 자기방어훈련, 사이코소시오드라마, 분노 조절 프로그램, 인간관계와 자기표현 훈련, 장점 강화 프로그램, 감수성 훈련 글쓰기작업, 말하기대회 등	- 전체회기의 20% 범위 내에서 필요시 활용 * 단, 장애인, 아동 등 특성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30%(발달장애인의 경우 40%)까지 가능) - 주1회씩 8~10주간 진행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자	최초 1시간 100천원, 매 1시간 초과 시 35천원

- 초과 시간은 최대 3시간까지만 지급 가능
- 야간(18시 이후), 휴일 상담 시 상담료 50% 가산 지급 가능
- 소모품비(재료비, 만족도조사 설문지, 반송용봉투 및 자료유인물인쇄 등 사용 가능, 소모성 재료비 외 비품구입은 불가)는 연 480만원, 다과비는 1인당 5,000원, 연 360만원 한도에서 인정
- 개별심리상담의 경우 내부 강사를 우선 활용하되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 불가
- 숙박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심신회복캠프를 활용하되, 심신회복캠프 이후 평가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별 동시 혼용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피해의 특성, 증상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혼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자체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전문강사 자격기준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공통기준을 갖추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여야 함
단, 강사수급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공통기준 1, 2항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경험이 있고, 3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강사로 활용할 수 있음

구 분	자 격 기 준	비 고
공통기준	1. 성폭력피해자 상담관련 교육(법정시간)을 이수하고 2. 성폭력 피해자 상담에 100시간 참여한 자 3. 피해자 상담 슈퍼비전을 5사례 이상하거나 받은 자	※ 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만 해당
전문강사 (I)	1. 대면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 2. 아동미술치료 등 아동심리치료·상담 1년 이상 경력자 (아동상담의 경우) 3.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자로서 대면상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상담경력은 성폭력관련 상담임
전문강사 (II)	1. 대면상담경력 5년 이상인 자 2. 성폭력 피해자 집단상담경력 3년 이상인 자 3. 아동미술치료 등 아동심리치료·상담 3년 이상 경력자 (아동상담의 경우) 4.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집단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	※ 상담경력은 성폭력관련 상담임
전문강사 (III)	1. 관련분야 박사 학위 이상으로 성폭력 피해자 대면상담경력 1년 이상인 자 2. 대면상담경력 10년 이상으로, 5년 이상의 집단상담경력을 갖춘 자 3.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 대면상담경력 3년 이상인 자	※ 상담경력은 성폭력관련 상담임

주: 1. 대면상담경력: 주 3회 이상, 1일 4시간 이상 대면상담 경력
2. 상담경력: 주 1회 이상, 1일 2시간 이상 전화·면접 상담경력
3. 집단상담경력: 5인 이상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 연간 10회 이상 상담한 경력
4. 관련분야: 법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사회사업학, 여성학, 상담학, 의학, 간호학, 범죄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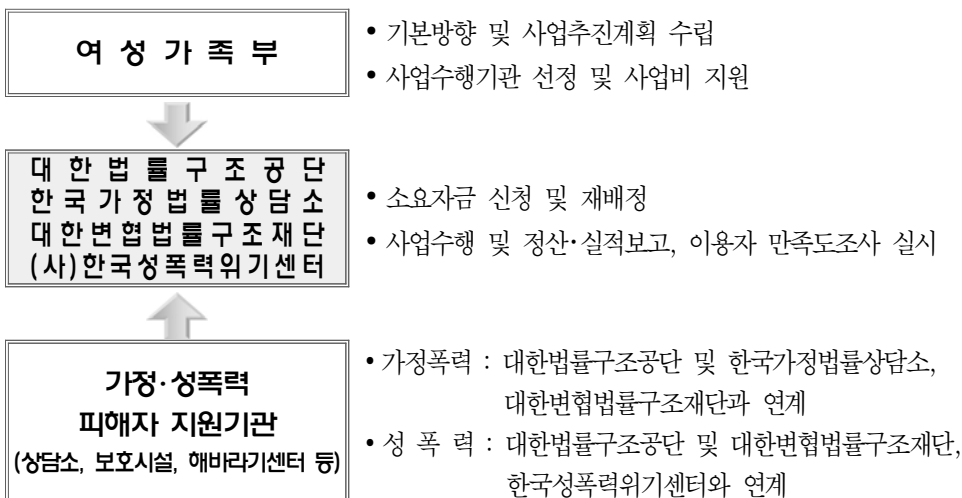
1 목적 및 기대효과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및 홍보사업을 통해 사회문제로 대두한 폭력범죄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소송수행에 따른 시간적 기회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 면제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수혜
- 법률계몽활동으로 가정평화 구현 및 피해자의 인권침해 방지
- 폭력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의 법률구조활동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

2 사업 개요

-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 보조사업자
 - 성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가정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사업 추진체계



○ 사업기간 : '19년 1월 ~ 12월

○ 사업 지역 : 전국

-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18개 지부 및 40개 출장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가정폭력피해자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18개 지부 및 40개 출장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본부 및 전국 27개 지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3 사업 대상 및 지원 절차

○ 구조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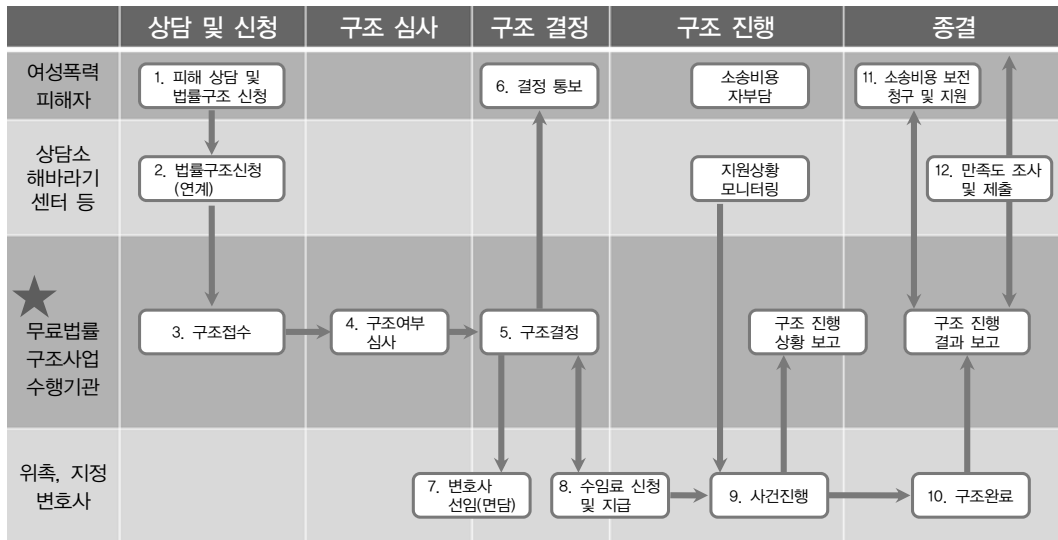
※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도 포함하여 지원 가능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서식 31)
 - 진단서: 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 진단서
 -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등
-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 구조 대상 사건: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형사 사건 등

○ 구조 흐름도



○ 구조비 지원 기준

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선급)하되, 본안사건은 120만원, 재정 및 항고신청, 기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은 40만원 기준임
-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지급한 경우 소송 종료 후 사업수행기관으로 청구서 [서식 35]를 제출하여 보전 청구하되, 변호사가 지급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수임료 청구 시 일괄 청구(실비 지원, 50만원 한도)
-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1인 추가 시마다 20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 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하며, 신청인 부담 후 보전하되, 피해자가 통역비 자부담이 어려울 경우 선지급 가능

②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심급당 사건 120만원 이내 지원

③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심급당 사건 120만원 이내 지원
- ※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지원

○ 구조 지원 한도액 및 유의사항

- 1인당 구조비용액이 총 500만원 초과 시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여부 결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진행(심사료 등 사업비로 지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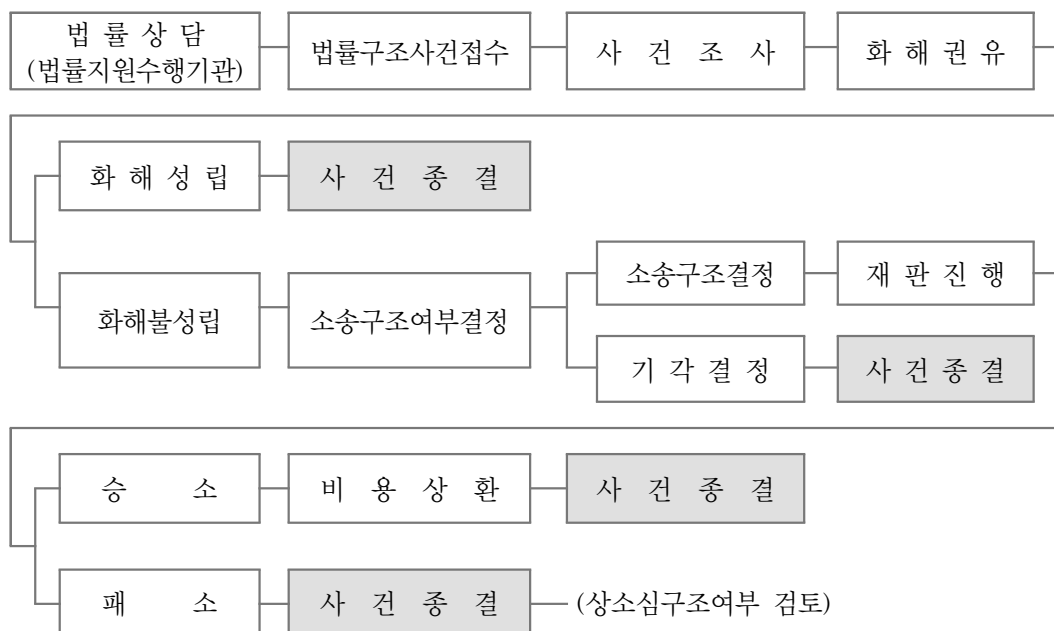
-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은 법무부의 국선변호인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수행기관은 피해자(신청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할 것

- 추후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수입료 등 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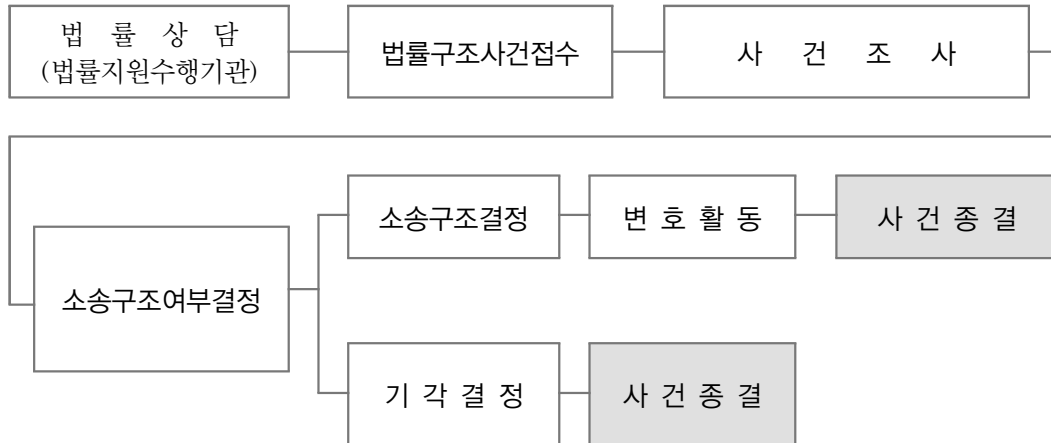
※ 단, 형사소송 지원을 위해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민·가사 소송까지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가사 소송에 대해서는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지원 가능

○ 구조절차

- 민사·가사사건 처리절차



－ 형사사건 처리절차



4 사업 내용

○ 법률지원사업

－ 민사·가사 소송대리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지원 결정 시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

－ 형사소송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법률상담과 피해자의 무료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대리 등을 지원
-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공판절차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 및 참여, 증거물 열람·등사 등이 가능하며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행사

－ 법률상담

- 면접,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상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

○ 법률계몽사업

- －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홍보활동
- － 연계 상담소 및 변호사 등에 대한 법률지원 교육, 워크숍
- － 현지출장 생활법률강연 및 이동법률상담, 무료 대서 등

5 행정사항

- 시·도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시설에 사업내용 안내와 홍보
- 상담소 및 시설 등에서의 상담과정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무료법률구조를 원하는 것이 인지되었을 때에는, 상담소 및 시설 등에서 진단서, 사진 등의 초기 입증 자료 확보를 도와주시기 바람
- 사업수행기관은 상반기 실적보고를 익월 15일까지, 연간 운영실적(정산보고 포함)은 익년도 1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서식 36]
- 또한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서식 37]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폭력 상담·지원과 관련, 우수사례를 관리하며 이를 매반기별로 익월 15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03

아동·청소년성보호사업 운영지침

- I.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II.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 III.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I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I -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현황

1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7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이 제한

2 주요 연혁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00.2.3.) 및 시행(’00.7.1.)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06.6.30. 시행)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도입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학교, 유치원,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 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체육시설)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08.2.4. 시행)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청소년지원 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및 전부개정(’10.1.1. 시행)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0.4.15. 시행)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성인대상 성범죄 추가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개인과외교습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2.8.2. 시행)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가정방문 학습 교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3.6.19. 시행)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경비업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위헌결정(’16)
 - ※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6.11.30. 시행)
 - 취업제한 점검·확인 주기(연 1회 이상) 법제화, 본인 성범죄 경력조회 근거 마련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위탁교육기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8.7.17. 시행)
 - 취업제한제도 변경
 - ※ (기존)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제한 → (변경) 법원이 10년 이내 취업제한 명령·선고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 통합서비스기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기관·단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 추가(대학)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8.9.14. 시행)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지방자치법」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3 취업제한 대상자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자로서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최대 10년) (’18.7.17.부터 시행)
 -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20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 성인대상 성범죄 : 2010.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종전('18.7.17. 이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량에 따라 차등 적용***

*** 3년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이하 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 1년

4 취업제한대상 성범죄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법 제2조 제2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

나. 성인대상 성범죄(법 제2조 제3의2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형법」 제242조, 제243조, 제244조 및 제245조의 죄
 - 「형법」 제288조, 제289조,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 제294조의 죄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의 죄
 - 「형법」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5 취업제한 적용기관

적용기관	적용기관 범위	근거법률	소관부처	비고
1. 유치원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교육부, 교육청	
2. 학교	초·중·고등학교, 기타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교육부, 교육청	
	위탁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교육부, 교육청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교육부	'18.7.17.부터 시행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교육부, 교육청	'18.7.17.부터 시행
3.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교육부, 교육청	평생직업교육 학원 (성인대상 어학· 통역·번역, 성인고시를 교습과정으로 하지 않는 학원 으로 하되 성인 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제외)
4.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법」 제35조	여성가족부	
5.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 제2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수련시설

적용기관	적용기관 범위	근거법률	소관부처	비고
5.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 제2호)	<문화시설> - 공연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 도서관 : 도서관, 문고 - 지역문화 복지시설 :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 문화보급 전수시설 :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1)	문화체육 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이용시설
	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방자치단체	"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	문화체육 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이용시설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교육부, 교육청	"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9조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수목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기타>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둔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의(청소년 이용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8호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

적용기관	적용기관 범위	근거법률	소관부처	비고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호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7.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제10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8.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 제52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	「아동복지법」 제37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18.7.17.부터 시행
9.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10.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업무 종사자에 한함	「주택법」 제2조제3호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11. 체육시설	체육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12.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의료법」 제3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13. 게임(시설)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사업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8호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적용기관	적용기관 범위	근거법률	소관부처	비고
14. 경비업 법인	경비업 법인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경찰청	
15. 청소년활동 기획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기본법」 제3조(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2조제7호, 제9조의2 참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16.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제2조제6호 및 제26조	문화체육 관광부, 지방자치단체	
17. 청소년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청소년게입제공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사업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의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문화체육 관광부, 지방자치단체	
18.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8호	여성가족부	
19. 장애인특수교육 지원센터, 장애인특수교육 서비스제공 기관·시설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특수교육 서비스제공 기관·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제28조	교육부, 교육청	'18.7.17.부터 시행
20.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지방자치법」 제144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18.9.14.부터 시행
21. 아동청소년 대상기관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회관, 과학 교육원 등	「지방교육자치법」 제32조	교육부, 교육청	'18.9.14.부터 시행

6 취업제한 확인·점검

-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노무제공 포함) 제한
- 성범죄경력 조회 절차 및 방법에 대해 홍보·안내
- 성범죄자 취업 점검·확인 의무화 및 점검·확인 결과 공개
-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권한 위임
- 성범죄경력 조회 미 이행 및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성범죄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폐쇄 조치

7 취업제한 기간

- 법 시행('18.7.17.) 이후 형 확정자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최대 10년)
 -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하지 않음
- 종전('18.7.16. 이전) 형 확정자
 - 종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차등적용(형량에 따라 5년·3년·1년 적용)

〈 취업제한 기간 〉

구 분	종전 형 확정된 자		법 시행 이후 형 확정된 자
	'06.6.30.~'09.12.31.	'10.1.1.~'18.7.16.	'18.7.17.~
3년 초과 징역·금고형	형 확정된 날부터 5년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5년	법원이 형 선고시 취업제한 명령 선고(최대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형 확정된 날부터 3년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3년	
벌금형	형 확정된 날부터 1년	형 확정된 날부터 1년	

〈 총괄 현황표 〉

대상기관의 종류	형의 종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06.6.30. ~'08.2.3. (법률 제7801호)	'08.2.4. ~'09.12.31. (법률 제8634호)	'10.1.1. ~'10.4.14. (법률 제9765호)	'10.4.15. ~'12.8.1. (법률 제10260호)	'12.8.2. ~'13.6.18. (법률 제11287호)	'13.6.19. ~'16.11.29. (법률 제11572호)	'16.11.30. ~'18.7.16. (법률 제14236호)	위헌 결정 이후~ '18.7.16.	'18.7.17. 이후 (법률 제15352호)
①유치원, 학교, 학원·교습소,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3년 초과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②체육시설	3년 초과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③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 자활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3년 초과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④청소년상담복지센터	3년 초과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⑤개인교습자	3년 초과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형의 종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06.6.30. ~'08.2.3. (법률 제7801호)	'08.2.4. ~'09.12.31. (법률 제8634호)	'10.1.1. ~'10.4.14. (법률 제9765호)	'10.4.15. ~'12.8.1. (법률 제10260호)	'12.8.2. ~'13.6.18. (법률 제11287호)	'13.6.19. ~'16.11.29. (법률 제11572호)	'16.11.30. ~'18.7.16. (법률 제14236호)	위헌 결정 이후~ '18.7.16.	'18.7.17. 이후 (법률 제15352호)	
⑥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 교사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⑦ 경비업법인(경비원),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제공업·복합유통 게임제공업·청소년활동 기획업·대중문화예술 기획업·청소년게임 제공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⑧ 위탁교육기관, 가정 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⑨ 대학, 학생상담지원 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특수 교육지원센터 및 특수 교육서비스제공 기관· 단체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벌금형	해당 없음									

I-2. 취업(예정)자 성범죄 경력 조회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법 제56조제4항)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취업자(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법 제56조제5항)

2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경력조회 의무자	조회대상자	비고
지자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본인 동의서 불필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사실상 노무 제공자 또는 노무제공 예정자	조회대상자 동의서 필요

-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 가능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 한 것으로 봄(법 제56조제4항)
 -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 한 것으로 봄(법 제56조제5항)

3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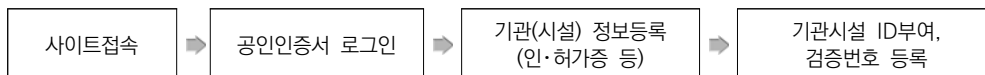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 (조회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 (조회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 ※ 경찰청과 직접 연계된 시스템(복지부 보육정보시스템, 교육부 NEIS) 사용
 - (첨부서류)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경찰서 요청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 (조회대상)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 (조회방법)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또는 「경찰청 범죄 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으로 조회 신청
 - (첨부서류)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신고증 등)

온라인(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

-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서 출력 가능
- 취업(예정)자의 동의(취업예정자가 직접 공인인증처리를 얻어 시설(기관)장이 신청서 작성 및 회신서 확인)

〈 신청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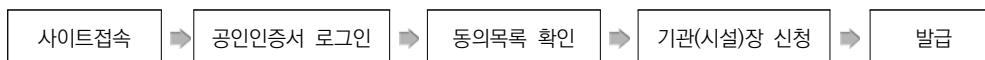
① 기관(시설)장의 시설정보 사전등록



② 취업(예정)자 동의



③ 기관(시설)장 신청, 발급



☞ 성범죄경력 신청·회보의 오·남용 방지 및 보안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실시 (24시간 신청 가능)

- 취업(운영) 예정자 본인
 - (조회방법) 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 (첨부서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신고증 등)

본인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시 첨부서류

- ①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②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인허가증 또는 신고증 등) 1부

※ 운영하려는 자가 본인 조회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교육감, 교육장)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공문 발송 등 별도의 확인 절차 필요

- 범죄 경력 조회 통합서식 사용('18.3.21. 시행)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동의서 및 회신서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4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

-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는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발급
-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 결과를 반영

5 법 위반 시 조치

-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또는 취업하려는)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또는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3항)
 - ※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1차 위반 : 300만원, 2차 위반 : 400만원, 3차이상 위반 : 500만원)
 - ※ 과태료 관련 일반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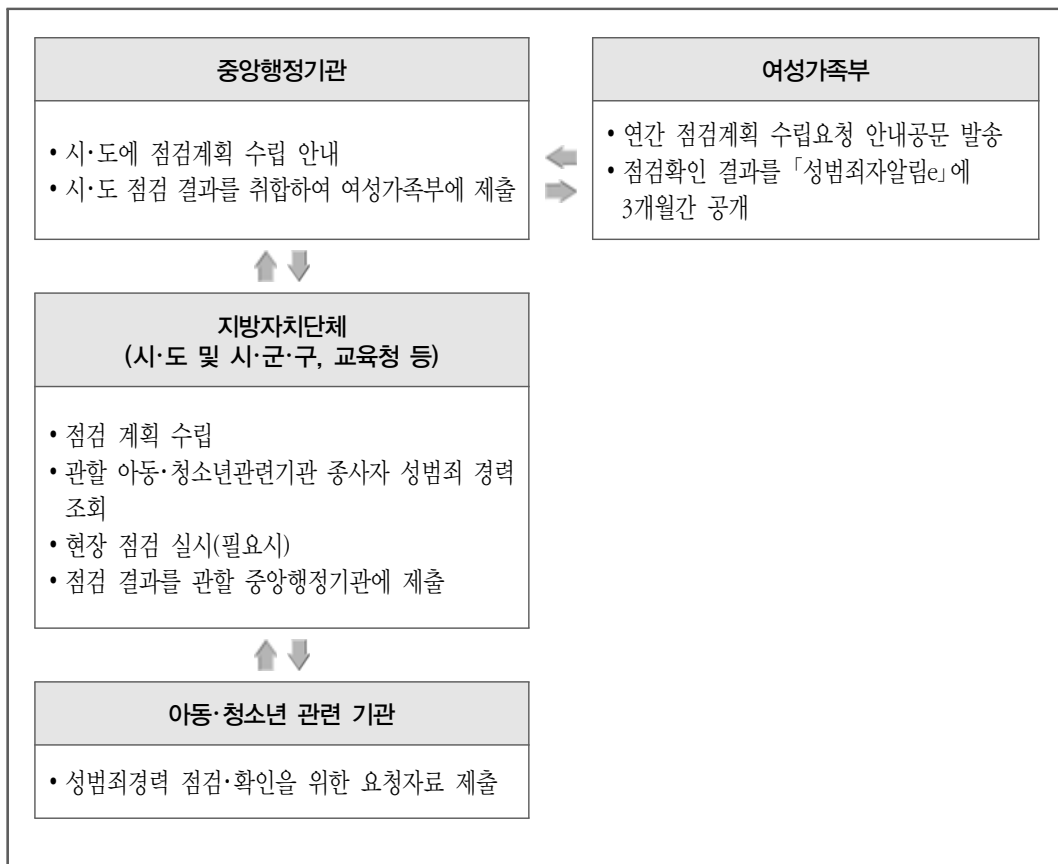
취업중인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1 관련법령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연 1회 이상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법 제57조제1항)

2 점검·확인 개요

- 점검 의무자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 점검 주기 : 연 1회 이상
- 점검 체계



3 점검·확인 사항

-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여부
 -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중인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및 운영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취업중인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에 대하여 채용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여부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중인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및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병행
-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법 제57조제2항)

4 권한의 위임 현황

-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시·도(교육감) 및 시·군·구(교육장), 지방경찰청장에 위임(법 제60조)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5 법 위반 시 조치

-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법 제58조)
 -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취업자의 해임 및 관련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
-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2항)
 -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해임요구 불이행 기관,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
 - ※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1차 위반 : 600만원, 2차 위반 : 800만원, 3차 위반 : 1,000만원)

1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3항, 시행령 제27조

2 주요 내용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확인한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

3 공개 방법 및 절차

- (공개기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등(법 제57조제1항)의 중앙행정기관
- (공개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확인 결과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총 기관 수, 점검·확인 기간, 점검·확인 기관, 점검·확인 인원 수,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명칭 주소 등
- (공개방식) 점검·확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면,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3개월 이상 공개
 - ※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I-5. 종전 형 확정자에 대한 제도 적용 및 불복

1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2 종전 형 확정자 적용

- 법 시행 이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 적용
- 형량에 따라 5년·3년·1년으로 차등 적용

☞ '06.6.30. ~ '10.9.30. 형 확정자 적용

- 3년 초과 징역·금고형 확정일부터 5년
- 3년 이하 징역·금고형 확정일부터 3년
- 벌금형 형확정일부터 1년

☞ '10.1.1. ~ '18.7.16. 형 확정자 적용

- 3년 초과 징역·금고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일부터 5년
-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일부터 3년
- 벌금형 형확정일부터 1년

※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3 취업제한 불복절차

- 신청자 :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사유 : 취업제한 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신청내용 :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 요청
- 처리절차
 - 취업제한 대상자는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면제를 1심 사건법원에 신청
 - 법원은 인용·기각 결정하고, 검사에게 결정문 등본 송부

- 검사 및 대상자는 법원의 인용결정에 7일 이내 항고·재항고 가능
- 법원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 결정문 등본을 여성가족부에 송달

〈 종전 형 확정자 취업제한 불복절차 〉



※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음

〈 종전 형 확정자 적용 방법 〉

☞ 종전 형 확정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 적용 방법

- 성범죄를 범하고 법 시행('18.7.17.) 이전에 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것임

① 법률 제7801호 또는 법률 제8634호 적용

- 형 확정일부터 취업제한기간이 제7801호는 5년간, 법률 제8634호는 10년간 적용되지만, 개정법('18.7.17. 시행)에 따라 취업제한기간 적용

☞ 개정법에 따른 법률 제7801호, 제8634호 적용

- 가. 3년 초과 징역·금고형 확정일부터 5년
- 나. 3년 이하 징역·금고형 확정일부터 3년
- 다. 벌금형 확정일부터 1년

② 법률 제9765호, 제10260호, 제11287호, 제11572호, 제14236호 적용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종료(유예·면제)일부터 취업제한기간은 10년간 적용되지만, 개정법('18.7.17. 시행)에 따라 취업제한기간 적용

☞ 개정법에 따른 법률 제9765호, 제10260호, 제11287호, 제11572호, 제14236호 적용

- 가. 3년 초과 징역·금고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유예(면제)일부터 5년
- 나.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유예(면제)일부터 3년
- 다. 벌금형 확정일부터 1년

③ 현재 위헌결정 이후(2016.3.31. / 2016.4.28. / 2016.7.28. / 2016.10.27.)

- 현재 위헌결정 이후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개정법('18.7.17. 시행)에 따라 취업제한기간 적용

☞ 개정법에 따른 현재결정이후 법 시행일 전까지 대상자

- 가. 3년 초과 징역·금고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유예(면제)일부터 5년
- 나.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유예(면제)일부터 3년
- 다. 벌금형 확정일부터 1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법 제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한 자〔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
 - 상기 사항에 대한 미수범
-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법 제8조)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 ◆ 강간 등 상해·치상(법 제9조)
 -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 강간 등 살인·치사(법 제10조)
 -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법 제11조)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미수범도 처벌)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법 제12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미수범도 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법 제13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법 제14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미수범도 처벌)
-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미수범도 처벌)
-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알선영업행위 등(법 제15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 영업으로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④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 성인대상 성범죄

○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의2호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 ◆ 「형법」 제2편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 ◆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 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 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취업제한제도 일반

Q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인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체육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PC방)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성범죄자가 취업하거나 해당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조치입니다.

Q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대상 성범죄 및 취업제한 기관별 시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06년 6월 30일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도입·시행되었으며, 성인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10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취업제한 대상 기관별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195~196페이지 참조

Q3.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의미는 무엇인가요?

-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경력은 2006년 6월 30일 이후 발생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2010년 4월 15일 이후 발생한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을 말합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은 취업중인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확인·점검하여야 합니다.

Q4. 취업제한제도는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06년 6월 30일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 또는 운영을 제한합니다. 이에 '06년 6월 30일 이전의 성범죄는 취업제한 대상이 되지 않기에 경력조회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없음'으로 회신됩니다.

Q5. 취업하고자 하는 자(사실상 노무제공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취업 후에 확인하여도 되는지요?

A 취업예정자의 경우 취업 근무일 이전에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에 취업 하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며, 취업 후에 실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Q6. 채용중인 종사자의 성범죄경력 조회 주기는 얼마의 주기로 해야 하는지와 점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및 운영여부를 점검·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Q7.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 또는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 중이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발견 즉시 해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취업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았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가 성범죄 경력으로 적발될 경우 운영자 명의변경 등으로 아동·청소년 접촉을 차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운영자 명의변경이 어려운 경우 기관폐쇄, 인·허가 취소 등을 조치하여야 합니다.

※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1차위반 600만원, 2차위반 800만원, 3차위반 1천만원)

Q8. 계약직 근로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근무 중이며, 예산 등에 의거 연초에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성범죄경력 조회’를 매년 실시해야 하나요?

A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된다면 채용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시마다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Q9. 성범죄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A •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고용형태는 해당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일일강사 포함) 등이 모두 해당되며,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청소, 당직, 전산망 유지보수, 차량기사, 용역업체 직원, 교생실습자 등도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되기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경비업법인은 경비업무 종사자, 의료기관은 의료인(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은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 취업이 제한

• 다만, 식재료 납품 및 조리 음식 배달 등 구매품 납품을 위해 단순 방문의 경우에는 사실상 노무자에 해당되지 않기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Q10. 성인대상 성범죄를 규정하는 법률은?

A 성인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의2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말합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주체〉

Q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은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교육감도 학교 등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지?

A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의 범위에 학교 교장뿐 아니라 해당 종사자를 선발하여 학교에 채용할 권한 및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 교육장도 해당됩니다. 이에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합니다.

〈경력조회 대상범위(사람)〉

Q3.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도 성범죄경력 조회를 해야 하나요?

A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과 무관하게 내국인과 같이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성범죄경력 조회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 경력만 확인됩니다.

Q4. 공익근무요원은 성범죄경력 조회 대상자가 되나요?

A 공익근무요원은 사실상 노무제공자에 해당되어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여야 하며, 경력조회 결과 취업제한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관할 병무청에 해당 공익근무요원의 재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Q5.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봉사 후 졸업요건에 필요한 봉사경력 증명에 사용될 수 있는 확인증을 수령할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인가요?

A 자원봉사자는 원칙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이 아니며, 졸업요건에 필요한 봉사경력 확인증 등을 수령하는 것은 자원봉사에 따른 증명서 발급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라고 볼 수 없어 성범죄 경력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Q6.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비전임교원,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조치를 해야 하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8.7.17부터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은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학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비전임 교원,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Q7.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중 이사와 감사에 대하여 법 제56조에 따라 성범죄경력 조치가 가능한지요?

A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중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Q8. 학교를 방문하여 자판기 음료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성범죄 경력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A '자판기 운영자'는 자판기 음료를 교체하기 위한 학교에 단순 방문으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기에 성범죄 경력조치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Q9. 학교장으로부터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학교매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A 학교시설의 일부를 학교장으로부터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학교매점을 운영하는 자는 용역업체 직원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기에 학교 운영자는 성범죄 경력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Q10. 대학에 임시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도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인지요?

A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기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Q11. 학교에서 실시하는 1회성 특강의 강사도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이 되나요?

A 강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하는 것은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회성 강좌나 성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강좌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노무자에 해당되기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Q12.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 회의 등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하나요?

A 기관에 감사의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실비보상 또는 사례비 차원의 비용을 지급할 뿐 통상적인 취업 및 노무 등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Q13. 근로장학생의 경우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근로장학금을 받는 것인데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A 근로장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과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써 사실상 노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Q14. 교사 또는 공무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공무원 임용 시와 같은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범죄경력 조회를 중복해서 시행해야 하나요?

A 공무원 임용 시에 하는 신원조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법상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따라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종류 및 기간 등과 적용 사항이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경력조치 대상범위(기관·시설) 〉

Q15. 도서관이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라면 법 제56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치가 가능한지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감(교육장)도 성범죄 경력조치 요청권한을 갖습니다.

Q16.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의 경우 경비업 법인으로부터 경비원을 파견받아 경비원을 용역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성범죄 경력조치를 실시해야 하나요?

A • 경비업체의 경비업무 종사자가 아파트에 배치되어 경비업무를 하게 될 경우, 경비업체의 종사자로서 성범죄 경력조치를 하였더라도, 아파트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별도로 아파트 관리소장이 성범죄 경력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이는 두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적용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 종사자는 2008.2.4.이후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성범죄경력자부터 취업제한이 적용되고, 경비업 법인의 경비업무 종사자는 2013.6.19.이후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성범죄 경력자부터 취업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Q17.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기관이 직접 성범죄 경력조치가 가능한지요?

A 수탁기관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면 그 기관에 취업 중(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자(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Q18. 아동(유아)대상 체험교육활동 등을 관장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이 법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대상 기관인지?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8.9.14.부터는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포함되므로 ‘유아교육진흥원’을 운영하거나 취업(사실상 노무 포함)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경력조회 증명서류 〉

Q19. 인·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에서 법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사업내용과 사업계획서 등으로 성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기관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인·허가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사업계획서, 프로그램 등)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0.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기 위하여 본인 동의서를 받았는데, 추후 동의서를 재사용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지요?

A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의 제출서류인 동의서는 취업하려는 의사가 있을 때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의 형식적 절차로써, 다시 채용하고자 할 때는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동의서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동의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Q21.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 교육 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은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나요?

A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대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개인과외 교습자’라는 확인서류가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증으로 확인 합니다.

Q22.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회신서를 타 기관에도 공유가 가능한지와 회신서의 유효기간 및 보관해야 하는 기간을 법에 규정하고 있는지요?

A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타 기관에 공유하는 것은 회신서의 목적외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안됩니다. 회신서의 보관기간이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23.

청소년활동기획업소에서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한 경우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 운영'의 관련 기관이라는 증명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요?

A

청소년활동기획업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5호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을 기획·주관·운영하는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인·허가 또는 신고, 등록 등을 받은 기관이 아니기에 청소년활동사업 계획서 또는 청소년활동사업 프로그램 등을 제출토록 하는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Q1.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 기관 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이상 위반 500만원

Q2.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와 위임기관은?

A •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과태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 등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등이 부과·징수합니다.

• 과태료 부과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개별적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Q3.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지요?

A 과태료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Q4.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근무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고 채용하여야 하나,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 해고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요?

A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취업한 후에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 해고 하였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1. 가해자가 2013.7.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2016.12.1.에 징역 3년6개월의 형 확정되고, 그 형의 집행이 2020.5.30. 종료된다고 가정한다면 취업제한 기간은?

A 취업제한 적용기간은 2020.5.30. ~ 2025.5.29.
※ 형 집행(2016.12.1. ~ 2020.5.30.)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적용됨

Q2. 가해자가 2017.3.5.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2018.2.18. 징역 1년 선고·확정되고, 그 형의 집행이 2019.2.17. 종료된다고 가정한다면 취업제한 기간은?

A 취업제한 적용기간은 2019.2.17. ~ 2022.2.16.
※ 형 집행(2018.2.18. ~ 2019.2.17.)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적용됨

Q3. 가해자가 2016.4.8.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2017.6.10.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확정되었다면 취업제한 기간은?

A 취업제한 적용기간은 2017.6.10. ~ 2020.6.9.
※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됨

Q4. 가해자가 2017.1.5.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2017.12.7. 벌금 200만원 선고·확정되었다면 취업제한 기간은?

A 취업제한 적용기간은 2017.12.7. ~ 2018.12.6.
※ 형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됨

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1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2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신설('06.6.30.)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08~)
-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10.1.1.) 및 과태료 세부 기준 마련('12.8.2.)
 -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200만원), 2차 위반(250만원), 3차 위반(300만원)
-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세부 기준 변경('13.6.19.)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 4 위반횟수별 과태료 최고금액 부과 : 300만원
- 신고의무 대상 기관에 '대학' 추가('18.7.17.)

3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 대상시설의 운영자, 종사자(법 제34조제2항)

4 신고절차 및 방법

-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
- 상담 또는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는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 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

5 신고의무 위반시 조치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 제4항)
- 신고의무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신고의무 대상시설

신고의무 대상시설	근거법률
1.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2.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3.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4.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
5.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6.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7. 학원 및 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8.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 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7조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10.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11.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
12.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
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 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호
14.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

7 신고의무 종사자 교육

- 교육목적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홍보 강화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 시설 기관장 및 종사자 관심제고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대처능력 제고로 성범죄 피해 최소화
- 교육대상 : 전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제34조)
 -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기관장 및 종사자도 교육 참석 가능
- 교육일정 : 매년 4~11월
- 교육기관 : 전국 45개 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 신청방법 : 교육을 원하는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직접 신청
 - ※ 교육 인원 및 상황에 따라 찾아가는 교육 가능(해당 지역 센터에 문의)
- 교육내용
 -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보호제도 안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제도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성범죄 신고 요령 및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등)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
 - 기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정책 등
 - ②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시 신고 및 대처법 안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및 유형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시 신고 의무 및 대처 방안
 - 지역사회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 및 협조사항 등



Q1.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시설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추행사건 등이 일어나서 시설장에게 보고했는데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시설의 장 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서 해당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초 발견자가 종사자라 하더라도 과태료는 종사자와 보고를 받은 시설 장에게도 부과됩니다.

Q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 되나요?

A 당해 시설의 책임자 및 종사자에게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신고 절차와 방법이 궁금해요?

A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조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Q4. 2005년에 기관에서 아동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아동만 상담과 치료를 받게 했는데, 갑자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나타나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A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안 시점이 2006년 6월 30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시행 이전이므로 신고의무는 없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의 조사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며, 신고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신고’는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기관에 범죄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신고의 방법은 112신고 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 민원담당 경찰관의 상담 등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는 수사기관에 수사의 단서로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실관계 등 수사가 개시될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12에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기록이 남는데 신고의무자는 실제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그 후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의 성범죄 사건으로 유무죄 확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Q6. 피해자 측에서 신고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 A**
-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거부하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시설장이나 종사자는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신고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Q7.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우리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이들이라 신고하기가 난처합니다. 가해아동이 13살과 15살인데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A**
- 15세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13세 가해자는 형사미성년자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 보호처분의 종류는 아래 관련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감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Q8.

성범죄를 발견한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즉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 성범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즉시’에 대하여 물리적인 시간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신고의무기관에서 ‘신고를 하기 위하여 수사의 단서가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최단시간’을 의미합니다.

PART 01

PART 02

PART 03

PART 04

PART 05

PART 06

PART 07

PART 08

PART 09

PART 10

Ⅲ.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1 총괄

가. 목적

- 본 지침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2019년도 성교육 및 성범죄*예방교육(이하 ‘성교육’이라 함)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방법 등 제반 행정사항을 안내하기 위함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나.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청소년성문화센터에 한하여 적용
-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 및 보조금 사용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 시·도(시·군·구)의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다만,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목적, 동 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적용할 경우, 지역별 이용 대상자의 특성 및 서비스내용 등에 따른 합리적 이유, 불가피성 등이 있어야 함

다. 법적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및 제16조(운영실적의 제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 이상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②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운영실적의 제출)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단체의 장은 매 <u>반기</u>(半期)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성교육 전문기관의 <u>반기별</u> 운영실적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u>반기별</u> 운영실적을 제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u>반기</u>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 <u>반기</u>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이나 성매매, 음란물 등 위기경험에 노출되고 있으나, 성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채 인터넷 음란물, 포대 등을 통해서 그릇된 내용을 습득하고 있는 실정으로
 - 기존의 학교 성교육이 교과과정에서 이론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피상적인 성교육에 그쳐 성에 대한 올바른 성관련 지식 습득 및 성가치관 정립에는 한계 노출
-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성교육 실시 필요
 -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을 한 전국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서비스 제공 필요
 -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교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성교육 공간 구축·운영 또는 이동형 버스를 통해 건강한 성가치관 정립지원 및 성범죄 피해로부터 예방

나. 기본방향

- 멀티미디어 세대인 아동·청소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험형 현장 중심의 성교육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제공
- 아동·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성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갖추어 건강한 성 가치관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토록 지원
- 교육매뉴얼, 유형화된 성교육 공간 배치 등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통합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균질화된 수준과 전문성에 의한 교육서비스 제공

< 체 계 도 >

미션	성교육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비전	지역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		
전략	프로그램	인력관리	운영체계
	▸ 교육서비스 질 관리 ▸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지속 보완 및 개선	▸ 인적자원의 전문화	▸ 사업의 효율적 관리 ▸ 핵심사업 설정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운영

다. 그간의 경과

- '07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21개소: 기존 5개소, 신규 16개소)
- 청소년성문화센터 표준 콘텐츠 개발('07.4)
-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성교육전문가 지원('07.12)
- '08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29개소: 기존 21개소, 신규 8개소)
- '09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35개소: 기존 29개소, 신규 6개소)
- '10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38개소: 기존 35개소, 신규 3개소)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법적근거 마련('10.4.15)
- '11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42개소: 고정형 40, 이동형 2)
- '12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44개소: 고정형 41, 이동형 3)
- '13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0개소: 고정형 43, 이동형 7)
- '14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4개소: 고정형 45, 이동형 9)
- '15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8개소: 고정형 49, 이동형 9)
-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매뉴얼 보완·개발('15.12)
- '16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8개소: 고정형 48, 이동형 10) * 1개소 폐쇄
- '17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8개소: 고정형 48, 이동형 10)
- '18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8개소: 고정형 47, 이동형 11)

라. 주요 사업

-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고정형 및 이동형 성문화체험관 설치·운영
 - 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치원, 각급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등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지역주민,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실시
- 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부모교육, 교사교육, 현장전문가 교육 등
 - 성교육 자원활동가 관리·운영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부모·양육권자와 함께 하는 가족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유형별 아동·청소년 성보호 교육 운영

마. 시설설치

- 사업수행단체 자격요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 이상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 시설규모(고정형)
 - 사무실, 교육장, 성문화 체험관을 합쳐 연면적 165㎡ 이상 공간 필수 확보
 - 몇 개의 구역(section)으로 구성, 각 구역을 순회하면서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 콘텐츠 활용
 - ※ 기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설치·운영 기준) 참조
- 시설 배치도(예시)



- 시설규모(이동형)
 - 45인승 버스(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는 지역에 우선 설치)
 -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구성 내용을 이동형 공간에 맞게 재배치하여 맞춤형 체험 교육이 가능하도록 추진
 - 여성가족부의 표준 콘텐츠 준수
- ※ 신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시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의 컨설팅 실시

3 2019년도 운영 기본방향

가. 기본방향

- 아동·청소년 특성에 맞춘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제공
- 학부모 및 양육권자 대상 성교육, 가족참여 프로그램 강화
- 유해환경 밀집지역, 농어산촌지역 등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예방교육 확대
-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보호 교육, 장애·비장애 통합 성교육 실시
-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성보호 교육 관련 단체·기관의 허브역할 수행
 - 관련 단체 아동·청소년 지도자, 상담자 등 교육 및 시청각 자료 등 전문교육 프로그램 보급 활동
- 지역사회 내 성보호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위한 지역 특성화 활동 전개(지자체 운영 방향에 따라)

나. 성과목표

성과지표	내 용	'19년 목표치
이용자의 수	교육서비스 이용자 수	2,259천명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측정	90점 이상
보수교육 이수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100% 이상 (이직자 및 2월 내 신규 제외)
지역사회 연계	홍보, 협력 및 공동사업 수행	전년대비 5% 증가
언론홍보	보도자료 작성	센터별 반기 1회 이상 (전체 센터의 90% 이상)

* 이용자의 수 : 전년실적 대비 0.1% 증가한 목표 설정

다. 사업 운영

-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로 특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발달단계별 성 인지적 인권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
 - 공통사업은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당해 연도에 우선적·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
 - 지역특성화 사업은 각 센터별로 자체 실정에 따라 수립하여 수행하는 사업
- 공통사업
 1. 체험관 및 이동형 교육장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2. 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성교육
 3. 관내 학교, 아동복지시설,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활동
 4. 상담 서비스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5. 학교관리자 및 성교육 담당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농·산·어촌 지역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7.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홈페이지(www.wesay.or.kr)」 참여 및 실적 입력
 8. 그 밖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지역특성화 사업(예시)
 1. 주말/방학 캠프 등 특별기획 프로그램 운영
 2. 청소년수련활동인증 성교육·성문화 프로그램 운영
 3.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시범 실시
 4.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5. 장애 아동·청소년 등 특수학교 아동·청소년 성보호 교육 실시
 6. 성폭력 가해·피해 학생 상담 및 교육
 7.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연계 프로그램 실시
 8. 그 밖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시·도(시·군·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2019년도 세부 운영계획

가. 예산편성 및 집행

- 지원조건 : 국비, 지방비 50% 이상 매칭
- 예산규모 : 국비 4,417백만원 * 고정형 47개소, 이동형 11개소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4,367백만원(=58개소 × 150.6천원 × 50%)
 - 교재·교구 개발 : 50백만원
- 전년 대비 예산 변동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고 정 형			이 동 형		
	2018	2019		2018	2019	
계	147,930	150,586		147,930	150,586	
인건비	117,512	급여	119,662	106,304	급여	108,249
	9,793	퇴직금	9,972	8,859	퇴직금	9,021
	11,749	4대보험	11,964	10,625	4대보험	10,819
운영비	6,876	경상비	6,988	20,142	경상비	20,497
	2,000	교육훈련비	2,000	2,000	교육훈련비	2,000

* 종사자 인건비(센터장 포함)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 가능

- 고정형 : 150,586천원(국비 75,293천원)

구 분	고 정 형		
	금 액	내 역	
급 여	119,662천원	센터장(1)	30,867천원
		팀 장(1)	23,350천원
		팀 원(3)	65,445천원
퇴직(적립)금	9,972천원	1년 이상 근무자	
4대보험부담금	11,964천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경상비	6,988천원	사업비(성 교육비, 홍보비 등), 관리운영비(공과금 및 제세, 수용비, 시설유지비, 임대료 등), 교통비, 복리후생비, 인건비성 경비 등	
교육훈련비	2,000천원	종사자 역량강화 및 활동가 양성 교육훈련비	

- 이동형(통합형) : 150,586천원(국비 75,293천원)

구 분	이 동 형		
	금 액	내 역	
급 여	108,248천원	팀 장(1)	23,350천원
		팀 원(2)	43,630천원
		운전기사(1)	26,940천원
		시간제강사(1)	14,328천원
퇴직(적립)금	9,021천원	1년 이상 근무자	
4대보험부담금	10,819천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경상비	20,498천원	사업비(성 교육비, 홍보비 등), 관리운영비(공과금 및 제세, 수용비, 차량유지비 등), 교통비, 복리후생비, 인건비성 경비 등	
교육훈련비	2,000천원	종사자 역량강화 및 활동가 양성 교육훈련비	

※ 고정형/이동형 통합센터는 센터사정에 따라 예산통합 운영 가능(사업수입도 통합 가능)

- 이동형(독립형) : 150,586천원(국비 75,293천원)

구 분	이 동 형		
	금 액	내 역	
급 여	112,062천원	센터장(1)	27,164천원
		팀 원(2)	43,630천원
		운전기사(1)	26,940천원
		시간제강사(1)	14,328천원
퇴직(적립)금	9,340천원	1년 이상 근무자	
4대보험부담금	11,200천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경상비	15,984천원	사업비(성 교육비, 홍보비 등), 관리운영비(공과금 및 제세, 수용비, 차량유지비 등), 교통비, 복리후생비, 인건비성 경비 등	
교육훈련비	2,000천원	종사자 역량강화 및 활동가 양성 교육훈련비	

○ 예산집행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여야 하며, 수익금은 보조금과 별도로 분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 인건비(급여, 수당 등), 운영비(사업비, 관리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시설 담당부서의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 규정을 마련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책정을 할 수 있음
- 주요항목(인건비, 운영비) 간 변경에 있어서 5명(5명×12월)의 인건비 집행잔액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후 인건비성 경비 및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음
 - ※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정당하게 집행해야 하며 변경승인 시 변경사유를 첨부하여야 함
- 퇴직적립금 관련: 퇴직적립금은 퇴직연금으로 전환가능하며 지급대상은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함
-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적립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운영비로 사용 가능(여타 종사자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
- 근무시간 중 찾아가는 성교육 출강으로 수령한 강사료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강사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최소한의 시설이용료, 입장료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수익금 전액은 센터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수입 운영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찾아가는 성교육 강사료 수입 및 기타 센터 수입금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성 경비* 및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
 - * (인건비성 경비) 시간외근무수당, 직책수당,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수당, 연차수당, 성과금 등
 - ※ 자체수입금에 대한 사업계획서 별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후원금을 접수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접수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노력
- 세부 프로그램 진행에 소요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직원 외 강사료는 운영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운영)위원을 구성하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음

나. 인사관리

○ 직원의 구분 및 정원

－ 직원은 센터장, 팀장, 팀원·강사, 운전기사(이동형의 경우)으로 구분함

- 고정형 : 5인(센터장 1인, 팀장 1인, 팀원 3인)
- 이동형(통합형) : 5인(팀장 1인, 팀원 2인, 기사 1인, 시간제 강사 1인)
- 이동형(독립형) : 5인(센터장 1인, 팀원 2인, 기사 1인, 시간제 강사 1인)

< 업무분장(예시) >

구 분	담 당 업 무	비 고
센터장	• 청소년성문화센터 업무총괄 • 대외홍보, 협력 및 자문 활동 •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찾아가는 성교육 강의 • 예산 및 인사관리	
팀 장	• 프로그램 기획·운영 • 자원활동가 관리 및 운영 • 매뉴얼 및 자료 구축 관리 •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찾아가는 성교육 강의 • 기타 센터 행정업무	
팀원·강사	•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찾아가는 성교육 강의 • 교육일정 및 시설관리 • 교육과 관련된 행정 및 회계업무 • 홍보활동 및 각종회의 업무 • 실적관리 • 홈페이지 관리 • 기타 센터 행정업무 • 이동형 시간제 강사: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수행 및 교육관련 행정업무 등 지원	
업무지원 (수탁기관 등)	• 버스 운행 및 시설 관리 • 시설관리 및 유지 • 회계업무 지원 ※ 별도의 팀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무방	

※ 센터별 업무분장은 센터 특성에 맞게 센터장이 정하며,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직영 및 위탁기관의 대표가 당연직 센터장인 경우(지자체장 등)실질적인 청소년성문화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상근직 센터장을 반드시 임명하여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상임 센터장은 2인 이상의 팀원·강사 중 선임자를 팀장으로 임명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
- 직원의 선발: 채용의 책임은 위탁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직영인 경우)의 장에게 있음
 - 지방자치단체 직영인 경우 센터장 및 직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 위탁인 경우 센터장은 위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기타 직원은 센터장이 임명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 위탁기관 변경 시에는 직원 승계를 통해 업무의 연속성이 있도록 할 것
 - 일시적 교육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이동형 센터에 한하여 채용하는 시간제 강사 업무는 이동형 센터 팀원의 업무를 고려하여 각 센터에서 정하며 경력단절여성 우선 채용(권장)
- 직원의 자격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구 분	자 격 기 준
성교육 전문 기관의 장 (센터장)	1.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팀원 및 전문강사	1.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센터장·팀원·강사 등 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 다만, 지역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자격기준을 달리 정하여 채용 가능(이 경우 협의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함)
- 단, 6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신규직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 인정기준

- 공무원으로서 아동·청소년 관련 보직 근무기간
- 청소년시설 근무기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 근무기간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한 단체의 근무기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기간
- 교육 및 상담기관 등 단체의 근무기간
- 기타 성교육 관련 민간기업(법인) 관련분야 근무기간 및 프로젝트 수행경력으로서, 이를 증빙할 자료(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제출)와 법인대표의 의견을 제출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 기관

○ 직원의 신분보장

-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음
- 직원의 정년은 만 65세까지로 함

다. 복무관리

○ 근무형태 및 시간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원은 주 5일(40시간) 근무를 준수해야 함
- 정규근무 시간은 평일 09:00~18:00으로 함(탄력근무 적용 가능, 단 탄력근무시 업무 대행자 지정)
- 자연권 수련원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관요일 및 근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일 휴무 시에도 센터이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관하여야 할 경우 휴관 개시일 1주일 전에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함(설·추석 명절 및 공휴일 제외)

○ 출강

- 찾아가는 성교육을 제외한 근무시간 중 외부기관으로의 개인적 출강은 센터 업무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만 허용되며, 개인당 월 2회(총 6시간)를 넘지 못함

○ 휴일 및 휴가: 근로기준법 준용

라. 시설 등 안전관리

-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 강구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자체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장에게 지시하고 안전문제 우려사항 발생 시 즉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 받아 시정명령을 요구할 것
 -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점검 결과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안전점검 결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조치해야 함
 - 이용 청소년 등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마. 교육훈련

- 청소년성문화센터 전 직원은 현장 전문인력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수하지 않아 이를 대체하는 다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여성가족부(또는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현장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비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훈련 실시
 - 센터 종사자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 참여조치(종사자 교육여비 등 지원)
 - ※ 교육훈련비를 활용한 교육은 현재 담당업무에 관련한 교육과정으로 한함
 - ※ 교육훈련의 경우, 청소년성문화센터로부터 교육훈련비를 납부 받을 수 있음

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홈페이지(www.wesay.or.kr) 이용

- 청소년성문화센터 업무의 정보화 시책에 따라 현재 오프라인에서 수작업을 통해 관리 운영되는 실적을 온라인상에서 입력 및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필요시 즉시 자동화된 통계 결과 출력 환경 구축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교육에 사용하는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동영상 등을 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함
 - ※ 등록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 동영상 등 교육자료의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 관련 모든 실적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홈페이지 (www.wesay.or.kr) 인트라넷을 통해 입력하고 시스템 오류 등 부득이한 경우 지자체는 수기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스템 입력에 갈음할 수 있다.
- ※ 교육 등 센터 운영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보고업무로 처리

사. 각종 장부의 비치

- 관리에 관한 장부
 - 연혁에 관한 기록부, 직원 관계철, 회의록 관계철, 소관법인의 정관, 문서철, 문서 접수·발송대장 등
- 사업에 관한 장부
 - 시설이용자 관계서류: 이용자 현황
 - 교육 및 상담일지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비품관리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 서류 등
- 위의 각종 장부 및 문서 등은 수탁주체의 책임하에 청소년성문화센터 명의로 분리하여 5년간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변경 시 이관 조치

아. 「청소년 성 교육 기관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사업」 운영

- 목적
 - 아동·청소년 대상 성 교육 수요증가 및 다양한 교육수요에 따른 청소년 성 교육 현장 종사자 및 관계자의 대응능력 강화 필요
 -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아동·청소년 성 교육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 종사자 등의 역량 향상을 위한 실무자 전문교육 확대

- 선정된 사업자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사업실적 관리 및 보고, 센터 간 협조체제 구축 등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주요내용

①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및 관계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등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 센터장, 팀장, 팀원·강사 등 종사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추진

②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대상별, 성별, 특성별 교육 만족도 조사 및 강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컨설팅 추진
- 교육 모니터링 등 강사·강의 실적 관리
-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굴·보급

③ 사이버 교육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홈페이지(www.wesay.or.kr)를 통한 성 교육 관련자료(대상별, 주제별, 매체별) 구축으로 성교육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적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장 종사자를 위한 성 교육 정보 지원.
- 성 교육 관련 기관 네트워킹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현황 관리 등을 통한 우수 프로그램 정보제공 강화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사업 및 홍보실적, 사업평가 및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등 여성가족부에 보고

○ 선정방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공모를 통해 “기관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보수교육사업”의 수탁사업자 선정

자.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구성·운영

○ 위상 및 목적

- 청소년성문화센터간의 프로그램 공유 및 공동협력사업을 통한 유대강화 등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둬

○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 협의회의 회원단체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성문화센터(고정형·이동형)로 구성됨
- 회원단체의 의무 및 권리는 협의회와 정관과 제규정에 따름
- 협의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를 둠
- 협의회는 공동대표 3인 이내, 감사 2인을 두며, 공동대표 중 1명은 상임대표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각 권역별 대표 1인과 당연직 운영위원인 여성가족부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상임대표가 겸임함

○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 총회는 정기총회(연 1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상임대표가 소집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
-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회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협의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분기별)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상임대표가 소집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회원단체인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납부한 기여금 및 회비에서 충당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협의회 또는 각종 단체의 회비, 기타 분담금으로 사용하지 못함

5 교육프로그램 운영

- 수요자 중심, 성평등 관점 및 생애주기별·발달단계별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 고정형과 이동형 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고정형 : 체험관을 활용한 교육 우선 실시(연 300건 이상)
 - 이동형 : 저소득층 및 접근성이 어려운 학교 및 단체 등 우선 실시
- 대규모 1회성 교육(방송 등) 지양, 소그룹으로 대상 특성을 반영한 참여형 프로그램 지향

-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제작 표준 매뉴얼에 의거 운영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홈페이지(www.wesay.or.kr) 등록되지 않는 매뉴얼, 교재, 교육프로그램 및 영상 등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등록 및 공개 될 교재, 매뉴얼, 프로그램, 영상 등은 내·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
 - ※ 교육프로그램 평가위원회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전문가로 구성
 - ※ 원칙적으로 심의, 검증을 거쳐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홈페이지(www.wesay.or.kr) 등록한 이후에 관련 교육에 사용할 수 있음
-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기관 및 지자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
 -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에서 제작한 동영상 및 교재 활용

6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실적보고·평가

가. 사업계획서 제출

- 각 시·도는 확정내시된 예산에 따라 해당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연도 1월 15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 기존시설 사업계획서 및 신규시설 사업계획서 제출양식: 서식 9~10 참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사업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각 시·도에 수정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음

나. 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점검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장은 매 반기(半期)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 운영실적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
 - 반기별 운영실적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

- 각 시·도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반기별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각 시·도는 전년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를 익년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 추진실적 점검
 - 분기별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은 사업 추진실적 및 자료 등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요구하여 점검할 수 있음

다. 사업평가 및 현장점검

- 여성가족부장관은 각 시·도 및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한 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평가 영역(예시) :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 목표량 대비 달성률,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자 만족도, 현지평가, 청소년성문화센터 직원에 대한 역량강화 정도
- 연도 내 최소 1회 이상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내실화 도모
 - 목적 : 지자체의 사업수행기관 관리 및 관련 실적 보고 등 점검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 방법 : 반기별로 나누어 점검표 및 운영지침에 의한 현지 방문 확인
 - ※ 세부실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별도 확정 통보 예정
 - 주요 점검 내용
 - (인건비, 운영비 현황)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회계관련 서류비치·관리실태 등
 - (시설이용료, 입장료 등 관리현황)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 (기금사업 수행실태) 복권기금 지원사업 수행의 적정성 여부
 - (시설의 운영상황) 시설 기능보강 여부, 안전실태 등
 - (기타 공통사항)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회계 관련 서류의 비치·관리 실태, 시설 만족도, 시설 기능보강 여부, 안전 실태 등, 시설 종사자, 이용자 등 현장의 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 현장점검 역할분담 및 실시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기별로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상반기 7.31, 하반기 11.30일까지)
 - (여성가족부) 반기별 지역별 1개 센터 이상 점검(예정)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점검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전반적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로 공문 제출
 - ※ 시·도별 반기별로 최소 1~2개소 이상 운영실태 점검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침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 관련자료 준비 등 점검 협조
 - 2019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자체 운영계획서
 - 사업비 및 시설이용료 등(잔액 확인을 위해 점검당일 통장정리 완료 요망)
 - 사업에 관한 장부(이용자 현황, 교육 및 상담일지),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예산서 및 결산서, 증빙서류 등)
 - 시설종사자 채용서류(개별기준 및 교육여부 확인 가능토록 준비)
 - 기타 점검에 필요한 서류 등

7 직영 및 위탁운영

가. 직영

- 해당 시·도(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 포함) 및 시·군·구 조례 등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설치·운영

나. 법인 설립 운영

-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
- 법인 설립시 지자체 또는 법인 단체는 법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년성문화센터 인력을 법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음

다. 위탁운영

(1) 기관(단체)의 선정과 해지

-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행단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참조

- 위탁운영시 공개 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름
- 위탁계약의 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계약 기간, 위탁대상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그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탁계약 기간
 -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함. 단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센터 종사자는 수탁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직할 수 없음

8 국고보조사업 행정사항

- 국고보조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가재정법」 및 동 지침에 의함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 신규시설 개관 지연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시설 설치 각 시·도는 개관시기를 준수할 것
- 신규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승인 후, 개관 시까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0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 I.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공통지침
- II.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 및 이용
- III.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개별지침
- IV.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 V.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기능보강
- VI.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 VII.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기타 지원

I .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공통지침

1 개 요

가. 근거 법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
-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내지 제24조

나. 시설 현황

(2019. 1월 기준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96	22	10	7	3	5	4	2	12	2	1	3	4	6	3	9	3
일 반 지원시설	25	6	3	2	1	1	1	1	3	1		1	1	1	1	1	1
청소년 지원시설	15	5	2	1		1	1							1	1	3	
외국인 지원시설	1								1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2	3	2	1	-	1	-	-	1	-	-	1	1	-	-	2	-
자활지원 센터	12	1	1	1	1	1	1	-	3	-	-	-	1	1	-	-	1
대안교육 위탁기관 ¹⁾	2	1														1	
상담소	29	6	2	2	1	1	1	1	4	1	1	1	1	3	1	2	1

1)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지원시설의 부속시설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근거

다. 시설 종류 : 법 제9조, 제15조, 제17조

구분	시설 종류	입소·이용 대상 (기본입소기간)	주 요 기 능	연장사유 ²⁾ 및 기간
생활 시설	일반 지원시설	일반성인 성매매피해자등 (1년)	•숙식제공, 전문상담 •의료·법률지원 •사회보장 급부수령 지원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상담원 의견 반영 (1년 6개월)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등 (19세미만)	•일반지원시설과 동일 •진학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기관 취학 연계 등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 상담원 의견 반영(2년)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외국인성매매피해자 (1년)	•피해자 긴급보호 •통역서비스 제공 •전문상담, 의료·법률 지원 •대사관 등 관계기관 연계 •숙식제공, 귀국지원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 •성매매피해자로 수사 중인 경우(사건을 불기소 처분, 공소제기 할 때까지) (연장)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	탈성매매 여성으로 자활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자(2년)	•일정기간 주거 지원 등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상담원 의견 반영(2년)
이용 시설	상담소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긴급구조, 현장방문 상담 •의료 및 법률문제 지원 •지원시설 등 관련기관 연계 •집결지 현장지원사업(15개소) 등	-
	자활 지원센터	탈성매매 여성으로 자활 지원이 필요한 자 (1년)	•탈성매매 여성 자활역량 강화 •전업준비를 위한 훈련 •공동작업장 등 일자리 제공 •취업 및 창업 지원 •외부자원 활용 연계망 구축 •취업·창업자 사후관리 등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기본이용기간 포함 최대 4년까지 이용 가능
	대안교육 위탁기관 ³⁾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등	•의무교육 및 자활교육 •사회적응강화 훈련 지원 등	-

2) 장애인 입소자 입소기간 연장 신설(본 지침의 4편 III.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개별지침 참조)

3)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지원시설의 부속시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근거

2 상담소·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등의 설치

가. 설치·운영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개인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10조제2항)

나. 설치 기준(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구 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설치 기준																			
입지조건	시설의 적절한 분포,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교통편의 등 충분히 고려																			
구조 및 설비	① 일반·청소년·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기본: 거실,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함 - 예외 • 목욕실, 세탁장, 화장실 겸용 가능 • 입소자 정원이 10인 미만인 지원시설은 사무실과 상담실 겸용 가능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형편에 따라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② 자활지원센터 - 사무실, 상담실, 공동작업장, 교육실(공동작업장과 교육실은 겸용 가능) ③ 상담소 - 기본: 사무실, 면접상담실, 전화상담실, 회의실, 보호실 • 보호실은 상담자 일시 보호시설로 9.9㎡ 이상이어야 함 - 예외: 보호실은 상담소 형편에 따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설치규모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th>최소면적</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지원 시설</td><td>입소정원 10명 이상</td><td>9.9㎡×입소정원</td></tr> <tr> <td>입소정원 8명 이상 10명 미만</td><td>82.62㎡</td></tr> <tr> <td>입소정원 5명 이상 8명 미만</td><td>69.30㎡</td></tr> <tr> <td>입소정원 5명 미만</td><td>34.65㎡</td></tr> <tr> <td colspan="2">자활지원센터</td><td>99.15㎡</td></tr> <tr> <td colspan="2">상담소</td><td>49.59㎡</td></tr> </tbody> </table>		구 분		최소면적	지원 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	9.9㎡×입소정원	입소정원 8명 이상 10명 미만	82.62㎡	입소정원 5명 이상 8명 미만	69.30㎡	입소정원 5명 미만	34.65㎡	자활지원센터		99.15㎡	상담소		49.59㎡
구 분		최소면적																		
지원 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	9.9㎡×입소정원																		
	입소정원 8명 이상 10명 미만	82.62㎡																		
	입소정원 5명 이상 8명 미만	69.30㎡																		
	입소정원 5명 미만	34.65㎡																		
자활지원센터		99.15㎡																		
상담소		49.59㎡																		

※ 이용시설(상담소, 자활지원센터 등)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등으로, 생활시설(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등)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다. 설치 절차(시행규칙 제5조, 제22조)

구 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설치 절차
설치 신고서 제출	○ 신고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법인정관, 재산목록,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등의 평면도,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및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을 확인(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
설치심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설치기준, 종사자 자격요건 등
설치신고 증명서 교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인 ※ 성매매피해자 청소년지원시설은 “청소년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발급·교부
변경신고	○ 상담소등 신고시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사항: 상담소등의 장,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 변경 - 구비서류: 변경통지서, 입소자조치계획서, 재산목록, 설치신고증명서 등
폐지·휴지 등의 신고	○ 상담소등 폐지·휴지 및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시행규칙 별지 제13호) - 구비서류 •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13호) • 상담소등 입소자·이용자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 1부 • 상담소등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 1부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 1부 • 상담소등의 설치신고증명서(폐지하는 경우만) • 상담소등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 및 자격증사본(휴지 전과 종사자를 달리하여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 상담소등의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폐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
설치·변경 폐·휴지 등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직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 설치신고증명서교부일, 변경신고일,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內

- ※ 시설 운영주체 변경: 운영주체가 변경될 경우, 폐지신고 후 새로이 설치신고를 해야 함
 - 단, 시설 운영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지속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존 시설에 준하는 예산지원 가능
- ※ 전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 미설치(미신고)된 시설은 운영비가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기편성 되었더라도 신고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 ※ 명칭사용 특례(법 제35조): 상담소등의 장은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안전·진학·취업·자활·피해회복을 위한 필요 서식에 낙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상담소등의 기관 명칭을 별도 명칭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

라. 상담소 등의 폐쇄 등(법 제31조)

- 상담소 등의 업무정지 또는 폐지 명령 및 폐쇄권자: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포함)
- 업무정지·폐쇄 등의 사유
 - 지원시설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0조제3항)
 - 자활지원센터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5조제4항)
 - 상담소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7조제4항)
 - 상담소등의 보고제출의무 미 준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7조제1항)
 - 상담소등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한 경우(법 제29조)
 - 상담소등의 장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이용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관련법 참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는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상담소에 임시보호를 한 경우
 -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청문 실시: 업무정지 또는 폐지 및 폐쇄를 할 경우 별도의 청문절차법을 준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5 참조
 - 처분의 통지 및 사후 조치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정지 등을 결정한 때는 대상자에게 처분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행정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별표 5])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시설 폐쇄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성매매피해자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지원시설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시설의 입소자를 전원 수용할 다른 적당한 지원시설이 없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	2차	3차
1. 상담소등이 법 제10조제3항, 법 제15조제4항 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등 폐쇄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상담소등을 영리 목적으로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등 폐쇄
4. 상담소등의 장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범죄를 범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상담소등 폐쇄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설치 목적이 달성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상담소등 폐쇄		
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등 폐쇄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는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상담소에 임시보호를 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등 폐쇄
나.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등 폐쇄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15조 별표 4)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 제1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나. 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1)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休止)한 경우	법 제38조제2항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운영을 재개(再開)한 경우	법 제38조제2항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다.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 제2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라.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 제2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3 지원·상담·자활시설의 종사자

가. 상담소 등 종사자의 수(시행규칙 제7조 「별표 3」)

구 분	상담소	자활 지원 센터	지원시설				
			8명 미만	8명 이상 10명 미만	10명 이상 15명 미만	15명 이상 20명 미만	20명 이상
상담소 등의 장 ⁴⁾	1	1	1	1	1	1	1
사무국장	-	-	-	-	-	1	1
상담원	3	2	1	2	2	3	4
직업훈련교사	-	2	-	-	-	-	-
사무지원	1	1	-	-	1	1	1
취사원/세탁원	-	-	-	-	1	1	1
관리인	-	-	-	-	-	-	1
총 계	5	6	2	3	5	7	9

1. 지원시설에서 직접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직업훈련교사는 상담원으로 볼 수 있다.

2. 자활지원센터에서 외부 강사로 하여금 자립자활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직업훈련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상응하는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소등(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제외한다)의 장은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4.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의 퇴직 등으로 일시적인 결원상태가 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별기준 중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둔 경우에는 1년간 이를 각각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로 볼 수 있다.

나. 종사자 자격기준

○ 일반 기준

- 상담소등의 장, 사무국장, 상담원, 직업훈련교사는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근거⁵⁾하여 청소년지원시설(대안교육 위탁기관 포함) 및 상담소 모든 종사자의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관할경찰서)

4) 상담소 등의 장: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의 장

5) 청소년지원시설 및 상담소 이외의 경우 시설 자체 규정에 따라 필요 시, 경찰서 협조를 받아 실시

○ 개별 기준(시행규칙 제7조 「별표 2」)

직종별	상담소 등 종사자 자격기준
상담소 등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3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무국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상담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여성 지원시설만 해당한다)
직업 훈련교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사무지원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개별 기준상의 경력인정 범위(상근경력 인정 원칙)

- 비상근 근무자 및 자원활동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월
 예) A라는 자원봉사자가 2014년 1월에 1~3째 주까지 매주 15시간을, 4째 주에는 12시간을 근무하고, 2월에는 총 65시간을 근무한 경우, A의 근무 경력은 1개월 3주로 산정
- 경력산정 시 유의사항 : 급여 지급과 관련된 경력 산정과는 무관, 4주를 1개월로 계산

○ 자격기준 특례(수습종사자)

- 사무국장,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의 퇴직 등으로 일시적인 결원 상태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의 개별기준 중 사무국장,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둔 때에는 1년간 이를 각각 사무국장,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로 볼 수 있음

○ 종사자 신규채용 및 복무

- 종사자 신규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채용 원칙임
- 상담소등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은 상담소등의 장, 사무국장 및 상담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음(별지 제11호 서식)
 - ▶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았던 신분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 비밀엄수 등의 의무 : 상담소등의 장이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됨

시행규칙 제7조 별표 3 '상담소등의 종사자 수'에 포함되는 종사자 주요 복무

-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 근무상황부 또는 출근부(근무시간 기재)는 반드시 비치하고 외출, 조퇴 등 이석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반드시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비치
 - ▶ 근무시간 중 외부 의료·법률지원, 회의, 교육, 워크숍 등으로 이석을 해야 할 경우 최소 인원(1명)의 사무실 대기 조치 또는 외부전화 착신을 해 두어야 함
-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함
 - ▶ 다만,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 예방교육, 성매매피해자를 위하여 상담을 나가는 등 고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위의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근무상황부, 출장명령서, 출장복명서, 상담일지 등) 비치
- 근무시간 중 대학출강 등 타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는 겸직으로 봄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의 장은 상담소등의 종사자 중 겸직 자가 있는 지를 반기별로 확인,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상근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

다. 종사자 소진방지

- 상담소 등의 장은 종사자 소진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자체 운영비 내에서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건강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 지원 가능 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심리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은 참여 지원 가능(단순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불가)
 - ▶ 지원가능액수: 연간 1인당 20만원 범위

라. 종사자 신고의무제도 안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 신고 절차 및 방법
 - 신고의무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
 - 상담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 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
- 신고의무 위반 시 조치: 신고의무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

○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신고 절차 및 방법

-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의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신고 절차 및 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or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거나, ‘희망의 전화’ 129에 전화로 신고
- 또는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도움신청하기 메뉴를 활용하여 신고

마. 종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

- 교육대상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 2 상담원 자격 요건 개별기준 충족하는 자
 - 성매매방지시설 설립준비자(해당 지방자치단체 확인공문 혹은 설립주체가 법인일 경우 설립계획서 제출)
 - 여성폭력방지기관 종사자 및 근무 경력자
- 교육시간: 이론 100시간, 실습 20시간
-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7조 별표 2 3. 상담원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 참조
- 교육생 선발: 시설·상담소등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 ※ 여성폭력방지기관 종사자 및 근무경력자 대상 교육생 모집: 교육기관에서 선발기준 및 교육인원 별도 공고
- 교육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수료기준: 이론 90%, 실습 90% 이상 출석 시 수료 인정
 - ▶ 출석시간 미달(중도포기자)로 인한 교육 미수료자가 추가교육을 통해 교육을 수료할 경우 전액 자비 부담
 - 50% 미만 수강 시 처음부터 재수강 후 수료
 - 50% 이상 수료 시 1년 이내 재수강할 경우 미수강 부분만 수강 후 수료
 - 50% 이상 수강하였어도 1년 이후 재수강 시에는 처음부터 재수강
 - ▶ 출석시간 현장실습은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성매매방지 시설·상담소등에서 수행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할 경우 소속기관 실습 허용(증빙서류 제출): 만 1세 이하 영아를 양육 중인 여성, 3급 이상 장애가 있는 교육생, 수습종사자
- 교육비 지원: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비로 지원
 - 단, 교육비의 일부는 교육생이 부담(1인당 10만원 사전 납부)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상담원 등 종사자 보수교육

- 교육대상: 성매매방지 지원시설 및 상담소등의 종사자
- 교육시간: 8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18조 참조
 - ▶ 각 상담소는 보수교육 과정에 매년 최소 1명의 상담원이 '청소년 지원 전문 과정'에 연 1회 이상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야 함(의무사항)
- 교육생 선발: 상담소 등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교육신청서 직접 접수
 - ※ 연간 교육일정, 선발기준 및 교육인원은 교육기관에서 별도 공고
- 교육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수료기준: 90% 이상 출석 시 수료 인정
 - ▶ 출석시간 미달로 수료하지 못한 경우 추가교육을 통하여 수료할 수 있음
- 교육비 지원: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비로 지원(여비는 제외)
- 특징: 상담소 등의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인 경우는 본 보수교육의 수료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음
 - ※ 본 보수교육 수료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개별적으로 면제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http://edu.welfare.net>)하고 수료증을 우편 혹은 방문 제출함으로써 면제받을 수 있음

4 지원·상담·자활시설의 운영 및 재무회계관리

가. 운영위원회 구성(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목적 :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시설의 장, 시설거주자(이용자) 대표, 시설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종사자 대표, 해당 시·군·구 소속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시설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 시설장의 친인척 등 시설장과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에서 제외
- 임명 또는 위촉 : 관할 시·군·구청장
- 위원 임기 :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운영 : 분기별 및 수시 운영(회의록 작성 및 보고 연1회)
 - ▶ 서면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고)

나. 장부 등의 비치(시행규칙 제10조 별표4)

장부의 종류		
운영에 관한 장부	사업에 관한 장부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① 상담소등 연혁에 관한 기록부 ② 직원관계철(인사기록카드·이력서·사진 포함) ③ 회의록철 ④ 소속법인정관(법인의 경우) 및 관계결의 서류 ⑤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⑥ 문서 접수·발송대장 등 ⑦ 상담원 교육·훈련 관계 서류	① 상담소등 입소·이용자 관계 서류 (신상조사서, 건강기록부, 입소·퇴소자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상담, 법률지원의 내용 등) ②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 상담 시 대상자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상담내용은 반드시 상담일지에 기록 및 철저한 보안 유지 ▶ 상담관련자료는 최소 3년간 보관 ③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 관련서류) ④ 상담원 교육·훈련 관계 서류 등	①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②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③ 예산서 및 결산서 ④ 비품 출납대장 및 관리대장 ⑤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 증명 서류 ⑥ 시설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⑦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 서류(5년 이상 보관)

다. 재무회계 등 관리

- 재무회계 관리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재무회계관련 법령을 준용
- 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
- 보조금 집행
 - 계좌입금,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온라인 입금으로 지출
 - ※ 부득이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가능
 - 회계연도가 종료하면, 당해 연도에 교부된 보조금은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 사업비 잔여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액은 반납 조치함
- 통장 및 장부관리
 - 국고보조금 통장은 후원금 및 자부담 통장 등과 별도관리
 - 총계정원장, 수입·지출보조부, 지출증빙서류 등을 구비하고 적정 관리
 - ▶ 총계정 원장의 일련번호, 보조부의 일련번호, 지출증빙서의 일련번호를 일치시켜, 비교 대조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총계정원장은 통장의 입·출금 및 잔액과 일치하여야 함(이자발생액 제외)
 - 총계정원장 보조부는 사업별, 세목별로 구분관리
 - 예) 사업 구분: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세목 구분) /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의료·법률·직업훈련과 치료·회복 프로그램운영으로 세목 구분) / 집결지 현장지원사업 /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
 - 총계정원장 보조부 각각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철함
- 모든 수입과 지출은 내부 품의서에 따른 결재 후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
 - 재무·회계와 관련한 자료는 5년 이상 보존
- 지출 증빙서류 철저
 - 지출결의서: 지출내역을 6하 원칙에 의거 기재 후 반드시 내부결재 득하고 처리
 - 지출증빙서류는 총계장원장 보조부 각각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철하고 월별(분량에 따라 분기별)로 편철하여 보관
 - ▶ 지출증빙서류 표지에 해당 지출증빙서류의 지출액을 기재하고 담당자와 책임자 날인 할 것

- 세금계산서(계산서), 청구서, 견적서, 영수증, 입금증, 카드매출전표, 내부결제 문서(품의서) 등 관련 문서 첨부
- 시설 운영 및 재무회계 등 관리에 중대한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평가 및 차년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음
 - ▶ 관리미비사항: 회계부정 집행 등 중대과실 지적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미보완, 운영실적 보고기한 경과 등

5 지원·상담·자활시설의 안전관리

가. 시설의 안전점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참고)

- 화재보험 가입: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대인·대물 보험 가입
- 시설의 장은 소관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실시 및 위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 시설의 장은 정기 안전점검 결과 당해 시설이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때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수시 안전점검 실시
 - ▶ 안전점검 요청기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시설물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안전점검 기관
- 시·군·구청장은 시설로부터 결과를 제출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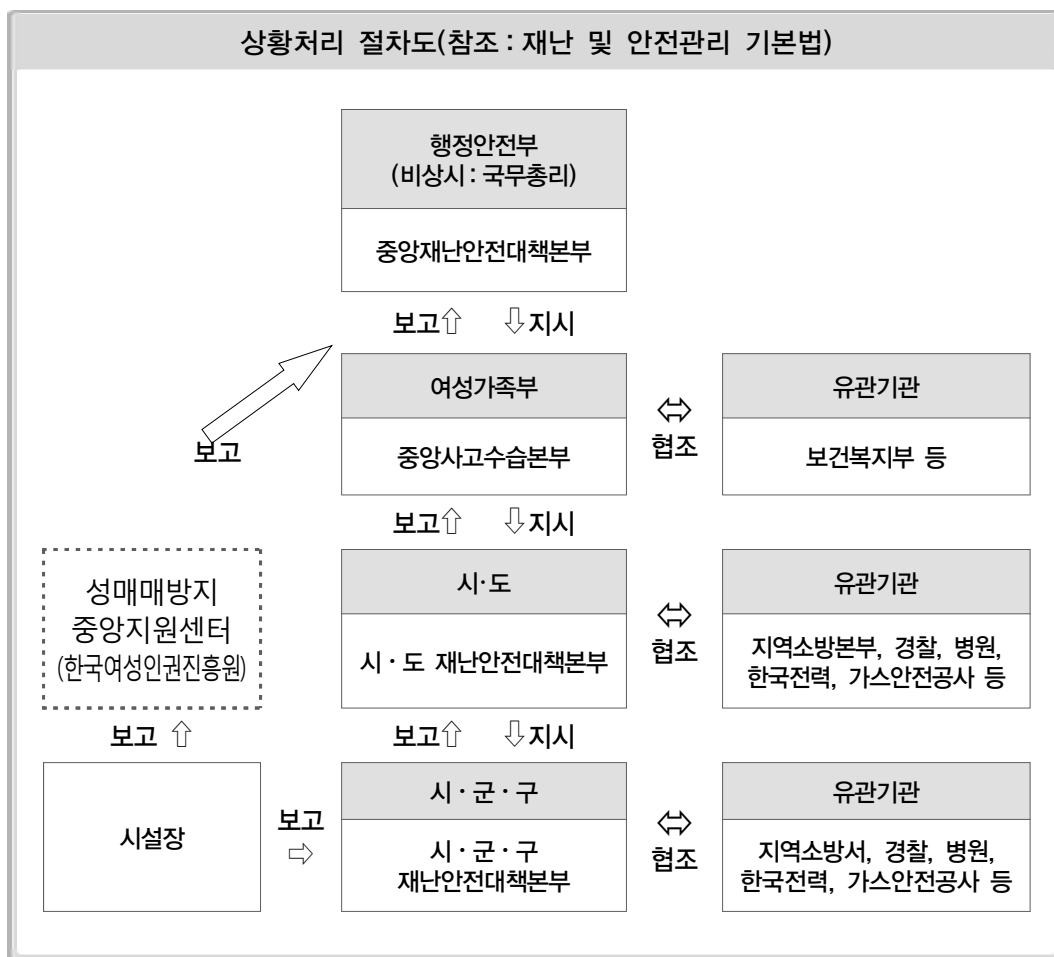
사회복지시설 수시 안전점검



- ▶ 수시 안전점검 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 ▶ 수시 안전점검 실시 가능한 자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의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나. 시설 재난예방 및 대응

- 방염설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20조)
 - 실내장식물, 커튼, 카펫 등의 물품에 대하여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함(상세 내용은 상기 법률 참조)
- 24시간 생활시설에 가스경보기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 재난발생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다. 시설 입소·이용자 대상 안전교육(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6 지원·상담·자활시설의 국고보조금 집행 공통기준

가. 지원시설 운영지원

- 지원항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지원기준 : 개별 시설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의함
 - 지원금은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되, 인건비의 경우 불용이 발생할 경우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전환하여 집행 가능
 - ▶ 종사자 입·퇴사 및 결원 등의 사유로 인건비 불용이 발생할 경우 국비 및 지방비 지원 비율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전환하여 집행 가능
- 단,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건비 지원액 : 27,187천원 / 1인(연간)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국비 지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을 책정할 수 있음

나. 종사자 상해보험료 : 연간 1인당 5만원 이내 지원

- ▶ 시설 운영비(공통경비)에서 지급

7 행정사항

가. 운영·정산 실적 보고 : 반기별

- 상담소등 시설 : 매 반기 다음달 15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운영실적은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에 함께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 : 매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 매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 나. 종사자 채용시 개별자격기준 및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적정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토록 하며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의 이수가 안 된 종사자는 채용 1년 이내에 필히 양성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함(종사자 자격 기준 특례 참조)
- 다. 신규시설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운영 및 회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교육
 - 국비지원 대상 선정 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여부 확인 필요
-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매 상담소 등의 장,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후 15일 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여성가족부에 직접 보고하여야 함
- 마. 시·도 및 시·군·구는 관할 시설 및 상담소에 대하여 매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
-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폐쇄 등 조치(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23조)
- 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안내하여야 함
- 사. 시설의 평가: 여성가족부장관은 매 3년마다 상담소 등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토록 하여야 함
- 평가항목: 입소자 운영관리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서비스 만족도, 시설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평가방법: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그 밖의 평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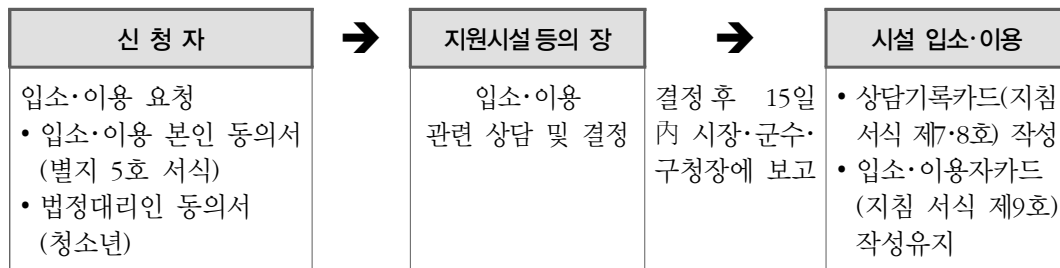
Ⅱ.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 및 이용

가. 지원시설 입소·이용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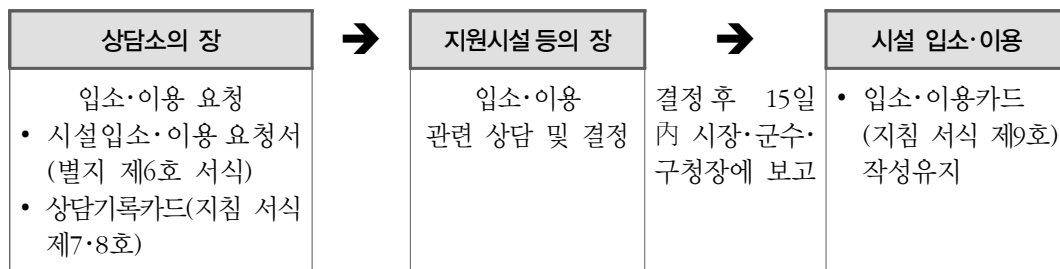
-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청소년시설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⁶⁾
 -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요청을 받은 경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계요청을 받은 경우

나. 지원시설 입소·이용 절차(시행규칙 제9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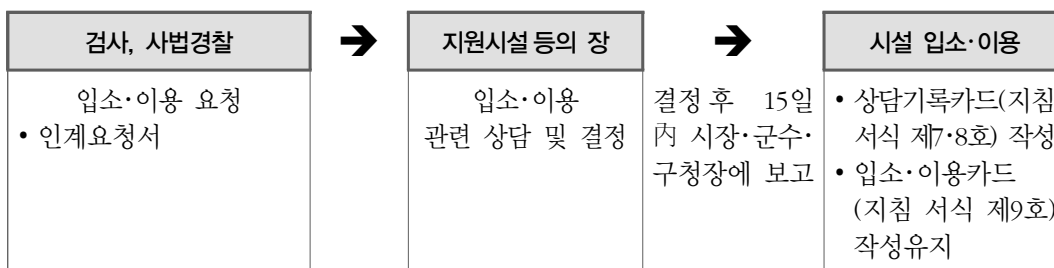


[상담소의 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6) 법정대리인의 주소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입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시설 상담원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원의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입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시행령 제5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계요청을 받은 경우]



다. 입소정원 변경

- 지원시설(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포함)의 장은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에 입소자조치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퇴소조치 및 이용중단(시행규칙 제9조제4항)

-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 퇴소 또는 이용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 하는 행위를 한 자, 성매매·성매매알선·성매매소개 업소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자
- 입소·이용 내부규정에 따른 퇴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시설의 장은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 또는 이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 지원시설의 장은 퇴소·이용중단을 결정한 경우 15일 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마. 입소·이용자의 인권보장

-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
- 입소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내용을 알려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 입소자의 개별적 면회, 자유로운 전화 이용, 외출 등을 보장
- 입소·이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명, 시설 소재지, 종사자 정보, 입소·이용자 정보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위탁기관)
- 시설 조치 여부에 대한 시·군·구 점검 사항
 - 생활자에게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여부
 -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유·무
 -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의 국가인권위원회 송부 여부
 - 방문 조사 시 협조 상태 등

Ⅲ.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개별지침

Ⅲ-1. 일반 및 청소년 지원시설 운영

1 개 요

가. 일반 및 청소년 지원시설 지원 개요

구분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목적	○ 성매매피해자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 등	○ 성매매피해자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 등
대상	○ 성인 성매매피해자 등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
주요업무 (법 제11조)	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 訊問)에의 동행 5.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 1~9 일반지원시설과 동일 ○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 수행
입소기간 (연장)	1년 원칙(1년 6개월 연장 가능) ▶ 입소자 희망으로 해당지원시설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입소기간 연장	19세가 될 때까지(2년 연장 가능) ▶ 입소자 희망 및 법정대리인 ⁷⁾ 동의로 해당지원시설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입소기간 연장
보고	입소기간 연장 시, 연장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좌동

7)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所在不明)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소자 본인의 동의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갈음한다(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나. 장애인 입소자의 입소기간⁸⁾ 연장(법 제9조 제5항)

- 입소자가 장애인⁹⁾인 경우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가능
 - 1회당 2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 연장 가능
 - 단, 지원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의 장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등 입소자 피해회복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지원시설 입소자와 구분되는 이용자

구분	지원시설 이용자에 대한 지원 개요
개 념	• 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지 않으면서 지원시설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성매매 피해자 등
선 정	• 관련시설 입소·이용 경력자인 경우 전 입소·이용시설 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자 • 초기대상자(관련시설 입소·이용 경력 없는 자)는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자활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된 자
이 용 기 간	• 입소기간에 준함
이용자 관 리	• 시설 이용과 동시에 이용자에 대하여 시설이용 안내 등 오리엔테이션(1일) 실시 • 이용기간 동안 월 4회 이상(1회 이상 면접상담, 3회는 전화상담 등 가능) 취업, 치료, 생활환경 등에 대한 상담¹⁰⁾ 실시 • 이용기간 동안 관련 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인 원	• 입소정원의 50% 내외

8) 장애인 입소기간 연장: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및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공통 적용

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10) 입소자와 동일하게 이용 신청, 선정 및 관리 시 별지 제6호 서식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입소·이용 요청서” 및 지침상 서식 제7호 “상담기록카드” 등 필수 서식 작성·비치

2 국고보조금 지원

가. 지원 항목

○ 인건비, 시설운영비

- ▶ 국고보조금은 총액 범위 내에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통합하여 사용가능함. 다만 운영비는 아래 ‘나. 지원금액’ 기준에 준하여 집행하되 개별 시설의 여건에 따라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경우라도 운영비는 최소 10% 이상 집행하여야 함

나. 지원 내역(시설 운영비)

- 공통경비 : 수용기관경비,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건물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통신시설 유지비 등), 차량유지비, 화재보험료, 종사자 상해보험료 등 시설 관리운영 비용종사자 상해보험료 등 시설 관리운영 비용
 - ▶ 화재보험은 소멸성 대물·대인보험에 가입
- 사무실 월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는 월 25만원(연 300만원) 한도에서 지자체 승인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로 집행 가능
- 직접경비 : 건강진단비, 학용품비, 부교재구입비, 위생용품구입비, 교통비, 자립준비생활비 등 개별 입소·이용자를 위해 직접 지급되는 비용
 - 자립준비생활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만원 이내 지급 가능
 - 이용자에 대한 교통비는 거주지 등을 감안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1인당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간접경비 : 의약품비, 도서구입비, 인성변화교육비, 재활프로그램운영비, 전문가상담비 등 전체 입소·이용자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 입소자의 주부식비 및 피복비는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지출
 - ▶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간접경비에서 주부식비 집행 가능
 - ▶ 피복비중 교복의 경우는 생계급여비로 지출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간접경비에서 지급 가능
 - 이용자에 대해 1인당 월 3만원 이내의 주부식비를 지출할 수 있음
 - ▶ 지급단가 및 물량은 시설규모나 실정에 맞게 실소요 단가 적용

다. 지원시설¹¹⁾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법 제14조)

구분	지원시설 입소자 아동교육지원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지원 대상	○ 아동을 동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한 자 또는 입소 후 출산하여 지원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
지원 금액	○ 아동교육지원비 지급단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그 지침에 따른 교육급여 지원기준을 따름 ○ 아동양육비 지급단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그 지침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을 따름
신청 방법	○ 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의 장 또는 입소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보호비용(변경)신청서,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사본,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 신청의 경우) ○ 보호비용 지급 사유 발생 시 수시 신청 - 지원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소급하여 지원
확인 · 통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비용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라. 지원시설¹²⁾에 대한 간병비 지원

- 간병비 지원 :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구분	지원시설 간병비 지원
목적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간병 비용 지원을 통해 이들의 조속한 회복 도모
지원 대상	○ 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자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 간병이 필요 하나 가족 등으로부터 간병 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자로서 정서 불안 등의 증세로 인해 자해 위험이 있거나 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 도움이 필요한 자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1일 기준 단가 참고)
신청 방법	○ 입원하여 치료 중인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간병비 지급 신청서(서식 28)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원 중 또는 입원 후 2주일 이내 신청 - 입원확인서, 진료비(간병비) 계산서 각 1부 - 간병인의 필요를 적시한 의사소견서(진단서) 1부

11) 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해당

12) 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해당

○ 간병비 집행기준

구분	지원시설 간병비 집행기준
신청	○ 입원하여 치료 중인 자 또는 그 대리인 신청
확인	○ 지급청구를 받은 시설의 장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 ▶ 간병비 부족으로 인한 운영비의 추경 예산 조정은 불가
집행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시설 운영비(간접경비)로 집행
지급 방법	○ 피해자인 신청인 계좌에 직접 지급 - 불가피할 경우 사실여부 확인 후 간병인 계좌로 지급하고 증빙서류 첨부

▶ 간병비 1일 기준 단가(예 시)

구 분		1일 기준 단가(예시)	
		종 일	시 간 제
병 원	일 반 단 가	8만원	5만 7천원(주·야간 12시간 기준)
	특 수 단 가	8만 5천원	6만 3천원(주·야간 12시간 기준)
▶ 특수단가 적용 기준 ① 사지마비, 편마비에 준하는 보행 불가능 상태인 경우 ② 응급실, 폐쇄병동에 입원한 경우 ③ 그 외 특수단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소견서 첨부) ▶ 종일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도적인 주·야간 교대 지양 ▶ 간병비 예시 단가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자부담으로 함 ▶ 간병인은 간병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함. 단, 간병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간병이 가능한 자도 예외적으로 인정(가족, 친인척, 성매매피해자 시설종사자는 제외함)			

○ 간병비 환수규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비가 지급된 경우와 과오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환수(환수는 이자를 적용치 않고 원금만 회수)

3 행정사항

- 지자체는 관할 지원시설에 대하여 적정 입소자 비율이 유지되도록 지도하고 입소자 비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정원조정 등을 권고
- 지자체는 ‘최근 6개월 간 평균입소율(이용자 제외)이 50% 미만’인 시설에 대하여 정원 조정 등 자체 개선안을 강구토록 권고하여야 함
 - ▶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원에 따른 종사자 수의 유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정원조정 등 시설별 자체노력을 강구하여야 함

1 개 요

가. 외국인 지원시설 지원 개요

구분	외국인 지원시설
목적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숙식제공 및 귀국지원 등
대상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및 성매매에 유입될 우려가 높으나 타 정부기관이 운영·지원하는 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여성
주요 업무 (법 제11조)	○ 외국인 피해여성들에게 무료숙식 등을 제공하며 귀국까지 안전하게 보호 ○ 성매매업소로부터의 구조, 출국 및 국내체류 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 성매매관련 여성질환 등 응급치료 지원 ○ “여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한 피해자 구조, 법원 동행 등 법률 지원 ○ 출입국관리소, 자국대사관, 경찰서 등 외국인 여성의 피해구제 및 법률 지원과 관련된 기관 연계 ○ 법률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센터의 일자리제공 (공동작업장 운영)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등 귀국을 위한 서류작성과 항공권 제공 등 귀국지원 ○ 피해여성들의 자활을 도모하고 사회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실용적인 인권, 언어, 컴퓨터 등의 교육 실시 ○ 외국인여성 보호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등
입소 기간	○ 1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가능)
입소 정원	○ 일시적으로 입소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시설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입소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나. 종사자 자격기준(시설 공통기준 이외 규정 적용)

- 공개경쟁채용 원칙.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공개경쟁채용이 부적절한 경우 자체 구성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 가능
- 전문상담원 배치: 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상근 통역사 배치
 -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문 통역서비스 제공

2 국고보조금 지원

가. 지원 항목

- 인건비, 시설운영비
 - ▶ 국고보조금은 총액 범위 내에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통합하여 사용가능함. 다만 운영비는 아래 ‘나. 지원금액’ 기준에 준하여 집행하되 개별 시설의 여건에 따라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경우라도 운영비는 최소 10% 이상 집행하여야 함

나. 지원 내역

- 시설운영비
 - 공공요금, 난방비, 화재보험료 등 시설운영 소요비용
 - 사무실 월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는 월 25만원(연 300만원) 한도에서 지자체 승인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로 집행 가능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설운영비에서 입소자에 대한 주부식비(생계비) 집행 가능
- 귀국비용(구조지원사업 공통기준 이외 규정 적용)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귀국비용은 구조지원사업비에서 지원

Ⅲ-3.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운영

1 개 요

구 분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개요
목 적	○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주거지원으로 자립 유도
대 상	○ 탈성매매 여성으로서 자활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자
주요업무 (법 제11조)	1. 숙박 지원 2.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3.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 지원 4. 자립·자활을 위한 활동의 지원 5. 사회보장급부(생계·의료급여) 수령지원 ○ 입소자 자립촉진: 입소자 중 근로소득이 월 251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장 시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립적립금으로 근로소득의 월 70% 이상을 저축해야함(근로소득 산정 시 공제) ▶ 입소자 자립촉진 상세내용 :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참고
입소인원	○ 5인 이상 ~ 8인 미만
입소기간 (연장기간)	○ 2년(2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입소자 희망으로 해당지원시설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입소기간 연장

2 국고보조금 지원

가. 지원 항목

○ 인건비, 시설운영비

- ▶ 국고보조금은 총액 범위 내에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통합하여 사용가능함. 다만 운영비는 아래 '나. 지원금액' 기준에 준하여 집행하되 개별 시설의 여건에 따라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경우라도 운영비는 최소 10% 이상 집행하여야 함

나. 지원 내역(시설 운영비)

- 공통경비: 수용기관경비,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종사자 상해보험료 등 시설운영 소요 비용
 - ▶ 입소자로부터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일절 받아서는 안 됨
 - 사무실 월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는 월 25만원(연 300만원) 한도에서 지자체 승인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로 집행 가능
- 직·간접경비: 일반·청소년 지원시설과 동일하나 주거지원 시설임을 감안, 입소자 자활단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비지출
 - 입소자 주부식비 및 피복비는 보장시설 수급자로 인정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지출
 - 보장시설 수급자 미해당 입소자에 대하여 간접경비에서 주·부식비 집행 가능

3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의 장이 일반 및 청소년지원시설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에 이를 반영하여 인건비 중복지원 및 예산불용을 방지해야 함
 - ▶ 시설의 장은 시설장을 겸임하게 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분기별로 예산을 교부받기 전에 이를 보고하여 인건비의 중복지원 또는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여야 함

Ⅲ-4. 자활지원센터 운영

1 개 요

구 분	자활지원센터 개요
목적	○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 ○ 전업을 위한 훈련·준비단계에 대한 지원
대상	○ 탈성매매 여성으로 자활 지원이 필요한 자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중 법률소송을 진행 중인 자 ▶ 공동작업장 운영 프로그램에 한해 참여 가능
주요업무 (법 제16조)	○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 ○ 일자리제공사업 운영 : 공동작업장 및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 ○ 전업 및 사회통합 지원 -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전업관련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지도,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적 소양교육, 창업지원 및 취업·창업자 사후지원 ○ 직업훈련 및 진학·기술교육(외부 위탁교육 포함) 실시¹³⁾ - 직업훈련은 취업, 창업 또는 진학 준비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훈련종목으로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지원 -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진학훈련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으나 승인된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 한함 ○ 자활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 등의 운영 지원¹⁴⁾ - 자립자활 과정에서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의료적·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법률 비용 지원은 승인된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 한함 ○ 그 외 이용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가 승인한 사업

13) 직업훈련 비용 지원은 “구조지원사업” 직업훈련 비용 지원 지침을 준용

14) 의료 및 법률 비용 지원은 “구조지원사업” 의료 및 법률 비용 지원 지침을 준용

2 일자리제공사업

가. 일자리제공사업 내용

구분	공동작업장	인턴십 프로그램(전국사업 ¹⁵⁾)
사업 선정	○ 참여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 습득, 직업탐색, 사회적응을 위한 일 경험 등이 가능한 사업 ▶ 제품포장과 같은 단순작업 지양	○ 개인별 상담 등을 통해 참여자 선호와 적성에 맞는 업종 ○ 사전에 사업수행업체(기관)와 제휴 또는 협약체결을 통해 운영
지원 금액	○ 1인당 월 647천원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 한하여 3인까지 추가 지원가능 (자녀1인당 월 10만원) ▶ 부양가족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근거서류 없을 경우 지원불가)	○ 공동작업장과 동일
지원 조건	○ 월 100시간 이상 참여원칙 - 월 100시간 미만으로 참여한 경우 일할 계산 또는 시간당 6,470원 기준 지원 - 참여자가 100시간 이상 참여할 의욕이 있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작업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월 150시간까지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월 10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1시간당 6,470원 기준으로 추가지원) - 공동작업장 참여자가 작업장 운영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작업장 총 참여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참여 시간으로 인정	○ 월 100시간 이상 참여원칙 - 월 100시간 미만으로 참여한 경우 일할 계산 또는 시간당 6,470원 기준 지원 - 참여자가 100시간 이상 참여할 의욕이 충분하고 제휴업체(기관) 등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경우 월 150시간까지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월 10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1시간당 6,470원 기준으로 추가지원) - 단,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가 업체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액에서 동 보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지원 기간 (연장)	1년 원칙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그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한해 최장 3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별도 심사표 작성, 서식 16)	1년 원칙 (1년 동안 인턴십을 참여한 대상자가 인턴십 기간연장을 희망할 경우 공동작업장 지원기간(최장 3년) 중 잔여기간만큼 지원 가능-공동작업장과 동일 심사절차를 거침) 예) 공동작업장과 인턴십을 각 1년씩 참여 후 인턴십을 계속하고자 할 때, 연 단위로 심사 승인을 거쳐 2년 추가지원 가능

15)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위해 피해자 등은 거주하는 시·도가 아닌 타 시도의 자활지원센터에서도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구분	공동작업장	인턴십 프로그램(전국사업 ¹⁵⁾)
지원 인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별 최소 10~30명 이내로 운영가능(인턴십 프로그램 인원 포함) ▶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시 반영하고, 선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조정	○ 공동작업장 인원과 통합, 센터별 10~30명 이내에서 운영가능 ▶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시 반영하고, 선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조정

나. 일자리제공사업 관리

구 분	일자리제공사업 관리
사업 참여자 관리	○ 공동작업장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시간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상시 비치·관리 ○ 공동작업장 참여자의 참여상황부 등 참여상황(참여시간 기재) 상시 기록·관리 ○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상황 수시 관리 및 참여자의 참여내용 및 환경 등에 대한 고충상담을 주 1회 이상 실시 ○ 공동작업장 및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금 지급시에는 지원금 지급대장[서식 17] 작성 및 참여상황부[서식 18],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 ○ 인턴십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지출 시, 제휴업체, 기관 등에서 제출 받은 참여상황부 등을 반드시 첨부
공동 작업장 수익금 관리	○ 공동작업장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은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관리 ○ 수익금은 참여자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수시 또는 일괄배분(계좌입금 원칙) 하거나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단, 사회적 기업 설립재원 확보 등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한 수익금의 적립은 전체 수익금의 50% 이내에 한함

3 국고보조금 지원

가. 지원 항목

- 인건비, 시설운영비, 사업비,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나. 지원 내역

- 시설운영비 : 공공요금, 난방비, 화재보험료, 종사자 상해보험료 등 시설운영 소요 비용
 - 사무실 월 임차료(연 임차료 포함)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는 월 25만원(연 300만원) 한도에서 지자체 승인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로 집행 가능
 - ※ 단, 해당관청 관할 공공기관 건물 내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입주하도록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음
- 사업비 : 자활지원센터 이용자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소요비용(직업훈련비, 일자리 제공사업 재료구입비, 자활지원사업비 등)
 - ▶ 인건비·운영비는 일자리제공사업 지원금을 제외한 전체예산의 80% 범위 내에서 집행
 - ▶ 사업비에서 인턴십 참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용 집행 가능
- 자활지원센터 사업비에서 의료·법률·직업훈련 등 지원 시 유의사항
 - 지원시설·상담소·현장지원사업 등 다른 시설·사업 등을 통한 의료·법률·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동종의 항목에 대해 자활지원센터에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예) 구조지원사업을 통하여 의료·법률·직업훈련지원의 1인당 한도액 760만원을 전액 지원 받은 경우 자활지원센터의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없음(공동작업장 참여 등은 가능)
 - 자활지원센터 사업비로 의료·법률·직업훈련을 지원할 경우 그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구조지원사업의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준용
-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 공동작업장·인턴십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당 10~30명까지 참여자 지원 가능
 - 타 용도로 예산 전환 사용불가
 - ▶ 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비로 전환하여 집행하는 것은 가능(인건비, 운영비로의 전환은 불가)

- 참여자 지원금은 참여자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 등으로 금융기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장애인 중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청소년 중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령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수령증을 관련 서류에 증빙으로 첨부

4 행정사항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활지원센터 예산액 결정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예산범위 내에서 세부내역을 검토·조정한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
 - ▶ 사업계획에는 예산의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기재·작성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Ⅲ-5.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부설 대안교육 위탁기관¹⁶⁾ 운영

1 개 요

구분	대안교육 위탁기관 개요
목적	○ 기존의 제도권 교육기관에서 소외된 성매매피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제도권 교육과 연계하여 학업 지속 지원 또는 자립·자활 역량 강화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상실감을 치유하여 학업 및 사회 복귀를 지원
대상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청소년지원시설 대상과 동일)
주요 업무	○ 위탁교육 형식으로 의무교육 제공 및 다양한 학습 기회 지원 ○ 심신의 건강회복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기능 강화교육 지원 ○ 대안교육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 통합적 자활교육지원 ○ 일반교과과목 및 대안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2 설치기준, 설치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

가. 설치·운영권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청소년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나. 설치기준

- 구조 및 설비: 상담실, 사무실, 교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
- 규모: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구조와 설비를 갖춘 최소면적 99제곱미터 이상

1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에 근거하여 학력인정 위탁 업무를 수행하거나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지원하는 기관

다. 설치절차 등

-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상담소 등의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의하여 특별 자치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설치절차의 경우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

라. 종사자의 수 및 자격조건

- 종사자의 수: 4명(정교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명, 사무지원 1명)
- 종사자의 자격조건
 - 정교사: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
 - 직업훈련교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시행령 제28조제2항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자활지원센터의 상담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사무지원: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3 국고보조금 지원

가. 지원 항목

- 교사 인건비, 자활교육 운영비, 프로그램비
 - ▶ 국고보조금은 총액 범위 내에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통합하여 사용가능함. 다만 운영비는 아래 ‘나. 지원금액’ 기준에 준하여 집행하되 개별 시설의 여건에 따라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경우라도 운영비는 최소 10% 이상 집행하여야 함

나. 지원 내역

- 인건비: 정교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3명), 사무지원(1명)
 - 교사 인건비 단가는 지원·상담·자활시설의 상담원 등의 종사자와 동일
- 자활교육 운영비
 - 자활교육 외부강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
 - 자활교육에 대한 교육기자재비, 교재 및 도서비

- 프로그램 비용

- ▶ 지급단가 및 물량은 시설규모나 실정에 맞게 실소요 단가를 적용

-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동일한 항목에서 중복사용 불가

4 행정사항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세부내역을 검토·조정한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

- ▶ 사업계획에는 예산의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기재·작성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사업비 적정 집행 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1 개 요

가. 성매매피해상담소 지원 개요

구 분	성매매피해상담소 개요
목적	○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현장상담, 법률·의료 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개입하고 피해자 보호와 탈성매매 지원
대상	○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주요업무 (법 제18조)	1. 상담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구조 ○ 상담 전용전화를 설치·운영하되, 야간(18:00~09:00)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의 연계 등 상담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조치(업무시간 8시간 준수)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특화된 상담 지원 - 법원에서의 증인신문과 수사기관의 조사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 ▶ 필요한 경우 법률적 지원,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 등 의료지원 병행 - 각 상담소는 보수교육 과정에 매년 최소 1명의 상담원이 ‘청소년 지원 전문과정’에 연 1회 이상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야 함(의무사항)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상담 및 지원연계 - 여성긴급전화(1366), 현장상담센터,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 외국인시설 등과 연계한 전화통역시스템을 활용,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상담 - 경찰청, 출입국관리소, 피해여성 자국대사관, 외국인시설 등과 연계하여 출국 시까지 피해구제, 긴급보호 등 적절한 지원연계 2. 현장방문 상담 ○ 집결지,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청소년 밀집지역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통한 긴급지원 및 탈성매매 유도 ○ 홍보지를 통해 성매매피해 관련 도움 요청기관, 법률지식 등의 정보제공 ○ 면담 및 의약품·생필품 등 물품지원 등을 통해 성매매 종사여성들과 관계형성 ○ 성매매 업소 및 여성들에 대한 현황파악 및 현장실태조사 ▶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소방서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 협조 요청 ○ 기타 전화·인터넷·편지 등을 통한 상담 또는 현장방문상담 실시 3.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 관련기관·시설 및 자활지원·의료·법률 서비스 연계망 구축 ○ 여성긴급전화(1366), 기타 지원시설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및 긴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보호시설, 117, 112, 119 등과 협조체계 유지 ○ 가족, 친척 등이 없거나 신변안전이 요구되는 경우 상담과정 종료 시까지 또는 법률지원이 이루어지는 동안 관련시설 연계를 통해 일시적으로 주거 제공

구 분	성매매피해상담소 개요
주요업무 (법 제18조)	4.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탈성매매 여성의 건강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5.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성매매관련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나 가족들에게 관련 법률·절차, 유사 사례 등에 대해 상담 실시 및 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 6.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7.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및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8.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성매매 예방상담 추진 - 유흥업소 종사 북한이탈여성의 성매매 유입예방을 위한 상담 실시 - 북한이탈여성 거주지 관할 경찰서(보안과) 신변보호담당관과 협조체계 유지 9. 홍보사업 - 성매매업소 방문 및 여성들에 대한 정보 제공시 상담센터 홍보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등에 홍보 스티커 부착 -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 실시 -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폭력관련 상담소등에 홍보전단 배포 등

나. 상담소 설치 고려사항

- 상담 공간 확보 및 전담직원 배치 등을 통해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기능을 내실화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주요 역 주변, 버스터미널, 관광·유흥지역 등 성매매피해자 및 성매매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우선 설치

다. 종사자 배치 및 자격기준(시설 공통기준 이외 규정)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성매매피해상담소
 - 상담원은 사회복지직렬의 지방일반직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로 할 수 있음
 - 상담원 중 1명 이상은 공무원으로 배치하여야 함
- 공통기준인 ‘종사자 자격기준 특례’(수습종사자)에 있어 성매매피해상담소의 경우 활용 가능 인원은 1인에 한함

2 국고보조금 지원¹⁷⁾

가. 지원 항목

- 인건비, 시설운영비, 아웃리치 사업비
- 운영비
 - 수용비, 난방연료비, 공공요금, 화재보험료, 건물유지비, 차량유지비, 종사자 상해보험료 등
 - 사무실 월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는 월 25만원(연 300만원) 한도에서 지자체 승인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로 집행 가능함
 - ※ 단, 해당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음
 - 피해여성 지원비(물품지원 등), 출장상담활동비, 교육·홍보·조사비 등
 - 상담소에서 의료지원을 받는 여성 중 간병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시설에 대한 간병비 지원규정을 준용
- 아웃리치 사업비(홍보 캠페인 비용 포함)

3 행정사항

- 상담원의 교육 등 법정자격 구비, 상담소 운영실적 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지원시설의 경우와 동일함

17) 설치(신고) 후 6월 이상 운영실적이 있으며 집결지 및 성매매가능업소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한 상담소를 우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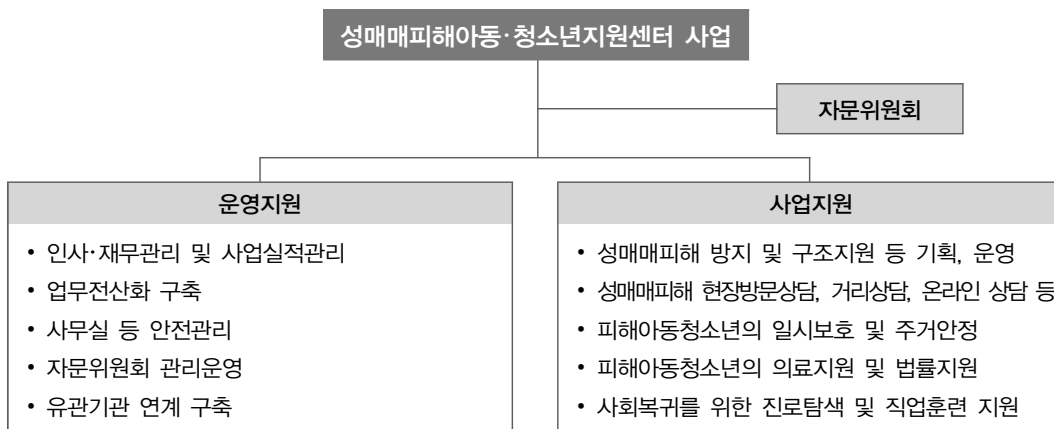
Ⅲ-7.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 개 요

가.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개요

구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개요
사업방향	○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구조지원을 통한 인권 보호 ○ 의료·법률 등 지원을 통한 건강한 일상생활 복귀 ○ 피해아동청소년의 자활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 도모 ○ 지역사회의 성매매 불법성 인식 공유를 통한 대응 강화
대상	○ 19세 이하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사업내용	○ 피해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 및 조기개입을 위한 온라인 상담, 거리상담 등 ○ 밀착형 사례관리 등을 통한 치료회복 및 심리치유, 의료·법률지원 등 ○ 일 경험 및 진로탐색, 직업훈련 등 지원으로 피해아동청소년의 자활역량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
추진체계	○ (총괄관리) 여성가족부로부터 '18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수행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사업 운영주체의 장이 수행함 ○ (자문위원회)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 치유, 학업 및 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 기 구성된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활용 가능, 청소년상담사 등이 자문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 필요 - 위원 구성은 외부전문가, 내부직원을 합하여 5인 이상 구성

나. 사업 추진도



2 사업수행인력

가. 사업수행인력의 구성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운영 및 사업수행인력 1명을 두고, 지자체 부담 및 자부담으로 사무보조원 1명을 둘 수 있음
 - ※ 필요시 사무보조인력(1인) 추가 채용 가능

나. 사업수행인력의 자격기준

- 사업수행인력은 운영주체의 임원 또는 대표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지원센터의 담당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함.
 - ※ 겸직 또는 타 업무 병행 시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인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만, 불가피하게 자격기준에 맞는 상담원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의 승인을 받은 후 채용할 수 있음

자격 기준
○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원은 아래의 개별기준 중 하나를 갖춘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사업수행인력의 채용

- 지원센터 사업수행인력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사업수행인력은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채용하여야 함

- 사업수행인력 채용 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함
- 사업수행인력 채용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채용시 임금·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 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시·도지사는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함

라. 사업수행인력의 복무사항

-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인력은 전임으로 상근하여야 함. 다만,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자 외에 자부담으로 지원하는 사업수행인력에 대해서는 겸임할 수 있음
 - 결원시 1월 이내에 신규 사업수행인력을 채용하여야 함
 - 채용 후 소정의 성매매방지 상담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수행인력은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상담원 보수교육의 경우 근무시간 중 교육이 가능하며 해당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연차 유급휴가, 기타 휴가는 운영주체가 정하되,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등은 운영주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함
- 사업수행인력의 비밀엄수 의무 :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인력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됨
- 사업수행인력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마. 사업수행인력의 인건비 기준

-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인력 인건비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 한도 범위에서 지급함. 다만, 법인의 부담으로 한도를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인력을 채용한 기관이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자활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인력의 인건비는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인력의 급여는 당사자의 통장으로 이체하여야 하며, 급여명세서를 발급하고 사본을 지원센터에 보관하여야 함

바. 사업수행인력의 임면사항 보고 및 관리

- 운영주체의 장은 사업수행인력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사업수행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함
- 사업수행인력의 임면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인력의 임명 또는 면직 즉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련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3 사업운영 관리 및 지도·점검 등

가. 사업운영 관리

- 지원센터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운영주체의 장은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단, 회계 관계 서류는 5년)
- 지원센터는 운영현황 및 실적을 반기별로 익월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관할 지원센터의 실적을 수합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원센터는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수행인력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사업 지도·점검

-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업무 및 예산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시·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보조금 집행실태 필히 포함)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지도·점검 지시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지도·점검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 지원센터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지도·점검 실시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도·점검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이행결과 확인하여야 함
-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이 필요한 경우 시정·변경 명령 조치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지정의 취소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수행기관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사업평가

- 사업 종료 후 수행기관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사업결과 보고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행기관별 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사업수행기관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음

4 국고보조금 지원

가. 인건비

- 편성기준 : 보조금 지원예산의 57% 이내로 급여 및 수당, 기관부담 4대 보험료, 퇴직 적립금을 정함
- 기타
 - 지원센터 예산 이외의 법인 전입금 또는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인력 확보 및 수당 지급 가능. 다만, 이 경우 추가 지원되는 수당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4대 보험료 등) 및 퇴직적립금은 수탁법인 또는 지자체에서 부담

나. 운영비

- 편성기준 : 보조금 지원예산의 5% 이내로 정함
- 운영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제세공과금,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
 - (여비) 시내·외 출장을 위한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로 지출

다. 사업비

- 편성기준
 - 사업비는 상담 및 구조지원, 자활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홍보비로 이루어지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강사 및 지원인력의 수당 포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강사 및 지원인력의 수당은 구조지원사업의 치료회복프로그램 집행기준에 따름

라. 운영예산 내역

- 예산의 편성

구 분	내 용	보조금 예산편성 상한 비율
인건비	급여,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57%
운영비	사무용품구입비, 제세공과금, 여비, 업무추진비 등	5%
사업비	상담, 구조지원, 자활지원 등 사업수행비, 홍보비	-

5 행정사항

가. 사업실적 보고

- 사업실적 및 사업비 집행현황 보고
 - 각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실적 및 사업비 집행현황을 분기 익월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보고(연간)
 - 시·도지사는 연간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를 익년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 각 사업수행기관은 연간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를 익년도 1월 10일까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나. 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 시 조치

- 국고보조금 지원 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취소 가능
- 보조금 지원 취소 관련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강제징수)

다. 지정의 취소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수행기관이 아래와 같은 사무에 해당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이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사업수행기관이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사업수행기관이 센터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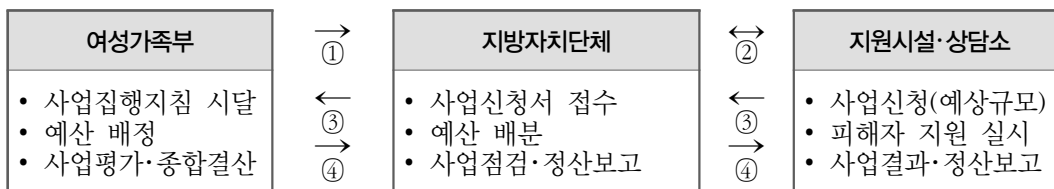
-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홍보 진행
- 홍보물 발간 및 프로그램 진행시 '여성가족부' 사업임을 명시

IV.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1 사업개요

구 분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개요	
목 적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	
시 행 주 체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제외	○ 성매매피해 상담소 - 의료·법률 지원(직업훈련 제외) -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 업 내 용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 1인당 지원한도액 : 760만원 -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각종 질병 등 치료비, 선불금 등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및 취업·창업에 위한 직업훈련비 등 지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성매매피해자의 심신의 안정과 치유, 자활의 구체적 목표 제시 등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지 원 기 간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기간 - 1년 원칙, 연장 가능 기간 2년. 총 3년까지 지원 가능 ▶ 기간 산정 시 공백 기간을 제외하고 월 단위로 산정 예) 의료지원을 2013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받은 후 중단한 경우 : 실제 지원기간은 3개월이므로 2017년 1월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중 복 지 원 불 가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중복지원 불가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을 통하여 의료·법률·직업훈련을 지원받는 경우,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성매매피해여성 1인이 여러 사업을 통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음	

2 사업추진체계



- ① 사업 집행지침 시달 및 예산배정(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
 - 시·도별 예산 신청 및 기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분기별로 교부 요청서를 접수 후 예산 배분
- ② 사업신청 접수 및 예산 배분(지방자치단체 ↔ 지원시설·상담소)
 - 시설·상담소로부터 사업신청 접수·검토 후 시설별 예산 배분
- ③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지원시설·상담소 → 지방자치단체 → 여성가족부)
 -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실적자료 확인·집계 작업 수행
- ④ 사업 추진결과 평가 및 점검(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 → 지원시설·상담소)

3 사업비 지원내용 및 집행방법

가. 공통사항

- 지원금액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은 1인당 760만원 한도 내 집행
 - 지원한도액 관리를 위해 개별지원 통합카드(서식 25) 작성
 - 통합카드에 연계 이전 기관의 지원 금액, 기간, 항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통합카드를 통해 모든 기관에서의 전체 지원액 및 지원기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 통합카드에 상담소,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현장자원사업 등 이전 기관에서 지원받은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중복지원 방지
- 지원기간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기간
 - 1년 원칙, 연장 가능 기간 2년, 총 3년까지 지원 가능
 - 기간 산정 시 공백 기간을 제외하고 월 단위로 산정
 - 예) 의료지원을 '15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받은 후 중단한 경우 : 실제 지원기간은 3개월
이므로 '17년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구조지원사업비 초과지급 대상 및 절차

구분	구조지원사업비 초과지급
대상	○ 1인당 지원한도액 760만원을 초과하였거나 지원기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구조지원이 반드시 더 필요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 입소·이용자
절차	① 초과금액이 300만원 미만 또는 (기간) 5년 미만 경과 - 시설장이 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 지원대상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 - 시설장은 결정 후 15일 내에 지원한도 초과사유 및 초과금액 또는 초과기간을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함 ② 초과 금액이 300만원 이상 또는 (기간) 5년 이상 경과 - 시설장의 요청에 의해 시·군·구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3인 이상(성매매 방지 관련 시설대표,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결정 - 해당 시설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심의를 마치고(서면심의 가능)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구조지원사업’은 ‘시설 및 상담소 운영사업’과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

- 구조지원사업은 세부적으로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분하여 관리
 - ▶ 구조지원사업 예산은 타 용도로 사용 불가

○ 지출은 시설명의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카드 미가맹점이나 원거리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좌입금 가능하나 세금 계산서, 청구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하나 1만원 이상 금액은 불가

○ 통장에서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방식 불가

- 단, 1일 지출액을 한 번에 인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때 총계정원장(보조부),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는 각각 건별로 갖추어야 함

나. 의료지원

구분	구조지원사업 의료지원
대상	○ 지원시설(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¹⁸⁾ 입소·이용자 및 상담소 이용자 * 자활지원센터 이용자는 상담소 및 지원시설 연계를 통해 지원
지원 내용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한 치료 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않는 의료비용 - 의료지원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지원 (의료진료 동행비, 교통비, 식비, 입원 시 필요한 생활용품 등) 지원 가능 ▶ 건강보조식품, 보약 등 시행규칙상 규정되지 않은 항목은 제외
집행 방법	○ 의료지원 시 치료보호 대상자가 성매매피해자라는 사실을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 입증·확인하고 의료기관에 치료 의뢰 ○ 의료지원 대장(서식 19)을 작성하고 진료내역, 의료비용수증, 입금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첨부 ○ 해바라기센터에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청구 시 진료명세, 의료비 영수증 수령 후 지출

- ▶ 의료지원 범위(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1. 성병감염 여부의 진찰·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3.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의 치료·보호비용
 4.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5.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피해자등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6.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7.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8. 그 밖에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드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을 포함한다)

다. 법률지원

구분	구조지원사업 법률지원
대상	○ 지원시설(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¹⁹⁾ 입소·이용자 및 상담소 이용자 * 자활지원센터 이용자는 상담소 및 지원시설 연계를 통해 지원
지원 내용	○ 성매매 또는 성매매 목적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기타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및 증거수집 등을 위한 제비용(조사 동행비, 교통비, 숙박비, 녹음비 등 간접비용) ▶ 법률지원의 제비용도 1인당 지원한도액에 포함되므로 숙박비 등의 간접비용이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집행 방법	○ 법률지원대장(서식 20) 및 개별 법률지원 기록카드(서식 21)를 작성 ○ 변호사 선임의 경우 사업수행자가 법률사무소에 카드결제(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 가능, 현금지급 불가)하고 법률사무소에서 발행한 청구서 및 영수증 첨부 ○ 증거수집비용 등은 업무수행자가 관련 제 경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 청구한 경우에 한해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별 카드와 함께 보존

18)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제외

19)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제외

라. 직업훈련지원

구분	구조지원사업 직업훈련지원
대상	○ 지원시설(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이용자(상담소 제외)
지원 내용	○ 취업·창업 등의 준비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 수강료(재료비 포함) 및 직업훈련 수당(월 20만원 이내 - 1인당 지원한도액 760만원 안에 포함됨)
직업 훈련 수당 지원 대상	○ 국공립·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교육기관 등 외부 훈련기관에 수강하는 자로서 훈련수강률 80% 이상인 자 - (직업훈련 시작 첫 달) 훈련수당 월 기준액 바로 지급 / (직업훈련 다음 달부터) 전월 훈련 출석률 대비 80% 이상인 경우에만 매월 훈련수당 지급 ▶ 출석부, 확인서 등 출석률 확인 근거서류 반드시 첨부 ▶ 시설에서 자체 운영하는 검정고시 등 훈련과정은 지원 대상 기관에서 제외
집행 방법	○ 직업훈련 지원대장[서식 22], 자격증 취득현황[서식 23], 검정고시 교육 및 응시결과[서식 24] 등 기록 ○ 사업수행자가 교육기관에 카드결제(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 가능, 현금지급 불가) 하고 교육기관이 발행한 청구서 및 영수증 첨부 - 훈련수당은 수강생 본인 계좌에 입금 ○ 학원 등록 후 교육과정 변경이나 수강포기 시 수강료 여입조치 철저 - 교육기관으로부터 수강료를 반환 받아 영수증을 첨부하여 여입조치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²⁰⁾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참조 ○ 금융기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수령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수령증을 관련 서류에 증빙으로 첨부

마.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및 상담소 이용자
-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외부)강사료 및 상담료
 - 집단상담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성매매피해자 치료 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 20)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 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④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치료·회복 프로그램 유형

유형	프로그램 예시	유형	프로그램 예시
상담치료	• 개별심리상담 • 약물·알콜상담 • 의식개혁 프로그램	정서치료	• 캠프(극기훈련, 지역탐방 등) • 음악치료 • 미술치료 • 모래치료 • 웃음치료 • 독서치료 • 명상(요가) • 문화체험 • 다도체험 • 원예치료 • 자원봉사 • 연극치료 • 글쓰기치료 • 춤치료 • 사물놀이
강의(학습)	• 성교육 • 법률강좌 • 예절교육		
동기부여	• 비전제시 • 직업탐색		

○ 집행방법

- 구조지원사업 예산 총액의 50% 이내에서 집행해야 함
 - ▶ 단, 청소년지원시설의 경우 시·도별로 청소년지원시설 전체에 교부되는 구조지원사업 예산 총액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집행 가능
- 숙박비 등 집행기준

구분	지급 내용
숙박비	1인 40,000원 이하 ▶ 단, 1인 숙박비 지급상한액의 합계보다 저렴한 단체숙박일 경우 실소요액 지급
식비	1식 9,000원 이하
간식비	1인 1일 5,000원 이하
교통비	대중교통 이용 원칙, 기타 교통비는 실소요액 지출 가능 ▶ 버스 등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차량 임차료가 프로그램 참여인원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가능

- 강사료 집행기준

강사 구분	지급 상한액(지급 상한시간)
1. 대학(원) 교수급 2. 관련분야 박사학위 이상인자 3.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으로 경력 3년 이상인자 4.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 소지자 5.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	최초 1시간 15만원 / 1시간 추가 시 매시간 7만 5천원 추가 (총 3시간까지 지급. 다만, 캠프의 경우 최대 5시간까지 지급 가능)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으로 실무경력 3년 이상 인자 2.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3.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	최초 1시간 10만원 / 1시간 추가 시 매시간 5만원 추가 (총 3시간까지 지급. 다만, 캠프의 경우 최대 5시간까지 지급 가능)
보조 강사	1회당 3만원 ※ 단순 강의매체(PPT, 차트 등) 조작 제외
※ 강사료 지급 유의사항 1. 관련분야 자격증이 민간자격증일 경우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으로 등록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http://www.krivet.re.kr , 민간자격등록현황에서 확인 가능) 2. 내부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불가 3. 관련분야 : 정신·심리 상담치료, 사회복지·사회사업·여성학 등 학습·진로교육, 음악·미술·원예·정서치료 등 4. 강사의 여비는 실소요액 지급가능(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5.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인정	

-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출

- 반드시 치료·회복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에만 집행하여야 함
 - ▶ 실제 내용상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해서는 안 됨
- 캠프 프로그램의 운영은 연 3회, 1회당 3박 4일까지 허용하며, 외국여행 등 과도한
 비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 운영 불가
 - ▶ 단, 항공여행 시 저가항공 이용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은 구체적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소모성 재료비 이외의 비품 구입은 불가
- 성매매피해자 이외의 시설 관계자에 드는 제반비용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솔(진행) 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
 - ▶ 성매매 피해자 5인이 참여하는 치료캠프에 시설 관계자 등 인솔인원 5인이 참여하는
 경우 사업비 지원 불가
 - ▶ 단, 장애인피해자의 경우에는 안전등을 고려하여 장애인피해자 1인에 대하여 인솔인원
 1인 참여 가능

- 개인적으로 사회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특별한 소견이 있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불가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에게 동일프로그램을 반복해서 실시하는 것은 지양
-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출
-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세금계산서(계산서), 입금증, 카드매출전표, 강사료 지급 대상자의 자격 등 증빙서류 첨부

4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구조지원사업 운영 및 사업비 집행 실태에 관한 사항을 각 시설의 지도·점검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전담의료기관 지정 이용 등
 - 특별자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으로 봄
 - 상담소 등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담의료기관은 다음의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함
 -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건상담·지도
 - 성매매피해자의 치료 및 신체적·정서적 치료(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 알콜 및 약물 중독치료)
 - 성매매피해의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V.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기능보강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의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임차료 및 장비(기자재) 보강 등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맞춤형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나. 지원 내용 및 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	주요 참고 사항
시설 임차료 (전세 보증금)	•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 자활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 상담소	▶ 임차시설에 대한 월 임차료는 기능보강비에서 지원 불가 ▶ 자활지원센터, 자활지원 공동생활시설 등의 설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설치 예산을 적극 반영
시설 증·개축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임차시설 제외 ▶ 시설 신축비 지원 불가 원칙
시설 개·보수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임차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필요시 예외 인정 ▶ 개·보수 등을 하지 않아 시설안전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안전진단서 등 첨부)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비용 지원 시, 법인해산 시에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확인한 후 예산 교부 신청
시설장비 (기자재) 보 강	•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 자활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 상담소	▶ 가구·비품 등 노후화 된 장비, 사무용품 교체비용 등

다. 주요 사항

- 보조금 지원 시설의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시설 현황을 사회복지통합 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 중인 시설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 불가
- 신·증축비를 지원받아 시설을 운영 중인 보조사업자는 시설 폐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으로 설치된 건축물 등을 10년 이상 보조금의 목적사업 수행만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행함

라. 사업 수행

▶ 사업흐름도: 기능보강 사업계획서 제출(전년도 상반기) → 현지점검(전년도 8~9월) → 가내시 통보(전년도 10월)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 국고보조금 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집행

- 시설 기능보강비는 상반기 중에 국고보조 및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조속히 추진
- 시설 신축 또는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기획 및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의 건축 설계 자문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건축규모는 관계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철저히 수행 후 입소자 수(정원), 이용자 수 및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반영

2 지원세부기준

가. 시설 인프라 강화

(가) 시설 신축비 지원

(1) 지원대상 : 시설을 이전 또는 대체(이전하지 않고 기존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신축하는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단체가 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일 경우 해산 시 잔여 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 후 예산교부 신청
- ▶ 신축시 건축연면적이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일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게 됨을 참고(동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능보강비 신청 시 자부담 원칙)
- ▶ 설계용역비는 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고려사항

- 법인(비영리법인 등),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 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정비 조성사업에 시설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나) 시설 리모델링비 지원

(1) 지원대상 : 시설 매입 후 또는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
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 ▶ 임차시설은 제외
-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단체가 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일 경우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 후 예산교부 신청
- ▶ 리모델링시 건축연면적이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일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게 됨을 참고(동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능보강비 신청 시 자부담 원칙)
- ▶ 설계용역비는 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고려사항

- 법인(비영리법인 등),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리모델링 대상 건물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나. 시설 환경개선

(가) 시설 증·개축비 지원

(1) 지원대상 :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2) 고려사항

- 증축의 경우 기존 건물의 안전도 등을 면밀히 검토
- 개축의 경우 부분 개축을 지양하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전체적인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
- 지원대상시설의 설치 연도, 지원횟수, 시설의 자체 환경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증개축 대상시설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음
-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증축비 지원은 지양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지원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
※ 특별한 사정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 이하 시설 등
- 최종 선정된 증개축 사업자는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시설은 비공개)

(나) 시개설 ·보수비 지원

(1) 지원대상 :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 시설 노후화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등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 우선 지원
- 개보수 대상시설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개보수 사업대상자는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시설정보는 비공개)

(다) 시설 장비(기자재)비 지원

(1) 지원대상 :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 장비 노후화 및 입소자 증가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장애인이 입소하여 있는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2) 장비(기자재)내용

- 내용 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10만원 이상인 물품
 - ▶ 안전용품(소화기, 가스누출탐지기, 화재탐지기 등), 주방용품(조리기구, 자외선 살균기 등), 사무용품(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등), 가구·비품, 공기질 개선물품(공기청정기 등), 학습기자재, 기타(손씻기 시설 등)

(3) 고려사항

- 입소자의 안전과 급식 개선을 위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 기존 보호시설에 지원한 장비비로 구입한 장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장이 관련 목록 등을 구비

(라) 시설 임차료(전세보증금·임대주택보증금) 지원

(1) 지원대상 :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2) 고려사항

- 지원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함(시설 폐지 시 보조금 반납)
-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임차료 지원액 중 국비로 지원된 금액은 국고로 반납 조치
- 임차시설의 월 임차료(연 임차료 포함)는 기능보강비에서 지원 불가
- 지방자치단체와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으로 이전하여 월 임차료 발생 시, 월 30만원 한도에서 지자체 승인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로 집행 가능함. 단, 월 30 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가 집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승인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함

3 사업수행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서식 29]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내 성매매피해자지원 사업비를 일괄 작성하여 사업연도 상반기 중에 신청
 - 여성가족부는 확정 내시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지방비 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단기간에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시·도로 변경내시 할 수 있음
- 보조사업계획(사업변경 포함)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수행능력과 타당성·효율성 등을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시·도지사의 의견서[서식 30]를 반드시 첨부
 - 시·도지사의 의견서에는 건축에 관한 종합적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의 검토 내용을 포함하되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검토의견서를 첨부
 - 다만, 시설의 건축허가기관이 다르거나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설계도서는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
 - ※ 경미한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검토의견서 생략 가능
- 사업계획서[서식 32]에는 시설의 설치장소(신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부지 또는 건물 확보 방안 포함),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자원조달방법(자부담분), 사업별 추진일정을 포함
- 설계도 등 각종 제출 서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검토 후 각 1부씩 보관

▶ 교부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

사 업 별	제 출 서 류
공통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서식 29] ☐ 시·도지사의 의견서 : [서식 30] ☐ 기능보강사업 신청내역서(총괄표) : [서식 31]
시설 신축 리모델링	☐ 시설 신축·리모델링 계획서 ① 시설 신축 - 시설 신축(리모델링)계획서[서식 32], 사업자조서표 [서식 33] - 이전 신축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사본 각 1부(건물, 토지분 매입가격 구분표시) - 기술직공무원 또는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의 설계검토의견서 1부(시·도 보관) [서식 34] -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공사견적서 1부(시·도 보관) ② 시설 리모델링 - 시설 신축(리모델링)계획서[서식 32], 사업자조서표[서식 33] - 건물매입 후 리모델링 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사본 각 1부(건물, 토지분 매입가격 구분표시) - 기술직공무원 또는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의 설계검토의견서 1부(시·도 보관) [서식 34] -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공사견적서 1부(시·도 보관)
시설 증·개축	○ 시설 증개축계획서 [서식 35] ○ 기술직공무원 또는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의 설계검토의견서 1부(시·도 보관) [서식 34] ○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공사견적서 1부(시·도 보관)
시설 개·보수	○ 시설 개·보수계획서 [서식 36] ○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공사견적서 1부(시·도 보관)
시설장비 (기자재) 구입	○ 시설 장비(기자재)구입계획서 [서식 37]
시설임차 (전세 또는 임대주택 보증금)	○ 시설 임차계획서 [서식 38]

* 일부 서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나. 국고보조사업계획서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사항은 사전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서식 39]
 - 사업추진방법(예 : 신축 → 리모델링, 개보수 → 시설장비), 시설명, 소재지, 비용분담 내용 등
 - 낙찰차액 활용사업
 - ※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이 원칙이나, 관급자재비 변동·법정경비·안전 시설물 설치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등 시·도지사가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음
-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아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공사기간 연장
 -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 사업량의 변경

다. 사업비의 반납 및 이월

- 사업수행이 어려울 때에는 사유서 및 사업자의 포기서를 첨부하여 반납조치
-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 동 공사에 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

라. 수행실적 보고

- 국고보조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비 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을 매분기별 다음달 10일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 여성가족부는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여 단기간 착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대상 : 시설 기능보강사업
 - 시설 신축, 리모델링, 증개축, 개보수, 장비 및 기자재 구입 등

마. 정산

- 정산 시에는 당초 사업계획서의 비용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 처리

4 시설의 폐지 시 설치비 등 반납

가. 대 상

- 시설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받아 운영하던 시설 등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폐지하는 경우 신축 또는 리모델링비를 반납
- 기자재비 및 장비비 등을 지원받아 구입한 물품은 시설의 폐지 시 시·군·구에 반납 하여 타 시설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반납기준

- 시설공사비(칸막이, 보일러 등)는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정액) 감가 상각하여 반납 받음
- 기자재가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Ⅵ.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구 현장기능강화사업)

Ⅵ-1. 추진체계 및 기준

1 사업개요

구 분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구 현장기능강화사업)
목 적	○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현장 접근성을 높인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와 집결지 정비 기반 마련 - 집결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유린 방지 및 탈성매매 지원 - 성매매여성에게 탈업소 및 탈성매매 계기를 제공, 궁극적으로 알선업주의 사업 포기 및 전향 유도
기 본 운 영 방 향	○ 열린터 운영 및 아웃리치 강화를 통한 탈업소 여성에 대한 지원내용 확충 ○ 자활지원체계와의 연계성·통일성을 도모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안정성 제고 ○ 지자체의 집결지 폐쇄·정비 대책과의 연계 강화 - 지자체에서 수립한 집결지 폐쇄·정비 대책을 기반으로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집결지 폐쇄·정비 대책 추진 주체로서의 지자체와 현장 지원사업 주체로서의 사업수행자의 역할 분담
대 상	○ 개별지원대상 : 집결지 성매매여성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를 포함한 관련 기록 작성과 일련의 지원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함을 전제(비공개 원칙) - 자활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엄선 ▶ 탈업소 및 탈성매매 한 자는 지원시설, 상담소,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지원 - 지원대상의 해당여부 판단은 사업수행자가 심층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거쳐 판단하되 상담일지, 상담자 기본카드(서식 26), 회의록 등 증빙서류 구비 - 내방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이 가능한 사업 참여 대상에 대해서는 개인별 파일을 작성·관리

구 분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사 업 내 용	○ 심신치료 및 정서회복 - 아웃리치 위주 상담활동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보하고,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신뢰관계 형성 - 상담 초기 종합건강진단 실시, 성매매로 인하여 얻게 된 제반 질병(정신과 질환 포함) 치료 지원 및 심리치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 - 업주와의 선불금을 포함한 빚 문제 등 제반 민·형사상 해결과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 자문 및 소송관련 비용을 지원 -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 신용 불량자가 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및 파산절차 등 지원 - 기타 탈업소 의지가 있음에도 이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각종 요인들을 최대한 발굴, 그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지원(예산조치 등 필요) ○ 자활기반 마련 지원 - 개인별 수준에 따라 직업탐색프로그램 제공 - 직업훈련(진학 포함) 등을 통한 취업준비 과정 지원 ○ 탈업소 및 탈성매매 유도 - 상담소에서 개별지원기간 종료와 동시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등에 연계 유도(취·창업 등의 준비과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연계) - 주거문제는 연계시설에서의 자활과정을 거치고 자립단계에 들어선 자에 대해 자립지원 공동생활 및 공공주택 입주 등 알선 ○ 상담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 상담 참여 후 중도 포기자 또는 지원기간이 만료된 자를 대상으로 지속적 사후 관리를 통하여 탈업소 유도 - 지원기간 도중 또는 만료 후 탈업소한 자(특히 귀가한 자)에 대한 지속 관리 - 취업 또는 창업한 자에 대하여도 필요 시 지원을 계속 -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 상담 및 홍보 등에 활용하고 해당자를 동료상담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2 사업추진 체계



① 여성가족부

- 기본정책 및 세부 운영지침 수립·시달
- 사업 대상지역 및 사업운영 주체 선정
- 사업운영 재원 확보 및 지원
- 사업 수행상태 수시 점검, 평가 및 피드백
- 중앙단위에서 대외기관 협조 확보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당해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예산 배분
- 사업 지도·점검 및 정산보고
- 집결지역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역 내 홍보활동 및 주민의식 개선사업 추진
-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사회보장, 지역개발 등 유관부서 협조 확보

③ 사업수행자(집결지 인근 성매매피해상담소)

- 선정기준
 - 해당지역 사업수행 경험(업소진입 및 현장접근상담 가능 여부)

- 관련 전문인력 보유 또는 동원능력
- 사업지역에 대한 이해도(대상여성의 연령구조, 여성 및 업주들의 조직화 정도, 상주 인원 또는 출퇴근 여부, 영업형태, 자활수요 등)
- 경찰 및 지자체 등의 협조 및 지지획득 능력
- 연계 지원시설 확보 여부 등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전담팀 구성 운영
 -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터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 각종 통계(D/B) 및 보고업무 수행
 - 재무회계·재산관리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재무회계관리 지침 준용
- 집결지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서비스 실시
 -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상담활동,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창업·취업알선 등
- 기타 부대사업 실시
 - 집결지 여성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④ 협력기관

- 경찰: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
 - 해당 집결지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단속
 - 상담활동가 신변 안전보호
 - 구출 또는 입건된 성매매 여성 보호 및 지원 연계
 - 기타 업주 등 당해 지역 동향정보 공유 등
- 소방관서: 집결지 내 시설안전점검 등을 성매매 방지활동과 연계
- 기타: 검찰, 법원, 지방노동지청, 세무서, 보건소 등
 - 입건된 성매매사범 처리 관련 지원
 - 취업 및 창업알선 지원
 - 세금 탈루업자 탈세조사, AIDS 예방활동 연계 등

⑤ 지원그룹

- 지원시설: 청소년, 일반, 외국인지원시설 등
 - 탈업소 후 보호 및 자활지원 연계를 위하여 필수적 확보
- 의료지원분야: 전담병원 또는 전문의 확보
- 법률전문가: 전담 자문변호사 섭외로 전문성 확보
- 기타민간단체: 여성단체, 사회복지단체,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3 사업수행 기준

가. 사업의 시행 및 종료

① 사업계획의 제출 및 변경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설(단체) 등은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 시에도 이와 같음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사업수행자의 사업계획서에 해당 집결지 폐쇄·정비에 관한 자체계획서를 첨부, 여성가족부에 예산 배정 요청
- 여성가족부는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시·도별 예산 배정
 - 사업 신규 시행 시에는 시행 여부에 관한 심사절차를 거칠 수 있음
 - ▶ 사업수행자의 현장접근성, 활동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대상 지역 선정

②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해당 집결지역 현황
 - 종사여성 관련 사항: 종사여성 규모, 연령, 경력분포, 근무형태(출퇴근 여부 등), 조직화 정도(대표자나 리더 영향력, 활동상황 등) 등
 - 업소 관련 사항: 업소 수, 영업형태(주점·숙박 등 겸업 여부 등), 주요 고객층, 업주의 조직화 수준(조직화된 경우 대표자 또는 리더 영향력, 활동상황 등), 영업규모 (매출액 등) 등
 - 기타 주변여건 등: 위치적 특성, 관련 상권, 경찰 단속행태, 기타
- 사업수행자의 활동상황
 - 시설운영현황: 종사자 현황, 집결지 관련 운영실적 등
 - 집결지 활동실적: 방문상담, 홍보사업, 지원내용 등
 - 기타 대외활동 등 특기사항
- 집결지 사업추진전략
 -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접근방법
 - 전담인력 확보 계획(종사 예정자 인적사항 포함)
 - 외부 자원동원 및 유관기관 지지획득 방안

- 주요 사업 추진일정
 - 월별로 작성: 업소 종사여성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단계별로 제시
- 주요 사업비 투입계획
 - 개인별 지원 사업
 - 홍보 등 포괄적 사업 추진계획
- 집결지 폐쇄·정비에 관한 계획(지자체 작성)
 - 집결지 정비계획의 수립 여부 및 가능성
 - 집결지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내용(관계부서 협조)
 - 공중위생, 식품위생, 건축, 세무, 소방, 학교보건 등 관계법에 따른 집결지 성매매 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점검 계획
 -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의 구성·운영 계획
 - 집결지 폐쇄·축소를 위한 교육, 캠페인 등 기타 자체 대책 내용

③ 지역별 사업규모

- 사업 진행 과정에서 현장방문 및 홍보 등으로 지원요구가 증대할 경우 그 수요에 대응하여 연차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지 여부 판단
- 지속관리·지원 대상자²¹⁾는 지역별로 4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함
- 단, 연도별 사업규모(사업대상 및 종사 인력)는 가용재원과 지역 사업 시행기간의 경과, 사업수행자의 실적과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일괄 조정

나.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 주관: 시·군·구(시·도)
 - ▶ 시·군·구 주관이 원칙이나, 시·도의 규모 등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에서 운영(사업수행자 주관)
- 구성(예시)
 - 시·군·구(시·도)의 여성정책과 및 유관부서(환경위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의 국장 또는 과장

21) 지원기간 내 탈업소 내지 탈성매매를 목표로 하고 자발적·지속적 내방상담이 가능한 인원(관리카드 작성자) 또는 개별지원가능 인원

-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 관할 소방서, 세무서, 보건소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소관 부서장
- 해당지역 여성폭력 관련 전담 검사
- 시·도 및 시·군·구 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원
- 사업수행자 대표 또는 책임자, 지역 성매매피해자 관련 상담소·지원시설의 장 또는 책임자 등
 - ▶ 필요시 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관 국장이 주재하는 협의체와 소관 과(팀)장이 주재하는 실무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음
 - ▶ 지역 ‘성매매방지대책협의회’ 등이 이미 구성·운영되고 있는 경우, 동 협의체와 통합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협의체를 별도 구성·운영
- 역할: 집결지 정비기반 조성과 현장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단위 정보공유, 세부추진방안 협의 및 기관별 진행상황 점검
- 운영: 분기 1회 이상
- 행정사항
 - 지역협의체 운영 예산은 시·군·구에서 직접 집행
 -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당해연도 지역협의체 운영계획과 전년도 운영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다.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역할과 기능

구분	현장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역할 및 기능
시 설	○ 기존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물적 시설을 이용하고 상담활동 및 프로그램 등 수행에 필요한 공간 등은 현지 특성을 고려, 배치
상담원	○ 정원: 센터 당 2명 기준으로 집결지 규모, 지원인원, 재개발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배정 ○ 자격: 상담원의 법정자격을 갖춘 자 ▶ 법정 상담원 양성교육만 이수하지 못한 자는 ‘수습상담원’으로 칭하되 상담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동 정원으로 간주
행 정 사 항	○ 종사자 자격증빙 관련서류, 근무상황부, 급여대장 등을 구비 ○ 사업수행자는 현장지원사업의 인력·조직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4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현황(15개 지역)

구 분	지 역	사업수행주체	비 고
'09. 1~ (시범 사업 지역)	부산 충무동·초장동	(사)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성매매피해상담소 '살림'	
	인천 송의동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부설 '희희낙낙'	
	부산 범전동	'꿈아리' 부전현장상담센터	폐쇄('14)
	경기 성남 중동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With Us'	
'09. 7~	서울 영등포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	
	광주 대인동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전북 전주 서노송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경북 포항 대흥동	경북 성매매피해상담소 '새날'	
	경남 창원 신포동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10. 1 ~	서울 천호동	여성인권상담소 '소녀의집'	
	경기 파주 연풍리·대능리	(사)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2개 지역
	대구 도원동	(사)대구여성인권센터상담소 '힘내'	
	강원 원주·춘천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춘천길잡이의집	폐쇄('13)
'11. 1~	경기 수원 매산로	성매매피해상담소 '어깨동무'	
'15.1~	부산 해운대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18.1~	서울 성북구	여성인권센터 '보다'	
	대전 중앙동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5 국고보조금 지원

가. 지원 항목(표 1 참조)

- 예산항목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개별지원비를 타 항목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자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표 1. 지원 항목의 구성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운영비	인건비	종사자 급여, 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금	별도 기준
	활동비	상담활동비, 출장비, 아웃리치 활동비	
	운영비	상담소 운영비, 열린터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비	아웃리치 물품비, 예비교육 프로그램비	
개 별 지원비	의료지원	건강검진비 및 치료비	
	법률지원	변호사 선임료, 증거수집비 등	
	직업훈련지원	직업훈련 및 검정고시 교육비	
	직업훈련수당	직업훈련 참여자 지원비	
지역협의체 운영비		회의수당, 회의 운영비 등	지자체 집행

나. 예산편성 및 집행

- 해당지역의 사업규모와 사업운영(예정)자 및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 예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모든 항목은 집결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 사업에 한정하고 기존 시설 등의 업무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
예) 집결지 관련 홍보·교육 활동은 상담소 홍보·교육활동 병행 추진 가능

다. 지원 내역

○ 개별지원비 지원

- 기본적인 사항은 구조지원사업에서의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내용 및 집행방법을 준용(피해자 개별지원비 예산은 타용도 전용 불가)
- 그 외 사항은 아래 표의 '현장지원사업 개별지원비 지원'에 따름

구 분	현장지원사업 개별지원비 지원(구조지원사업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의료 지원	○ 대상: 집결지 성매매여성으로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업소 생활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질환 또는 부상을 입은 자 (서식 26-상답자 기본카드 작성) ○ 내용: 종합건강검진비용(1인당 40만원 이내)
법률 지원	○ 대상: 집결지 성매매여성으로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 목적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기타 법적·행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는 자 (서식 26-상답자 기본카드 작성)
직업 훈련 지원	○ 대상: 집결지 성매매여성으로 자활프로그램 참여도 등을 통해 자활의지가 검증된 자로서 취업·창업 준비를 위한 외부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 - 취업, 창업, 진학 준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훈련 종목에 대하여 지원 (서식 26-상답자 기본카드 작성)
직업 훈련 수당 지급 조건	○ (직업훈련 첫 달) 훈련수당 바로 지급 → (2회차) 전월 출석률 대비 20% 이상인 경우 지급 → (3회차) 전월 출석률 대비 50% 이상인 경우 지급 → (4회차) 전월 출석률 대비 80% 이상인 경우 지급 ○ 직업훈련수당은 수강생 본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지급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선지급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상기 조건이 충족된 이후 지급

6 제 경비 집행지침

가. 일반원칙

- 예산의 집행은 사업운영지침 및 지자체와의 협약 등에 의해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각 항목별 예산액(교부액) 범위 내 집행
- 사업수행자는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에 대한 별도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과 혼용하여서는 안 됨
 -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 사업소관과 구분·관리
 - 당해 법인 또는 단체 명의의 사업 통장을 별도 개설

- 사업비는 지출결의서(서식 15)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 내역을 회계장부에 반드시 기록·관리하여야 함
 -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비 통장의 지출액 및 회계장부의 지출액과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는 일치하여야 함
- 지출한 자금에 대해 매 사항별로 증빙서류를 징구·보존하여야 함
 - 입금의뢰서, 집행처리영수증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지출결의서의 뒷면에 첨부
 - 영수증은 사업비 지출내역에 기재된 항목의 순서별로 편철하고 사업비 집행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
 - 각종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 첨부
- 지출은 상담소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카드 미가맹점이나 원거리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좌입금 가능하나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 증빙 가능하나 1만원 이상 금액 불가
- 각종 장부와 경비의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

나. 인건비·활동비

- 인건비는 지원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단체(법인 또는 지자체)의 자체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
- 인건비와 활동비는 1개월의 근무일수를 채운 경우에 지급
 - 근무 일수에 못 미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상담활동비는 현장상담원을 대상으로 지급(1일 최대 10,000원)하며 상담원 양성 교육 등 외부교육 참가 일수는 상담활동비 지급 일수에서 제외하여 일할 계산
 -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준수
- 아웃리치 활동비
 - 아웃리치에 참여한 집결지 전담상담원 등 아웃리치 활동을 수행한 상담원 등에게 지급
 - 단순 참가가 아닌 아웃리치 활동에 전면 참여한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으며 아웃리치 1회당 최대 50,000원 지급(1인 기준)
 - ▶ 집결지 전담 상담원 뿐만 아니라 소장, 일반상담원 등에게도 지급 가능(자원봉사자 등 제외)

다. 운영비

- 상담소 운영비
 - 상담소에서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
- 열린터 프로그램 운영비
 - 강사비, 도서·교재 구입비, 프로그램 재료비 등의 직접비
 - 난방, 전기, 수도 등 간접비
 - ▶ 소풍, 외부 문화체험 등 열린터의 기능과 직접 관계가 없는 지출은 불가

라. 사업비

- 아웃리치 물품구입비
 - 아웃리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용 물품 구입
 -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이 상담소에서 수행하는 자활지원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안내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웃리치 횟수, 집결지 내 성매매피해여성 수에 따라 집행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적절한 물품을 선정하여야 함
- 예비교육 프로그램비
 - 개별지원 이전 또는 지원기간 동안 사회화를 위한 예비교육을 시행하여 개별지원의 성과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에 기여
 - 사회적응 프로그램, 심리정서 프로그램,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 ▶ 대중교통 이용, 만원으로 쇼핑하기, 문화체험, 직업체험

마. 지역협의체 운영비

- 예산액 : 지역별 500천원 이내(국비, 지방비 포함) 배정 또는 지자체 자체예산 활용
- 지역협의체 개최 횟수 : 1분기 1회 이상
- 예산내역 : 회의 운영비 및 회의수당 등으로 지급

7 행정사항

가. 운영·정산 실적 보고 : 반기별

- 상담소 및 지원시설 : 매 반기 다음달 15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 : 매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 매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점검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세부내역을 검토·조정한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
 - ▶ 사업계획에는 예산의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기재·작성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VI-2. 『열린터』 운영

1 개 요

- 집결지 성매매여성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심층상담 및 집결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설치·운영

2 지원내역

- 열린터 임차액의 국고보조금 지원('09년 8개소)
- 열린터 프로그램운영비 지원('11년부터 지원)
 - 열린터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상설 개방으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열린터로 기능(간이쉼터, 긴급피난처, 심층상담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직·간접 비용 지원
 - ▶ 열린터의 기능과 관계없는 소품, 외부 문화체험 등은 제외

3 현 황(10개소)

지 역	집결지명	운영기관
서울 천호동	천호동 텍사스	소냐의집
서울 영등포	영등포역전	다시함께상담센터
서울 성북구	미아리 텍사스	여성인권센터 보다
부산 충무동·초장동	완월동	살림 성매매피해상담소
부산 해운대	해운대 609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인천 송의동	옐로우하우스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경기 파주 대능리	파주 용주골	여성인권지원센터 쉬고
전북 전주 서노송동	선미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경북 포항 대흥동	포항중앙대학	새날 성매매피해상담소
경남 창원 신포동	신포동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4 주요 운영내용

- 도서비치 및 아늑한 실내 환경으로 편안한 쉼터 조성
- 집결지 여성들의 심리상담실
-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구조 시 위기상담 및 긴급피난처로 활용
- 프로그램 실시
 - 예비교육 프로그램 진행
 - 직업훈련 프로그램
 - 정기적인 공동식사 프로그램
 - 인권교육, 건강진료, 무료법률 상담 등
- 집결지 성매매여성의 소통의 장 형성 등
 - ▶ 이외에도 해당 집결지 성매매 피해여성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및 운용 가능

5 행정사항

- 기초지자체장 명의로 임차계약서 작성 및 전세권 등기 설정
- 계약기간 만료되면 기초지자체장 명의로 재계약 및 전세권 재설정
 -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여성가족부에 변경된 계약서 및 전세권 등기사본을 송부
- 열린터 폐지 시 임차보증금 중 국비로 지원된 금액은 국고로 반납
- 열린터와 상담소는 동일 주소에 위치하여서는 안 됨
 - 단, 상담소가 집결지에 인접해 있고 열린터를 다른 주소지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소와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음

VII.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기타 지원

VII-1. 성매매피해자 신용회복 지원

구 분	성매매피해자 신용회복 지원
사 업 개 요	○ 탈성매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2005년 3월 16일 「탈성매매 여성 신용회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 원 대 상	○ 지원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 상담소에서 탈 성매매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 ⇒ 추천서(서식 27)
지 원 내 용 (채무 조정)	○ 상환유예 :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연기)하고 유예기간 동안 이자 면제 ○ 분할상환 :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을 분할상환 ○ 이자면제 : 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만을 전액 상환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및 향후 발생할 이자는 모두 면제 ○ 신청비용(5만원)은 법률지원비(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로 지원 ※ 개인사채 또는 일부 대부업체 채무는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됨
신 청 방 법	○ 신용회복위원회에 내방하여 신청서류 접수 ○ 신청 이후 신용회복지원 확정 시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되며 신청과 동시에 채권기관의 상환독촉이 중단되고 확정 시 연체정보는 모두 해제 ○ 신용회복지원 확정 시 위원회 안내(우편 또는 휴대폰 메시지)에 따라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 채무조정합의서 작성 및 신용관리 교육(2시간) 수강
기 타 사 항	○ 취업안내 - 구직을 원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에 구직신청서 제출 ⇒ 취업확정 시 개인별로 별도 통보 ○ 상담·문의 - 전화 : 지역번호없이 1600-5500(월~금, 09:00~21:00 / 토, 09:00~17:00) - 인터넷 : 홈페이지(www.ccrs.or.kr) 상단 고객센터(인터넷상담) 이용

Ⅶ-2. 성매매피해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고용노동부)

구 분	성매매피해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 업 개 요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최장 1년 이내에서 ‘진단·경로 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	
지 원 대 상	○ 시설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차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 지원시설에 입소해 있는 성매매피해자(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	
지 원 내 용	취약계층 기준	일반 기준
	○ 1단계 : 상담, 직업심리검사 등 제공 및 월 15~25만원 지원 ○ 2단계 : 무료직업훈련프로그램 제공 및 1일당 18천원(월 최대 40만원) 수당 ▶ 내일배움카드 최대 300만원 지급 ○ 3단계 : 취업알선·취업성공수당 지원 ▶ 1단계 또는 2단계 후 일정요건에 맞는 취업을 한 경우 취업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150만원 까지 지원 - 취업기간 3개월 유지 : 30만원 - 취업기간 6개월 유지 : 40만원 - 취업기간 12개월 유지 : 80만원 * 청년고용촉진수당 추가지원 : 만 34세 이하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	○ 1단계 : 상담, 직업심리검사 등 제공 및 월 10~20만원 지원 ○ 2단계 : 직업훈련프로그램 제공 및 1일당 18천원(최대 월 284천원) 지원 ▶ 내일배움카드 최대 200만원 지급(직업훈련은 본인부담 있을 수 있음)
신 청 방 법	○ 거주지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내방하여 신청서(시설장 추천서 첨부) 접수	
기 타 사 항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안내 : www.work.go.kr/pkg ○ 전국 고용센터 안내 : www.work.go.kr/jobcenter	

VII-3.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지원 절차

구 분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지원 절차(법 제8조)
초등학교	○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의 보호자가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 해당 초등학교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입학을 승낙하여야 함 -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함 ▶ 보호자의 주소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하여야 함
그 밖의 각급 학교	○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의 보호자가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각급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 각급학교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함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재입학·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함
비밀보장 등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성매매피해자등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 ○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의 출석일수에 산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 I. 가정폭력 상담소(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포함)
- II.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 III.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 IV.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 V. 여성긴급전화 「1366」
- VI. 『긴급피난처』 지정·운영
- VII.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 VIII.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IX.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X.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 XI.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I . 가정폭력 상담소

1 상담소 개요

가. 상담소 현황

(’18. 6. 30.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가정폭력 상담소	207	37	11	5	8	9	6	4	40	11	6	12	7	10	22	14	4	1
	(40)	(3)	(5)	(2)	(1)	(1)	(1)	(2)	(3)	(6)	(2)	(4)	(1)	(1)	(5)	-	(2)	(1)
예산 지원	103	9	8	4	3	4	3	3	16	9	4	6	7	8	9	7	3	-
	(20)	(2)	(3)	(2)	-	(1)	(1)	(1)	(3)	(3)	(1)	-	-	(1)	(1)	-	(1)	-

※ ()는 통합상담소 개소 수, 통합상담소는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개소 수에 포함

※ 장애인 상담소 4개소 : 일반 1개소(광주), 통합 3개소(부산, 대구, 제주)

나. 가정폭력 상담소의 업무(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 가정폭력 상담소(이하 일반상담소)

-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 보호
-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
-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지원: 열람·발급 제한에 필요한 서류 중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가 포함됨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침 참조

- 가정폭력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제도 지원: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전학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가 포함됨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침 참조

2)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이하 통합상담소)

- 가정폭력방지법 제6조에 의한 가정폭력상담소 업무
- 성폭력방지법 제11조에 의한 성폭력상담소 업무

2 상담소 설치·운영기준

가. 상담소 설치·운영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나. 시설 설치기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의2)

구 분	내 용
일반 상담소	○ 규모: 최소 49.59m² 이상 ○ 구조 및 설비: 사무실, 면접상담실, 전화상담실, 보호실(임시보호업무 수행 필요 시), 비상재해대피시설 등 - (장애인피해자 지원시설의 경우)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시설 구비 ○ 종사자 수: 상담소장 1인, 상담원 2인 이상 * 국비지원 상담소의 경우 상담원 3인으로 운영
통합 상담소	○ 규모: 최소 99m² 이상 ○ 구조 및 설비 - 사무실 1실, 상담실 2실, 전화상담실 2실, 집단지도실(심리치료실 병용) 1실 이상 설치 - (장애인피해자 지원시설의 경우)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시설 구비 * 사무실 1실, 상담실 2실, 전화상담실 2실, 집단지도실 1실의 규모를 합쳐 최소 99m² 이상 유지 ○ 종사자 수 - 상담소장 1인 - 상담원 4인(가정폭력상담원 2인, 성폭력상담원 2인 이상) 이상 * 국비지원 상담소의 경우 상담원 5인으로 운영

3 상담소 설치 신고 등

가. 상담소 설치·신고

1) 신고서 제출: 신고인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서 서식 및 구비서류는 가정폭력방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관내 타 상담소 등의 설치운영 및 상담수요, 향후 예산지원 전망 등을 사전 설명하고 해당지역의 상담소의 적정 공급 수준을 유도

2) 심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상담소 설치요건의 준수 여부 확인
 - ※ 특히 상담원이 법령상 시군구에 신고된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4]의 교육시간, 과목 등)을 이수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 교육기관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등 설치요건의 준수여부 확인 강화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정 구비서류 외에 설치신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나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할 수 있음
 - ☞ 사회복지사업법(특히 시설장의 요건) 및 건축법,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하여 관련부서와의 협조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신고수리 여부 결정
 - ※ 상담소는 노유자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분류됨

3) 신고증 교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
 -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1호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 신고시설이 상담업무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안내
- 통합상담소 운영형태별 신고방법
 - ①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및 성폭력상담소의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받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합 운영을 따로 신고
 - ②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 기능추가: 가정폭력상담소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합 운영을 따로 신고

- ③ 성폭력상담소 + 가정폭력상담 기능 추가: 성폭력 상담소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합 운영을 따로 신고
- ※ 통합운영 신고는 별지 [서식 1] 양식으로 함

나. 상담소 변경(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 상담소 운영 주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폐지신고 후 새로이 설치신고를 해야 함. 단, 상담소 운영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지속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존 시설에 준하는 예산지원이 가능함.
- ※ 개인상담소의 경우 '상담소의 장 변경'은, 운영주체가 동일한 경우[신고인(대표자)은 변경되지 않고 별도 고용된 소장이 변경]에 한함
- ※ 권역을 달리하여 상담소를 이전할 경우, 기존 관청에 상담소 폐지신고 후 이전하고자 하는 관청에 신규 설치 신고하여야 함. 단, 운영실적, 운영기간 등은 개소일부터 계속 인정하며 지원여부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지 않음

2) 신고서 제출: 신고인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변경신고서 서식: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첨부서류
 -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 또는 변경사유서(개인인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변경시설의 평면도(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소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상담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상담소 신고증

3) 심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4) 변경신고 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 후 5일 이내에 처리
-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별지3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그 변경내용을 상담소 신고증에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다. 상담소 폐지·휴지·재개(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 1) 휴지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함
- 2) 신고서 제출: 법인 등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휴·폐지·재개신고서 서식: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신고서 첨부서류
 -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제외)
 - 상담소 신고증(폐지의 경우)
 - 상담소 종사자 인사기록카드(폐지의 경우)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 3) 검토: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4) 휴·폐지신고 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 후 6일 이내에 처리
 -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10호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신고 수리 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4 상담소의 인력 및 복무

가. 종사자 자격 기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의2)

구 분	내 용
일반 상담소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2항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②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 종사자별 개별기준 - 상담소의 장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상담원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통합 상담소	○ 상담소장: 가정폭력 상담소장 또는 성폭력 상담소장의 자격 중 하나만 갖추면 가능(각각의 교육과정은 모두 수료하여야 함) ※ 하나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나머지 교육과정은 1년 이내 수료 필요 (예) 2018.1월 1일 현재 통합상담소장이면서 둘 중 하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전까지 수료하여야 함 ○ 가정폭력 상담원 : 가정폭력 상담원 자격기준과 동일 ○ 성폭력상담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2호의 개별기준 ※ 상기 개별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개설·운영하는 상담원 교육기관에서 제3호의 교육과정 100시간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함

- * 상담소의 장 자격기준 중 가정폭력 방지업무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서의 업무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보호·지원 등에 대한 관련 업무임
- 가정폭력 방지업무의 경력인정 기관 :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된 기관 또는 시설, ② 가정폭력 방지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 또는 단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④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가정폭력 관련 기관
- * 종사자 자격 중 각종 경력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영수증, 소득세 원천 징수부 등)를 첨부하여야 함. 단,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시설장의 서명 또는 직인으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로 증명할 수 있음

※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 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나. 종사자 복무

- 시설기준의 종사자 수에 포함된 소장 및 상담원은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학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예방교육,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를 위하여 상담을 나가는 등 상담소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출장은 가능함
 - 이 경우 관련자료(근무상황부, 상담일지, 출장대장, 교육대장 등)를 비치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하며,
 - ※ 근무상황부, 출장대장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인사현황자료(출장현황, 휴가현황, 교육현황 등)으로 대체 가능함
 - 잦은 출장으로 인해 피해자 상담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 업무 분담, 교육비 활용 기준 등에 관하여 형평성있는 상담소 자체 규정을 구비하여야 함
 - ※ 상담소 종사자가 외출, 조퇴 등 이석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를 비치
- 상담소장의 겸직관련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장은 상근의무가 있고, 가정폭력방지법에도 상담소장의 전임의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담소장의 겸직은 불가함. 단,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겸직이 필요한 경우는 시·군·구청장의 승인 하에 겸직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은 인건비가 타 기관과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해당 시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함
 - ※ 겸직가능사유: 대학부설시설에 해당대학의 교수가 소장에 임명되는 경우, 법인부설 상담소의 소장을 해당법인 대표가 겸직하는 경우,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장(동일법인·단체에 한함)과 겸직하는 경우

다. 종사자 채용 및 임면보고

○ 종사자 채용

-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시 임금·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함
- 종사자 결원시 1월 이내에 신규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함
- 종사자는 교육훈련과정(100시간) 이수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상의 개별 기준도 갖추어야 하므로 채용 시 수료증 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사자가 될 수 없음(법률 제8조의2제1항)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종사자 임면보고

-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권자는 종사자 채용 시 반드시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가정폭력상담소의 장은 국비(지방비 포함)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종사자 채용 시 관련 시스템에 따라 종사자 임면보고(사유: 종사자 경력인정여부의 증명서류 제출 시 증빙자료로 활용)

○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

- 상담소 종사자의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은 상담소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국고지원 상담소의 경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장애인 상담소 종사자 채용

- 장애인상담소에 지원되는 상담지원인력의 자격기준은 가정폭력 상담원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며, 경력자 등을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음

5 상담소의 관리 및 운영

가. 운영시간

- 주 5일, 평일 8시간 이상 운영(근무시간: 월~금 09:00~18:00)

나. 상담소의 회계 등 업무 관리

- 관리규정
 - 상담소의 장은 상담소의 운영방침, 직원의 업무분장, 상담소의 이용수칙, 그 밖에 상담소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상담소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함
 - 현장점검 및 감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상담일지 등에 대한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 등은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일지 등을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하게 상담일지 제출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 단,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이 상담소 운영실태, 이용자 및 운영비 집행상황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담소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장부의 비치

구분	관리에 관한 장부	사업에 관한 장부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장부 종류	- 상담소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직원관계철(인사기록카드, 이력서, 사진 등) - 회의록관계철 - 소속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 및 관계철 등 기록 -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행정 기관과의 문서철) - 문서 접수대장 및 발송대장, 종사자 근무상황부, 출장대장, 교육대장 등 각종 대장	- 상담소의 이용자 관계서류 (신상조사서, 지원기록 등) -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 상담원 교육관계서류 - 기타 운영실적 등	- 총계정원장 - 수입 및 지출보조부 - 금전출납부 및 증빙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비품관리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각종 증빙서류

○ 상담소 신고증 게재

- 시설 이용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신고 시설임을 알릴 수 있도록 시설 내에 신고증 게재

○ 기록의 보존

- 상담내용, 재무·회계 기록에 관한 사항 등은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 (기록의 보존)에 따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단, 재무·회계 기록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보관

○ 재무회계 관리의 보존 및 관리

- 상담소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재무회계 관리는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 법령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용
- 상담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 후 집행

○ 업무의 전산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산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함

○ 후원금품의 관리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발급(의료·사회복지·종교·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통해 후원금 또는 지정기탁금을 수령한 경우 포함)

※ 금융기관 등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발급 가능

※ 후원금 전용계좌는 시설 명칭이 부기된 시설 고유의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두어야 함

- 후원자가 후원금품의 용도를 지정했을 경우 지정 용도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후원자(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통보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상담소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제출 후 20일 이내에 상담소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함(단, 후원자 성명은 비공개)

○ 개인정보 보호

- 상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목적용 외에 수집 또는 제공할 수 없음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 상담소와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 가정폭력방지법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20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비밀을 누설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으로 동법 제78조(징계 사유)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

6 시설의 안전관리

가. 시설의 안전관리(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 종사자의 안전관리

- 상담소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 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1인당 보험료 연 5만원 이내, 운영비로 지출)

○ 자체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시설장은 소관시설에 대하여 매 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 (수시안전점검)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 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안전점검기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 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
 -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지자체 안전점검
 - 시·도 및 시·군·구는 하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여성가족부에서 통보하는 안전 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대상 교육훈련, 안전점검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
 -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 상태, 보험가입 여부, 시설거주자 건강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며, 취약시기의 특성에 따라 급식시설 위생상태,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 추가 점검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별도 신청 및 직권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4)
 - * 주요 점검내용 : 시설물 기초지반 침하 및 벽면 균열 발생 여부, 시설물 주변 석축·옹벽, 비탈면의 결함 발생여부 등
 - 지자체에서는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보수 등이 시급히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능보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나. 사고 예방 및 조치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 소화시설·장비는 소방법령의 제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종사자가 수시로 확인·점검
- 시설장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평상시 종사자들에게 사고예방의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도록 지도하여 사고발생 예방
 -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해빙기 안전점검 철저(보일러·가스·전기 등)
 - 화재대피 훈련 등 방재훈련을 시설별로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

-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등
 -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보고, 의료조치, 초기대응(화재진화 등), 외부 연락 등에 대한 종사자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종사자들이 유사시 자신의 임무를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설장은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고에 빠른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시·군·구청장은 사고발생시 시설안전사고보고서 별지 [서식 기을 작성 즉시 보고 : 시·군·구청장 → 시·도 → 여성가족부
 - ※ 소방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 제규정에 따른 방염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종사자 안전대책 마련
 - 시설장은 시설종사자가 상담 등 업무와 관련 폭행 등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
 - 시설 내·외 CCTV 설치, 가스충 등 구비
 - 경찰관서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다.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단, 각 부분별 인원은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의 장
 - 시설 이용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기능) 위원회는 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 심의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임기 및 운영)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함.
-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운영
 - 운영위원회 운영일지를 작성·보관

7 국비지원 상담소 지원기준

가. 지원요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신고된 상담소로서 상담소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준수하여 3년 이상 운영하고 상담 실적, 시설평가 결과 등이 우수한 상담소
- 위 사항은 국고지원의 최소요건으로써 운영기간 최소연수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원요건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님
- 단, 일부지역 및 도서벽지 등 3년 이상 운영 상담소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판단하에 1년 이상 운영 상담소 선정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운영기간 기산일은 상담소로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실제 상담업무를 개시한 날 부터 계산함

나. 국비지원 대상 선정기준

단계	절 차
1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국비지원 선정 계획 통보
2	■ 상담소 국비지원 선정 계획 안내
3	■ 국비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4	■ 국비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시·도에 지원신청
5	■ 현장실사, 추천심사위원회 개최, 국비지원기관 추천
6	■ 국비지원 심사 및 통보

- 여성가족부는 국비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시·도가 신청한 국비지원 대상 상담소에 대하여 심사·선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국비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서 시·군·구가 신청한 국비지원 대상 상담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상담활동 등 사업수행능력과 지역안배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비지원 대상을 선정 및 지원신청
- 시·도지사는 국비지원대상 선정 시 내부 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상담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활용
- 기존 지원상담소의 경우에도 법령 및 지침 준수여부, 운영실적 등을 확인하여 예산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
 - ※ 시·군·구청장은 신규 및 기존지원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에 제출
- 국고지원 상담소가 1개월 이상 휴지 시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함
- 동일한 운영주체(법인 또는 개인)가 동일 시·군·구내에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상담소를 각각 개설하거나 동일분야 상담소를 2개소 이상 운영하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다. 국고지원대상 선정시 유의사항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상담소가 최소 1개소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안배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함
- 기존 국비지원 상담소의 운영이 부실하거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종사자 임면의 허위 보고 등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하는 등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여성가족부에 서면보고

8 2019년 국고보조금 지원 내용

가. 2019년도 지원내역 및 금액 등

(단위 : 천원)

통합상담소 (종사자 6인 기준)	일반상담소 (종사자 4인 기준)	장애인상담소추가지원 (개소당)
174,730	116,158	상담원(1인) : 25,230 교통비 : 12,099

※ 금액은 국비,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보조율은 국비 50%임

단,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70% 국비 지원

※ '19년 종사자 1인 확대에 따라 상담소는 '19.1월초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종사자 인건비는 지원 예산총액의 80~9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기본급, 4대보험 자부담분 및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이 2019년 기준 최저임금액(8,350원×209시간=1,745,15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 시·군·구는 상담소로부터 연간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 및 사업비 지급신청을 받을 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집행하도록 유도

나. 운영비 관련

- 운영비는 지원 예산총액의 10~20% 내에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함
 - ※ 국비지원 운영비는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내부강사로 명목으로 입금된 상담소 자체 운영비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 종사자 상해보험료(1인당 보험료 연 5만원 이내)
 - 수용비(인쇄비, 소모성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전국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비 등),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통신시설 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등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등)
 - 사무실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월 25만원 한도에서 지자체 승인 없이 운영비로 집행 가능함. 단, 25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가 집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승인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함)
 - ※ 단, 해당관청 관할 공공기관 건물 내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입주하도록 검토·조치할 수 있음

다. 종사자 인건비 관련

- 국비지원 상담소의 인건비는 소장 1인 및 종사자 3인으로 책정하며(통합상담소의 경우 소장 1인, 종사자 5인), 이는 최소 지급기준으로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음
 - ※ 상담소는 인력 총원이 됨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초기 현장 동행지원, 데이트·스토킹 피해에 대한 초기 위기개입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국비지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 책정을 할 수 있음
- 중도 퇴직자 및 신규 채용자 인건비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
 - 일할계산 산식: 월 고정급(보험료 제외) ÷ 209시간 × 8시간 × 월 근무일수
 - ※ 월 근무일수는 중도 퇴직일 또는 신규 채용일이 해당하는 월의 근무일수를 말함
- 개인이 운영주체이거나 법인·단체대표(운영주체)와 시설장이 동일한 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퇴직급여는 별도로 적립하지 않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적립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운영비로 사용 가능(여타 종사자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
 - * 당해연도 퇴직적립금만 운영비로 사용가능함
 - 예시) 2017년 입사자가 2018년 퇴직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017년 퇴직적립금은 반납하고, 2018년 퇴직적립금은 운영비로 사용)

※ 장애인상담소 별도 지원예산 집행 방법

- 장애인 방문상담 등 상담소 업무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별도 지원
 - 장애인 대상 가정폭력 상담 및 예방교육 등 상담원의 업무에 소요되는 출장비(일비 및 교통비) 지급
 - 근무지 내: 일비 4시간 이하 10,000원, 4시간 초과 20,000원
 - 근무지 외: 일비 20,000원, 식비 20,000원, 교통비 실비지급
 - ※ 근무지 내 출장에 교통비 별도 지급하지 않음
 - ※ 근무지 외 출장에 개인 차량 이용 시에도 실비 지급 가능
 - 업무 차량 유지비(유류비, 차량보험료 및 수선비, 자동차세·환경부담금 등)로 집행 가능
 - 장애인 가정폭력 상담소 업무와 관련한 홍보에 필요한 경비(홍보물 제작 및 배포, 광고비 등)로도 집행 가능
- 상담지원인력(1명) 인건비 연간 25,230천원 추가 지원
 - 1인당 지원액은 기본급, 4대보험 자부담분 및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이 2019년 기준 최저임금액(8,350원 × 209시간=1,745,15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라. 종사자 소진방지 지원 관련

-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자체 운영비 내에서 슈퍼비전 또는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치료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 지원 가능 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심리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은 참여지원 가능(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 단 여행·영화관람도 소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화한 경우 가능)
 - ※ 지원 가능 액수: 연간 1인당 20만원 범위 내

9 기타 행정사항

- 상담소가 폐쇄될 경우 시·군·구청장은 폐쇄되는 상담서류 일체를 관할 지역 내의 다른 상담소에 이송토록 조치
 - ※ 단, 상담일지는 3년 이상 보관 후 폐기 조치
- 상담소 종사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상담소로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도 근속연한으로 인정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각 상담소의 운영 및 정산실적을 지정서식에 따라 상반기 실적은 2019년 7월 30일까지, 연간 운영실적은 2020년 1월 30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및 상담소의 장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지급·정산 등 회계업무, 종사자 인사업무, 통계관리업무 등 가능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여야 함

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1 보호시설 운영 개요

가. 운영 현황

(’18.6.30.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66	11	3	3	1	4	1	1	12	5	3	4	4	4	2	6	2
일반보호 시설	46	9	2	2	1	3		1	12	4	1	2	2	2	2	3	
가족보호 시설	20	2	1	1		1	1			1	2	2	2	2		3	2

※ 장애인시설 : 광주 1(10명), 경기 1(30명)

※ 중장기시설 : 서울 1(12명), 부산 1(20명), 광주 1(18명), 경기 1(10명)

나. 보호시설의 업무(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 / 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 가정폭력방지법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20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비밀을 누설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으로 동법 제78조(징계 사유)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2 설치 기준

가. 설치·운영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나. 설치 기준

1) 시설 설치기준

- 고려사항 : 입지조건 : 시설의 적정한 분포,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면적 : 입소정원 $\times 6.6\text{m}^2$ 이상
 - ※ 부득이한 경우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초과 입소가능
- 구조 및 설비
 - 거실은 적당한 난방, 통풍 및 일조량을 갖춰야 함
 -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 화장실, 급·배수 시설
 - 비상재해대비시설

3 보호시설 설치 신고 등

가. 설치인가 절차(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1) 인가신청서 제출

- 신청인 ⇒ 관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심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설치기준 및 종사자 자격 요건 등
 - ※ 보호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로 분류됨

3) 인가필증 교부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인 (접수 후 10일 이내)

나. 보호시설 변경인가 및 폐지·휴지·재개

○ 변경인가(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 ① 신고서 제출 :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된 경우,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② 검토 및 변경인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인가 여부 결정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 후 5일 이내에 처리
 -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별지6호

○ 폐지·휴지·재개신고(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 ① 신고서 제출: 법인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② 휴·폐지·재개신고서 서식: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신고서 첨부서류
 -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제외)
 - 보호시설 인가증(폐지의 경우)
 - 보호시설 종사자 인사기록카드(폐지의 경우)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 ③ 검토: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④ 휴·폐지신고 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 후 6일 이내에 처리
 -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1호
 - ※ 휴지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함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신고 수리 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4 보호시설의 인력 및 복무

가. 종사자 자격기준

- 종사자 자격(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 보호시설의 장과 상담원의 자격은 상담소와 동일함
 - * 보호시설의 장 자격기준 중 가정폭력 방지업무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서의 업무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보호·지원 등에 대한 관련 업무임
 - ※ 가정폭력 방지업무의 경력인정 기관: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된 기관 또는 시설, ② 가정폭력 방지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 또는 단체,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④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 보호전문기관 등 가정폭력 관련 기관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 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나. 종사자 수

- 종사자 수(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2])
 - 보호시설에는 보호시설의 장 1인과 상담원 등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두어야 함
 - 다만, 보호시설의 재정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과 상담원은 겸직 가능
 - * 국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장과 상담원 겸직 불가
 - 보호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 시설장의 상근 의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참조

구 분	단기 / 장기 보호시설 정원		
	5~10인 이하	11~30인 이하	31인 이상
시 설 장	1	1	1
상 담 원	2	3	4
총 계	3	4	5

- * 주거지원시설을 운영하는 보호시설은 자립상담원 1인 정원으로 추가
- * 국비지원 보호시설은 상담원 1인을 정원으로 추가
- * 가족보호시설은 정원별 단기 / 장기 보호시설에 상담원(또는 취사원) 1인 추가
- * 장애인보호시설은 입소정원 10인당 보조인력 1인을 증원 배치하여야 함

다. 보호시설 운영 및 종사자 관리

- 운영시간 및 종사자 복무
 - 매일 24시간 체제로 365일 무휴 운영
 - 시설기준의 종사자 수에 포함된 시설의 장, 상담원 및 보조원은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 법인의 대표자(이사장 포함)가 시설장을 겸할 수 없음
- 출장 관련 규정
 - 학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예방교육,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 상담 등 보호시설 고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출장은 가능함
 - 이 경우 반드시 관련자료(근무상황부, 출장대장, 교육대장, 상담일지 등)를 비치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하며,
 - * 근무상황부, 출장대장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인사현황자료(출장현황, 휴가현황, 교육현황 등)로 대체 가능함

○ 종사자 채용

-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 시 임금·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함
- 종사자 결원 시 1월 이내에 신규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사자가 될 수 없음(법률 제8조의2 제1항)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종사자 임면보고

-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권자는 종사자 채용 시 반드시 사회 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보호시설의 장은 국비(지방비 포함)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종사자 채용 시 관련시스템에 따라 종사자 임면보고(사유: 종사자 경력인정여부의 증명서류 제출 시 증빙자료로 활용)

○ 종사자 소진방지

-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자체 운영비 내에서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치료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 지원 가능 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심리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은 참여지원 가능(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 단 여행·영화관람도 소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화한 경우 가능)
 - ※ 지원 가능 액수: 연간 1인당 20만원 범위 내

○ 종사자 대체인력 채용

- 보호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은 상담원 등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5 입·퇴소 관리·운영

가. 입소 관리

- 입소 대상자: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
 - 일반 보호시설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지적장애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을 보호자의 입소동의 없이 입소시킨 경우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가족보호시설
 - (1순위)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
 - (2순위) 자녀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
 - (3순위) 가정폭력피해자
 - ※ 가족보호시설은 되도록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나. 퇴소 관리

- 퇴소 사유
 - 보호목적의 달성 또는 보호기간 만료
 -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자
 - 타 입소자 및 상담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자해, 폭력 등)
 - ※ 장애인 입소자가 보호기간 만료로 퇴소 시 계속적인 시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시설장은 해당 시·군·구에 장애인시설로의 연계를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시·군·구 보호시설 담당 공무원은 장애인시설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장애인시설로 입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다. 보호기간

□ 보호기간(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

○ 단기보호시설(가족보호시설 포함) : 6개월 이내

-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 가능

※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연장 사유 및 기간을 포함한 보호기간 연장 결정을 보호 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장기 / 장애인 보호시설 : 2년 이내

○ 임시보호 : 3일 이내(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

※ 동일한 가정폭력을 사유로 2개소 이상의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별 입소 기간을 합산하여 보호기간 적용(단, 보호시설 퇴소자가 다른 가정폭력을 사유로 보호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새로이 적용)

※ 가정폭력 피해자 장기·장애인 보호시설의 운영

○ 중장기 시설의 경우 시설인가, 입소자 관리, 보조금 지원 등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장기 시설 인가 시, 지역별 수요 및 향후 예산지원 전망 등에 대해 시·도 및 여성가족부와 사전협의하는 등 신중을 기할 것

○ 입소대상 및 보호기간의 운영·관리

〈입소대상 제한〉

① 장기 시설의 장은 단기시설을 거친 자를 우선적으로 시설에 입소시키되, 동반자녀 유무, 폭력피해의 심각성, 피해여성의 이혼의사 및 소송진행 여부, 자립의지 등을 면접을 통해 총체적으로 검토 후 입소 여부를 허용해야 함

※ 장기시설의 장은 단기시설로부터 피해여성에게 대한 서류(사본) 일체를 이송받아 참고하여야 함

※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입소 시에 구체적인 창업·취업 등의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② 장애인 시설의 장은 경증 장애인(4급 이하)으로서 생활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가급적 단기시설 입소를 유도하여, 중증장애(정신지체 포함) 중심으로 시설을 운영해야 함

6 보호시설의 관리·운영

가. 보호시설의 회계 등 업무 관리

○ 관리규정

-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방침, 직원의 업무분장, 입소자에 대한 소방·재난·보건 등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시설의 이용수칙,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해야 함

○ 현장점검 및 감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 등은 보호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입소자대장 등을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하게 입소자대장 제출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등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이 보호시설 운영실태, 입소자 및 운영비 집행상황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시설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장부의 비치

구분	관리에 관한 장부	사업에 관한 장부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장부종류	- 보호시설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직원관계철(인사기록카드, 이력서, 사진 등) - 회의록관계철 - 소속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 및 관계결의 기록 -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행정 기관과의 문서철) - 문서 접수대장 및 발송대장 - 종사자 근무상황부, 출장대장, 교육대장 등 각종 대장 - 입소자대장, 시설안전교육 일지, 시설안전점검일지, 시설 안전 사고보고서, 차량운행 일지 등	- 입소자 관계서류(신상조사서, 입소확인서, 지원기록 등) -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 상담원 교육관계서류 - 운영실적 관련자료 등 - 피해자 또는 가해자프로그램 운영관련 서류 - 의료비관련 서류 - 법률지원관련 서류 - 학업지원관련 서류 - 기타 보호시설 사업에 관한 자료 등	- 총계정원장 - 수입 및 지출보조부 - 정부보조금명세서 - 사업비명세서, 사무비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 후원금수입 및 사용내역서 - 금전출납부 및 증빙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비품관리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각종 증빙서류

※ 기타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된 각종 서식 및 자료는 별도로 비치 활용

○ 기록의 보존

- 입소자의 상담내용 및 보호실적, 재무·회계 기록에 관한 사항 등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기록의 보존)에 따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단, 재무·회계 기록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보관

○ 재무회계 관리

- 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재무회계 관리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재무회계 관련 법령과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준용
- 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 후 가능

※ 지출결의서 작성 시 지출내역을 6하 원칙에 의거 기재하고, 반드시 내부결재를 득할 것

○ 후원금품의 관리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발급(의료·사회복지·종교·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통해 후원금 또는 지정기탁금을 수령한 경우 포함)

※ 금융기관 등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발급 가능

※ 후원금 전용계좌는 시설 고유의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두어야 함

- 후원자가 후원금품의 용도를 지정했을 경우 지정용도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후원자(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통보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 참조)
- 보호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제출 후 20일 이내에 시설 내 자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함(단, 후원자 성명은 비공개)

○ 업무의 전산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함

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구성)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단, 각 부분별 인원은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의 장
 -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기능) 위원회는 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 심의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임기 및 운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운영
 - 운영위원회 운영일지를 작성·보관

7 시설의 안전관리

가. 시설의 안전관리(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 보험 가입

-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함

○ 자체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시설장은 소관시설에 대하여 매 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시안전점검)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안전점검기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 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지자체 안전점검

- 시·도 및 시·군·구는 하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여성가족부에서 통보하는 안전 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대상 교육훈련, 안전점검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
-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 상태, 보험가입 여부, 시설거주자 건강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며, 취약시기의 특성에 따라 급식시설 위생상태,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 추가 점검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별도 신청 및 직권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4)
 - * 주요 점검내용 : 시설물 기초지반 침하 및 벽면 균열 발생 여부, 시설물 주변 석축·옹벽, 비탈면의 결함 발생여부 등
 - 지자체에서는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보수 등이 시급히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능보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나. 사고 예방 및 조치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 소화시설·장비는 소방법령의 제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종사자가 수시로 확인·점검
- 시설장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평상시 종사자들에게 사고예방의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도록 지도하여 사고발생 예방
 - 주간 및 야간근무자 지정 및 근무 철저
 -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해빙기 안전점검 철저(보일러·가스·전기 등)
 - ※ 가스경보기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 미연에 방지
 - 화재대피 훈련 등 방재훈련을 시설별로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
 -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보고, 의료조치, 초기대응(화재진화 등), 외부 연락 등에 대한 종사자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종사자들이 유사시 자신의 임무를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설장은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고에 빠른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시·군·구청장은 사고발생시 시설안전사고보고서 별지 [서식 기을 작성 즉시 보고 : 시·군·구청장 → 시·도 → 여성가족부
 - ※ 소방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 제규정에 따른 방염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시설장은 시설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는 사례(종사자 채용공고, 법인홈페이지 등)가 없도록 주의
- 종사자 안전대책 마련
 - 시설장은 시설종사자가 상담 등 업무와 관련 폭행 등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
 - 시설 내·외 CCTV 설치, 가스충 등 구비
 - 경찰관서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가정폭력 보호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의무(1인당 보험료 연 5만원 이내, 운영비로 지출)
- 재난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8 2019년 국고보조금의 지원 내용

가. 국비지원기관 선정

- 여성가족부는 국비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시·도가 신청한 국비지원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심사·선정할 수 있음
- 신규 지원 대상 시설 및 정원 조정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시설은 지역형편을 감안 하여 지자체에서 1차로 결정하되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지원여부 및 지원 시기 결정
 - 시설 설치 후 최소 1년 이상 운영실적 등을 검토하여 운영비 지원여부를 결정

나. 지원 기준 및 항목

- 지원기준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국비지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 책정을 할 수 있음(상담원은 생활복지사 수준 적용)
- 지원항목: 인건비, 운영비

다. 인건비, 운영비 지원 기준

- ※ 시설장 1명 인건비 포함, 종사자 추가 배치 시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가능
- ※ '18년 대비 보호시설 당 1명 증원 - 지원액에 종사자 6개월분 반영

• 일반보호시설

(단위 : 천원/년, 지방비포함)

정 원		종사자수	지원액
10인 이하 시설		4명	104,616
11~30인 이하	15인 이하	5명	131,207
	20인 이하		139,131
	25인 이하		148,746
	30인 이하		158,361
30인 초과		6명	191,763

- ※ 정원 11인 이상 30인 이하 시설의 경우 정원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원
- ※ 종사자 1명은 상담원, 생활지도원 등으로 채용 가능

• 가족보호시설 :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은 아래 기준으로 운영비 지원

- ※ 단, 가족보호시설을 신청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하는 법인에 한함

(단위 : 천원/년, 지방비포함)

정 원		종사자수	지원액
10인 이하 시설		5명	134,116
11~30인 이하	15인 이하	6명	164,668
	20인 이하		176,420
	25인 이하		188,171
	30인 이하		199,923
30인 초과		7명	234,749
40인 초과			245,743

- ※ 일반시설에 비해 추가로 지원하는 종사자 1명은 상담원, 취사원, 생활지도원, 관리원 등으로 채용 가능

- 장애인보호시설은 추가지원으로 인건비2명(상담원 1명, 취사원 1인) 및 교통비를 개소당 61,579천원(지방비포함/년)을 별도 지원함

- ※ 상담원 및 취사원의 최저 인건비 기준은 보호시설 상담원과 동일(1인당 22,228천원)

- 상기 인건비, 운영비 금액은 보호시설 1개소 당 최소 지원 금액이며, 임의로 지급 단가를 감액 조정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종사자 인건비는 사업비를 제외한 지원 예산액의 80~9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기본급, 4대보험 자부담분 및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함. 다만,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이 2019년 기준 최저임금액(8,350원×209시간 = 1,745,15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 운영비는 사업비를 제외한 지원 예산액의 10~2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종사자 상해보험료(1인당 보험료 연 5만원 이내)
 - 수용비(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전국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비 등),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건물 및 건축 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통신시설 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 * 10만원 이내의 소모성 물품 구입(입소자를 위한 물품, 집기 등) 가능
 - * 입소자를 위한 타지역 출장여비 지급 가능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등)
 - 숙직비(1일 2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등
 - 종사자의 숙직, 연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활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활용 가능. 단, 대체인력이 가정폭력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
-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적립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운영비로 사용 가능(여타 종사자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

라. 인건비, 운영비 집행방법

- 지자체 직영 보호시설의 경우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배정
- 상반기 집행실적 평가 및 하반기 예산전망에 따른 가정산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 조정
 - ※ 장애인보호시설 교통비 집행방법
 - 가정폭력피해 여성장애인 방문상담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1인당 일비 23,764원 지급)를 별도지원
 - 동 교통비는 차량운행비, 장애인 대상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비로 집행 가능
 - 예) 차량유류비, 차량보험료 및 수선비, 운전기사 인건비, 교육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 장애인보호시설 별도 지원예산 집행 방법

- 장애인 방문상담 등 시설 업무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별도 지원
 - 장애인 대상 가정폭력 상담 및 예방교육 등 상담원의 업무에 소요되는 출장비(일비 및 교통비) 지급
 - 근무지 내 : 일비 4시간 이하 10,000원, 4시간 초과 20,000원
 - 근무지 외 : 일비 20,000원, 식비 20,000원, 교통비 실비지급
 - ※ 근무지 내 출장에 교통비 별도 지급하지 않음
 - ※ 근무지 외 출장에 개인 차량 이용 시에도 실비 지급 가능
 - 업무 차량 유지비(유류비, 차량보험료 및 수선비, 자동차세·환경부담금 등)로 집행 가능
- 상담원 및 취사원(2명) 인건비 추가 지원
 - 1인당 지원액은 기본급, 4대보험 자부담분 및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이 2019년 기준 최저임금액(8,350원 × 209시간 = 1,745,15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마. 기타 피해자 지원 서비스 집행방법

1) 생계비 등

- 지원항목 :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교복비 포함)
- 지원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대상자 결정 방법

- ① 보호시설에 피해자 입소 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군·구에 보고
- ② 시·군·구에서는 입소 보고된 자에 대하여 행복e음을 이용하여 자산조사 실시
- ③ 자산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는 기초생활급여를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자는 생계비 지원대상자로 결정

- 세부기준

- 생계비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 중 비수급자
- 아동교육지원비 : 생계비 지원대상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제6호 규정에 의한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과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학비(입학금, 수업료)지원 제외

초·중등교육법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 지원기준

- 생계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와 동일 기준 적용

< 2019년도 비수급자 생계비(1인당) 지급기준 >

구 분	금 액	지 급 시 기
주·부식비, 피복비	252,812원	매 월
월동대책비	35,394원	10월 지급(연 1회)
특별위로금	36,300원	설·추석 전월(연 2회) * 수급자 개인별 직접지급

※ 일단위 지급액 : 1인당 1일 8,312원

※ 특별위로금은 수급자 개인별 직접지급

- 아동교육지원비: 교육급여 수급자와 동일기준 적용(교복비 제외)

① 입학금·수업료(지원대상: 고등학생 ☞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포함)

- 지원대상: 고등학생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포함
 -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후 입학금·수업료 지급
- 지원내용: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신규 지원대상자의 경우
 - 입학금: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② 교과서대

- 지원대상: 고등학생
- 지원내용: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지원방법: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③ 부교재비

- 지원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초등학생 66,000원, 중·고등학생 105,000원 지급(연 1회)
- 지원방법 : 학년 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차기 학비지원 시기에 전액 지급

④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학생, 고등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초등학생 50,000원, 중·고등학생 57,000원 지급
- 지원방법 : 1학기(1/4분기), 2학기(3/4분기) 2회 거쳐 지급, 신규 지원대상자는 급여 신청일이 1/4분기, 2/4분기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 2회(최초 지급시와 3/4분기 지급시)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3/4분기, 4/4분기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지급

※ 1/4분기(3~5월), 2/4분기(6~8월), 3/4분기(9~11월), 4/4분기(12~2월)

⑤ 교복비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학생
- 지원내용 : 동복·하복 각 280천원 지급
- 지원방법 : 신입생의 경우, 동복비는 2월, 하복비는 4월에 지급 전학생은 전학시기 등 고려하여 지급

○ 신청방법 : [붙임 5] 보호비용 신청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지원 및 집행방법

- 생계비

-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와 같이 보호시설장에게 지급
- 생계비 지원대상자가 보호시설에 입·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비는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 ※ 보호시설장은 주·부식비와 피복비 등 구분 없이 집행 가능
 - ※ 특별위로금은 시설장을 통해 대상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 아동교육지원비 : 보호시설장에게 지급하여 입학금·수업료는 학교로 직접 납부하고, 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교복비는 대상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 집행실적 보고 : 보호시설장은 매월 전월의 생계비 집행실적을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군·구청장에게 보고

2) 직업훈련비

- 지원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주거지원 임대주택 입주자
 - ※ 보호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지원받는 중간에 퇴소하는 경우 퇴소 후에도 동일 훈련직종에서 계속지원 가능함
- 지원기준: 국·공립 직업훈련기관, 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모든 외부 훈련기관을 포함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피부미용, 요리, 미용, 디자인, 컴퓨터 관련 등 실질적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한 직업교육 및 진학교육비
 - 직종별 훈련 과정 및 비용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1인당 지원단가를 규정하지 않음
 -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만 지원하며 시설이 교육기관에 입금하되 수강료, 교육기관이 발행한 청구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리
 - ※ 직업훈련비 선납이 원칙인 훈련기관의 경우에는 우선 선집행하고 향후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 훈련생 본인이 직업훈련비를 부담할 수 있음
- 지원항목: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직업교육비 또는 학원비, 교통비(필요시 1인당 월 10만원)
 - 직업훈련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등에 대한 교통비, 재료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이 판단하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 교통비 지원방식은 훈련생의 계좌로 입금(입금 시 시설명 노출에 유의)

3) 보장시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및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지원

바. 보호시설 기능보강

- 지원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함
- 지원내역
 - 보호시설 신·증축비
 - 보호시설 개·보수비, 기자재 구입비

○ 지원대상

- 신축 및 증축: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법인에 한함)

※ 임차시설은 제외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일 경우 지자체에서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확인 후 예산교부 신청

- 개·보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임차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필요시 예외인정

※ 예외: 방염설비 및 개·보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안전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안전진단서 등 첨부)

- 시설장비 보강: 모든 시설

○ 사업수행

-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 시설보강사업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의 해당 유무와 건축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신청하고, 건축규모는 예산신청에 따라 반영된 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시설의 부족 또는 과다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규모로 상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함

※ 신·증축비를 지원받아 시설을 운영중인 법인은 법인해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으로 설치된 건축물 등을 10년 이상 보조금의 목적사업 수행만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조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지사가 검토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만, 시설의 건축허가기관이 다르거나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설계도서는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

※ 경미한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검토의견서 생략 가능

- 시설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시설기자재 보장
 - 사업계획서에 기자재명, 소요량, 사업비, 사용용도 및 기자재 보유현황 등을 포함시켜야 함
- 사업비 반납 및 이월
 - 사업수행이 어려울 때에는 사유서 및 사업자의 포기서를 첨부하여 반납조치 하여야 함
 -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공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시 지체없이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낙찰차액 활용사업
 - 입찰결과 등에 따라 차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이 원칙임
 - 다만, 관급자재비 변동·법정경비·안전시설물 설치·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등 시·도지사가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음
- 사업변경
 -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시·도 지사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공기연장,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 사업량의 변경
 - 낙찰차액 활용사업(동일한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한함)

9 피해자 지원 관련

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 주민등록 관계법령 개정(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신설)에 따른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 가능
- 열람·발급 제한 신청할 수 있는 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서 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한 사실이 있거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 등)한 경우
- 열람·발급 제한신청 방법(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의2, 시행규칙 제13조의2)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및 증거서류를 제출
- 열람·발급 제한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택일,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3조의2)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 ※ 이 증거서류의 경우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 ※ 가정폭력피해자는 열람·발급을 제한신청 후 같은 방법으로 해제신청도 할 수 있음

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주민등록 직권조치방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에 있어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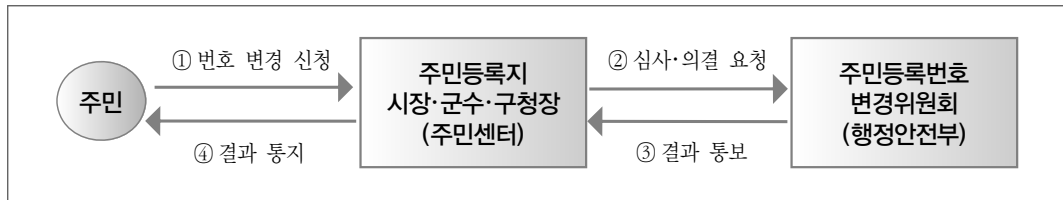
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배경 :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17.5월~)
- 신청 대상자 :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입증자료 제출
* 대리신청 가능 :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법률대리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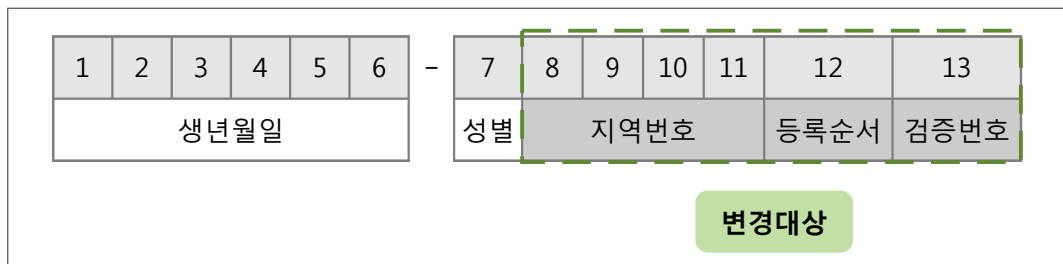
〈입증자료 예시〉

- ◇ 가정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

- 변경 절차 : 신청자가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변경



- 변경 후 기존번호와의 연계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공공기관 ⇒ 자동변경
 -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등 ⇒ 직접 변경 신청
 -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공시제한 신청 및 해지신청 가능(법원행정처)
 - * 법정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임의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음
 - * 신청인이 직접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함(우편신청 불가능)

○ 관련 서식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변경된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관리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라.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 부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지원내용: 가정폭력피해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특례 적용
- 신청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4]에 의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은 제외함
- 지원요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 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함
- 우선 공급대상 임대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택1)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 증거서류 신청·발급 절차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 (피해자)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서 작성 신청:[서식 3]
- (시·군·구청장) 보호시설 또는 주거지원시설에 발급신청서 내용 확인 요청
- (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발급신청서 내용 확인 후 시·군·구청장에 제출:[서식 4]
- (시·군·구청장) 신청자(피해자)에게 확인서 발급:[서식 5]

- (피해자) 피해자가 입소·입주한 사실이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여성 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임대 주택을 말함)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장에 [서식 3]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시·군·구청장)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해당 보호시설 또는 주거지원 시설에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 또는 확인 요청
- (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시·군·구청장의 확인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서식 4]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보호시설 퇴소사유 기재요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보호시설의 퇴소) 각호의 어느 하나로 기재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4.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등

주거지원시설 퇴거사유 기재요령: 아래 중 어느 하나로 기재

1. 입주 목적이 달성된 경우(사회복귀, 자립 등)
2.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4. 그 밖에 관리비 체납 등 입주자 준수사항 위반 등

※ 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의 장은 반드시 국민임대주택 관련 서류를 「시설 입소 확인서 발급대장」을 만들어 관리

- (시·군·구청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주거지원시설의 장의 확인서내용을 관련 보고 서류 등과 확인하여 최종 검토 후 [서식 5]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주거지원시설 입주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발급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보호시설·주거지원 시설 입소기간을 충족하는지 여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 (입주) 여부를 검토 후 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

※ 보호시설 입소기간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입주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시설 위치 노출 등으로 피해자가 다른 시설로 옮긴 경우에는 퇴소 1개월 이내에 다른 보호시설에 재입소하였을 경우에는 연속 입소로 봄
(A 보호시설 3개월 입소 후 퇴소, 1개월 내 B 보호시설 재입소하여 다시 3개월 입소 후 퇴소일 경우, 6개월 입소로 간주)

○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신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 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제5항 제6호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마. 가정폭력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제도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주소지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할 경우,

-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의거 우선적으로 취학 지원하고,
- 가해자(친권자 등)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① 가정폭력 피해학생 취학 지원(전학 등)

-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주소지의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청가능

-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입증자료)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별지 [서식 6])
- (협조 요청사항)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정하여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는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③ 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④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은 “고등학교의 장”으로,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⑤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전학 처리시 주소지 등 개인정보 비공개

- * 친권자라 하더라도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피해 학생의 전학사실(전학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알리지 않도록 유의
 - * 가해자에게 전학사실을 알리지 않음에 따라, 가해자가 학교장, 담임교사 등 학교 관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로 연락하여 저지
- (전학 전 학교·교육청) 아동의 비밀전학 신청 시부터 전학 학교명 등 자료는 비공개로 처리하고,
- 가정폭력가해자에게 피해자 및 아동(학생)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
⇒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서 가정폭력피해 아동의 비밀전학 시 피해자와 아동의 연락처가 가해자(주로 아버지)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전학 간 학교명, 주로 어머니인 피해자와 아동의 거주지·입소 습터, 전화번호 등) 관리주의
 - * “전학처리 서류”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이므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주의표시(기재)하고, 별지 [서식 6]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리
 - * 가해자가 친권자 자격으로 전학 학교명을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유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제9조제1항 제1호, 제3호)
- (전학 후 학교·교육청) 전학한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피해사실 및 전학 학교명 등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③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타 협조 요청사항: 업무담당자, 교원·교직원 인식제고

- 학교와 교육청 직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교육 실시 요청
 - * 직장교육, 워크숍 등 실시 시 유의사항(가정폭력피해 아동보호) 전파교육 등

10 기타 행정사항

- 보호시설이 폐쇄될 경우 시·군·구청장은 입소자 관계서류 일체를 관할지역의 다른 보호시설에 이송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시설 설치 인가 또는 신고, 입소정원 변경 시 운영비 등 예산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여성가족부와 사전 협의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각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등 관련 통계자료를 지정서식에 의거하여 상반기 실적은 2019년 7월 30일까지, 연간 운영실적은 2020년 1월 30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호시설의 장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지급·정산 등 회계업무, 종사자 인사업무, 통계관리업무 등 가능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여야 하며, 시설장·상담원의 채용공고, 선발, 퇴직, 지원금 집행실적을 일모아시스템 DB에 입력하여 참여자의 중복지원 등을 확인하여야 함

Ⅲ.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1 목 적

- 가정폭력피해여성(이주여성가정폭력피해자 포함)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 및 자립의지를 고양

2 사업 개요

가. 사업 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 후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할 수 있는 지원금 지원
 - 월세, 임대보증금 등 주거지원, 자립을 위한 필요물품 구입 지원

나.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다. 추진 경과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자 자립지원금 법률 근거 마련('17.12)
- '18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시행('18.6)
- '19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국비 지원실시

라.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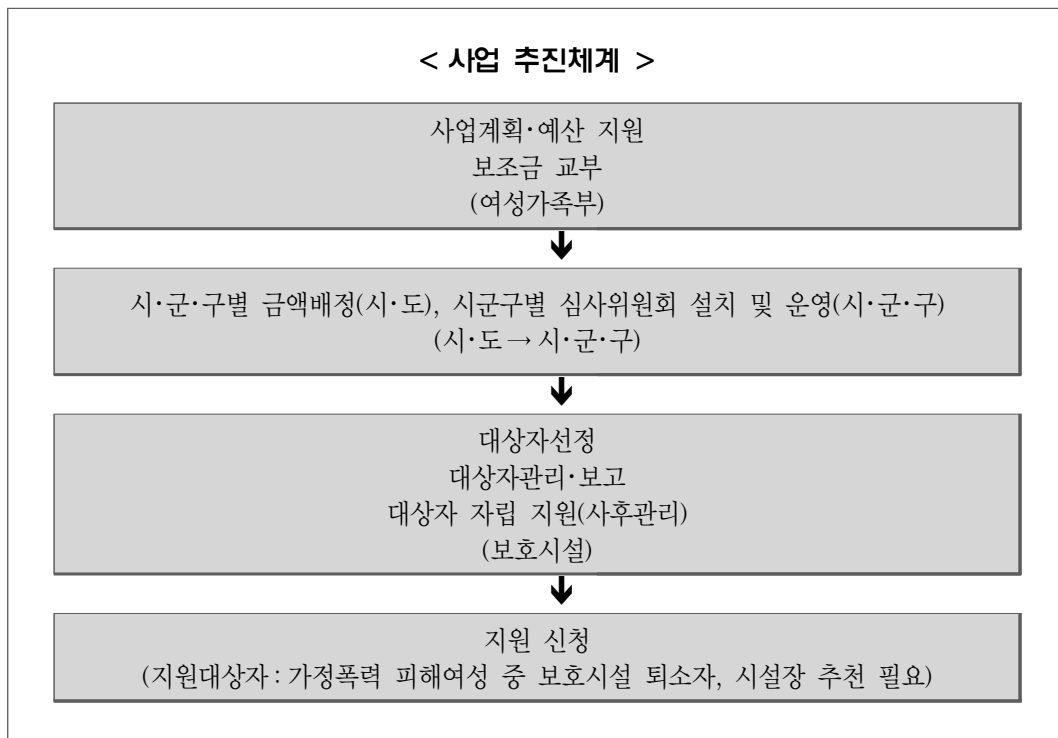
- 가정폭력피해여성 및 동반가족(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자)
 - ① 입소기간이 6개월 초과(원칙)
 - ※ 입소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②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마. 지원 금액

- 1인당 500만원

3 사업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 사업계획 및 사업지침 수립
 - 사업총괄 및 보조금 교부(여성가족부 → 시·도) 등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운영기관별 금액 배정(시·도) 및 시행
 - 보조금 교부(시·도 → 시·군·구 → 운영기관)
 - 운영기관 실태점검 및 관리·감독
- 운영기관(사업수행기관)
 - 대상자 선정 및 자립 지원
 - 퇴소자에 대한 상담과 취업 등 자립 지원 등 사후 관리



4 자립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가. 신청방법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과 함께 보호시설 소관 시·군·구에 퇴소자의 자립지원금 신청
 - * 일반, 장애인, 가족 보호시설 퇴소 후 폭력피해 주거지원 시설로 입소할 경우에는 퇴소자립지원금을 폭력피해주거지원시설 퇴소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인당 1회 지원이므로, 지자체는 해당자가 이전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당시 퇴소자립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지급해야 함
 - * 자립지원금은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준비 등을 위해 퇴소 시점을 전후로 2개월 내에 지원 가능함. 다만,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함. 예를 들어 '19.11.1.이 퇴소일인 경우 이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내인 '19.9.1.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20.1.1.은 회계연도가 초과하므로 지원 불가하며 '19.12월까지 지원을 완료해야 함

나. 선정기준

- 자립지원금 사용계획서(서식 8-1), 보호시설 퇴소 후 사후관리 여부(서식 8-2), 사후관리 계획(서식 8-3)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
 -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 심사기준 마련, 활용

다. 선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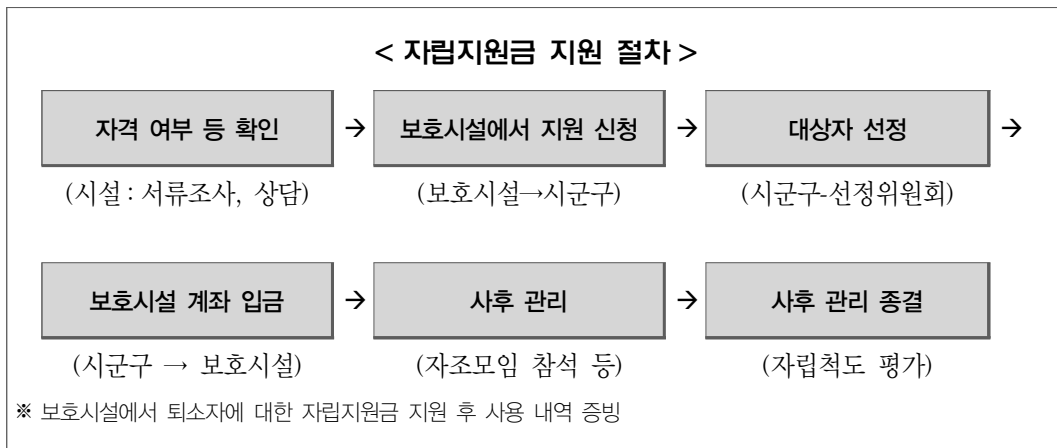
-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시·군·구 내에서 위원회 자체 설치)

라.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
 - 심사위원은 시·군·구의 가정폭력 업무담당 공무원, 지역의 가정폭력·성폭력관련 단체·시설협의회의 임직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호선
 -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단, 공무원인 심사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에 한함

-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지급순위 확정 등 자립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
 - ※ 월 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별 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퇴소시 자립지원금 지원 절차



6 국고보조금의 지원·관리

가. 예산 현황 : 총 1,670백만원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 1,410백만원(1인당 500만원)
- 이주여성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 260백만원(1인당 500만원)

나. 일반 원칙

- 국고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감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함
- 국고보조금은 여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 보호시설 계좌로 교부
- 사업결과는 운영기관 →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로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 운영기관은 퇴소 시 자립지원금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별개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보조금을 관리
- 통장에 관한 “총계정원장(총계정원장의 내역은 통장의 입출금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과 지출 증빙자료 관리를 위한 “총계정원장 보조부”를 비치·관리
 - 지출결의서 내부결재를 득하고, 지출 내역은 6하 원칙에 따라 기재하며, 통장은 각각 건별로 인출하여 집행하며,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 주거마련(보증금, 월세)는 계약서로 증빙 가능

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사용용도

- ☐ 학자금 ☐ 자격취득 및 취업훈련 ☐ 주거마련(월세, 보증금)
- ☐ 가전제품 및 가구(냉장고, 세탁기, 가구 등)

라. 자립지원금 지급 후 사후관리

- 자립지원금 이후 대상자 별 사후 지원 실시(자조모임 참석 등)

Ⅳ.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1 개 요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원 양성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함

2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폐지등

1)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가. 설치주체 및 설치방법(가정폭력방지법 제8조의3 제1항 및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직접 설치
 - ※ 단, 지방자치단체 외의 각급 정부기관에서 설치 시에는 관할 시·군·구청과 사전 협의할 것
-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 ※ 국·공립대학의 경우도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나. 설치기준(가정폭력방지법 제8조의3 제3항,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4)

- 강의실 : 교육인원 1인당 연면적 1㎡ 이상
 - ※ 자체 강의실을 확보하여야 함. 다만 교육공간이 부족할 경우 교육에 적합한 다른 장소 활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인원당 면적기준은 충족하여야 함
- 사무실 : 교수연구 및 사무 공간
- 기타 : 화장실·급수시설·소방시설·방음장치·채광·환기·냉난방·조명시설 및 교재·교구 구비

다. 설치신고(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

- ① 신고서 제출 : 법인 ⇒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서 서식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 ※ 시설설비란에 강의실 면적 및 교육정원을 기재하도록 함

－ 신고서 첨부서류

- 법인의 정관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
 - ※ 교육훈련시설의 시설장이나 종사자에 대한 별도 자격기준은 없음. 다만, 운영주체인 비영리법인에서 책임을 지고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함
-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에는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강사 등 확보 계획 등에 대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② 검토: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수리 시 검토사항

- 신고자격(비영리법인 여부 및 정관상 목적사업 부합 여부 등) 적정 여부
 - ※ 정관이나 규약 등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 내용이 포함
- 시설기준(시설면적, 시설설비 등) 적합 여부
 - ※ ‘건축물 용도기준’과 관련하여 노유자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외에 ‘업무시설’ 등에도 설치가능
- 시설 종사자 확보 여부 및 강사의 자격
-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관계법령 규정 준수 여부 등
 -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정 구비서류 외 설치신고 검토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

③ 신고증[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교부: 시장·군수·구청장 ⇒ 법인

-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은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
 -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지7호
- － 신고증에 강의실 면적 및 교육정원 반드시 기재

2) 변경신고(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

① 변경신고 대상(사유)

- 교육훈련시설장 및 교육정원의 변경
- 교육훈련시설의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② 변경신고서 제출: 법인 ⇒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신고서 서식: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 변경신고서 첨부서류
 -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 장 변경의결서
 -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변경에 한함)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변경에 한함)
 -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③ 검토: 시장·군수·구청장

④ 변경신고 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은 접수 후 5일 이내 처리
 -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별지9호
-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교부
 - ※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 검토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3) 폐지·휴지신고(규칙 제12조)

① 휴지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함

② 신고서 제출: 법인 ⇒ 시장·군수·구청장

- 휴·폐지신고서 서식: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신고서 첨부서류
 -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제외)
 -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③ 검토 : 시장·군수·구청장

④ 휴·폐지신고 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은 접수 후 6일 이내 처리
 -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별지9호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강 중 환불을 요청한 교육훈련자에 대한 환불조치 여부, 교육 훈련과정 수료 및 교육훈련실적 보고 완료 여부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후 신고 수리

4) 재개신고(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 휴지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에 운영재개신고서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3 교육 운영

가. 교육 강사의 자격기준(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서의 입학학력으로 인정되는 학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 가정폭력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상담소·보호시설·긴급전화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 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 ※ 교육훈련시설의 종사자
 - 교육훈련시설의 시설장이나 종사자에 대한 별도 자격기준은 없음. 다만, 운영주체는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 및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함

나. 교육과정의 운영기준(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

교육분야	교육 과 목	이수시간
소양분야	- 가족복지 및 정책 -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 여성인권과 폭력	15
전문분야 I	- 가정폭력의 이해 - 가족법 및 가정폭력관련법 - 법률구조실무 - 법적절차 및 대응 - 의료지원실무	30
전문분야 II	- 상담심리개론 - 상담의 기법 및 프로그램 -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 대상별 상담과정	35
전문분야 III	- 상담 사례연구 및 실무실습 - 역할연습	20
총 계		100

○ 총 이수시간 : 100시간 기준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20퍼센트 범위에서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조정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 이수시간은 최소 100시간 이상이어야 함

○ 교육기간 : 3주 이상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원칙

○ 교육강좌당 수강생 수 : 70명 이하

○ 수강료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상한 범위(1인당 35만원 이내) 내

※ 교육훈련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음

○ 강사 관련 사항 : 강사 1인이 4과목 이상 강의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매 교육기간별 강사의 인적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교육내용 필수 포함 사항
 - ‘아동복지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아동 학대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한 사항(신고요령, 피해아동보호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의거하여, 장애인 학대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한 사항(신고요령,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함
-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교육 훈련과정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없음

(예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원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150시간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별도로 각각 100시간을 운영하여야 함
- 중복수강 과목의 인정
 - 성폭력 또는 성매매 상담원 양성교육 과정 중에서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과 중복 되는 3개 과목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수료한 적이 있으면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훈련 과정 일부 수강 면제

〈 중복 교과목 〉

- 소양분야 2과목 :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여성인권과 폭력
- 전문분야 1과목 :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 ※ 중복이수자는 이전에 교육을 받았던 교육훈련시설로부터 교과목 이수 확인서[서식 12]를 발급받아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 제출
- ※ 수강 면제 신청을 받은 기관은 확인서를 제출한 수강생이 실제로 그 과목에 출석을 했는지 여부와 중복 수강을 인정할 교과목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수강 면제 인정 가능(이수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더 적은 수의 시간만 인정 가능)

다.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기준

- 개요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을 집합교육 외에 일정부분 사이버 교육을 인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①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자격

-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② 사이버 교육 운영시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3항에 의한 교육과정 중 “소양분야 교육과목”과 “전문분야 중 실습분야를 제외한 이론분야 교육과목”을 합하여 최대 40시간으로 한정

< 교육과목별 이론 및 실습과목구분 >

교육 분야		교육 과 목	이수시간
소양분야	이 론	가족복지 및 정책	15
	이 론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이 론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이 론	여성인권과 폭력	
전문분야 I	이 론	가정폭력의 이해	30
	이 론	가족법 및 가정폭력 관련법	
	실 습	법률구조실무	
	이 론	법적절차 및 대응	
	실 습	의료지원실무	
전문분야 II	이 론	상담심리개론	35
	실 습	상담의 기법 및 프로그램	
	이 론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실 습	대상별 상담과정	
전문분야 III	실 습	상담 사례연구 및 실무연습	20
	실 습	역할연습	
총 계			100

③ 교육시간 인정기준

- 기존 오프라인 교육훈련시설 교육시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질의응답, 온라인 토론 등 수업에 부수되는 활동을 제외한 순수한 “온라인 강의 진행시간” 만을 “사이버 교육시간”으로 인정

④ 출석 및 평가관리

(가) 출석관리

- 「원격대학 학사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운영중인 교육과정에 준하여 출석인정기간, 출석인정방법 및 결석처리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시스템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나) 강의내용관리

- 수업계획서는 수강신청 전 운영플랫폼에 입력되어야 하며 계획서에는 과목정보(수업 개요, 수업목표, 수업진행방법 등)와 평가기준(출석, 수업진도율, 시험 등 평가항목과 반영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 관리자는 학생별 교육과정 이수여부 및 진도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다) 평가관리

- 사이버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출석평가 방식(온라인평가 불가)으로 하여야 하며, 과목별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해당과목에 대한 교육수료를 인정함
- ※ (가)항~(다)항에 관한 사항은 「원격대학 학사관리운영지침」에 따른 원격대학 일반 교과 과정 운영기준을 준용한 것임

(라) 게시판 및 정보 공유 관리

- 학습 참고자료나 학습운영 관련 궁금한 사항은 게시판,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학습자와 교수 또는 운영자간 활발한 의견교류 및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4 교육훈련시설의 운영 일반

가. 수강생 모집

- 수강생 : 별도 기준 없음
 - 수강생에게 교육과정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
- 광고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모집할 수 있음
 - ※ 교육훈련시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강생 모집을 위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강료 환불 등을 하여야 함

나. 교육설명

- 교육훈련시설은 교육희망자가 수강등록 하기 전 교육의 목적·과정 및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잘못 등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수강등록

- 교육수강신청서(서식 8)는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접수 완료하여야 함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수강생명부(서식 9)를 작성하여야 함

라. 교육과정 운영계획 보고

- 교육훈련시설의장은 매 교육과정별 운영계획서, 수업시간표, 수강료 책정금액, 강사 인적사항, 수강생명부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신고된 교육훈련시설 외의 장소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조치사항(규칙 별표 4 제1항 가목)

① 교육정원 등이 변경되는 경우

- 변경(교육정원)신고서 :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 첨부서류 : 교육정원 변경의결서, 교육장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신고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 대장등본 포함),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및 교육기간동안의 강의실 및 부대시설 사용계약서
-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장소는 강의실이 교육인원 1인당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등 교육에 적합한 시설기준 등을 갖춘 곳이어야 함

② 교육정원 등이 변경되는 않는 경우(직전 교육과정 운영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교육과정 개설 시)

- 시·군·구청에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교육기간 동안의 강의실 및 부대 시설 사용계약서’만 제출

마. 수강료 수납 및 환불(가정폭력방지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6조)

- 교육수강료(교재비 포함)는 1인당 100시간 기준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교육훈련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음
- 수강료는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교육훈련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이 중단되어 교육 전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교육생들이 수료를 못한 경우 교육훈련시설은 전액환불 조치하여야 함
- 교육훈련시설은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에 의거 교육생이 교육 개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하고, 교육개시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이후: 미환급

바. 과정운영 및 수료인정

-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시간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서식 10)을 발급하도록 함
- 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 처리함
 - ※ 결석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며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사. 교육과정 운영결과 보고

- 교육훈련시설은 교육과정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료자명단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5 처분, 과태료 및 벌칙

가. 처분(가정폭력방지법 제12조)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교육훈련시설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강사로 채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 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경고·업무정지 또는 시설의 폐지 등 처분을 할 수 있음
- 교육생에게 수강료 외 부당한 비용을 징구하거나, 교육훈련 자격미달 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준에 미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때에도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음

나. 과태료 및 벌칙(가정폭력방지법 제20조 및 제22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 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또는 관계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동 법에 따른 신고 없이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기타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동 법에 따른 신고 없이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행정사항

-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교육훈련시설은 교육훈련실적, 재무·회계 서류 등을 폐지신고서에 첨부하여 당해 시·군·구청장에게 폐지 신고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현장점검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 시·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육훈련 실적 등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

V. 여성긴급전화 「1366」

1 목 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지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 「1366」을 365일·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

2 운영목표

-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를 위한 초기지원체계 구축
- 여성폭력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을 통해 관련 시설(상담소, 보호시설)·기관(112, 119)연계 등 네트워크 중심기관 육성

3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4 주요 임무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 전문상담소(상담원)에 연계가 곤란한 야간·휴일 등 특정 시간에는 1차 긴급 상담 후 다음 날 오전 전문상담소로 연계조치
 - 폭력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위기개입이나 상담활동, 긴급한 구조를 위해 112, 119, 등의 연계조치, 관련 상담·의료·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기타 폭력피해자가 요청하는 사항 등
 -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비스 지원

- 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여성 등에 대한 긴급상담 및 임시보호 등 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에 대한 임시보호 (최대 7일), 숙식 및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공
 - ※ 단,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여성 등 다른 보호시설로 연계가 어려운 경우 30일까지 연장하여 보호 가능

5 운영주체 및 시설 설치기준 등

- 설치지역 : 광역자치단체(시·도) 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
 - ※ 단, 서울·경기도의 경우 인구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개소 추가 설치
- 여성긴급전화중앙지원단 운영 지원
 -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운영 : 사각지대 상담 및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 여성폭력피해자 초기지원체계 총괄·지원 : 상담시스템 운영관리, 폭력피해자 초기 지원 및 협력강화사업 등
- 시설종류 : 사회복지시설 중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운영 주체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 단, 직영이 곤란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법률구조법인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고용승계 의무: 긴급전화 1366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1항 5의2에 근거하여 1366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 시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에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
- ※ 위탁심사 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확인 필요

- 설치 기준 및 규모: 연면적은 100m² 이상인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사무실: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상담실

- 33m² 이상의 규모로 구획된 전화상담실 및 개별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상담내용이 노출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원간 방음이 될 수 있는 차단벽 등의 설치구조를 갖추어야 함

- 긴급피난시설

- 야간, 심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 긴급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16.5m² 이상의 긴급피난시설을 갖추어야 함
- ※ 단, 인근 보호시설 등에 7일 이내 전원 조치

- 시설 구조·설비

- 일조·채광·환기 등 종사자 및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함

- 종사자 소진방지 및 안전대책

- 센터장은 종사자 소진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자체 운영비 내에서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건강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 지원 가능 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심리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은 참여지원 가능

- ※ 지원 가능 액수: 연간 1인당 20만원 범위 내

- 센터장은 종사자가 상담 등 업무와 관련 폭행 등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

- 시설 내·외 CCTV 설치, 가스충 등 구비
- 경찰관서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가)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안 됨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시설의 장
- 시설 이용자 대표
-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공익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제6호 참조)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법인의 임원 및 시설장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

*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할 것(법제처 해설, 17-0433)

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라)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관련법 제36조제1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마) 기타 사항

-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운영
- 운영위원회 운영일지를 작성·보관
 - * 위원회 간사는 회의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6 종사자 임면 및 근무방법

○ 종사자 채용 및 임면

- 센터장의 임면 시에는 위탁운영기관에서 반드시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임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자치단체장이 임면
 - 위탁운영주체는 기타 직원 임면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종사자 채용은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사자가 될 수 없음(법률 제8조의2제1항)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운영주체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에 대한 서류 및 면접심사 후 선발
- 근로계약서 작성 비치
 - 운영주체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전담직원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

○ 인력 배치

- 센터장 및 상담원
 - 시·도별 여성인구수에 따라 인력 차등 배치
 - ※ 센터당 15~20명

- 운영주체 관계자가 센터장을 겸직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전담직원을 인력 기준에 의해 배치

※ 단, 센터장을 겸직하는 운영주체 관계자는 다른 직을 겸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자원봉사자 : 상담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음

○ 종사자 자격기준

- 복무원칙 :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상근해야 하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센터장과 상담원은 전임하여야 함

- 센터장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성매매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③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인력의 효율적 운용 및 대표의 대외활동 측면에서 운영주체 관계자의 센터장 겸직은 가능하나, 위의 자격 ①~③ 중의 하나에 충족하고 다른 직을 겸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상담원(긴급피난처 전담인력 포함)

-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366에서 자원봉사 상담원으로 1년 이상(이면서 5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1366 자원봉사 경력으로 채용되고자 하는 상담원의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위 근무기간 및 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함

※ 1366 자원봉사 경력으로 채용되는 자는 전체상담원의 30% 이내로 하며, 2013년 지침 시행 이전에 자원봉사 경력으로 기 채용되어 근무 중인 상담원은 이 비율(30%)에서 제외함

※ 종전 지침의 규정에 따라 기 채용된 상담원은 계속 근무 시에만 자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함

- 현장상담원
 -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상담원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할 수 있음
- 근무시간
 - 상담원이 8시간 3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지정
 - ※ 종사자의 휴일 및 야간근무, 연·월차 휴가 등 복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지자체 및 위탁법인의 운영 규정에 따름

7 현장상담서비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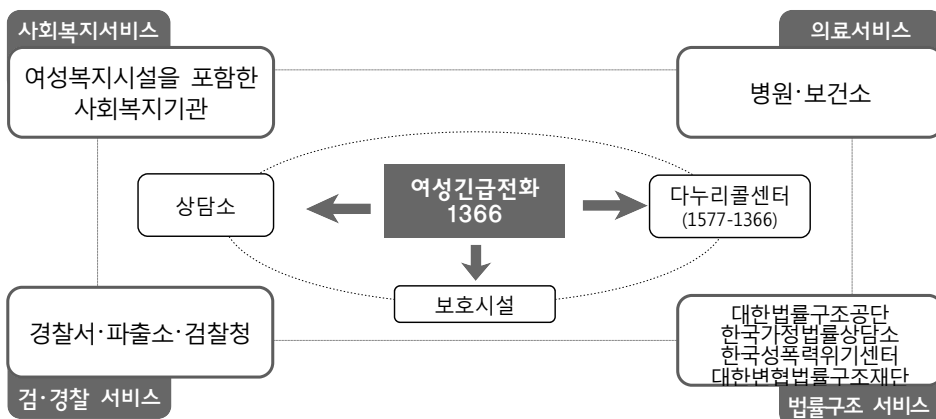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여성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긴급피난처 피신 및 관련기관 연계 등을 위해 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서비스 지원
- 현장상담 수요발생시 상담원은 2인 1조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찰이 동행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함
- 현장 출동 후 상담종료 시(수기 또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일지 작성

8 운영 체계·방법

- 24시간 Hot-Line 운영
 - 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및 안내·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8시간 3교대 근무체제로 상담원 배치
 - ※ 야간에는 2명 이상 반드시 배치
 - 주간(9시 이후 ~ 18시 이전)
 - 서비스 대상자와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긴급보호 기능 수행
 - 수신전화 회선을 5회선 이상 설치하며 상담 또는 연계기능을 빠른 시간 내로 완결하여 상시 긴급통화가 가능한 상태 유지

- 야간(18시 이후 ~ 9시 이전)
 - 정보제공, 의료서비스 및 위기개입 서비스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기능 수행
 - 야간근무자가 없는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는 퇴근 시 상담전화를 「1366」에 착신 하도록 조치
-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자녀를 임시보호(최대 7일*) 및 숙식제공 등 서비스 제공
 - * 단,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여성 등 다른 보호시설로 연계가 어려운 경우 30일까지 연장 하여 보호 가능
- 긴급보호 조치
 - 긴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근거리 상담소, 보호시설, 112, 119 등으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대한 긴급연락망 구축 및 협조체계 유지
 - 긴급피난 및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는 긴급보호 조치한 후 관련기관(상담소, 복지시설, 112, 119, 행정기관, 수사기관, 병원 등)과 협조하여 계속 보호가 가능 하도록 조치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주요 연계내용
 - 서비스 대상자에게 외부서비스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서비스 대상자를 해당 외부서비스기관 의뢰
 - 서비스 대상자를 위해 자원동원(프로그램, 전문인력 지원, 비용공제, 각종 정보) 요청
 - 외부서비스기관과 프로그램 계획, 홍보 활동, 자원 발굴 등을 공동으로 수립·시행
- 정보교류 및 자원공유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DB 구축
 -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유관기관에 제공

< 지역별 네트워크 운영체계 >



유관기관별 서비스 기능

- 긴급보호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 지원
- **상담소·보호시설**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 및 시설 보호 등
 - **의료기관** : 가정폭력·성폭력·학대아동 발견 시 신고,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 및 사후관리, 피해자 판정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진단서 발급
 - **교육기관**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발견 시 신고, 피해자 가정상황 등 가족력 등의 관련 자료 제공, 피해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대한 협조,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 **법률구조기관** :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적 소송 진행, 피해자 법률적 보호 및 폭력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
 - **행정기관** : 피해자 및 가해자의 신분조회, 피해자 및 보호아동의 격리보호 의뢰,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호와 의료보호 등의 협조
 - **사법기관** : 폭력사태 접수 및 수사, 전문기관 상담원의 현장조사 시 동행 협조, 단순 폭력 사례에 대해 전문기관으로의 의뢰, 격리보호, 치료 등이 필요한 보호조치 제공, 형사재판 과정을 통하여 피해자 지원

○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

- 연 초에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고려하여 홍보계획서 작성
- 여성긴급전화 1366의 필요성과 역할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112, 119, 검찰, 변호사, 보호관찰소, 의사, 교사 등 폭력피해여성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지속적인 1366홍보로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 홍보책자 및 자료 배포 : 안내책자, 소식지,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지역사회에 대하여 캠페인,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CATV, 반사회보 등을 활용하여 홍보 활동 실시

- 상담기록의 보존
 - 상담 시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상담내용은 반드시 상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에 대한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
 - 상담 관련 자료는 최소 3년 동안 보관
- 개인정보보호
 - 개인 정보의 수집 및 관리는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서에 의함(서식 참조).
 -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재난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9 2019년 국고보조금의 지원

- 보조금은 지역별 인구수 및 종사자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인건비, 운영비, 유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유지비, 긴급피난처 운영비 등을 포함함
 - ※ 국비 보조율 50%
- 세부지원 내역
 - 인건비·운영비
 - 인건비는 기본급, 4대 보험 자부담금 및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근무수당 포함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국비지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 책정을 할 수 있음

- 운영비는 수용기관경비, 공공요금, 자원봉사 상담요원, 매식비, 국내여비, 홍보비, 현장상담원의 종사자의 상해보험비 등으로 사용
-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적립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운영비로 사용 가능(여타 종사자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

※ (참고) '19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 안내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지자체 직영 또는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센터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을 위해 반영된 예산으로 동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 불가, 전환 대상 인력 중 특별한 사유로 정규직 미 전환 시 전액 반납 조치
 - * 지방비 등으로 별도 지원되는 인력은 정규직 전환 시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처우개선 지원
 - * 지원 대상 센터 및 인원은 '19년 시도별 예산 교부 내역 참고

－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유지비

- 네트워크 구축·사용·유지비, 관계자 간담회비
-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등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경비

－ 긴급피난처운영비

- 긴급피난처 운영 관련 입소자 숙식제공 및 지원을 위한 비용, 관리운영비 등

－ 현장상담서비스 사업비

- 현장상담원 급여, 교통비, 상해보험료

○ 재무회계 관리

- － 직영시설을 제외한 위탁시설의 재무회계는 운영주체의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 재무회계 관리는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 정부재무회계 관련법령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준용
- － 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 장부에 기재 후 가능

10 기타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운영주체 변경 시 관계서류 및 장비일체를 변경된 운영주체에게 이관
- 시·도지사는 관내 「1366」의 운영실적 등 관련 통계자료를 지정서식에 의거하여 상반기 실적은 2019년 7월 20일까지, 연간 운영실적은 2020년 1월 20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 전산시스템을 통해 운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 여성긴급전화센터의 공식 명칭은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로 함
 - * (예시)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 지방자치단체장 및 센터의 장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지급·정산 등 회계업무, 종사자 인사업무, 통계관리업무 등 가능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여야 하며, 시설장·상담원의 채용공고, 선발, 퇴직, 지원금 집행실적을 일모아시스템 DB에 입력하여 참여자의 중복지원 등을 확인하여야 함

VI. 『긴급피난처』 지정·운영

1 목 적

- 위기여성이 발생할 경우 우선 긴급피난처로 임시보호한 후 상황에 따라 전문시설로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2 긴급피난 보호대상

-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 학대받는 여성 및 동반자녀

3 긴급피난처 지정 등

- 시설 내에 긴급피난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거나 또는 임시보호 할 공간이 있는 시설에 대해 시·도지사가 긴급피난처로 지정 및 운영인력 자체배정
 - 지정기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기준에 준함(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 1366센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상담소, 여성회관, 임시보호소 등을 긴급피난처로 이용 가능
 - 지정절차: 시장·군수·구청장(신청, [서식 14]) → 시·도지사(지정)
 - ※ 시·도지사는 긴급피난처 지정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14일 이내)
- 보호기간: 3일 이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
- 긴급피난처는 보호여성의 대상에 맞추어 시설별로 보호대상을 지정하며 가능한 한 유사한 시설에 보호(예: 성매매 피해여성 분리보호 등)
- 긴급피난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각종 보호시설 및 상담소, 여성회관, 민간단체 등에 임시보호시설을 갖추어 긴급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4 긴급피난 요령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소 또는 시·군·구 상담원의 상담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에 임시보호 의뢰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및 상담소는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 우선 시설에 보호한 후, 즉시 시·군·구 관계 공무원에게 통지(상담소는 1366센터에도 통지)
- 전문적이고 장기간의 보호를 요하는 경우 1366센터 및 지역상담소에서 상담진행 후 해당시설로 전원 조치
- 입·퇴소 등 제반사항은 보호시설 운영기준에 따라 조치

5 긴급피난처 운영비 지원

- 긴급피난·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소된 시설의 입소자 경비를 기준으로 보호기간 만큼 보조비율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 가능

VII.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1 목 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2 사업 개요

가. 사업 내용

-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
- 1개의 운영기관(사업수행기관)에 임대주택 10호 내외 배정
 - 운영기관(보호시설, 1366센터)별로 자립상담원 1인을 정식 인력으로 추가배치하여 입주자 상담 및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자활 지원

나.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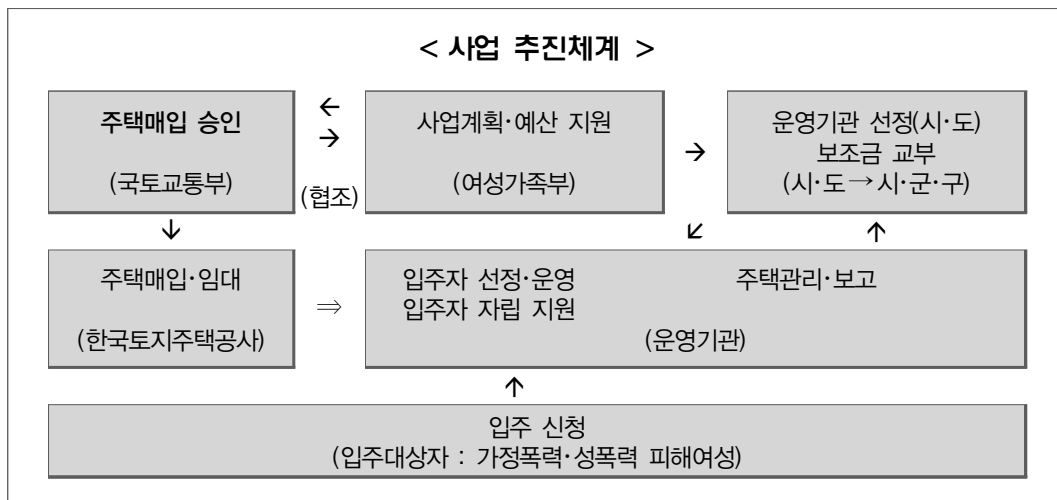
다. 추진 경과

- '08년 주거지원사업 시범실시(서울, 부산 지역에 임대주택 24호 공급)
- '09년 인천, 강원, 충북 지역에 임대주택 31호 신규공급
- '11년 대구, 경기, 제주 지역에 임대주택 28호 신규공급
- '12년 광주, 경기, 경남 지역에 임대주택 40호 신규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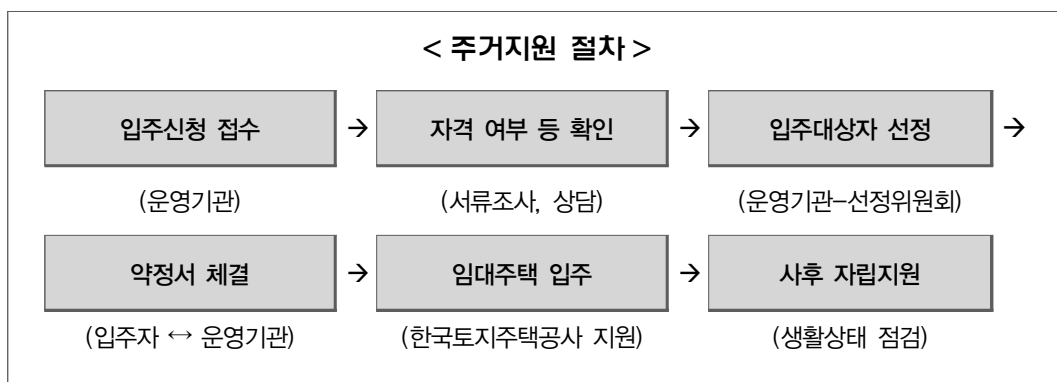
- '13년 대전, 광주, 경남, 울산 지역에 임대주택 42호 신규공급
- '14년 부산, 대구, 인천 지역에 임대주택 38호 신규공급
- '15년 부산, 울산, 경기, 전북 지역에 임대주택 43호 신규공급
- '16년 대전, 경북, 경남지역에 임대주택 30호 신규공급
- '17년 충남, 전남지역에 임대주택 20호 신규공급
- '18년 대구, 충남지역에 임대주택 20호 신규공급

3 사업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 사업계획 및 사업지침 수립·시행
 - 사업총괄 및 공급물량 확보, 보조금 교부(여성가족부 → 시·도) 등
- 국토교통부
 - 사업계획 및 사업지침 협의 및 사업 협조
 - 연도별, 시도별 공급물량 확정·배정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존 주택 매입
 - 운영기관과 임대차계약 체결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운영기관 선정 및 운영기관별 물량 배정(시·도)
 - 보조금 교부(시·도 → 시·군·구 → 운영기관)
 - 운영기관 실태점검 및 관리·감독
- 운영기관(사업수행기관)
 - 입주자 모집·선정 및 입주 지원
 - 임대주택 관리비 수납 및 주택 관리·점검
 - 입주자에 대한 상담과 직업훈련·취업 등 자립 지원



4 주거지원 신청 대상, 절차 및 방법



가. 입주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

나. 입주 조건

- 임대 기간: 2년 원칙, 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입주 방식
 - 그룹홈의 취지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원칙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운영기관에서 부담)
 -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 관리비는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책정

다. 입주신청 접수

- 운영기관은 지역 보호시설 등에 입주신청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등 대상자 모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 해당 시·도 소재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
- 운영기관은 입주신청자로부터 “주거지원신청서 별지[서식 15]”를 접수받아 “주거지원 신청 접수대장 별지[서식 16]”에 등재하여 관리
 - ※ 운영기관은 “주거지원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와 신청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신청자의 입주 자격 여부를 확인

라. 입주자 선정

1) 선정 기준

- 기본원칙
 - 입주자 선정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으로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함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1순위)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2순위)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3순위) 보호시설 미 입소 피해자

※ 입주 우선 순위 결정에 있어 보호시설 입소 기준은,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입주자 선정시 가정폭력피해자에 비해 성폭력피해자가 심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려하고, 각·시도별 공실률을 감안하여 우선 입주권 부여

2) 선정 방법

- 운영기관은 입주대상자로부터 주거지원신청서를 상시 접수
- 운영기관은 신규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퇴거가 예정되는 등 임대주택 추가 공급이 요청되는 경우에 주거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 우선 순위에 따라 “주거지원신청자 우선순위 명부 별제[서식 17]”를 작성
- “우선순위 명부”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선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입주 우선 순위, 주거지원 필요성, 자립가능성 등이 포함된 “입주자 선정 평가표 별제[서식 18]”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평가결과 ‘자립가능성 부문’의 획득 점수가 20점 이하로서 위원 전원이 자립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 제외 가능
 - 선순위 자가 입주를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 자를 입주자로 선정
- 입주자 선정 시 운영기관이나 운영기관의 설립주체인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보호시설 등 특정 시설 입소자 등이 과다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마. 약정서 체결 등 입주절차 진행

1) 주거지원 기간 및 입주방식

- 신규 입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입주자는 주거지원 연장을 원할 경우 2개월 전에 운영기관에 연장을 신청

-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 선순위 자 순으로 입주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희망하는 임대주택을 지정 및 배정
 - 단, 1가구의 가구구성원이 2인 이상(피해자 포함)인 경우 입주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주택 1호에 1가구 입주 가능

2) 약정서 체결 및 임대차 계약

- 운영기관은 입주에 적절한 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 임대차계약에 명시된 입주일 이후 입주그룹 입주 가능
 - ※ 그룹홈의 취지를 살려 월 임대료 수준, 입주할 가구수 등을 고려
- 운영기관과 입주대상자 간 “주거지원 약정서 별제서식 19)”를 작성·약정체결하고, 입주대상자가 “입주자 부담금”을 운영기관 통장에 예치
 - “입주자 부담금”은 운영기관이 호당 700천원 범위 내에서 결정(입주 가구들이 분담)
 - 운영기관은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입주자 부담금”을 반환하되, 관리비·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입주자 부담금”에서 공제
 - ※ 관리비 등 체납 시 이를 운영기관에서 대신 납부할 의사가 있을 경우 운영기관은 입주자에게 “입주자 부담금”을 면제 가능

바. 퇴거 등

- 운영기관은 임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입주자에게 퇴거일자를 고지
 - 입주자가 임대기간 중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에 운영기관은 임대기간 만료일 전 공실기간(퇴거 후 차기 입주자가 입주하는 동안의 기간) 중 최초 3개월간 발생하는 관리비를 “입주자 부담금”에서 공제 가능(단, “주거지원 약정서”에 동 사항을 사전 규정 필요)
- 운영기관은 다음 사유로 주거지원을 계속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해제 또는 해지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주거지원 약정을 체결한 경우
 -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주거지원 기간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지원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 기타 입주자가 자립 의지가 없거나, ‘주거지원 약정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주거지원을 계속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운영기관 선정 및 사업 수행

가. 운영기관 신청대상

-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
-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신고된 보호시설 또는 설치·운영되는 1366센터

나. 신청방법

- 주거지원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보호시설 또는 1366센터가 시·군·구를 거쳐 시·도에 신청
 - ※ 1366센터는 시·군·구를 거치지 않고 시·도에 신청 가능
- 시·도에서는 금년 중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여부를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 본부에 확인 후 공급가능한 지역의 보호시설 또는 1366센터 중 1개소를 선정하여 여성가족부에 신청
 -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매입임대주택을 시·도청 소재지 및 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절대적 기준은 아님

다. 선정기준

- 사업계획, 임대주택 공급여건, 입주자 수요, 사업 신청시설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
 -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기관 심사기준 마련, 활용

라. 선정방법

- 운영기관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 운영기관 신청 시·도가 4개소 이내일 경우 심사 생략

- 선정심사 기준은 설치·운영기관의 재정능력, 사업 전문성, 조직·인력구성 적절성, 시설 설치 환경(접근성 등),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연계서비스 지원계획, 기존 보호 시설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 원활한 입소자 지원을 위해 운영기관별 그룹홈(10호) 임대 시 가급적 보호시설에서 가까운 건물에 함께 임대
- 선정심사 우선 순위
 - (1순위) 주거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도
 - (2순위) 주거지원시설이 기 설치된 시·도
 - ※ 1순위 미달 시 2순위 심사·선정

마. 사업 관리·운영

- 선정된 기관의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도에서 2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여 재선정(재선정 횟수는 제한 없음)
 - ※ 시·도지사는 재선정하고, 재선정 결과를 10일 이내 여성가족부로 보고
- 운영기관별로 상담원 자격을 가진 담당인력(자립상담원) 1인을 배치
 - “자립상담원”은 운영기관의 사업 담당자로 입주자의 자립을 돕는 역할을 병행
- 운영기관에는 임대보증금과 사업운영비(자립상담원 인건비, 사업관리비 등) 지원

바. 운영기관의 업무

- 각 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조하여 임대주택 물색 및 입주자 모집·선정
 - ※ 입주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 심사를 통해 입주순위 등 확정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자와 주거지원 약정서 체결
- 입주자에 대한 상담과 직업훈련·취업 등 자립 지원
-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수납, 주택 관리·점검

사.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
 - 심사위원은 시·도의 업무담당 공무원, 지역의 가정폭력·성폭력관련 단체·시설협의회의 임직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호선
 - ※ 운영기관(법인 포함) 관계자는 최대 1인만 심사위원에 포함 가능
 -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단, 공무원인 심사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에 한함
-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서면심사 가능
- 심사위원회는 모집된 입주대상자의 입주순위 확정 등 입주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기타 입주자의 계약해지, 기간 만료자의 기간 연장 등 입주 상황의 변경에 있어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

아. 자립상담원의 역할

- 임대주택 10호당 자립상담원(상담원 자격소지자) 1인을 배치
- 자립상담원은 지자체,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과 연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입주자의 자활을 지원
 - 자립상담원은 “주거지원시설 입주자 자립지원카드 별제[서식 20]”를 작성하여 입주 세대별 자립지원 현황을 관리
 - 주택 관리상태 및 입주자 생활상태 등을 정기 확인하고 관리비 등 납부 상황 체크 등

자.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 운영기관은 매년 초에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운영기관 → 시·군·구 → 시·도, 매년 1월 15일까지)
- 운영기관은 반기별 입주실적을 보고(운영기관 →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운영기관에 대해 연 2회 이상 운영실태 점검
 - ※ 특히, 입주자 자격 및 입주자 선정 공정성 여부 등 집중 점검

6 주거지원 운영

가. 임대주택 입주 및 자립 지원

1)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입주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운영기관이 부담(국고보조금 활용)
- 관리비 및 전기료·수도료 등 개별 고지되는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 관리비(월임대료)는 통상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책정되며, 주공 인건비, 건물 수선유지비, 국민주택기금 이자 등의 명목으로 구성

2) 운영기관 / 입주자의 의무

- 운영기관은 당해 주택이 일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가 승인하지 않은 간판·표식 등을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 운영기관은 필요시 별지[서식 25] “주거지원 약정서” 상의 입주자 준수사항 내용을 적절히 변경하여 활용하거나 또는 본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도의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
 - ※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와 협조하여 입주자가 응급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할 경우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입주자는 임대주택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기타 “주거지원사업 지침” 및 “주거지원 약정서”상 입주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지켜야 함

3) 입주자 자립 지원

- 입주자에 대하여는 보호시설 입소자에 준하는 지원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구조,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직업훈련비 지원 등
 - ※ ‘가정폭력피해자인 그룹 홈 입주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가정폭력방지법 제18조 제4항 단서에 규정된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기관에서 구상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 요망

7 국고보조금의 지원·관리

< 운영기관별 보조금 지원내역 >

구 분		지원 금액	지원 내역	비 고
임대 보증금	신규	71백만원 내외 (국비 100%)	호당 7,154천원 (10호 기준)	○ 신규 운영기관에 지원 ○ 지역별 주택임대가격에 따라 지원액에 차이
	재계약	3.3백만원 내외 (국비 100%)	호당 331천원 (10호 기준)	○ 기존 주거지원사업 추진기관중 '18년도 재계약 해당 운영기관 ○ 지역별 주택임대가격에 따라 지원액에 차이
입주준비금		22백만원 (국비 100%)	호당 2,205천원 (10호 기준)	○ 신규 운영기관에 지원 ○ 신규로 입주하는 주거지원시설에 전자제품, 가재도구 등 지원비
사업운영비		35.4백만원 (국비 서울 50%, 지방 70%)	월 2,955천원	○ 자립상담원 인건비(인건비는 보호시설 상담원에 준함), 사업관리비 ○ 사업개시일로부터 지원

가. 일반 원칙

- 국고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감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 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함
- 국고보조금은 여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 운영기관으로 교부
※ 1366센터는 시·군·구를 거치지 않고 운영기관 교부 가능
- 국고보조금은 임대보증금과 사업운영비로 구성되며, 임대보증금은 1/4분기 초에 일괄 지급하고 사업운영비는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매 분기 초 지급
- 사업결과는 운영기관 →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로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 운영기관은 주거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별개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보조금을 관리
- 통장에 관한 “총계정원장(총계정원장의 내역은 통장의 입출금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과 지출 증빙자료 관리를 위한 “총계정원장 보조부”를 비치·관리
 - 지출결의서 내부결재를 득하고, 지출 내역은 6하 원칙에 따라 기재하며, 통장은 각각 건별로 인출하여 집행하며,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나.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운영기관별 평균 71,540천원(7,154천원×10호) 지원
 - 지역에 따라 공급주택의 임대가격에 편차가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의 임대여건을 사전 협의하여 주택 10호 임대액에 필요한 금액을 책정·지원
- 지원된 임대보증금으로 주택 10호를 임대 후에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잔액을 활용하여 추가임대 가능
 - ※ 운영기관은, 가구당 부담할 월 임대료가 10만원 이상으로 입주자 모집 및 자립하는 경우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기준액(7,154천원) 보다 더 지급하는 대신 월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가구당 월 5만원~10만원 수준)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 임대기간 종료로 임대보증금이 회수된 경우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통장에 입금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재차 활용
- 운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기관에 지원된 임대보증금과 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종전 임대계약에 따른 임차권 등은 새로이 선정된 운영기관으로 귀속 및 승계 조치
- 국고 보조되는 임대보증금은 사실상 운영기관에 무이자로 용자되는 것이므로 사업 종료 시에는 운영기관에 기 교부된 임대보증금과 발생이자는 반드시 국고로 반납 조치

다. 사업운영비

- 사업운영비는 자립상담원 인건비와 사업관리비로 지출
- 사업관리비는 일반수용비(홍보물 제작, 장부 구입 등), 공공요금(우편발송, 전화료 등),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출장여비, 공실(空室)에 따른 경비 및 기타 회의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사용
- 운영기관의 사업운영비가 부족하거나 추가소요 발생시에는 별도 지방비를 확보하여 지원

VIII.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 개 요

가. 목적

-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나.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2 지원 대상 및 범위

가. 지원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 ※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 없이,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18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한함)의 의료비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지원

나. 지원범위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신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신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 진단서 발급 비용

-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보호시설 입소 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 및 치료비, 출산 진료비 등
 - ※ 출산 진료비는 입소자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 가능(50만원 초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이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음(의사소견서 등 첨부))

3 지원 방법

가. 지원 원칙

-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단, 총 진료비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와 내부 사례 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급 여부 결정(단, 외상치료에 대한 비용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외)
-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의료비 지원 가능(단, 단순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제외)
- 저소득 의료급여(1, 2종) 수급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급여로 집행

나. 치료보호 비용 지원 기한

- 피해발생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 단, 피해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치료에 대해서는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
 - ※ 국가재정법 제96조 규정을 준용하여 치료보호 최대 지원 기한을 피해발생 후 5년으로 적용
 - ※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한함)는 '18년 1월 1일 이후 기간부터 의료비 지원

다. 치료보호 비용 신청방법

1) 피해자에 대한 치료요구(의뢰)

- 피해자 지원기관의 장은 피해자에게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자의 가정폭력 피해사실 확인 후 의료기관에 피해자 치료를 의뢰
-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수사기관 등에서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치료를 요구

상담소 등의 '피해 상담 사실 확인(확인서 발행)' 절차는 다음의 경우에 생략

- ① 피해자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고발·진정 등) 접수증 사본을 진료 받을 의료기관에 제출하거나,
- ②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 등의 사실 확인(확인서 작성 후 서명)이 있는 경우

2) 의료비의 청구

①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은 진료비 명세서(간이영수증은 불가),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치료를 의뢰한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에 의료비(본인부담액) 청구([서식 23])

②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를 보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은 불가)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에 의료비(본인부담액) 보전 청구([서식 24])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이란?

- 보호시설, 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명의로 발행한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 수사기관의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사본
-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3) 의료비의 지급

- 피해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 소재지의 피해자 지원기관과 시·도 또는 시·군·구, 가해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 피해자의 주소지가 가해자와 다를 경우, 피해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의료비를 직접 집행하는 경우, 지급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최소화하는 등 치료보호 활성화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조관계에 유의하고,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

▶ 피해자 의료비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집행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부설 클리닉 혹은 신경정신과, 심리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운영하는 클리닉도 집행가능)

4) 정 산

- 의료비 예산을 배정(선급)받아 이를 집행한 피해자 지원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집행 내역을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시·군·구에 보고(분기 종료후 15일 이내)하고, 시·군·구에서는 이를 자체 집행내역과 함께 관리

4 치료보호 비용 지원체계

- 배정대상
 - 시·도, 시·군·구
 - 보호시설, 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이하 ‘피해자 지원기관’)
 - ※ 가정폭력 피해자는 지방의료원에서 무료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료원에 의료비 배정을 할 수 있음
- 배정방법
 - 시·도는 피해자 지원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에도 예산을 배정하고, 설치된 시·군·구는 지원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되, 예산의 일부를 자체 보유하여 직접 집행 및 시설별 배정 예산의 부족에 대비(예산 배정 규모, 자체보유 규모 등은 관내 의료기관 등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판단)
 - 피해자 지원기관에 예산 배정 시, 운영비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전년도 의료비 예산 집행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정
 - ※ 시군구는 지원기관에 예산 배정 시 분기 또는 반기별로 배정

- 집행 및 정산
 - 시·도 및 시·군·구, 지원기관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예산을 별도로 운영(집행 내역 사업별 분리 정산·관리)
 -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거나 예산이 부족한 상담소 등은 필요 시, 해당 예산이 배정된 상담소 등 또는 시·군·구에 의료비 지급을 의뢰하여 피해자의 치료보호 조치(예산의 수시배정 조치 없이도 지원기관을 통하여 의료비의 과부족분 해소)
- 배정시기: 매분기 초에 배정
 - ※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내 피해자 지원기관의 의료비 집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과 부족에 의한 지원 불능, 집행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변경(조정)배정 조치
 - ※ 시·도는 관내 시·군·구 및 지원기관의 의료비 예산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지역별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5 구상권의 행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구상권의 행사는 별개로서, 시·군·구에서는 구상권 행사 이유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소극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시·군·구청장은 가정폭력행위자 명단을 관리하고 구상권(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을 행사하되 다음의 경우 구상권 행사 불가

〈가정폭력방지법 제18조제4항〉

-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
- 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규정의 수급자인 경우
- 행위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 연간 피해자 1인 의료비 지원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 가정폭력행위자가 전출시, 전출지 시·군·구청장은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관계서류 일체 이송
- 구상권은 지방채권으로 관리하며, 지방재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조치

6 비밀준수 의무

- 현행 가정폭력방지법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준수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준수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등은 직무상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함(특히,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7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 실적을 상반기 실적은 지정 서식에 의거 2019년 7월 30일까지, 연간 운영실적은 2020년 1월 30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 특히 경찰서, 의료기관 등에 동 제도를 적극 홍보
 - 의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 경찰,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에서도 관련 절차 숙지 및 안내에 유의

Ⅸ.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Ⅸ-1. 사업수행 체계

1 적용범위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사업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수행 기관

- 사업 신청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2012년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가정폭력상담소

4 사업비 배정절차

- ① 사업 신청
 - 신청대상 시설에서 관할 시·군·구에 필요한 프로그램 사업을 신청
(서식 26, 서식 27-1~27-4 참조)
- ② 사업신청서 검토 및 시·도 제출(시·군·구)
 - 시·군·구에서 접수된 사업신청서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사업신청서 시·도 제출(서식 26, 서식 27-5 참조)
- ③ 사업비 세부내역 사전 검토(시·도)
 - 시·도에서는 접수된 사업신청서상 사업비 세부내역이 사업별 기준단가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사전 검토
 - ※ ‘사업별 기준단가’는 권익증진지침의 사업별 ‘프로그램 운영 기준단가’ 참조
- ④ 프로그램별 사업수행시설 선정 심사(시·도)
 - 심사주체 : 시·도 직접 수행 또는 시·도에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또는 가정폭력 관련으로 구성된 기존 위원회 활용)하여 수행
 - 심사방법 : 선정심사표(서식 28-1~28-2 참조)에 따라 점수 부여
 - 신청시설에 대해 별도의 선정심사표에 의해 심사하되, 최종 점수에 따라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배정
 - 필요할 경우 신청 시설에 대해 사전 현장점검 실시
 - 전년도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행정기관의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누적된 기관은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외

5 사업비 조정 및 정산

- 필요할 경우 상반기 이후 중간 정산을 실시, 사업비 재배정
- 2019년 사업결과는 사업수행기관 →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로 보고
(2020년 1월 30일까지)

6 사업추진일정

- 확정내시 통보 : 2019. 1월초(여성가족부)
- 사업신청서 접수, 검토 및 배정 : 2019. 1월말까지(시·도)
- 사업비 선정결과(배정결과) 배정결과 제출 : 2019. 2월말까지(시·도 → 여성가족부)
 - * 사업수행시설별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작성하여 제출 ([서식27-7])
- 사업수행 : 연중(공모를 전년도 시행하는 등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음)
 - * 사업수행 기간동안 진행된 프로그램 진행비(강사로 포함)에 대해서는 사업비 교부 이후 소급적용 가능
- 사업결과보고 : 2020. 1. 30.까지
 - * 치료회복프로그램 사업결과보고서 요약본을 작성하여 제출([서식29])

7 행정사항

가. 강사의 기준

- 외부전문강사를 최소 40% 이상 구성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함(이 경우 최소 외부전문강사가 30% 이상은 되도록 하여야 함)
 - * 동일법인 소속으로 동일 시·군·구내 소재하고 있는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서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상근 종사자가 동일 시·군·구내 동일법인 소속의 시설(보호시설·상담소)에서 강의할 경우 내부강사로 봄

- 내부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시설 별도의 통장(기타수입)으로 입금하여 자체적인 집행 기준에 따라 시설 운영비(‘시간외근무수당 등’* 포함)로 활용하되, 내부강사에 대한 실비(식비 및 교통비)는 사업비 내에서도 지급 가능함
 - *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을 말함
 - ※ 근로기준법 등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지급기준 및 근무 시간 한도준수
- 타 지역의 강사 활용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숙박비: 실비(서울 7만원, 광역 6만원, 기타 지역 5만원 한도 내)
 - 식 비: 1일 20,000원
 - 교통비: 실비(철도는 일반실 기준, 자동차는 실비 기준)

나. 기타 행정사항

- 시·도에서는 연초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배정결과 및 사업계획서(요약본)를, 사업 종료 후에는 사업결과보고서(요약본)를 1달 이내에 여성가족부 제출
- 사업계획변경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되, 단순한 프로그램 내용·횟수 등의 변경은 보호시설·상담소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 단, “개별상담”만을 위한 프로그램 변경은 불가함
 - 지역 특성상 집단상담 성원 구성이 곤란한 경우 3인 이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집단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단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 상황 등을 현장 확인·점검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 각 시설에서는 만족도 조사 설문지(참고자료 3) 및 반송용 봉투를 항상 비치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 참여자에게 설문에 응하도록 적극 권장
 - 반송용 봉투 수취인은 해당 시·군·구(여성정책 부서)로 하며, 해당 시·군·구에서 설문지를 취합하여 반기별·상담소별 만족도 결과를 집계하여야 하며, 반기별 추진 실적 제출시 시·도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함

IX-2. 세부 운영지침

가. 목 적

-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를 도모

나.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 ※ “예시”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 특히 집단 상담의 경우 기 보급된 “가정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활용
-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심신회복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다. 운영 프로그램

단계별	피해자 보호프로그램	아동대상프로그램
1	개별상담	놀이치료
2	집단상담	방과후 학습지도
3	심리극	미술치료
4	여성간 의식향상 프로그램	집단미술치료
5	음악치료	가족미술치료
6	지지적 집단 상담프로그램	심신 회복 캠프
7	미술치료	
8	종이접기	
9	명상 수련	
10	수공예	
11	가족미술치료	
12	심신회복캠프	
13	부부 의사소통향상 프로그램	

- 주 : 1. 운영 프로그램 예시임(시설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가능)
 2. 피해정도별, 입소(예상)기간별로 적용 프로그램 다양화
 3.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의료지원, 법률지원 및 직업훈련은 제외

라. 프로그램운영 기준단가

종 류	상담내용 및 목표	상담횟수	강 사	비 고
개별 심리상담	- 폭력상황 및 개인별 문제 파악 - 개인별 상황에 따른 삶의 방향 탐색 및 지원 - 위기개입 등 전문가 진단 및 정신과 치료 등 필요시 적용	- 1회 1시간 - 횟수는 피해자 상황에 따라 조정	전문강사 : (Ⅱ), (Ⅲ)	전문Ⅱ : 1회당 50,000원
				전문Ⅲ : 1회당 100,000원
집단상담	- 구타경험과 현실의 탐색 - 폭력순환 고찰 - 맞지 않을 권리(인지적 접근) - 죽음, 고립, 무의미감 등 치료 - 사회적 지지망의 구축 ※ 장소사용료 1회 100,000원	- 규모: 최소4인 이상 - 주1~2회 1회 2시간 30분~ 3시간)	주진행(1인): 전문(Ⅱ), 전문(Ⅲ) 보조진행(1~2인) : 전문(Ⅰ)	전문(Ⅰ) : 최초 1시간 5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15,000원
				전문(Ⅱ) : 최초 1시간 10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35,000원
				전문(Ⅲ) : 최초 1시간 15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50,000원
심신회복 캠프 (1박2일 기준)	- 문화체험·여행을 통해 자연과 접하여 정서함양과 심리적인 휴식을 취하며, 집단 속에서 관계성 훈련, 친목도모와 유대감 강화 ※ 장소사용료: 1회 150,000원 숙박비: 2인1실 100,000원 식비: 1인 5식, 1식 10,000원 교통비: 실비 * 시설차량이용시 유류대, 주차료, 도로통행료 포함 다과비: 1인 5,000원 기준 ※ 교통비는 2가지 이상의 교통 수단 이용 가능 ※ 매 식비는 전체 식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규모: 10명내외 (자녀참여가능) - 1박2일~2박3일	주진행(2인): 전문(Ⅱ), (Ⅲ) 보조진행(3~4인) : 전문(Ⅰ)	전문(Ⅱ) : 최초 1시간 10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35,000원
				전문(Ⅲ) : 최초 1시간 15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50,000원
				보조진행: 1인, 1일당 70,000원
동반자녀 심리치료	- 미술치료 - 놀이지도치료 - 아동치료프로그램 등	- 주 1~2회 (1회 50분)	전문강사 : (Ⅱ), (Ⅲ)	전문Ⅱ : 1회당 50,000원
				전문Ⅲ : 1회당 100,000원

종 류	상담내용 및 목표	상담횟수	강 사	비 고
아동 집단상담	- 폭력가정 아동의 외상 문제 - 분노, 우울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방법 - 분노조절 - 자존감 향상 - 위기대처능력 향상 등	- 규모: 10인 내외 - 주1~2회 (1회 90분 이내)	주진행(2인) : 전문(Ⅱ), (Ⅲ) 보조진행(2인) : 전문(Ⅰ)	전문(Ⅰ) : 최초 1시간 35,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15,000원
				전문(Ⅱ) : 최초 1시간 7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35,000원
				전문(Ⅲ) : 최초 1시간 10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50,000원
기 타	- 음악치료, 미술치료, 춤 치료, 독서, 원예, 수예 등 정서치료	전체회기의 20% 범위 내에서 필요 시 활용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자	최초 1시간 7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35,000원
	전문(Ⅱ) : 최초 1시간 7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35,000원			
	전문(Ⅲ) : 최초 1시간 10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50,000원			
	보조진행 : 1인, 1일당 70,000원			
	- 사이코소시오드라마 등의 특별 프로그램			

-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인정하며, 최대 3시간까지만 지급 가능
- 야간(18시 이후), 휴일 상담 시 상담료 50% 가산 지급 가능
- 개별심리상담만으로 프로그램 구성 불가
- 심신회복캠프 이후 평가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소모품비(재료비, 만족도조사 설문지, 반송용봉투 및 자료유인물인쇄 등)는 연 480만원 한도에서, 다과비는 1인당 5,000원, 연 360만원 한도에서 인정. 소모품비는 소모성 재료비 외 비품구입은 불가

마. 전문강사 자격기준

표. 전문인력 자격기준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자 격 기 준	비 고
전문강사(Ⅰ)	1. 대면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 2. 알코올전문상담 경력 1년 이상인 자 (알코올 상담의 경우) 3. 아동미술치료등 아동심리치료·상담 1년 이상 경력자 (아동상담의 경우) 4.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자로서 대면상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상담경력은 가정폭력 관련 상담임
전문강사(Ⅱ)	1. 대면상담경력 5년 이상인 자 2. 가정폭력 피해자 집단상담경력 3년 이상인 자 3. 알코올전문상담 경력 3년 이상인 자(알코올 상담의 경우) 4. 아동미술치료 등 아동심리치료·상담 3년 이상 경력자 (아동상담의 경우) 5.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집단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	※ 상담경력은 가정폭력 관련 상담임
전문강사(Ⅲ)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이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대면상담경력 1년 이상인 자 2. 대면상담경력 10년 이상으로, 5년 이상의 집단상담경력을 갖춘 자 3. 관련분야 의사 자격증 소지자로 대면상담경력 3년 이상인 자	※ 상담경력은 가정폭력 관련 상담임

주 : 1. 대면상담경력: 주3회 이상, 1일 4시간 이상 대면상담 경력
2. 상담경력: 주1회 이상, 1일 2시간 이상 전화·면접 상담경력
3. 집단상담경력: 5인 이상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 연간 10회 이상 상담한 경력
4. 관련분야: 정신, 심리, 사회복지, 사회사업, 여성학, 법학 및 교정학 등

바. 집단 상담 표준 운영 모델

1) 보호시설 입소 성인의 경우

(1) 대상

- ①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초기상담을 받고, 2회 정도 개별상담을 받은 입소자
- ② 초기의 위기개입이 신속히 이루어져서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입소자

(2) 프로그램 구조

- ① 대상: 보호시설 입소자 및 주거지원 입주자 5~10명
- ② 횟수: 10회(준비모임과 추후 평가 모임 포함)

※ 하루 2회기 이상 진행 불가

- ③ 시간 : 2시간 20분 ~ 3시간
- ④ 간격 : 1주 2회 또는 1주 1회
- ⑤ 집단의 성격 : 집단 종료시까지 동일 성원으로 유지하는 폐쇄집단형태 운영을 원칙으로 함. 단 신규 입소자 발생 등 불가피하게 기존 집단에 새로운 성원의 추가 참여가 필요한 경우, 시설장이 판단하여 집단상담 중간에 참여토록 할 수 있음
- ⑥ 지도자 : 집단상담전문가 1명, 집단상담 보조자 1명
- ⑦ 행정지원 : 집단상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며 참여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도록 협조
- ⑧ 상담원의 협조 : 쉼터의 입소자들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하며, 참여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쉼터 교육과 상담은 집단상담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협조

(3) 운영모델

<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 >

단 계	회기	주 제
제1단계 : 준비 및 참여	1회	프로그램 준비과정에 참여
제2단계 : 관계형성	2회	지지적 관계형성과 후유증 인식
	3회	감정표현과 성장 및 변화의 목표설정
제3단계 : 성장과 변화	4회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처방법
	5회	남편과 자신의 원가족과 의사소통 유형 이해
	6회	기능적 의사소통기술 훈련
	7회	건강한 가족, 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제4단계 : 종결과 평가	8회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립하기, 자원의 확인과 강화
	9회	자신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인식과 평가
제5단계 : 변화 확인과 강화	10회	추후평가: 변화 확인과 강화

2) 보호시설 입소 아동의 경우

(1)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동반 입소한 자녀들이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가급적 대상 연령을 동질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

(2) 프로그램 운영, 회기 및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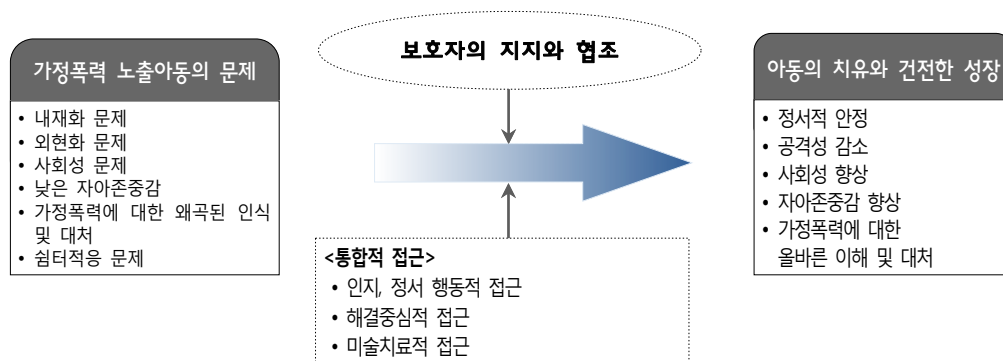
- ① 프로그램은 폐쇄집단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프로그램 도입단계(1~3회기) 이후에는 새로운 아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도록 권장
- ② 1주일에 2회의 집단모임
 - * 하루 2회기 이상 진행 불가
- ③ 총 9회기의 프로그램과 추후모임을 5주에 걸쳐 진행
- ④ 간식시간을 포함하여 90분 이내로 구성

(3) 운영모델

<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 >

단 계	회기	목 표
제1단계 : 도입 단계	1회	○ 사전조사 ○ 참여자 및 진행자 관계형성하기 ○ 프로그램 이해하기
	2회	○ 쉼터생활 적응 향상시키기
	3회	○ 감정의 특성 및 역할 이해하기
제2단계 : 가정폭력 이해 및 대처 행동조절	4회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인식하기 ○ 아버지에 대한 양가감정을 수용하기
	5회	○ 가정폭력 경험 나누기 ○ 가정폭력의 원인과 책임 이해하기
	6회	○ 가정폭력 상황에서 자기보호기술 향상시키기 ○ 가정폭력의 부정적 영향 감소시키는 대안적 활동 찾기
제3단계 : 행동조절	7회	○ 분노 이해하기 ○ 적절한 분노표출과 부적절한 분노표출 방법 구분하기
	8회	○ 위축된 행동, 공격적 행동과 자기주장적 행동 구분하기 ○ 자기주장적 행동 익히기
제4단계 : 종결단계	9회	○ 미래지향적 관점 도입하기 ○ 프로그램을 통한 성취 점검하기 ○ 프로그램 평가하기
제5단계 : 변화유지단계	10회	○ 변화 확인 및 강화 ○ 추후평가

(4) 기대 효과



3) 시설별 표준 프로그램 실시 평가

※ 시설은 표준 프로그램 실시 전후로 성인 및 아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연말 실적보고서를 제출

○ 평가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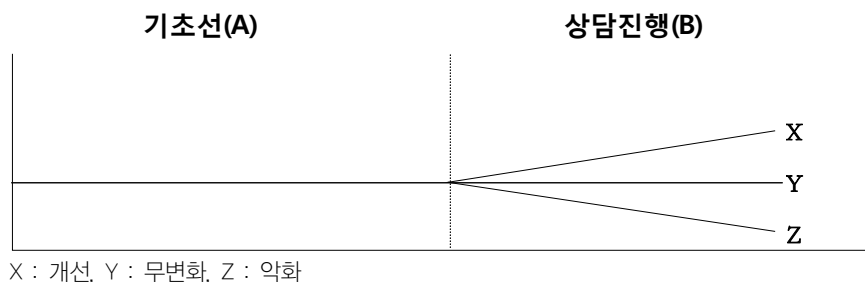
- 단일사례 설계(single case design)를 이용하여 사전-사후 또는 사전-중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추이 비교

○ 평가 방법

- 평가척도 : 개발된 척도 활용(서식 참고)
- 평가시기 :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하여 상담 전-상담종결 후 등으로 구분하여 2회 이상 실시(사전 1회·상담회기 중 1회이상·상담종결 후 1회 또는 사전 1회·상담종결 후 1회)

○ 평가 종합

- 개별참가자 또는 개별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중간-사후 또는 사전-사후 설문 체크
- 상담종결 후 결과 종합(다이어그램 작성)



X.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1 운영 개요

가. 사업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나.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보수교육의 실시 기준)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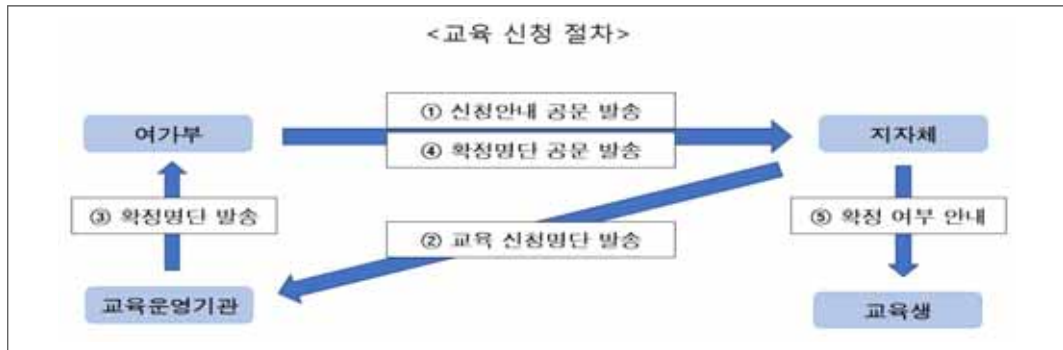
- 교육과정 : 경력별·직무영역별 과정 분류를 통한 맞춤형 교육실시
- 교육 대상시설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성폭력상담소, 가정·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 교육인원(예정) : 650명
- 교육예산 : 151백만원(국비 기준)
 - 지자체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며 국고보조율 50%
- 교육비용 지원기준 : 교육비 및 여비(교통비 등)
 - 교육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운영기관에 일괄 납입
 - 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생에게 별도 지급
 - ※ 기관(상담소 등) 및 교육생 교육비 납입 불가

라. 운영방법

-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2 행정사항

가. 교육 신청



① 신청안내 공문 발송

- 여성가족부는 광역지자체로 신청안내 공문 발송
 - 신청안내 공문 발송 시, 교육과정 세부내용 및 과정별 대상 안내 예정

② 교육 신청명단 발송

- 각 지자체의 관내 여성폭력 관련시설에 신청 양식 배포 및 취합하여 교육운영기관에 발송

※ 선발기준

- 각 과정별 신청 대상 및 경력사항을 고려하여 교육생 선발 요망
- 각 지자체별 기관 종사자 현황과 대조 필수(재직자가 아닌 자의 교육신청 불가)
- 전년도 미수료자 및 당일 취소자는 당해 연도 및 차년도 교육 신청 시 제외
-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종사자가 우선 수강할 수 있도록 선발 요망

- 각 과정별 상담경력을 적용하여 교육대상 선정 요망
 - 상담 업무 종사자로 선정 요망(행정, 총무 등의 업무를 하는 종사자는 가급적 제외하여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종사자가 교육을 우선 수강할 수 있도록 선정 요망)
 - 교육과정별 적합한 교육대상 자격·경력기준 등은 매년 2~3월경 보수교육 수립 시 공문으로 통보 예정
- 국고보조금 미지원 시설 종사자가 교육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균형적인 안배 요망

- 지자체에서는 시설 종사자의 최근 교육 이수내역을 반드시 파악하여 관내 시설 종사자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도모하여야 함

- 교육 수요조사 시, 지자체에서는 교육 추천순위를 반드시 기재할 것

※ 가정폭력 관련시설과 성폭력 관련시설의 교육참가자를 각각 7:3 비율로 나누어 추천

③ 확정명단 발송

- 교육운영기관은 여성가족부로 확정명단 공문 발송
 - 교육운영기관은 교육생의 근무경력 및 최근 교육 이수내역 등을 고려하여 교육생 명단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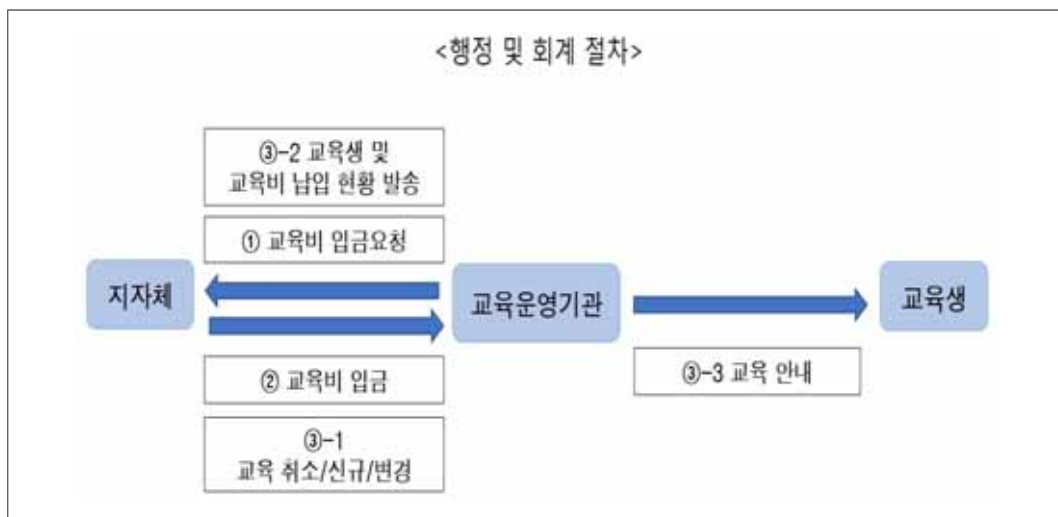
④ 확정명단 공문 발송

- 여성가족부는 광역지자체로 확정명단 공문 발송

⑤ 확정 여부 안내

- 각 지자체는 교육 신청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

나. 교육비 납부



① 교육비 입금 요청

- 교육운영기관은 광역지자체에 교육비 입금요청 공문 발송

② 교육비 입금

- 각 지자체는 관내 교육생의 교육비를 교육운영기관으로 납입
 - 교육비의 여비는 지자체 또는 소속기관에서 교육생에게 별도 지급함

※ 주의사항

- 기관(상담소 등) 자부담 및 교육생 사비 입금 방지를 위해, 기관의 교육비 입금을 제한(지자체→기관 교육비 교부 금지)

③-1. 교육 취소/신규/변경

- 각 지자체는 교육생이 최초 신청한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협조 요망
- 원칙상 교육생은 교육과정의 변경이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관할 지자체 및 교육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신청내역 변경(개인사유로 변경 불가)
- 교육 미수료 시, 교육 여비(교통비) 미지급
- 당일 교육 취소 시, 교육비 반납 불가

③-2. 교육생 및 교육비 납입 현황 발송(분기별)

- 교육운영기관은 매분기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교육생 및 교육비 납입 현황 공문 발송

③-3. 교육 안내

- 교육운영기관은 각 교육 시작 2주전 해당 교육생에 세부 교육 안내

다. 교육생 개인정보 관리 철저

- 교육생 명단 기관(상담소 등) 유출 금지

XI.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XI-1. 사업수행 체계

1 적용범위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대상

- 사업 신청대상
 - 2018년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존시설(이하 “기존지원시설”이라 함)
 - ※ 기존 지원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의 유형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성폭 시설에서 가폭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불가
 - 기존 미지원 시설 중 신규 신청 가정폭력 상담소

4 사업비 배정절차

① 사업 신청

- 신청대상 시설에서 관할 시·군·구에 필요한 프로그램 사업을 신청
(서식 27, 27-1 ~ 27-4 참조)

② 사업신청서 검토 및 시·도 제출

- 시·군·구에서는 접수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 신청서 제출(서식 27, 서식 27-5 참조)

③ 사업비 세부내역 사전 검토

- 시·도에서는 접수된 사업신청서상 사업비 세부내역이 사업별 기준단가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사전 검토
 - ※ “사업별 기준단가”는 권익증진지침 사업별 「프로그램 운영 기준단가」 참조

④ 프로그램별 사업수행시설 선정 심사

- 심사주체 : 시·도 직접 수행 또는 시·도에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또는 가정 관련으로 구성된 기존 위원회 활용)하여 수행
- 심사방법 : 선정심사표(서식 28-1 ~ 28-2 참조)에 따라 점수 부여
 - 기존 지원시설·신규신청시설에 대해 별도의 선정심사표에 의해 심사하되, 최종 점수에 따라 기존 지원시설·신규신청시설 구분없이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배정
 - 필요할 경우 신청 시설에 대해 사전 현장점검 실시
 - 전년도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행정기관의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누적된 기관은 예산 배정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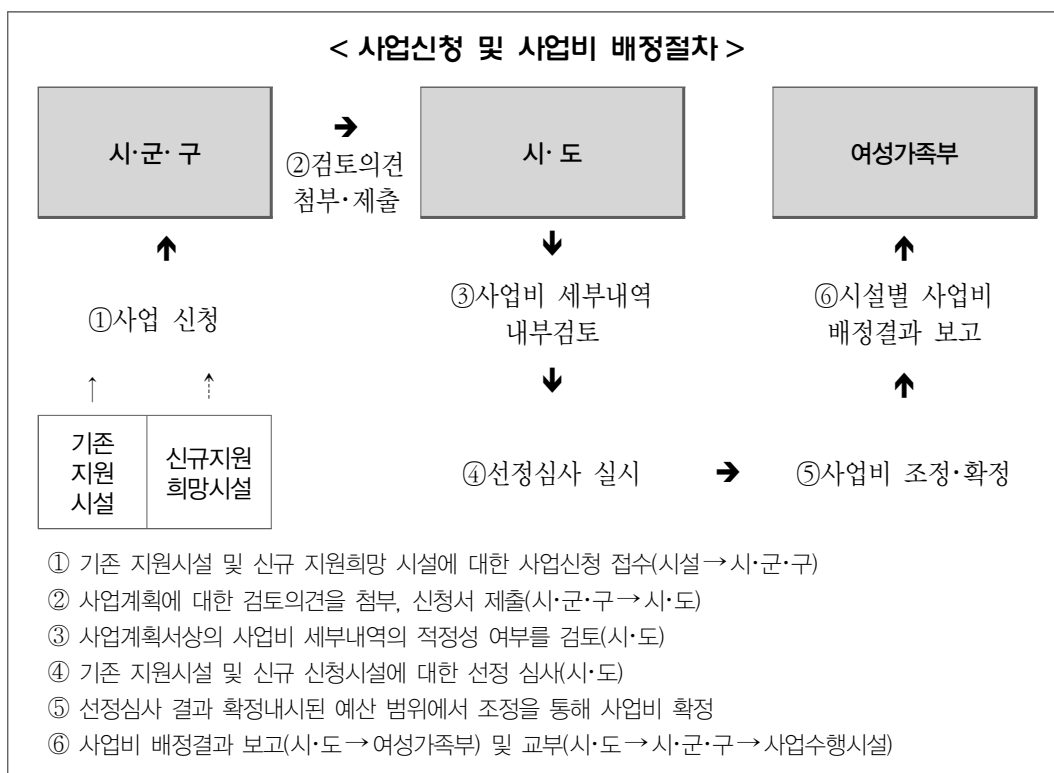
⑤ 시설별 사업비 조정·확정

- 프로그램별 '사업수행시설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내시된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삭감 등 조정을 통해 사업비 확정

⑥ 사업비 배정결과 보고 및 사업비 교부

- 시·도는 조정·확정한 사업수행시설별 사업비 배정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보고서식 27-6, 27-7), 시·군·구에 사업비를 교부

⑦ 사업 수행 : 시·군·구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수행시설별 실시



5 사업비 조정 및 정산

- 필요할 경우 상반기 이후 중간 정산을 실시, 사업비 조정 및 재배정
- 2018년 사업결과를 사업수행기관 →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로 보고 (2019.1월말까지)

6 사업추진일정

- 확정내시 및 사업지침 통보 : 2018. 12월까지(여성가족부)
- 사업신청서 접수, 검토 및 배정 : 2019. 1월까지(시·도)
- 사업비 배정결과 제출 : 2019. 2월까지(시·도 → 여성가족부)
- 사업수행 : 연중(공모를 전년도 시행하는 등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음)
- 사업결과보고 : 2020. 1월말까지

7 행정사항

가. 강사 기준

- 강사진 구성 시 외부전문강사를 최소 40% 이상 구성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이 경우에도 외부전문강사가 최소 30% 이상은 되도록 하여야 함)
 - 다만, 동일법인 소속으로 동일 시·군·구내 소재하고 있는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서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상근 종사자가 동일 시·군·구내 동일 법인소속의 상담소에서 강의할 경우 내부강사로 봄
-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안정적이고 일관된 운영이 바람직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별 과목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일강사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감안하여 강사 섭외 및 초빙이 이루어져야 함
- 내부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시설 별도의 통장(기타수입)으로 입금하여 자체적인 집행 기준에 따라 시설 운영비로 활용함
 - 단, 근무시간 외에 프로그램을 수행한 내부강사 및 시설의 업무와 관련한 종사자의 시간 외 근무수당 등*으로도 사용 가능함
 - *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은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을 말함
 - ※ 과도한 시간외 근무를 통한 프로그램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의 시간 외 근무시간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타 지역의 강사 활용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수증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숙박비: 실비(서울 7만원, 광역 6만원, 기타 지역 5만원 한도 내)
 - 식 비: 1일당 20,000원
 - 교통비: 실비(철도는 일반실 기준)

나. 프로그램 운영 등

- 가해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해당 기관과 협조하여 프로그램 진행자 등의 신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안전 및 신변보호와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남·여를 동일 프로그램 집단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에 불편과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함
- 사업계획변경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되, 단순한 프로그램 내용·횟수 등의 변경은 상담소가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
 - 단, “개별상담”만을 위한 프로그램 변경은 불가함
 - 지역 특성상 집단상담 성원 구성이 곤란한 경우 3인 이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집단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 상황 등을 현장 확인·점검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 되도록 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시설과 관할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리플릿, 팜플릿 등의 제작·배부 비용을 연간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 가해자 프로그램 관련 예산으로 제작되는 일체의 홍보물에는 반드시 여성가족부와 복권위원회의 로고가 삽입되어야 함

- 각 시설에서는 만족도 조사 설문지(참고자료 3) 및 반송용 봉투를 항상 비치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 참여자와 배우자에게 설문에 응하도록 적극 권장
 - 반송용 봉투 수취인은 해당 시·군·구(여성정책 부서)로 하며, 해당 시·군·구에서 설문지를 취합하여 반기별·상당소별 만족도 결과를 집계하여야 하며, 반기별 추진 실적 제출시 시·도를 거쳐 여성가족부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시·도의 수행기관 선정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 평가 시 선정심사표(서식 28-1, 2)
- 음주문제로 인한 행위자는 정신과, 가정의학과, 알코올상담센터 등의 전문상담인력을 외부강사로 활용
- 2019년 사업수행기관별 사업계획서(서식 1)은 '19.2.22(금)까지 여성가족부로 제출
- 기타 2019년 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2018년 기준에 준하여 처리함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가자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XI-2. 세부 운영지침

가. 목 적

- 가정폭력 가해자 성행 교정 및 재범 방지

나.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부부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 ※ 자치단체, 타기금 등으로부터 같은 사업(목적)을 위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 상담대상 행위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원의 상담 위탁 대상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담위탁 처분을 받은 아동학대 행위자(지역별로 법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위탁 기관으로 지정(협력)여부 확인 필요)
 - 경찰관서에서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가 요청된 자

다. 표준 운영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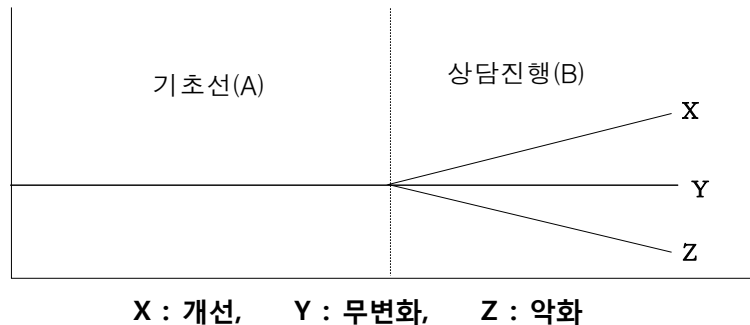
구 분	프로그램운영 표준모델	비 고
상담장소	○ 관련법상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장소	
전문강사	○ 상담대상자 10인 기준, 2인 이상 확보 ○ 전문 강사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주진행 1인, 보조진행 1~2인의 강사로 운영	
운영 빈도	○ 주 1회, 20회기 기준 ○ 개별상담(부부상담) 1회 1시간 내외: 40분 이상 ○ 집단상담(부부집단상담) 1회 2~4시간: 90분 이상	신뢰감과 응집력 구축에 영향

구 분	프로그램운영 표준모델	비 고
집단구성의 원칙	○ 행위자의 성별, 연령, 지적능력, 가정폭력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구성	가시고슴도치의 원칙 노아 방주의 원칙
집단의 크기	○ 8~10인 원칙 - 상담소별로 전체 수요에 맞게 하되, 구성원들의 결석, 중도탈락을 고려	집단구성원의 상호작용과 만족도에 영향
집단의 개방과 폐쇄	○ 집단을 운영함에 있어 시작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같은 성원으로 유지하느냐, 도중에 새로운 성원을 계속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구분 - 폐쇄형 집단 원칙 - 수요가 많지 않은 상담소의 경우 소수의 인원으로 집단을 시작한 후 신규수요 발생시에 집단에 추가하는 개방형 활용 가능	참여와 친밀성, 성원간의 상호작용에 영향
수혜자 중심의 운영	○ 상담대상자의 생업, 육아, 가사 등을 고려하여 야간, 휴일 상담 가능 ○ 부부상담, 부부집단상담에서 상담대상자가 어린 자녀를 동반할 경우 상담도우미 1인이 baby sitter 기능수행	○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및 기타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 ○ 야간상담은 18:00 이후 상담을 시작한 경우
위기 대처	○ 행위자가 상담거부나 난폭행동 등으로 통제 불능의 경우 - 사전 계약시 비폭력 명시 - 경찰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상담 중단 후 의뢰한 법원 등에 통보	
프로그램 운영 전 계약	○ 행위자와 사전계약을 통해 상호간 기대, 의무·책임 등 명시 - 가정폭력 근절, 부부간 화합 등	상담소·전문강사의 역할과 책임, 행위자의 의무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함
개입이론모델	○ 여성주의와 인지행동 모델 - 행위자가 폭력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비폭력적인 대안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폭력을 멈추게 함	
상담기록관리	○ 상담대상자(행위자)별로 주 전문강사 지정 - 1개의 파일로 시간 순서대로 편철	
사후 평가	○ 각 상담소는 운영프로그램에 대해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적보고 제출 시에 함께 제출 - 사업비 배정 등에 반영	single case design

주 : 프로그램운영은 『표준운영모델』을 기준으로 하되, 상담소별로 현장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 가능
(단, “개별상담”만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불가)

라. 프로그램 운영·평가(각 상담소별 평가)

- 각 상담소별로 상담교육을 진행하면서 개별 가해자 또는 가해자 집단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연말 실적보고서 제출
- 평가틀
 - 단일사례 설계(single case design)를 이용하여 사전·사후 또는 사전·중간·사후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추이 비교
- 평가방법
 - 평가척도: 기존 또는 개별화된 척도 활용(서식 - 설문지 참고)
 - 평가시기: 가정폭력가해자 프로그램 참여자의 배우자 설문지, 가해자 사전검사지에 대하여 상담 전·상담종결 후 등으로 구분하여 2회 이상 실시(사전 1회·상담회기 중 1회 상·상담종결 후 1회 또는 사전 1회·상담종결 후 1회)
- 평가종합
 - 개별 가해자 또는 가해자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 중간, 사후 설문 체크
 - 상담종결 후 결과 종합(다이어그램 작성)



- 단일사례 설계에 있어 고려할 사항
 - 목표의 명확화 및 효과성의 측정지표를 행동, 관찰되는 무엇 등으로 분명하게 제시
 - 측정지수: 반복, 정기적으로 측정 가능할 만큼의 빈도
 - 자료수집도구: 행동관찰, 기존 또는 개별화된 척도 이용
 - 자료수집 장소 및 시기를 일정하게 하여 외생변수 개입을 줄임
 - 사회적 편향성 제거 노력: 요구하는 답안 제시 가능성 염두

마. 프로그램운영 기준단가

종 류	상담내용 및 목표	상담횟수	강 사	지급한도액
사전면접	1) 사전면접(상담자) - 가족상황 - 신체 및 정신건강, 알코올 - 폭력행동 - 법적기록(가정폭력관련) 2) 사전면접 평가 ※ 상담형태 및 참여시킬 프로그램 결정	수강자에 대한 최초 상담 (회당 1시간 내외)	전문강사 (I), (II)	전문(I): 1회당 35,000원 전문(II): 1회당 50,000원
개별상담 (I)	- 가정폭력 행사 원인 - 폭력행사시의 심정 - 현재의 심정 - 자신의 문제 진단 - 반성의 기회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주 1~2회 상담 (회당 1시간 내외)	전문강사 (I), (II)	전문(I): 1회당 35,000원 전문(II): 1회당 50,000원
개별상담 (II)	1) 알코올 문제 상담 - 알코올과 폭력의 관계인식 - 알코올을 절제하는 방법 2) 정신·심리상담 - 분노 다스리기 - 스트레스 다스리기 - 질투관리법 등	"	전문강사 (I), (II)	전문(I): 1회당 35,000원 전문(II): 1회당 50,000원
부부상담 가족상담	3) 부부상담 - 부부간 이해증진 - 부부 관계개선		전문강사 (I), (II)	전문(I): 1회당 50,000원 전문(II): 1회당 70,000원
집단상담	- 가정폭력 책임 인식 - 가족간 의사소통 증진 - 갈등해결 기술 향상 - 성평등적인 인식의 향상 ※ 장소사용료 1회 100,000원	- 규모: 10인 내외 - 간격: 주 1~2회 1회당 2~4시간)	주진행 (1~2인): 전문(II) 보조진행 (1~2인): 전문(I)	주진행: 최초 1시간 7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35,000원 보조진행: 최초 1시간 35,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15,000원
부 부 집단상담	- 부부간 의사소통법 - 배우자 이해증진법 ※ 장소사용료 1회 100,000원 상담도우미: 필요시	- 규모: 5부부(10명) 내외 - 간격: 주 1~2회 (1회당 2~4시간)	주진행 (1~2인): 전문(II) 보조진행 (1~2인): 전문(I)	주진행: 최초 1시간 7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35,000원 보조진행: 최초 1시간 35,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15,000원

종 류	상담내용 및 목표	상담횟수	강 사	지급한도액
부부캠프 (별도)	- 부부 + 자녀 참여 - 부부화합 도모 - 건강한 가정회복 ※ 장소사용료 1회 150,000원 숙박비 2인1실 70,000원 식비 1인 5식, 1식 10,000원 교통비: 실비 다과비: 1인 5,000원 상담도우미: 필요시	- 규모: 10명~20명 - 기간: 1박2일 (전문 강사의 상담프로그램은 8시간 이내)	주진행 (2~3인) : 전문(II) 보조진행 (3~4인) : 전문(I)	주진행: 최초 1시간 70,000원 매 1시간 초과 시 35,000원 보조진행: 캠프 1일당 70,000원 도우미는 보조진행단가 적용
정신과 치료 (별도)	- 정신과 의사 진료 ※ 의료보험 적용대상의 경우 본인 부담분 지원원칙		정신과 의사	실비인정, 1회 150,000원 이하

- 주 : 1.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인정하며, 최대 3시간까지만 지급 가능
2. 전문강사(II) 대신 전문강사(III)의 경우에는 최초 1시간당 100,000원, 매 1시간 초과시 50,000원
 3. 소모품비(재료비, 만족도조사 설문지, 반송용봉투 및 자료유인물인쇄 등)는 연 480만원 한도에서, 다과비는 1회 1인당 5,000원, 연 360만원 한도에서 인정. 소모품비는 소모성 재료비외 비품구입은 불가
 4. 야간(18시 이후), 휴일 상담 권장(상담료 50% 가산 지급 가능), 상담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 1인 상담 1회당 왕복교통비 1만원 별도 인정
 5. 상담도우미는 부부상담, 부부집단상담, 부부캠프 등에서 상담대상자가 영·유아(만6세 미만)를 동반할 경우 baby sitter로 1인 인정
 6. 부부캠프 프로그램 운영시 두가지 이상 교통수단 이용가능
 7. 상담도우미는 상담원,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되, 부득이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보조진행자에 준해서 지급
 8. 집단상담(부부집단)의 주진행자는 상담대상자 5인까지는 1인, 상담대상자 6인 이상일 경우에만 2인
 9. 집단상담의 보조진행자 2인 중 1인은 상담기록 담당
 10. 가해자 자조모임 프로그램비는 집단상담에 준하여 강사로 지원

바. 전문강사 자격기준

표. 전담인력 자격기준(가정폭력가해자 프로그램 공통) :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자 격 기 준	비 고
전문강사 (Ⅰ)	1. 대면상담경력 1년 이상인 자로서 여성가족부 시행 가정폭력 행위자 운영자과정 교육이수자 2. 알코올전문상담 경력 1년 이상인 자(알코올 상담의 경우) 3. 아동미술치료 등 아동심리치료·상담 1년 이상 경력자 (아동상담의 경우) 4.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자로서 대면상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상담경력 가정폭력관련 상담임
전문강사 (Ⅱ)	1. 대면상담경력 5년 이상인 자 2. 행위자 집단 상담경력 3년 이상인 자 3. 알코올전문상담 경력 3년 이상인 자(알코올 상담의 경우) 4. 아동미술치료 등 아동심리치료·상담 3년 이상 경력자 (아동상담의 경우) 5.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집단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	※ 상담경력 가정폭력관련 상담임
전문강사 (Ⅲ)	1. 관련분야 박사 학위 이상으로 행위자 대면상담경력 3년 이상인 자 2. 대면상담경력 10년 이상으로, 5년 이상의 집단상담 경력을 갖춘 자 3. 관련분야 의사 자격증 소지자로 대면상담경력 3년 이상인 자	※ 상담경력 가정폭력관련 상담임

주 : 1. 대면상담경력: 주3회 이상, 1일 4시간 이상 대면상담 경력
 2. 상담경력: 주1회 이상, 1일 2시간 이상 전화·면접 상담경력
 3. 집단상담경력: 5인 이상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 연간 10회 이상 상담한 경력
 4. 관련분야: 정신, 심리, 사회복지, 사회사업, 여성학, 법학 및 교정학 등

(서식 1)

○○○○년 사업수행기관별 사업계획서 요약서
 (사업수행기관 : ○○가정폭력상담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소요예산 : 원
- 사업운영인력 : 명(내부강사 명, 외부강사 명)
- 예상참여인원 : 명(법원 : 명, 경찰 : 명, 기타 : 명)

2. 사업내용

- 총괄

프로그램	사업기간	운영횟수	담당인력	참여인원	소요예산 (천원)	비고
① 개별상담						
② 부부상담						
③ 집단상담						
④ 집단교육						
⑤ 캠프						
⑥ 기타()						
총 계						

※ 운영하는 프로그램만 기재

○ 프로그램명(해당사항만 기재)

－ 개별상담 :

－ 부부상담 :

－ 집단상담 :

－ 집단교육 :

－ 캠프 :

3. 기대효과

4. 사업수행기관 현황

○ 대표자 성명 :

○ 담당자 성명 :

○ 담당자 연락처 : 전화 : 팩스 : 이메일 :

○ 상담소 총 인력 : 명(소장 명, 상담원 명)

06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

- I.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비공개 시설)
- II.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 III.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운영

I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

※ 비공개 시설

1 개 요

가. 사업목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보호

나.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및 제7조의 2(보호시설의 종류)

다. 사업내용

- 운영지원 : 전국 28개소
- 업무내용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해 아래의 지원 활동을 실시함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본국으로의 출국 관련 지원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

2 설치·운영

가. 설치·운영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나. 설치기준

- 입지조건: 보호시설은 지역별 적정한 분포, 위생·안전·환경·급수·보안 사정, 교통 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규모: 입소정원 $\times 6.6\text{m}^2$ 이상
 - ※ 부득이한 경우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초과 입소 가능
- 구조 및 설비(「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표 2] 참조)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고,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재해 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함
 -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함(2, 3, 4 및 6, 7, 8의 시설 겸용가능)
 - 1) 거실 2) 사무실 3) 상담실 4) 숙직실 5) 식당 및 조리실 6) 목욕실 7) 세탁장
 - 8) 화장실 9) 급수·배수 시설 10) 비상재해대비시설

다. 설치 절차

설치 절차

- ① 인가신청서 제출
 - 신청인 $\Rightarrow$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정관 및 출연금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평면도
 - 시설장의 자격증명 서류
 - 종사자의 명단 및 자격증명 서류
 -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
- ② 심사: 시장·군수·구청장 / 설치기준 및 종사자 자격 요건 등
- ③ 인가필증 교부: 시장·군수·구청장 $\Rightarrow$ 신청인

라. 종사자 수

○ 종사자 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2])

구 분	외국인보호시설	
	5~10인 이하	11~30인 이하
시 설 장	1	1
상 담 원	2	3
총 계	3	4

- 시설기준의 종사자 수에 포함된 시설장 및 상담원은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국비지원 보호시설은 상담원 1인을 정원으로 추가

※ 법인의 대표자(이사장 포함)가 시설장을 겸할 수 없음

※ 종사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방문 시 필요한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음(〈서식 1〉 종사자 신분증 참조)

○ 종사자의 채용

-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사자가 될 수 없음(법률 제8조의2제1항)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종사자 소진방지

-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자체 운영비 내에서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치료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원 가능 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심리치료, 힐링 프로그램 교육 등 프로그램화된 것은 참여지원 가능(단순 여행이나 영화 관람은 지원 불가, 단 여행·영화 관람도 소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화한 경우 가능)

※ 지원 가능 액수: 연간 1인당 20만원 범위 내

○ 종사자 대체인력 채용

- 시설장은 종사자의 퇴사, 육아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신규 또는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등 적정 인력을 운영하여야 함

- 대체인력의 자격은 상담원 등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마. 종사자 자격기준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 개별기준

구 분	자 격 요 건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상담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시설장의 자격기준 중 ‘가정폭력 방지업무’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서의 업무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보호·지원 등에 관한 업무임
- 가정폭력 방지업무의 경력인정 기관: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된 기관 또는 시설, ② 가정폭력 방지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 또는 단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④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가정폭력 관련 기관
-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6개월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 수습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3 입소 및 퇴소

가. 입소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외국인 및 귀화자 등 포함) 및 동반 자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지적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동반가족의 경우 피해사실에 대한 법원 진술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상담 및 객관적 자료 확인 후 필요기간만 입소 허용
-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다는 사유로 지자체에서 입소 승인(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2항)을 거부하여서는 안됨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입소 등 보호지원 시 유의사항

- ① 입소 사실의 보고
 - 시설의 장은 쉼터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행복e음을 이용하여 일반문서로 입소보고)
- ② 입소 승인사항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을 보호자의 입소 동의 없이 입소시킨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로 별도 대장을 마련·작성하여 입소 승인)
- ③ 상담 및 관리 시 유의사항
 - 방임, 유기 등 무형의 폭력피해자는 상담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실 확인 후 입소 여부를 결정함
 - 기타 임신 및 동반자녀 유무, 폭력피해의 심각성, 외국인등록증·비자 소지 등을 확인 후 입소 여부를 결정함
- ④ 운영위원회의 활용
 - 입소 적격 여부에 대하여는 필요 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함

나. 퇴소대상

-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 보호 목적의 달성 또는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타 입소자 및 상담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자해, 폭력 등)

다. 보호기간: 2년 이내

- 임시보호: 3일 이내(필요 시 7일까지 연장 가능)
- 1년 이상 보호하는 경우, 시설장은 계속적 보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상자 및 사유 등을 지체없이 보고함
- 동일한 가정폭력을 사유로 둘 이상의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각각의 입소기간을 합산하여 보호기간을 적용함. 단, 퇴소자가 또 다른 가정폭력을 사유로 입소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새로이 적용함
 - ※ 이혼소송 완료 등 가정폭력의 위협이 해소된 경우 「자활지원센터」 및 「모자보호 및 자립 시설」로 적극 유도할 것

라.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 가해자와 폭력피해이주여성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시설관계자와 관련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또는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동반자녀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제도

- 동반 자녀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함
 - 시설입소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고, 해당 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전학할 수 있도록 추천함
 - 교육장(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을 조치하여야 함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등 참조
 - ※ 가정폭력 발생사실 소명방법 :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함
- 친권자라 하더라도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피해 학생의 전학사실(전학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알리지 않도록 유의

4 관리 및 운영

가. 장부 등의 비치

- 관리에 관한 장부(3년 이상 보관)
 - 보호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직원 관계철(인사기록카드·이력서·사진 포함), 회의록철, 소속법인의 정관 및 관계결의 서류,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문서철), 문서접수·발송대장
- 사업에 관한 장부(3년 이상 보관)
 - 보호시설의 입소자 관계서류(신상조사서, 건강기록부, 입·퇴소자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상담, 의료·법률·출국지원의 내용 등)
 -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 상담일지 작성 시 폭력피해가 입증될 수 있도록 입소 배경과 폭력피해 정도 등을 개인별로 구체적으로 작성·관리
 - 운영 프로그램 관리대장(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 관련 서류)
 - 운영 프로그램의 계획, 내용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종사자 교육·훈련 관계 서류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5년 이상 보관)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예산서 및 결산서, 비품수불대장, 물품관리대장

구분	관리에 관한 장부	사업에 관한 장부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장 부 종 류	- 보호시설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직원관계철(인사기록카드, 이력서, 사진 등) - 회의록관계철 - 소속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 및 관계결의 기록 -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행정 기관과의 문서철) - 문서 접수대장 및 발송대장 - 종사자 근무상황부, 출장대장, 교육대장 등 각종 대장 - 입소자대장, 시설안전교육일지, 시설안전 사고보고서, 차량운행일지 등	- 입소자 관계서류(신상조사서, 입소확인서, 지원기록 등) -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 상담원 교육관계서류 - 운영실적 관련자료 등 - 피해자 또는 가해자프로그램 운영관련 서류 - 의료비관련 서류 - 법률지원관련 서류 - 학업지원관련 서류 - 기타 보호시설 사업에 관한 자료 등	- 총계정원장 - 수입 및 지출보조부 - 정부보조금명세서 - 사업비명세서, 사무비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 후원금수입 및 사용내역서 - 금전출납부 및 증빙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비품수불대장 - 비품관리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각종 증빙서류

나. 보호시설의 회계 등 업무 관리

○ 회계관리

- 쉼터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쉼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 후 가능함
- 반드시 기본계획 내부결재 받아야 하며, 지출결의 작성 시 지출내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이외 필요한 경우,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함

○ 후원금품 관리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발급(의료·사회복지·종교·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통해 후원금 또는 지정기탁금을 수령한 경우 포함)
 - ※ 금융기관 등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발급 가능
 - ※ 후원금 전용계좌는 시설 고유의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두어야 함
- 후원자가 후원금품의 용도를 지정했을 경우 지정 용도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후원자(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통보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 참조)
- 보호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 시 인터넷 공개 생략 가능)
- 같은 기간 동안 보호시설의 장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단, 후원자 성명은 비공개하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 시 인터넷 공개 생략 가능)

○ 업무의 전산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함

다. 운영위원회 운영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운영위원회 위촉·운영

-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시설의 장, 시설거주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단, 각 부분별 인원은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 위탁운영 법인 및 시설장과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음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함
- 위원회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운영함
- 운영위원회의 운영일지를 작성·보관함
- 운영위원회의 기능: 시설 운영과 관련된 아래 사항을 심의함
 - 시설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 입소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시설 입소자 적격여부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설장이 부의하는 사항
- 민간자원의 활용
 - 후원금 확보 및 자원봉사자 발굴·활용
 - 종교 및 각종 사회단체의 시설 지원 활동 적극 권장
- 유관기관 연계
 - 한국어 방문교육 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운영 프로그램 적극 활용

라. 안전관리(「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 주간 및 야간근무자 지정 및 근무 철저
- 시설장은 시설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는 사례(종사자 채용공고, 법인홈페이지 등)가 없도록 주의함

- 화재보험 가입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대인·대물 보험에 가입
- 시설장은 소관시설에 대하여 매 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해빙기 안전점검 철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 설치
- 24시간 생활시설에 가스경보기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 소화시설·장비는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종사자가 수시로 확인·점검함
-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당해 시설이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기관에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함
- 시·군·구청장은 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시설장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고예방 조치
 - 시설장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평상 시 종사자들에게 사고예방의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도록 지도하여 사고발생을 예방함
 - 시설장은 화재대피 훈련 등 방재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함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보고, 의료조치, 초기대응(화재진화 등), 외부연락 등에 대한 종사자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종사자들이 유사시 자신의 임무를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시설장은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고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함.
- 시·군·구청장은 사고발생시 시설안전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여성가족부장관

- 종사자 안전대책 마련
 - 시설장은 종사자가 상담 등 업무와 관련, 폭행 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함
 - 시설 내·외 CCTV 설치
 - 전기 충격기, 가스총 등 구비
 - 경찰관서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종사자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함(1인당 보험료 연 5만원 이내, 운영비로 지출)
- 재난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5 지원 내용

가. 지원 금액(지방비 포함)

(단위: 천원)

정 원	종사자(명)		지원 금액			
	시설장	상담원	계	인건비·운영비	긴급지원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11인 이상 30인 이하	1	4	170,732	130,732	24,000	16,000
5인 이상 10인 이하	1	3	137,213	105,213	18,000	14,000

※ 운영비는 인건비·운영비 합계의 8~2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책정 가능

- 집행방법
 - 분기별 적정 배정하여야 하며, 매 분기 초 지급이 원칙임
 - 지자체 직영 시설의 경우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배정함

나. 보호시설 운영지원

- 지원형태: 지자체 매칭 펀드(50~70%)
 - 국고 보조율: 서울 50%, 기타 지역 70%
- 지원항목: 인건비·운영비, 긴급지원비, 치료·회복프로그램비

○ 인건비·운영비

- ① 인건비: 4대 보험 부담금, 야간근무수당 등 모든 인건비성 경비
- ② 운영비: 수용비(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전국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협의회비 등),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공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통신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등), 종사자 여비, 종사자 상해보험료, 종사자 소진방지 등
 - ※ 화재보험은 소멸성 대물·대인 보험에 가입
 - ※ 종사자 상해보험은 1인당 연간 5만원 한도 내에서 운영비로 가입
 - ※ 사회복지시설에 비치된 텔레비전 수상기는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15조제12호에 의거 등록이 면제되는바,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종사자의 숙직, 연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활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활용 가능. 단, 대체인력이 가정폭력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
-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적립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운영비로 사용 가능(여타 종사자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 위 지급 상한기준은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 예산의 지급 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긴급지원비

- ① 생계비: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에 대한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의류·신발비, 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금 등(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와 동일 기준 적용)

< 2019년 비수급자 생계비(1인당) 지급 기준 >

구 분	금 액	지급 시기
주·부식비, 피복비 등	251,849원	매월
동절기지원(월동대책비)	35,259원	매년 10월(연 1회)
특별위로금	35,800원	설·추석 전월(연 2회)

- ② 교통·통신비 : 입소자의 교통카드비, 전화카드비 등
- ③ 의료지원비 : 피해자 치료보호 사업 및 가정폭력피해자 무료진료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한 지원, 건강검진비, 일상치료비, 산후조리비 등
- ④ 법률지원비 : 무료법률지원사업(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 등)에 해당되지 않는 법률지원비 지원
 - ※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해당 지역 성매매 상담소를 연계,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의료, 법률)’을 통하여 지원하며, 불가피한 경우 또는 추가적 비용에 대해 지원
- ⑤ 통·번역비 : 통·번역이 필요한 경우 자체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지출하여야 함
- ⑥ 출국지원비 : 법률적인 절차가 끝났으나 지불능력이 없는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의 항공료 등
- ⑦ 아동양육비 : 동반아동의 학습준비물, 교복비 등
- ⑧ 직업훈련비 : 입소자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훈련비
- ⑨ 기타 : 생활용품 구입비 및 위생용품비 등

생계비 지원대상자 결정 방법

- ① 보호시설에 피해자 입소 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군·구에 보고
- ② 시·군·구에서는 입소 보고된 자에 대하여 행복e음을 이용하여 자산조사 실시
- ③ 자산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는 기초생활급여를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자는 생계비 지원대상자로 결정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참고)

○ 치료·회복 프로그램비

- 입소자를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시설장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군·구 및 시·도 승인을 받아야 함
- 상담 장소

- 관련법상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장소
 - 상담내용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
- 상담 형태
-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심신회복캠프, 한글교실, 의사소통훈련 등
 - 일상적인 상담과 구별하여 피해자별로 개별화·전문화된 치유프로그램 적용
 - ※ 단,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보호시설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게 치료회복프로그램 구성 요망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예산 지출 관련 유의사항

- 보호시설 입소자가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 대상자인 경우는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지원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수급대상자(시설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부식비, 피복비, 교육비, 의료급여 등 중복 지원 불가함
- 의료·법률지원은 피해자 치료보호 사업 및 무료법률지원사업 지침 참조
- 출국 관련 여권은 1회성 여행증명서 발급을 원칙으로 함
-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지침 참조
- 치료·회복프로그램비는 인건비, 운영비로 전용 불가함
- 입소자를 위한 통역 및 번역 서비스는 다누리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긴급지원비 또는 치료·회복프로그램비에서 지출함.
- 동반자녀가 아닌 동반가족(여성)의 경우, 긴급지원비 중 생계비, 교통·통신비, 의료비, 출국지원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기타 항목은 지급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권자가 된다.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참조)
- 보장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다. 기능보강

- 지원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함
- 지원내역
 - 보호시설 신·증축비
 - 보호시설 개·보수비, 기자재 구입비
- 지원대상
 - 신축 및 증축: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법인에 한함)
 - ※ 임차시설은 제외
 -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일 경우 지자체에서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확인 후 예산교부 신청
 - 개·보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 임차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필요시 예외인정
 - ※ 예외: 방염설비 및 개·보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안전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 (안전진단서 등 첨부)
 - 시설장비 보강: 모든 시설

6 기타 행정사항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동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가정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침의 관련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음
- 시설이 폐쇄될 경우 시·군·구청장은 입소자 관계서류 일체를 관할 지역의 다른 보호 시설에 이송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쉼터의 설치인가 및 입소정원 변경 시 운영비 등 예산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여성가족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관내 각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등 관련 통계자료(행복e음 입퇴소보고 실적 외 수기대장 실적 포함)를 지정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취합하여, 상반기 실적은 7월 31일까지, 연간 운영실적은 익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설장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지급·정산 등 회계업무, 종사자 인사업무, 통계관리업무 등 가능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여야 하며, 시설장·상담원의 채용공고, 선발, 퇴직, 지원금 집행실적을 일모아시스템 DB에 입력하여 참여자의 중복지원 등을 확인하여야 함

Ⅱ.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1 개 요

가. 사업목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자녀를 대상으로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
- 직업교육훈련 및 취·창업 능력개발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하도록 지원

나.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다. 주요기능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자녀에 대한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 이주여성 자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훈련, 취업지원 등
 - 취·창업 교육 및 외부전문교육훈련기관 연계
 -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생활문화 교육 등 사회정착을 위한 재교육
 - 취·창업 후 사후관리
- 동반자녀의 육아 및 보육 지원

2 설 치

가. 설치·운영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가하여야 함

나. 설치기준

- 입지조건: 시설의 적정한 분포·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규모: 입소정원 $\times 9.9\text{m}^2$ 이상
- 구조 및 설비
 - 거실은 적당한 난방, 통풍 및 일조량을 갖춰야 함
 - 사무실, 상담실, 실습지원실, 보육지원실
 - 도서실, 기숙시설, 다목적실
 - 화장실, 급·배수 시설
 - 비상재해대비시설
- 종사자 수
 - 조직 및 인력: 센터(시설)장 등 총 9명으로 구성

구분	계	센터장	상담원 (생활지도사)	보육교사	직업훈련 교사	행정관리	시설관리
인원	9명	1명	4명	1명	1명	1명	1명

다. 종사자 자격기준

- 센터장 자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별표 3) 참조
- ① 센터장·상담원기준: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교육 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개별기준

구 분	자 격 요 건
자활지원 센터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 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종사자 자격 기준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 분	자 격 요 건
상담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생활지도사	1.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업무경험이 3년 이상인 자 2. 가정폭력상담원으로서 여성폭력이나 이주여성 관련 업무 3년 이상인 자
직업훈련 교사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직업훈련기관 및 관련 시설에서 해당업무 경험이 2년 이상인자
보육교사	1.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행정관리	1. 회계 및 세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업무경험이 2년 이상인 자
공통사항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미성년자가 아닌 자

* 시설장 자격기준 중 가정폭력 방지업무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서의 업무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보호·지원 등에 대한 관련 업무임

- 가정폭력 방지업무의 경력인정 기관 :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된 기관 또는 시설, ② 가정폭력 방지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 또는 단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④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가정폭력 관련 기관

3 입소 및 퇴소

가. 입소대상

- 입소대상
 - 입소를 희망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중 자활의지가 강하고 다음요건의 1가지 이상을 갖춘 자
 - 법률적 문제(이혼 등 신분정리)가 해결되어 국내체류가 가능한 자
 - 자녀를 동반하고 이혼소송중인자 중 기관장의 의뢰를 받은 자(의뢰서 및 상담기록 첨부)
 - 입소 이주여성의 동반자녀
- 입소 우선순위
 - 국내 거주기간이 짧은 자
 - 미취학 자녀 동반자
- 운영위원회(입퇴소 선정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 후 면접심사 가능

나. 퇴소대상

- 입소기간이 만료한 자
- 입소기간 중 자립·자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자
- 취업이나 창업을 한 자로서 이주여성 그룹홈 및 임대주택 입소 예정자
-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다른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 자활의지가 없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센터장이 퇴소를 명하는 자

다. 입소기간

- 기본 1년 6개월로 하되 1회 6개월 연장 가능(최장 2년)

4 운영

가. 장부 등의 비치

- 운영 관리에 관한 장부(3년 이상 보관)
 - 보호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직원관계철(인사기록카드·이력서·사진 포함), 소속법인의 정관 및 관계 결의서류
- 회의록 등 관련서류(3년 이상 보관)
 - 회의록철, 소속법인의 정관 및 관계 결의 서류,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문서접수·발송대장
- 사업에 관한 장부(3년 이상 보관)
 - 보호시설의 입소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건강기록부, 입·퇴소자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상담, 의료·법률·출국지원의 내용 등)
 -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운영 프로그램 관리대장(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관련 서류), 종사자 교육·훈련 관계 서류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5년 이상 보관)
 - 총계 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예산서 및 결산서, 비품수불대장

나. 회계관리

- 재무·회계 관리
 - 자활지원센터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재무·회계 관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재무회계 관련 법령 준용
 - 자활지원센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 후 가능

○ 후원금품의 관리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발급(의료·사회복지·종교·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통해 후원금 또는 지정기탁금을 수령한 경우 포함)
 - ※ 금융기관 등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발급 가능
 - ※ 후원금 전용계좌는 시설 고유의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두어야 함
- 후원자가 후원금품의 용도를 지정했을 경우 지정 용도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후원자(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통보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 참조)
- 보호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 시 인터넷 공개 생략 가능)
- 같은 기간 동안 보호시설의 장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단, 후원자 성명은 비공개하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 시 인터넷 공개 생략 가능)

다. 종사자 및 시설 안전관리(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등)

- 주간 및 야간근무자 지정 및 근무 철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시설 안전점검 실시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 설치
-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해빙기 안전점검 철저
- 24시간 생활시설에 가스경보기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 사고예방 조치

- 사고예방조치, 화재대피 훈련 등 방재훈련,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등 재난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교육시행
-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 자활지원센터의 장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보고, 의료조치, 초기대응(화재진화 등), 외부연락 등에 대한 종사자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종사자들이 유사시 자신의 임무를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자활지원센터의 장은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고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함
 - 시·군·구청장은 사고발생시 시설안전사고보고서를 작성 즉시 보고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여성가족부장관

○ 자활지원센터 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하여 상해보험 의무가입

○ 재난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라. 운영위원회 운영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자활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시설의 장, 시설거주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단, 각 부분별 인원은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위원회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운영
- 운영위원회 운영일지 작성·보관

- 운영위원회의 기능: 시설 운영과 관련 다음사항을 심의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입소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시설 입소자 적격여부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설장이 부의하는 사항

5 운영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 용
한국어 교육	- 수준별, 단계별 교육, 맞춤형 교육 - 한국어자격증시험 대비반(취업대비)
컴퓨터 교육	- 기본교육 및 단계별 전문교육 - 실습지원실 상시 활용
보육지원 프로그램	- 간접폭력피해 아동 대상으로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상담기법 활용 등
언어발달 교육프로그램	- 동반아동 대상 - 언어발달 진단,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 등
심리 상담치료	- 음악치료, 미술치료, 모래치료, 웃음치료, 독서치료, 명상, 문화체험 등
사회 적응교육 프로그램	- 문화적 차이 극복 및 한국사회 정착 - 생활문화, 경제생활, 사회생활 등 적응 프로그램 - 전문강사 초빙 강의
취·창업 프로그램	- 입소자들의 수요 및 직업적성검사 - 결혼이민여성 대상 전문교육 - 개인별 직업훈련계획서 및 사설학원 이용시 경비 지원 - 취·창업연계 관련기관 컨소시엄 구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 소상공인협회, 중소기업청, 교육청, 미소금융, 사업체 등)
자활 의욕 고취 프로그램	- 자활 정보제공, 직업적성프로그램, 상담 등
부모역할 프로그램	- 모역할에 대한 강의 및 상담 등
아이놀이 프로그램	- 부모와 자녀간의 믿음과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

나. 민간자원의 활용

- 전문가, 자원봉사자
 - 의료, 법률, 상담, 보육, 인적자원개발, 금융, 사업체 등 분야의 전문가를 자활지원 센터 후원인력으로 임명하고 인력풀을 구성하여 최대한 활용함
- 일반 자원봉사자
 - 한국어교육, 아동교육, 보육지원, 취창업프로그램 지원 등에 자원봉사자 활용
 - 지역사회의 다문화사회 감수성 증가를 위해 자원봉사자 인력풀 운영 활성화
- 멘토 자원봉사자
 -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자녀들의 학교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함
 - 여성지역자원봉사자와 이주여성간의 친정엄마 또는 자매결연운동 등

6 국고보조금의 지원

가. 지원형태 : 지자체 매칭펀드(50~70%)

- 국고보조율 : 50%(서울)

나. 지원금액

- 881,324천원(국비·지방비 포함)
 - 인건비 : 241,041천원
 - 운영비 : 155,283천원
 - 사업비 : 485,000천원
- ※ 운영비·사업비는 인건비로 전용 불가, 4대사회보험료 및 기관부담금은 인건비에서 지출

다. 지원항목 및 내역

- 인건비
 - 인건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서울특별시 또는 수탁기관) 자체기준에 의거하여 지원
- ※ 퇴직적립금 포함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시행일 : 2002년 1월 1일)
 -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 위 지급 상한기준은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 예산의 지급 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시설운영비

- 운영비: 시설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전국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협의회비 등), 임차료, 난방연료비, 건물유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등), 화재보험료, 종사자 여비, 종사자 상해보험, 종사자 소진방지, 4대 사회보험료, 현판설치 등 시설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화재보험은 소멸성 대물·대인 보험에 가입, 종사자 상해보험은 연간 1인 당 보험료 5만원 한도로 가입

- 종사자의 숙직, 연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활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활용 가능. 단, 대체인력이 가정폭력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
-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적립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운영비로 사용 가능(여타 종사자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

○ 사업비: 자활지원센터 이용자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센터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초생활지원, 교육과정 운영, 공동작업장 운영, 아이돌보미지원 등)

- 기초생활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대상자가 아닌 자
 - 주부식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 교통·통신비: 교통카드비, 전화카드비

- 의료·법률지원비 : 이주여성의 심신치료 및 자활지원, 건강검진비, 일상치료비 등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수급대상자(시설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부식비, 피복비, 교육비, 의료급여 등 중복지원을 할 수 없음
- 교육과정 운영
 -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의 사회정착을 위한 한국어 및 컴퓨터 교육, 사회 적응 프로그램, 취·창업 및 자활의욕고취 프로그램, 보육지원 및 언어발달 등 운영
 - ※ 한국어 및 컴퓨터 교육 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구로, 금천), 여성발전센터(금천, 관악, 남부) 등 이주여성 교육과정 적극 활용
- 직업교육훈련
 - 직업교육훈련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훈련과정을 적극적으로 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결혼이민여성 대상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용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동행면접, 여성인턴제 운영, 취업 후 사후관리
- 공동작업장 운영
 - 언어 등 기타 사유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훈련과정을 이수중이거나 수료한 입소자에게 실습지원 및 재훈련 등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취업 및 창업 등 공동작업장 과정에 참여하면서 출석률 80% 이상인 참여자에 대하여 1인 월 25만원 이내에서 공동작업수당 지원 가능
 - ※ 고용노동부 훈련참여지원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훈련개시 첫 월에는 공동작업수당을 바로 지급하고 익월부터는 전월의 출석률을 확인하여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출석률 확인 증빙서류 등 반드시 구비)
- 아이돌보미 지원
 - 입소자가 직업교육훈련 등 자립·자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반아동의 육아 및 보육 지원
- 1인당 지원 한도액
 - 의료, 법률, 공동작업수당 지원은 1인당 760만원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 1인당 지원 한도액은 고용노동부 훈련수당 및 센터에서의 의료, 법률 지원비용을 포함
 - 지원한도액 관리를 위하여 개별지원 통합관리카드 작성

7 기타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자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범위 내에서 세부내역을 검토·조정한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함
 - 시설은 사업계획 예산의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기재·작성
 - 여성가족부장관은 연간 사업계획서 검토 후 예산액 확정·통보
- 시·도지사는 자활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등 관련 통계자료를 지정서식에 의거하여 상반기 실적은 7월 31일까지, 연간 운영실적은 익년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함
-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설장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지급·정산 등 회계업무, 종사자 인사업무, 통계관리업무 등 가능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여야 하며, 시설장·상담원의 채용공고, 선발, 퇴직, 지원금 집행실적을 일모아시스템 DB에 입력하여 참여자의 중복지원 등을 확인하여야 함

Ⅲ.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운영

1 개 요

가. 사업목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자녀의 주거지원으로 자립 유도

나. 사업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운영지원: 3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의 업무
 -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경유)에 대한 주거 등을 지원하여 자립 및 자활기반 마련 지원

2 설 치

가. 설치·운영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가하여야 함

나. 설치기준

- 입지조건: 시설의 적정한 분포·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규모: 입소정원 $\times 6.6\text{m}^2$ 이상
- 구조 및 설비
 - 거실은 적당한 난방, 통풍 및 일조량을 갖춰야 함
 -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 화장실, 급·배수 시설
- 비상재해대비시설
- 종사자 수: 3명
- 입소자의 자립 및 직업알선·연계를 지원하는 시설장 1인 및 상담원 2인을 두어야 함

다. 종사자(상담원) 자격기준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참조

3 입소 및 퇴소

가. 입소대상

- 쉼터 및 자활지원센터에 입소한 적이 있는 이주여성으로, 자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입소를 희망하는 자
- 입소 이주여성의 동반자녀

나. 퇴소대상

- 입소기간이 만료한 자
- 입소기간 중 임대주택 입주 등 자립기반을 갖춘 자
-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자
- 타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다. 입소기간

- 기본 1년으로 하되 6개월 단위로 2년까지 연장 가능(입소자가 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운영

가. 장부 등의 비치

- 운영 관리에 관한 장부(3년 이상 보관)
 - 보호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직원관계철(인사기록카드·이력서·사진 포함), 소속법인의 정관 및 관계 결의서류
- 회의록 등 관련 서류(3년 이상 보관)
 - 회의록철, 소속법인의 정관 및 관계결의 서류,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문서철), 문서접수·발송대장
- 사업에 관한 장부(3년 이상 보관)
 - 보호시설의 입소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건강기록부, 입·퇴소자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상담, 의료·법률·출국지원의 내용 등)
 -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자립지원 현황 관리대장(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입주자의 자활 지원 관련 서류), 종사자 교육·훈련 관계 서류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5년 이상 보관)
 - 총계 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금전 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예산서 및 결산서, 비품수불대장

나. 회계관리

- 재무·회계 관리
 - 그룹홈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재무·회계 관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재무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
 - 그룹홈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 후 가능

○ 후원금품의 관리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발급(의료·사회복지·종교·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통해 후원금 또는 지정기탁금을 수령한 경우 포함)
 - ※ 금융기관 등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발급 가능
- 후원자가 후원금품의 용도를 지정했을 경우 지정용도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후원자(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역 통보
- 후원금은 법인명의로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

다. 종사자 및 시설 안전관리(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시설 안전점검 실시
- 화재보험 가입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대인·대물 보험에 가입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 설치
-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해빙기 안전점검 철저
- 24시간 생활시설에 가스경보기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 사고예방 조치
 - 사고예방조치, 화재대피 훈련 등 방재훈련,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등 재난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교육시행
 -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등
 -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하고, 초기 대응 매뉴얼(대처요령, 피난방법, 피난장소 지정 등)을 작성·비치하여 평상시 종사자 및 입소자가 사고보고, 의료조치, 초기대응, 외부연락 방법 등을 잘 숙지하여 안전 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시·군·구청장은 사고발생시 시설안전사고보고서를 작성 즉시 보고: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여성가족부장관

- 종사자 안전대책 마련
 -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등 정기적 안전교육 실시
 - 그룹홈 종사자 안전강화를 위해 상해보험 의무적으로 가입

라. 운영위원회 운영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그룹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시설의 장, 시설거주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단, 각 부분별 인원은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위원회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운영
 - 운영위원회 운영일지 작성·보관
- 운영위원회의 기능: 시설 운영과 관련 다음사항을 심의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입소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시설 입소자 적격여부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설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국고보조금 지원

가. 지원형태 : 지자체 매칭펀드(50~70%)

- 국고보조율 : 서울 50%, 기타지역 70%

나. 지원금액(단가)

- 81,162천원(국비·지방비 포함)
 - 인건비 : 62,622천원
 - 운영비 : 18,540천원
- ▶ 국고보조금은 총액 범위 내에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통합하여 사용가능함. 다만 운영비는 ‘지원금액’ 기준에 준하여 집행하되 개별 시설의 여건에 따라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경우라도 운영비는 최소 10% 이상 집행하여야 함
- ※ 4대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은 인건비에서 지출

다. 지원항목 및 내역

- 인건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서울특별시 또는 수탁기관) 자체기준에 의거하여 지원
 - ※ 퇴직적립금 포함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시행일 : 2002년 1월 1일)
 -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 위 지급 상한기준은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 예산의 지급 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시설운영비

- 시설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전국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협의회비 등) 임차료, 난방연료비, 건물유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등), 화재보험료, 종사자 여비, 종사자 상해보험, 종사자 소진방지, 현판설치 등 시설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화재보험은 소멸성 대물·대인 보험에 가입, 종사자 상해보험은 연간 1인당 보험료 5만원 한도로 가입

- 종사자의 숙직, 연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활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활용 가능. 단, 대체인력이 가정폭력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
-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적립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운영비로 사용 가능(여타 종사자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

6 기타 행정사항

○ 운영실적보고 : 반기별

- 시·도지사는 운영실적 등 관련 통계자료를 지정서식에 의거하여 상반기 실적은 7월 31일까지, 연간 운영실적은 익년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함

-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설장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지급·정산 등 회계업무, 종사자 인사업무, 통계관리업무 등 가능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여야 하며, 시설장·상담원의 채용공고, 선발, 퇴직, 지원금 집행실적을 일모아시스템 DB에 입력하여 참여자의 중복지원 등을 확인하여야 함

07

북한이탈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

I.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I.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1 사업목적

- 북한이탈 및 정착과정에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피해를 입은 북한이탈 여성들에게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남한사회에서의 안정된 생활 적응과 사회 정착을 지원

2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15~’17)」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통일부)

- 통일부-여성가족부 업무협약서(’13.7.12)」

양성평등 및 가족정책 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제고 및 부처간 상호 협력을 도모함

3 추진방향

- 체계적인 상담·치유 프로그램 제공으로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들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자아존중감을 회복
-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 서비스 기관 간의 지원체계 구축으로 폭력피해 치유 통합적 서비스 제공
- 동료상담원을 활용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폭력피해 예방과 트라우마 치유의 효과성 제고

4 추진경과

- 2013년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8개소 지정
- 2014년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10개소로 확대 지정

5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추진 체계도



나. 사업 주체별 역할

- 여성가족부
 - 기본정책 및 세부 운영지침 수립·시달
 - 사업 대상지역 및 사업운영 주체 선정
 - 사업운영 재원 확보 및 지원
 - 사업 수행상태 수시 점검, 평가 및 피드백
 - 중앙단위에서 대외기관 협조 확보 지원
- 지방자치단체(시·도)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예산 배분
 - 지역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예산 집행 등 사업수행기관 관리·감독(현장점검 및 결과보고)

- 사업 지도·점검 및 정산보고
- 사업 수행기관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모집·선정
 - 심리치유프로그램 및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실시 운영
 - 지역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만족도 조사 실시 등 사업 성과관리
 - 예산 집행, 사업 성과 보고 및 정산

6 지원대상

- 지원대상: 북한이탈여성
 - 가족단위 접근을 통한 북한이탈청소년, 남성에 대한 지원 대상의 해당여부 판단은 사업수행자가 심층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거쳐 판단 후 지원 가능
 - ※ 내방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이 가능한 사업 참여 대상에 대해서는 개인별 파일을 작성·관리

7 프로그램 운영

- 내방, 방문, 전화를 통해 개별·집단 상담 지원
 - 북한이탈 및 정착과정에서 폭력피해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적 어려움 및 욕구 파악
 - 심리검사와 가족 및 자기 탐색을 통한 자신의 현재 상황 파악 후 건강한 자기관리 (생각, 행동, 감정 관리)를 위한 실천 방법 모색
 - 가족갈등 및 심리적 갈등의 대안적 방법 모색
 - 관련된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 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의료원 등의 사회관계망과의 연계사례회의를 통한 지원
 - 법률상담, 무료법률구조(대한변협)를 통한 변호사 지원 연계

- 자조모임 지원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 상담종결 후 취미 동아리를 겸한 모임을 통하여 자녀양육 및 사회정착을 위한 치유 및 적응 프로그램 실시
 - 상담 참여 후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하여 안정적 지원 지속
 -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 상담 및 홍보 등에 활용하고 해당자를 프로그램 운영시 활용하는 방안 모색
- 동료상담원 등 역량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및 특수성 이해를 위한 관련기관 워크숍 등 참여
 - 동료상담원, 사례지원자, 상담심리사의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을 통한 역량강화
- 활동 홍보
 -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연계 강화

8 사업규모 및 지원예산

- 사업기간: 2013년도~ 계속
- 사업규모: 총 10개 기관
 - ※ 2018년 기준 사업현황 : 8개 지역, 10개소

시·도	사업수행기관	비 고
서울시	(사)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17년 변경
	(사)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16년 변경
경기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13년 지정
	의정부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시	남동다문화사업소 내 북한이탈주민센터	
부산시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충남도	아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시	영남가정폭력상담소	'14년 지정
광주시	송광한가족상담센터	
경남도	마산 가정상담센터	

○ 사업 예산: 총 254백만원(국비 100%), 센터당 25.4백만원

구 분	내 용	비 고
인건비	동료상담원 급여, 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금	
사업비	물품비, 심리치유프로그램비, 상담활동비, 출장비	

9 제 경비 집행지침

가. 일반원칙

- 예산의 집행은 사업운영지침 및 지자체와의 협약 등에 의해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각 항목별 예산액(교부액) 범위 내 집행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에 대한 별도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과 혼용하여서는 안 됨
 -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 사업소관과 구분·관리
 - 당해 법인 또는 단체 명의의 사업 통장을 별도 개설
- 사업비는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 내역을 회계장부에 반드시 기록·관리하여야 함
 -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비 통장의 지출액 및 회계장부의 지출액과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는 일치하여야 함
- 지출한 자금에 대해 매 사항별로 증빙서류를 징구·보존하여야 함
 - 입금의뢰서, 집행처리영수증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지출결의서의 뒷면에 첨부
 - 영수증은 사업비 지출내역에 기재된 항목의 순서별로 편철하고 사업비 집행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
 - 각종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 첨부

- 지출은 상담소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카드 미가맹점이나 원거리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좌입금 가능하나 세금 계산서, 청구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 증빙 가능하나 1만원 이상 금액 불가
- 각종 장부와 경비의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

나. 인건비

- 인건비는 동료상담원에게만 지급
 - 동료상담원은 북한이탈여성(새터민)이어야 하며, 「북한이탈여성 동료상담원 양성 교육」 이수자를 우선 채용
 - ※ 종사자 인건비는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기본급, 4대보험 부담금, 퇴직적립금,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함. 다만, 1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이 2019년 기준 최저임금액(8,350원×209시간 =1,745,150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함
- 인건비는 지원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단체(법인 또는 지자체)의 자체 기준에 의거 하여 지원
- 인건비는 1개월의 근무일수를 채운 경우에 지급
 - 근무 일수에 못 미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준수

다. 사업비

- 찾아가는 상담활동비
 -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한 동료상담원 등에게 지급
- 심리치유 프로그램비
 - 사회적응 프로그램, 심리정서 프로그램, 각종 자조모임 등
 - 강사비, 도서·교재 구입비, 프로그램 재료비 등의 직접비
 - 전화, 문자발송 등 홍보비

- 전문상담원 수당
 - 인건비가 지급되는 동료상담원 외의 상담원에게 연계될 경우 지급
 -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
- 회의 수당
 - 자문회의, 협의회, 평가회의 등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관련자에게 수당 지급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

10 행정사항

가. 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 2회 분할 교부 원칙(1차 70%, 2차 30%)
- 교부시기 : 1차(1월중), 2차(8월중 : 사업 중간 결과보고 이후)

나. 운영·정산 실적 보고 : 중간 결과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 중간 결과보고서(작성기준일 : 2019.6.30)
 - (상담소 및 지원시설) : 2019.7.10까지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광역자치단체) : 2019.7.20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 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작성기준일 : 2019.12.31.)
 - (상담소 및 지원시설) : 2020.1.10까지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광역자치단체) : 2020.1.20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다.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점검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세부내역을 검토·조정한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
 - ▶ 사업계획에는 예산의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기재·작성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0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I.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I.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I-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 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 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의2(국가의 의무)
 -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국가는 국내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다. 추진 경과

- 「위안부피해자법」 제정('93.6월)
- 피해자의 간병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06)
-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13)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신청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14)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장례비 지원근거 마련('17)

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 현황('18.12월 기준)

○ 지원대상자 현황

(단위: 명)

계	생 존			사 망
	소 계	국 내	국 외	
240	26	26	-	214

○ 거주 현황

(단위: 명)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울 산	경 기	전 남	경 북	경 남
26	7	1	3	1	8	1	1	4

○ 연령별 현황

(단위: 명)

계	80~84세	85~89세	90~95세	96세 이상	평균연령
26	-	8	17	1	91.0

○ 연도별 신규 등록 및 사망자 현황

(단위: 명)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등록인원	234	234	234	234	234	236	237	238	238	239	239	240
사망인원	125	140	146	155	171	177	181	183	192	199	207	214
생존인원 (연도말)	109	94	88	79	63	59	56	55	42	40	32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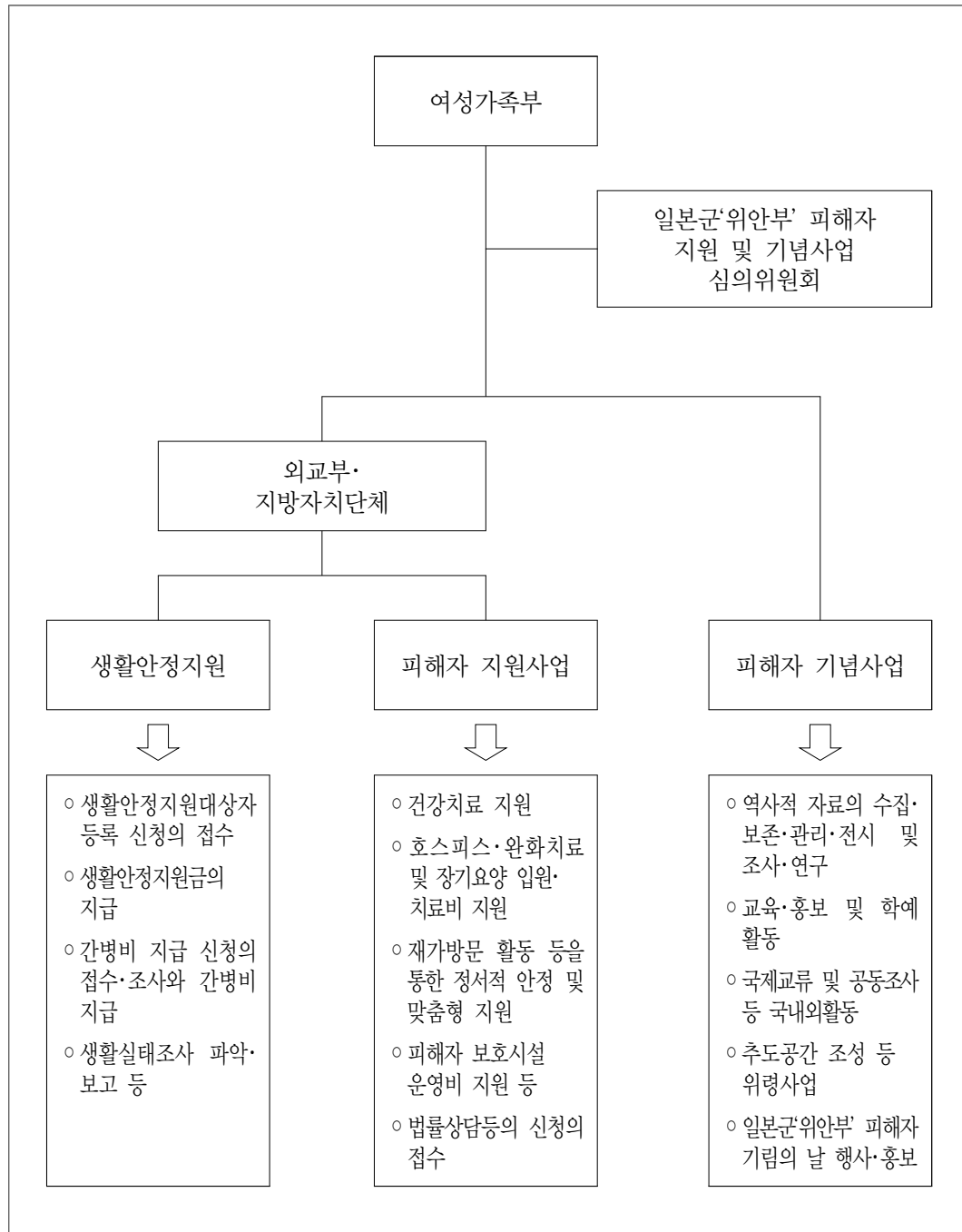
마. 지원 예산

○ 예산액 : 1,641,088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총액 (국비기준)	세부 내역	집행주체
보전금	생활안정지원금	471,744	• 1인당 월 1,404천원 지급	시·도 및 재외공관
	간병비	456,960	• 1인당 월 평균 1,360천원 지원 * 예산범위 내 일부 조정가능	
	특별지원금	43,000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 등록시 43,000천원 일시금 지급	
치료사업	건강치료비	275,184	• 1인당 월 평균 819천원 지원 * 예산범위 내 일부 조정가능	여성가족부 (민간단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 지원	277,200	• 1인당 월 평균 6,600천원 지원 * 예산범위 내 일부 조정가능	
	맞춤형 지원	57,000	• 피해자별 필요 물품 등 지원	
기타 지원사업	보호시설 운영비 등 지원	30,000	• 반기별 15,000천원씩 지원	여성가족부
	법률상담 등 지원	10,000	• 피해자 법률상담 등 지원	
	생활실태 및 만족도 조사	20,000	• 피해자별 생활실태 및 정책 만족도 조사 실시(연 1회)	

바. 사업 추진 체계도



※ 근거: 「위안부피해자법」 제10조(실태조사) 및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참조

I-2.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 절차

가. 등록 대상

-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중 생존자

나. 결정 및 등록 근거

- 「위안부피해자법(약칭)」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결정)

다. 결정 및 등록 절차

○ 개요

- 1) 시·도에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서 접수 및 여성가족부 송부

※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등록신청서 접수하여 시·도로 이송

- 2) 신청자(보호자 포함) 증언 청취 등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실시
-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4)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를 시·도 통하여 통지

○ 세부 절차

단 계	내 용	담당기관
1단계	• 대상자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 확인	외교부 및 시·도
2단계	• 신청자 증언 청취 및 관련 자료 조사	여성가족부
3단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여성가족부
4단계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통지	여성가족부

- 1) 대상자 등록신청서 제출 [대상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보호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또는 보호자)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또는 시·군·구)로 제출하여야 함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교부(관할 재외공관)로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서류

- ① 대상자 등록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서는 피해 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 양식은 e-역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 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국외거주자만 해당)
- ③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④ 신청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인의 진술서, 사진, 목격자 등 제3자 증언 등

- 2) 대상자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 확인 [광역자치단체·외교부]
 - 시·도지사(외교부장관)는 신청된 서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 하여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 3) 대상자 증언 및 관련 자료 조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신청서를 송부 받은 즉시 일본군‘위안부’ 관련 전문가를 통해 신청자의 증언 청취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야 함
- 4) 대상자 등록신청서 심의 및 결정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의 및 결정함
- 5) 심의 결과 통보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시·도를 통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함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결정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

라.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기타 사항

- 여성가족부와 외교부 또는 시·도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 접수 및 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관할 시·도에서는 결정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군·구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 여성가족부로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주민센터 사례관리 담당자를 추가로 지정하여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를 보호·관리할 수 있음
-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주소지 전입·전출 등 변동사항 발생시 관할 시·도에서 여성가족부로 즉시 보고하고 해당 시·도 간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지원업무를 즉시 인계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위안부피해자법」 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장, 심의위원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 ※ 「위안부피해자법」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

가. 지원 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위안부피해자법(약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사람

나. 지원근거

- 「위안부피해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른 간병비 지원
 -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다.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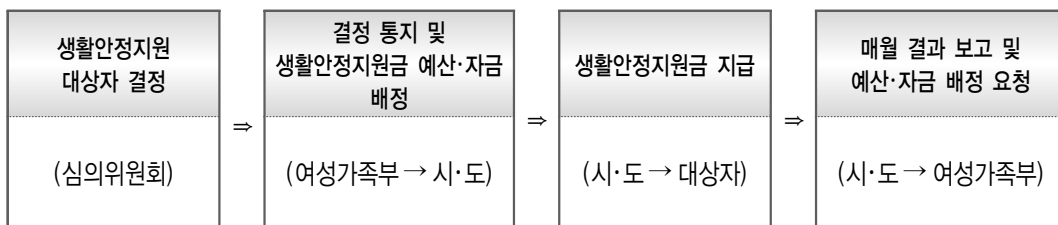
구 분	지원 내용	관할기관 (지원주체)																	
생계급여	• (수급권자 인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봄 •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생계·주거·의료급여 등)를 지원함 - 피해자별 지원 금액 등은 달라질 수 있음	보건복지부 (시·군·구)																	
의료급여	• (수급권자 인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봄 • (지원내용)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제1종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함	보건복지부 (시·군·구)																	
생활안정지원금	• (지원대상)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월 지원금과 특별지원금 지급 - (월 지원금) 1인당 1,404,000원 지급 -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경우 일시금으로 43,000,000원 지급	여성가족부 (시·도)																	
간병비 지원	• (지원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람 • (지원내용)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 - 피해자별 연 18,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단가) 종일 또는 시간제 이용으로 구분 <table><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2">1일 지원 한도</th></tr><tr><th>종일제</th><th>반일제(12시간)</th></tr><tr><td rowspan="2">병원</td><td>일반 단가</td><td>82,000원</td><td>59,000원(주·야간 12시간 기준)</td></tr><tr><td>특수 단가</td><td>93,000원</td><td>70,000원(주·야간 12시간 기준)</td></tr><tr><td>가정</td><td>일반 단가</td><td>88,000원</td><td>65,000원(주·야간 12시간 기준) * 가정간병의 경우 1시간 단위로 지원 가능하며, 시간당 단가는 8,400원으로 함(8시간 이상 이용 시 반일제 적용)</td></tr></table>	구 분		1일 지원 한도		종일제	반일제(12시간)	병원	일반 단가	82,000원	59,000원(주·야간 12시간 기준)	특수 단가	93,000원	70,000원(주·야간 12시간 기준)	가정	일반 단가	88,000원	65,000원(주·야간 12시간 기준) * 가정간병의 경우 1시간 단위로 지원 가능하며, 시간당 단가는 8,400원으로 함(8시간 이상 이용 시 반일제 적용)	여성가족부 (시·도)
구 분				1일 지원 한도															
		종일제	반일제(12시간)																
병원	일반 단가	82,000원	59,000원(주·야간 12시간 기준)																
	특수 단가	93,000원	70,000원(주·야간 12시간 기준)																
가정	일반 단가	88,000원	65,000원(주·야간 12시간 기준) * 가정간병의 경우 1시간 단위로 지원 가능하며, 시간당 단가는 8,400원으로 함(8시간 이상 이용 시 반일제 적용)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 (지원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원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함	국토교통부 (시·도, 한국토지 주택공사 등)																	

라.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지원 기준 등

1)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

- (지원 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은 일시금(특별지원금)과 월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 (지원 금액)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경우 일시금으로 43,0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인당 월 지원금 1,404천원을 매월 15일(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하여야 함.

<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절차 >



- (지원금의 환수 등)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생활안정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② 과오급(過誤給)된 경우
 -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음
- (매월 결과 보고 및 예산 배정요청 등) 시·도는 매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결과 및 일대일 맞춤형 돌봄서비스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여성가족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는 분기별로 생활안정지원금 예산 배정을 요청하여야 함. 자금은 전월 20일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brain)을 통해 필요한 금액만큼 자금배정을 요청하여야 함

2) 간병비의 지원

- (지원 내용)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경우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지원 금액) 1인당 연 18,000천원까지 지원 가능
 - (일반단가)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은 아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특수단가)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사지마비, 편마비에 준하는 보행 불가능 상태이거나 응급실·폐쇄병동에 입원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 1인당 연간 한도액(18,000천원)을 초과하여 집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배정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집행하여야 하며,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간병비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간병비 지원 한도 >

구 분		1일 지원 한도	
		종일제(24시간)	반일제(12시간)
병 원	일반단가	82,000원	59,000원(주·야간 12시간 기준)
	특수단가	93,000원	70,000원(주·야간 12시간 기준)
가 정	일반단가	88,000원	65,000원(주·야간 12시간 기준) * 가정간병의 경우 1시간 단위로 지원 가능하며, 시간당 단가는 8,400원으로 함(8시간 이상 이용 시 반일제 적용)

※ 종일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의도적인 주·야간 교대는 지양
 간병비 단가를 초과하여 신청된 금액은 자부담으로 함
 간병인은 간병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하며(필요 시 증빙) 다만 간병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간병이 가능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하나 사전협의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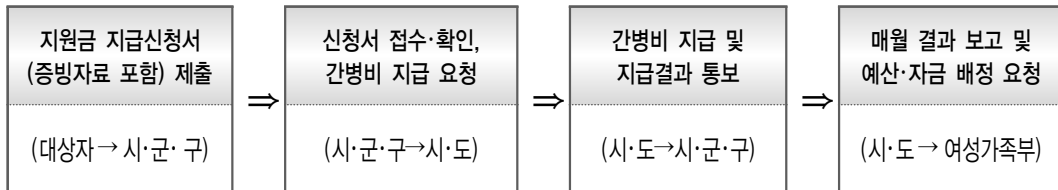
- (지원 방법 및 절차) 간병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간병비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구에서는 관련서류 등을 접수·확인하여 매월 30일까지 관할 시·도에 간병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함

< 간병비 지급 신청시 제출 서류 >

구 분	제출서류
병원 간병	① 간병비 지급 신청서 1부 ② 진료비 계산서 또는 입원 확인서 1부
가정 간병	① 간병비 지급 신청서 1부 ② 가정간병서비스 수행증명 서식 1부 ③ 진단서 1부

- 시·도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다음달 5일까지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개인별 계좌로 간병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사정상 필요시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 간병서비스제공자 등에 직접 지원 가능하며, 매월 간병비 지급 현황 및 신청 서류 일체를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함

< 간병비 지원 절차 >



※ 간병비 지원금의 환수, 매월 결과 보고 및 예산 배정요청 등에 관하여는 본 지침의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함

I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가. 사업목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속 지원하고, 피해자 개인별 수요를 파악하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지정·운영

나. 추진근거 및 연혁

-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의2 제2항(국가의 의무)
- 「위안부피해자법」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치료 사업 및 맞춤형 지원('01~계속)
 - ※ 여성가족부 자체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사업운영주체 선정 및 사업을 수행하며, 수행기관의 약정조건 위반 및 업무실적 부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종료 후 1년 연장 가능

다. 사업 예산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284,850	263,500	316,420	717,120	609,384

라. 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1) 사업수행기관의 명칭

-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센터”로 함

2) 사업안내 및 홍보

- 현수막, 책자 등 관련 사업비를 활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할 때에는 “여성가족부 지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반드시 포함하여 사용하여야 함
- 지원센터의 인력 등은 민원 응대, 명함 등에 기관명과 함께 센터명을 함께 사용하여 함

3) 지원인력의 배치 및 관리

- 지원센터의 장은 기존 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으며, 지원인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2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여야 함
 - 지원센터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인력을 적절하게 배치·운영하여야 함
- 지원센터의 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
-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인력의 퇴사, 육아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속히 신규 채용 또는 대체 인력을 활용하는 등 적정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여야 함
 - 결원이 1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 여성가족부는 지원인력의 감원, 사업관리비의 일부를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는 지원센터의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직원 배치 인원 수, 예산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지원센터의 인력 배치 및 담당 업무 >

구분	인원	담당업무
센터장	1명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총괄
사업지원 인력	2명 이상 배치	• 개인별 사례관리 결과를 반영한 건강치료 및 맞춤형지원 사업 추진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 실적 관리 • 관할 지자체·재외공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피해자 관련 사업 발굴 및 추진

마. 사업 내용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건강치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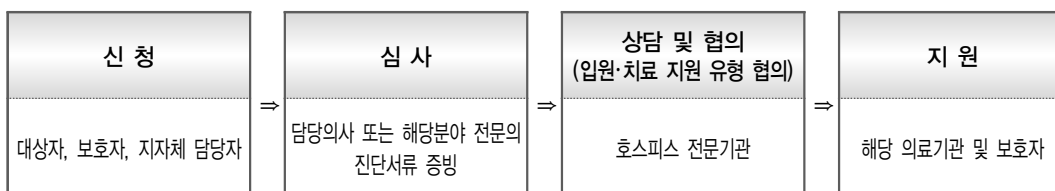
- 지원센터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의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강치료를 지원하여야 함
 - 병원 비급여 치료비(외래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노인성 질환 관련용품(노인용 기저귀, 혈당 측정기 등)지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입원·치료비 및 검사비, 수술비 등 지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별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피해자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입원·치료비를 지원하여야 함
- 호스피스·완화 의료 입원·치료비 지원

호스피스·완화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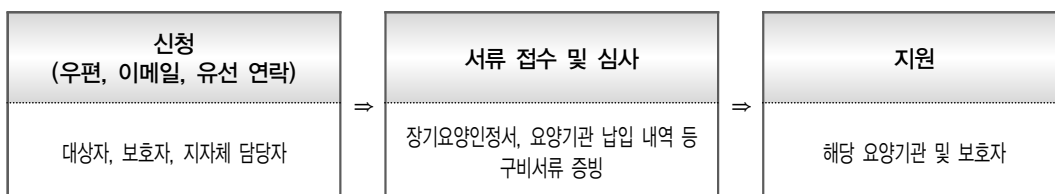
- ▶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하여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제공함
 - ▶ 말기 또는 임종기로 진단된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함. 이 경우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말기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 질병 환자에 대해서도 호스피스 적용 가능

<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절차 >



- 장기요양 입원·치료비용 중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 장기요양입원·치료비 지원 절차 >



- 의사·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와 연계·협력 등을 통해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

- 지원센터는 매월 개인별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현황을 다음달 15일까지 여성가족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별 지원 추이 등을 고려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조정·운영하여야 함
-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피해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주택 개·보수 및 편의 시설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특히,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방문 등을 통해 지원 필요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방문 등을 통해 일상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고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정서 안정을 지원하여야 함
 - * 정기방문 후 결과보고서를 여성가족부로 제출
-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즉시 여성가족부로 보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장례 절차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함
- 개인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1인당 지원 한도액(연 982만 8천원) 초과하여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지원 한도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가산하여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을 결정한 즉시 여성가족부로 보고하여야 함
 - 다만, 가산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의 사전승인 필요

바. 사업별 지원 내용

1) 지원 기준

항 목	예산액	지원 기준 및 내용
건강치료 지원		
의료비·비급여 의료비 지원	275백만원	• (1인당 지원한도) 연 982만 8천원 • (지원내용)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의 비급여인 의료행위·치료재료·약제 등의 비용 지원, 의료·요양시설, 약국 등에서 직불카드(치료카드)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 및 관리 등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지원	277백만원	• (1인당 지원한도) 연 3,960만원(월 한도 660만원) • (지원내용) 호스피스·완화 의료 비용 및 요양병원, 요양원 등 시설에 장기요양 입원자의 의료비 지원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		
맞춤형 지원	57백만원	〈 사례관리 등 〉 • (지원대상 결정) 수요조사(연 2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결정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피해자 방문을 통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통역 등) 지원 및 피해자의 정서 안정 지원, 낙상 등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및 활동 보조기구(전동 휠체어 등) 지원 * 사례관리를 위한 지원인력의 활동경비 정액 지원(월 5만원)
		〈 장례지원 〉 • (1인당 장례비 지원한도) 300만원 • (지원내용)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근조화환 등 구입 및 장례비용 지원

2) 지원 방법 및 절차

- (건강치료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필요에 따라 건강치료비를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한 집행 관리를 위해 ‘복지카드(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제공하여야 함
- 다만, ‘복지카드’ 사용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카드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한 건강치료비 증빙 자료(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 센터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피해자 통장으로 관련 비용을 이체하여야 함

구 분	이용 방법	내역 확인 및 비용 지출
복지카드 이용자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를 직접 지출	지원센터에서는 카드대금 청구 전에 비급여 의료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카드대금 청구 시점을 확인하여 관련 비용을 지출하여야 함
복지카드 미이용자	비급여 의료비를 사용한 경우, 의료비 지급명세서(원본)를 지원센터로 제출(월1회)	- 의료비 지급명세서(의료기관 발행)를 확인하여, 비급여 의료비를 피해자 본인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여야 함 * 제출시기 : 매월 말일까지 제출 * 지급시기 : 증빙서류 확인 후 다음달 20일까지 피해자 계좌로 직접 입금

-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활동 보조기구·건강 보조식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구입 후 비용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원센터에 해당 물품 등을 직접 구입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구 분	지원 방법	내역 확인 및 비용 지출
맞춤형 지원	필요 물품 등 구입비용 지원 (1회 50만원 이내)	- 필요 물품구입 → 지원센터에 비용지원 신청(관련 증빙서류* 첨부) → 내용 및 비용 확인 → 피해자 계좌로 직접 입금 * 카드명세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
	필요 물품 등 구입요청 (1회 50만원 이상)	필요 물품 구입 요청 → 지원센터는 관련 물품 등에 대한 비교 견적 실시 → 물품구입(세금계산서 발행 첨부) 및 검수 → 피해자에게 전달 및 확인
	개별 거주 피해자의 환경 개선 요청 (1회 500만원 이내)	-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 거주자 외에 개별 거주자 대상 안전·편의시설 등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지원방법은 '필요 물품 등 구입요청'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개·보수 완공 전에 지원센터의 인력은 현지 확인 통해 완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맞춤형 지원	기타 지원 요청 (예산 범위 내)	피해자의 맞춤형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타 지원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여부를 결정·지원 가능
장례지원	장례식장으로 장례비용 지원	사망 확인 → 장례공간 및 장지 확인 → 장례식장 방문 및 근조화환 등 전달 → 장례비용 지원(장례식장에서 직접 결제)

사. 예산 편성 및 집행

- 지원인력의 인건비(사업주 부담금 등 포함), 사업관리비, 사업비로 구분하며 각 항목의 예산편성 비율을 고려하여 사업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함
- 지원인력의 임면·복무 및 인건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 매년 확정되는 해당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음. 다만, 인건비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관리비는 해당 사업예산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센터의 예산 항목별 구성 기준 >

항 목	인건비 및 사업관리비(25% 이내)		사업비(75% 이상)
내용	급여, 사업주부담금	여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 센터 운영에 부대되는 경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등 사업비

- 해당 항목별로 정해진 예산편성 비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센터 장은 연간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항목별 예산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승인 후 집행하여야 함
- 기타 예산의 집행 및 관리·보고 등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아. 결과 보고 및 사후 관리

- 지원센터의 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연간 목표, 실적관련 통계 및 현황 자료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와 시·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시·도는 피해자의 건강치료와 맞춤형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지원센터는 시·도와 협력하여 피해자별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원센터의 장은 사업별 실시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자별 지원 현황과 사례 등은 매월 정리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여성가족부로 제출하여야 함
-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조사·분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및 피해자별로 면담을 진행할 때 동행하는 등에 만족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자.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 지원센터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적 필수조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등 지원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지원센터의 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을 벗어나서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업무 PC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암호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기로 보관·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공간)에 보관·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지원센터의 장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는 즉시 여성가족부(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시점과 그 경위 등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함
- 지원센터의 장은 개인정보를 관리·취급하는 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하고 관리하여야 함

차. 장부 등의 비치

- 센터 운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는 5년간 비치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관련 서류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I-5.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조사 및 보고

가. 사업목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를 매년 조사하여 생활안정지원 및 간병비, 치료사업 계획 수립 등 복지사업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

나. 추진근거

- 「위안부피해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실태조사)

다. 실태조사 실시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조사시기 및 방법 등

- 매년 10월 중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를 면접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함

마. 조사내용

- 실태조사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소득 수준, 가족 상황, 건강 상태 및 주거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조사를 위한 조사표는 매년 9월 중에 확정

바. 조사결과의 정리 및 확정

-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결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가. 사업목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지원(이하 “법률상담등”)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지키고 역사를 바르게 보존하기 위함

나. 추진근거

- 「위안부피해자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법률상담 등)

다. 사업내용

- (지원 신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의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국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에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함
- (지원 결정 및 요청) 법률상담등의 신청을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지방변호사회와 그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비용 지원)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09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지침

I.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I.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1 총괄

가. 목적

- 본 지침은 “2019년 성 인권교육*”의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방법 등 제반 행정사항을 안내하기 위함
- * (정의)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이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인지적 관점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통합한 교육으로 ①학교 성 인권교육, ②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으로 나누어 실시

나.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사업에 한하여 적용
- 사업 운영 및 보조금 사용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 시·도(시·군·구)의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다만, 동 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적용할 경우, 지역별 이용 대상자의 특성 및 서비스 내용 등에 따른 합리적 이유, 불가피성 등이 있어야 함

다. 법적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5.17) 개정을 통하여 통합 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 성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방지법(’14.7.22~), 성매매피해자보호법(’14.9.28~), 양성평등기본법(’15.7.1~) 시행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성매매 예방교육)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 ①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라. 사업 추진 현황

- 시범 실시 및 시·도 확대('11년~)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시범 실시('11) 및 8개 시·도 확대('16~)
 - ※ ('11) 2개(경기·충남) → ('12) 4개(경기·충남·경북·전북) → ('13) 5개(경남·전북·경북·충남·제주) → ('14) 7개(서울·부산·경기·경북·경남·전북·제주) → ('15) 7개(서울, 부산,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 ('16~) 8개(서울·부산·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시범 실시('12) 및 17개 시·도 전국 확대('15~)
 - ※ ('12) 4개(인천·대전·경기·경남) → ('13) 12개(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전남·경북·경남) → ('14) 14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 → ('15~) 17개 시·도 전국 확대
- 교재개발
 -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예방교육』 교사용 교안 개발('10.12월)
 - 장애유형별 성 인권교육 매뉴얼(4종) 개발('12년~'13년)
 - ※ 장애 유형: 시각, 청각, 지적 장애, 중복장애(총 4종)
 - 발달단계별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교과과정 개발('13년~'15년)
 - ※ 유아용, 초등학교 저학년용 / 고학년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 중·고등학생용 성 인권 교재 수정·보완('16년~'17년)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교사 및 강사 대상 가이드북 제작('17년)

마. 사업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 사업추진 방향 및 기준 설정 등 사업 총괄
 - 시범운영 시·도 선정 및 시·도별 운영기관 운영계획서 승인
- 중앙지원기관(계약을 통해 선정)
 -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지역지원기관 지원·관리
 - 지역별 워크숍 진행, 운영 학교·기관 현장점검, 사업 모니터링
- 시·도 및 시·도 교육청
 - 시·도별 성 인권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 시·도별 운영기관 선정·사업지원 및 실적·회계 관리 총괄

-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시·도 내 운영학교 선정
- 여성가족부에 시·도별 성 인권교육 운영 결과보고
- 시·도별 성 인권교육 운영기관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실시·관리 및 슈퍼비전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실적, 최종결과 보고 및 정산
- 초등학교 : 보건교사, 외부전문가 등을 통한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실시

2 2019년도 세부 운영계획

가. 2019년 운영방향

- 인권과 성 평등 관점을 강화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 교육 발전 및 우리사회 성 범죄 예방
-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전문적 학교 성 인권교육의 체계적 지원 및 교육 운영 관리 강화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적 대응
- 교육 내실화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한 효과성 조사, 네트워크 구축, 강사 역량강화 및 전문 모니터링 운영, 교육 참여자 평가의견 공유 및 확대

나. 사업규모 및 지원예산

- 사업규모
 - 폭력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 1개소, 학교 성 인권 교육 지역지원기관 8개소,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지역지원기관 29개소('18.12월 기준)
- 사업 예산: 총 1,013,000천원
 - 성 인권 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시·도) : 905,000천원(국비 448,000천원, 지방비 457,000천원)
 - ※ (국비)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108백만원,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340백만원
 -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 108,000천원(국비 100%)

○ 성과 목표

성과지표	내 용	구 분	'19년 목표치
교육실적	교육서비스 이용자 수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실인원) 14,400명 (연인원) 144,000명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실인원) 2,700명 (연인원) 27,000명
교육만족도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측정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81.2점 이상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91.0점 이상
교육결과	교육수료 후 의식변화 점수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83.6점 이상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69.7점 이상

○ 유형별 예산지원: 유형별 시·도 구분(학교 2개, 장애 아동·청소년 3개)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구 분		A유형	B유형
지원예산		30백만원	29백만원
지원 시·도 수		2개 시·도 (서울, 부산)	6개 시·도 (경북, 경남, 전북, 충북, 충남, 제주)
유형별 최소 운영 기준	기본 운영	(대상) 보건교사 배치 초등학교	
		42개 반 이상 (15개 초등학교 이상)	40개 반 이상 (14개 초등학교 이상)
	특성화 사업	(대상) 보건교사 미배치 초등학교	
		8개 반 이상 (3개 초등학교 이상)	8개반 이상 (3개 초등학교 이상)
유형별 최소 실적 인원	실인원	1,860명	1,780명
	연인원	18,600명 (연 10차시 운영기준)	17,800명 (연 10차시 운영기준)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표준화하여 확대 운영 가능

** 보건교사 배치율이 50% 미만인 경우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여성가족부 및 중앙지원기관과 상의 후 미배치교 비율을 높게 설정할 수 있음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구 분		A유형	B유형	C유형
지원금액		60~50백만원	40백만원	20~30백만원
선정 시·도 수		2개 시·도 (서울, 경기)	13개 시·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개 시·도 (세종, 제주)
유형별 최소 운영그룹	지적장애	13그룹 이상	8그룹 이상	4그룹 이상
	기타장애	3그룹 이상 (중복장애 2그룹 이상 필수 운영)	2그룹 이상	1그룹 이상
유형별 최소 실적인원	실인원	총 270명	총 159명	총 59명
	연인원	총 2,700명 (연 10차시 기준)	총 1,590명 (연 10차시 기준)	총 590명 (연 10차시 기준)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표준화하여 확대 운영 가능

** '18년 이미 교구를 구입하여 교육한 기관이 '19년 운영 시에는 최소운영그룹(실적인원)보다 2그룹(실인원 12명, 연인원 120명) 이상을 더 운영하여야 함(장애 유형 불문)

다.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운영

□ 주요내용

- 실시 지역: 총 8개 시·도
- 적용대상: 초등고학년, 확대운영 중·고등학교
 -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 사업은 한 학급 당 인원이 35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표준교안: 성 인권교재 초·중·고등학교용('13~'15 개발 완료)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교수·학습안』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핸드북』
- 운영방법: 해당 학교 보건교사 등이 체험형 교육을 포함한 연 15차시 내외를 기준으로 운영
 - (기본운영) 연 10~20차시의 보건교사(또는 외부 전문강사)의 수업 실시
 - * 외부 전문강사의 경우 아래 학교 성 인권교육 강사 자격기준에 따라 활용 가능
 - * 체험형 교육은 연 3차시 내외 운영(청소년성문화센터 등과 연계하여 진행)

- (특성화 사업) 보건교사 미배치 초등학교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연 6차시 이상(체험형 교육 포함)의 성 인권교육 실시

라.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 주요내용

- 실시 지역 : 총 17개 시·도(전국)
- 적용대상 :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유형(4유형) : 지적·시각·청각·중복 장애
 - * 지적장애는 필수 운영, 시각·청각·중복장애는 시·도별 최소 1개 유형 이상 운영
 - 핵심대상 : 특수학교, 장애 비장애 통합학급 및 장애시설의 초등 4~6학년
 - * 동일 교육 그룹 내에 인지수준을 고려하여 연령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구성
 - ** 지역·장애유형에 따라 지적장애 및 지적장애 포함 중복장애의 경우 중·고등학생 등을 추가 대상으로 운영 가능
- 운영 방법 : 장애유형별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매뉴얼」에 따라 교구를 마련하여 여성가족부 및 중앙지원기관이 요청하는 수업(대상별 10차시 교육, 1차시 40~50분 기준) 실시
 - * 강의는 2차시 연강까지 가능하며 강의 시 1인 강사와 1인 이상의 관찰평가자(특수학교 교사 등) 참여
 - 교육인원은 1그룹 당 최소 5명 이상 최대 10명 이하(1그룹 당 평균 6명)
 - * 중복장애의 그룹의 경우 최소 5명 이상 최대 8명 이하

마. 위탁운영기관 운영

- 시·도별 위탁 운영기관 : 성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
- (선정방식) 성 인권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중 지자체가 운영기관 선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지원 기관)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기타 성 인권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을 수행·관리할 능력이 있는 해당 지역 내 기관 또는 단체*)
 -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포함, 강사 인력풀(자체강사 1인 이상, 외부강사 포함 3인 이상)을 갖춰야 함
- 운영기관을 시·도별 최대 2개까지 선정 가능하나, 시·도 내 1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시·도별 실적관리, 운영 등이 일원화되도록 해야 함
- (역할)
 - 보건교사 등 성 인권 교육 담당자 슈퍼비전 제공(1회 이상, 총 6시간 이상)
 - * 시범학교 보건교사, 학교 성 인권교육 교원 연수과정(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개설 예정) 이수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2019년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 차시별 운영일지 및 교안 작성, 학교별 결과보고서, 사전·사후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특성화사업 결과보고서 등 학교에서 성 인권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
 - 표준 교재·교구의 구입·보급
 - 체험형 교육 지원 및 특성화사업 추진
 - * 체험형 교육 지원 및 특성화 사업 예산은 시·도별 예산 총 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학교 운영 지원 및 점검
 - * 학교 운영 지원 예산은 시·도별 총 예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건교사 배치된 초·중·고등학교 1개교 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보건교사 미배치교는 지원 대상이 아님)
 - * (예시) 보건교사가 배치된 초·중·고등학교 1개교 당 운영 지원 기준
 - 3개 반 이하 : 50만원, 4개~5개 반 : 75만원, 6개 반 이상 : 100만원
 - 지정 운영기관 외에 지역 내 관련기관 등과 연계 협력 강화
 - 차시별 평가일지(강사용, 관찰자용), 사전·사후 의식변화 조사, 만족도 조사 실시

○ (강사 기준)

기 준	강사 기준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가. 학교 보건교사 나. 학교 성 인권 교육 지역운영기관 내부 임직원(최소 1년 이상 근무자) 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및 관리)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서의 입학학력으로 인정되는 학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바. 성폭력·가정폭력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 상담소·보호시설·긴급전화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가. (장애인)성폭력 전문상담원 또는 (장애인)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장애 아동·청소년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유경험자로 3년 이상 연간 50회 이상 강의 경력을 갖고 있는 자 나. 성폭력 전문상담원 또는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고 비장애 아동·청소년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유경험자로 5년 이상 연간 50회 이상의 강의경력을 갖고 있는 자 ※ 단, 가의 요건에 해당하는 강사가 1명 이상이고, ‘(장애인)성폭력전문상담원 또는 (장애인)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장애아동·청소년 성교육 유경험자로 1년 이상 연간 15회 이상 강의 경력을 갖고 있는 강사’가 2명 이상인 경우도 가능

* 수화 통역이 필요한 경우 3년 이상의 공인 수화통역사를 이용할 수 있음.

* [라. ~ 아.]항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육훈련 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중 2.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 기준을 준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제58조, 제60조 및 제67조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준용, 제56조의 취업제한대상자는 강사와 사업담당자 등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선정방법 : 내·외부 평가위원 심사에 의한 심사('18.1월)
 - 공개모집(공모) 및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를 통한 합리적 선정
 - 신규 신청 기관 등에 대해 공정한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19.1 ~ 12월(12개월)
 - (착수시기 특례) 전년도 동일기관 선정시, 학교 교육일정(3월 수업시작)을 고려해 전년도 실시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운영계획서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이전이라도 사업 개시
- 중앙지원기관 운영 : 성 인권 교육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
 - 시도별 운영기관 지원 및 현장점검, 컨설팅 지원
 - 17개 시·도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기관과 대상 특수 학교·통합 학급 대상 교육 실시
 - 사전 워크숍(2월)
 - 17개 시·도 교육 실적 관리 및 현장점검
 - 실적(분기별) 관리·보고 및 현장점검(5~12월) 실시
 - '19년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결과보고(12월)
 - 교육 자료 개선·보완
 - '12년 개발한 장애 아동·성 인권교육 교구의 개선사항 발굴
 - '13년 중복장애 매뉴얼을 운용하여 보완 및 개선사항 발굴 개발
 - 사업기간 : '19.1~12월

3 모니터링 및 사업보고

가. 교육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 목적 :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시스템의 질적 향상 및 내실화 도모를 위해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등 현장 점검 실시, 향후 지역운영기관의 사업추진 평가에 반영
- 시기 : '19년 4월 ~10월
 - * 지역운영기관과 일정 협의하여 결정, 변경시 사전 통지 예정

○ 주체 : 여성가족부, 시·도 및 교육청 담당자, 중앙지원기관(모니터링단 및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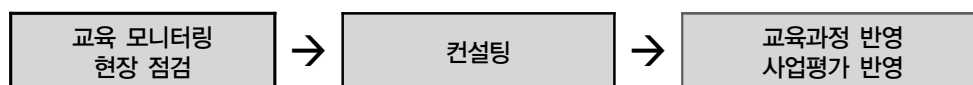
○ 대상

- (현장점검) 각 시·도별 지역운영기관
- (교육 모니터링) 성 인권 교육 운영 학교

* 현장점검 결과 등에 따른 교육 모니터링 대상 기관 선정, 추후 세부 내용 통지 예정

○ 내용

- (교육 모니터링) 교육 내용을 점검하고 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 (현장점검) 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컨설팅



○ 현장점검 평가기준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항 목		세 부 기 준
운영관리	교육현황	• 성 인권교육 차시(10차시)를 확보하였는가? • 계획 대비 교육진행 및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는가?
	강사관리	• 지역운영기관의 외부강사는 “성 인권교육 강사 자격기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가? • 강사 내용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 강사의 현장 강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강의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있는가?
	사업운영	• 학교 성 인권교육 행정사항을 운영기관의 지침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 성 인권교육에 관한 학교장의 관심 및 지원으로 상호협조가 잘 되고 있는가?
행정관리	회계관리	• 지출증빙서류 관리가 정확히 되어 있는가? •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거하여 지출되었는가?
	관리운영	• 사업운영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가? (사전·사후 검사, 교육 실시대장, 워크숍, 정기모임 일지 등) •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보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항 목		세 부 기 준
운영관리	교육현황	• 계획 대비 교육진행 및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는가?
	강사관리	• 강사 프로필이 구비되어 있는가? • 강사는 제시된 기준에 맞는 전문강사로 구성되어 있는가? • 교육 실시 전 강사에게 지도법 및 교육대상의 특성 등 강의 사전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였는가? • 강사를 위한 정기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가?
	사업운영	• 주 담당자를 배치하고 있는가? •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수행하였는가? •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은 적절하였는가? • 대상자의 실 인원수는 전체 목표인원을 달성했는가?
행정관리	회계관리	• 지출증빙서류 관리가 정확히 되어 있는가? •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거하여 지출되었는가?
	관리운영	• 사업운영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가? (사전·사후 검사, 강사일지, 관찰자 일지, 교육 실시대장, 워크숍, 정기모임 일지 등) •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보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문서는 매뉴얼에 제시된 형태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가? • 그룹별 대상자 명단이 작성되어 있는가?

○ 교육모니터링 평가기준

구 분	내 용	세 부 기 준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교육내용	○ 교육의 내용은 성 인권 교육 취지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교육의 차시별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는가? ○ 강사는 교육 중에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성차별적, 반인권적인 발언 및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교육방법	○ 학습목표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학생들이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질문 및 호기심을 활용하여 내적 학습동기를 자극하고 있는가? ○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성 인권 교육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가? ○ 교육 내용을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가?
	교육효과	○ 학생들의 교육 참여 분위기는 만족스러운가? ○ 교육의 내용이 학생의 인식변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매뉴얼(교구) 활용	○ 성 인권 교육 학습안을 활용하여 수업하는가? ○ 성 인권 교육 학습안에 맞는 교구를 사용하고 있는가?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교육내용	○ 교육의 내용은 성 인권 교육 취지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교육의 차시별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교육하고 있는가? ○ 강사는 교육 중에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성차별적, 반 인권적인 발언 및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장애 특성 이해	○ 교육 시 장애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였는가? ○ 장애 특성에 맞게 교육이 진행되었는가?
	교육방법	○ 강사의 강의태도(발음, 속도, 자세)가 적절하였는가? ○ 교육 시 장애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는가? ○ 매뉴얼에 맞게 교육시간 및 회기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
	교육효과	○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교육 참여 분위기는 만족스러운가? ○ 교육의 내용이 장애 아동·청소년의 인식변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매뉴얼(교구) 활용	○ 교육시간 내에 장애유형에 맞는 매뉴얼(교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가? ○ 추가 콘텐츠 활용 시 교육 내용에 적합하였는가?

* 교육 모니터링 평가서(모니터링단 작성) 서식 1 참조

나. 중간보고 및 평가(7월)

- 제출시기(예정) : '19년 7월 중순
 -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통지 예정
- 작성주체 : 시·도별 지역운영기관
- 제출자료 : 공문, 사업 중간보고서(공통서식)
- 제출방법 : 지역운영기관별 공문 첨부 후 시·도 및 중앙지원기관 동시 제출
 - * (지역운영기관) 중앙지원기관으로 제출방법 : 중앙지원기관 E-mail로 제출
- 평가내용(안) : 교육계획 달성 여부, 교육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평 가 영 역	평 가 내 용
계획집행의 충실성	1. 사업계획 일정대로 진행 여부 2. 사업전담인력 투입정도 3. 상황변화에 따른 효과적 대응 여부
사업목적 달성도	1. 당초 의도한 목적달성 가능 여부 2. 사업대상자의 참여정도 3. 사업 대상자 효과성 검증을 위한 일지 작성 여부
기 타	• 교육 홍보 및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추진계획서상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앙지원기관은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단체(기관)에서는 해당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다. 최종완료보고서 제출(12월)

- 제출시기(예정) : 2019년 12월 초
 -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통지 예정
- 작성주체 : 시·도별 지역운영기관
 - ※ 결과보고서 작성 역할 분담은 지역별 시·도와 지역운영기관이 논의하여 결정
- 제출자료 : 공문, 사업 결과보고서(공통서식), 사업수행 결과물 전수
 - * 정산관련 원본영수증은 시·도의 지침에 따라 보관하되 지역운영기관에서 원본을 보관할 경우 국세법에 의거 원본 영수증 5년간 보관

- 제출방법 : 지역별 시·도 또는 교육청 작성시 공문과 함께 여성가족부로 제출, 지역 운영기관 작성시 공문과 함께 지역별 시·도 또는 교육청으로 제출하며 지역별 시·도 또는 교육청은 수신 결과물을 공문과 함께 여성가족부로 제출

라. 2019년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사업평가

- 평가기관 : 여성가족부 및 중앙지원기관
- 평가시기 : 2019년 학교 성인권 교육 사업 완료 시
- 평가기준 ※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통지 예정

평 가 영 역	평 가 내 용	비 고
강의운영 (20%)	○ 교육차시 확보 ○ 교육실적(계획대비 교육 실적 달성여부)	
강사관리 (25%)	○ 강사 관리 및 지원 ○ 슈퍼비전 제공여부 ○ 강사역량강화 지원 ○ 강사 전문성	
교육효과성 (35%)	○ 사전사후검사결과 변화정도 ○ 교육만족도 ○ 지역사회 성 인권 교육 확산성	
사업협력체계 구축성(15%)	○ 사업관계 기관과의 사업 협력 체계 구축 여부	
운영평가결과 (5%)	○ 중간보고 평가결과	

- 평가자료 : 시·도별 운영계획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사전·사후 검사결과, 학생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모니터링 평가결과
- 평가결과 활용 방안 : 차년도 학교 성 인권 교육 사업 시·도 및 지역운영기관 선정 및 시·도 예산 편성에 반영

4 추진일정

-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 운영 시·도 선정(1월)
 - 시·도별 학교 및 운영관리기관 선정(1월)
 - 시·도별 운영계획서 제출 및 국고보조금 지급(~2월)
 - 중앙지원기관 사업 착수 워크숍 실시(지역기관 필수 참석)
 - 성 인권교육 실시(2~12월)
 -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11월)
 - 최종 평가(12월 중순)
- 중앙지원기관 운영
 - 공모 및 선정('18.12월)
 - 사업 착수 워크숍 실시(지역지원기관 필수 참석)
 - 운영 학교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4~10월) 및 평가 워크숍(12월)
 - 실적 취합·보고(7월, 12월/2회)

10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 I.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개요
- II.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 III. 세부 사업 운영
- IV. 예산의 지원 및 관리
- V. 지도·점검 및 평가

I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국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2 법적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은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은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3 추진경과

- '13년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 전담기관을 설치·운영
- '14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법적근거 신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15.12.1. 개정)
- '15년 지역 교육지원기관의 전국 확대 및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전환
 - '13년 권역별 10개 기관 → 17개 시·도별 18개 기관
- '16년 도서벽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시범운영 실시
- '18년 문화예술인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규 교육 대상 발굴 실시
 - * ('13년) 1,204회 → ('14년) 2,604회 → ('15년) 3,851회 → ('16년) 3,903회 → ('17년) 5,458회 → ('18년) 5,363회

4 사업규모 및 지원예산

- 사업기간 : 2013년도~
- 사업규모 :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 총 19개 기관('18.12월 기준)
 -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1), 지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18)
 - * 이하 “중앙 교육지원기관”, ** 이하 “지역 교육지원기관”
- 사업 예산 : 총 1,440,000천원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시·도) : 1,440,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 17개 시·도(18개 기관) 지역 교육지원기관 인건비, 운영 경비, 강사지원비
 -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 운영 사업 : 152,000천원(국비 100%)
 -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 605,000천원(국비 100%)

○ 유형별 예산지원

－ 유형별 시·도 구분(일반형 4개)

구 분	유형	해당 시·도
일 반 (성폭력)	가 (2)	서울특별시, 경기도(남부)
	나 (6)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다 (8)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북부),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라 (2)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구 분	유형	해당 시·도
일 반 (가정폭력)	가 (2)	서울특별시, 경기도(남부)
	나 (3)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다 (7)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북부),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라 (6)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경기도는 관할 범위 등을 고려 2개 권역 구분(가급 1, 다급 1)

－ 등급별 예산 지원액

(단위 : 개소, 천원, 회)

구 분	유 형	교육목표 횟수	국비 (A)	지방비 (B)	총 지원액 (A+B)
성폭력 예방교육 (자치단체 경상보조)	가 (2)	450~420	66,830 ~63,140	66,830 ~63,140	133,660 ~126,280
	나 (6)	360~280	51,955 ~42,730	51,955 ~42,730	103,910 ~85,460
	다 (8)	255~160	39,808 ~29,660	39,808 ~29,660	79,616 ~59,320
	라 (2)	75~70	20,510 ~19,587	20,510 ~19,587	41,020 ~39,174
가정폭력 예방교육 (민간경상보조)	가 (2)	50	12,650	-	12,650
	나 (3)	40	10,120	-	10,120
	다 (7)	35	8,855	-	8,855
	라 (6)	30~20	7,690 ~5,060	-	7,690 ~5,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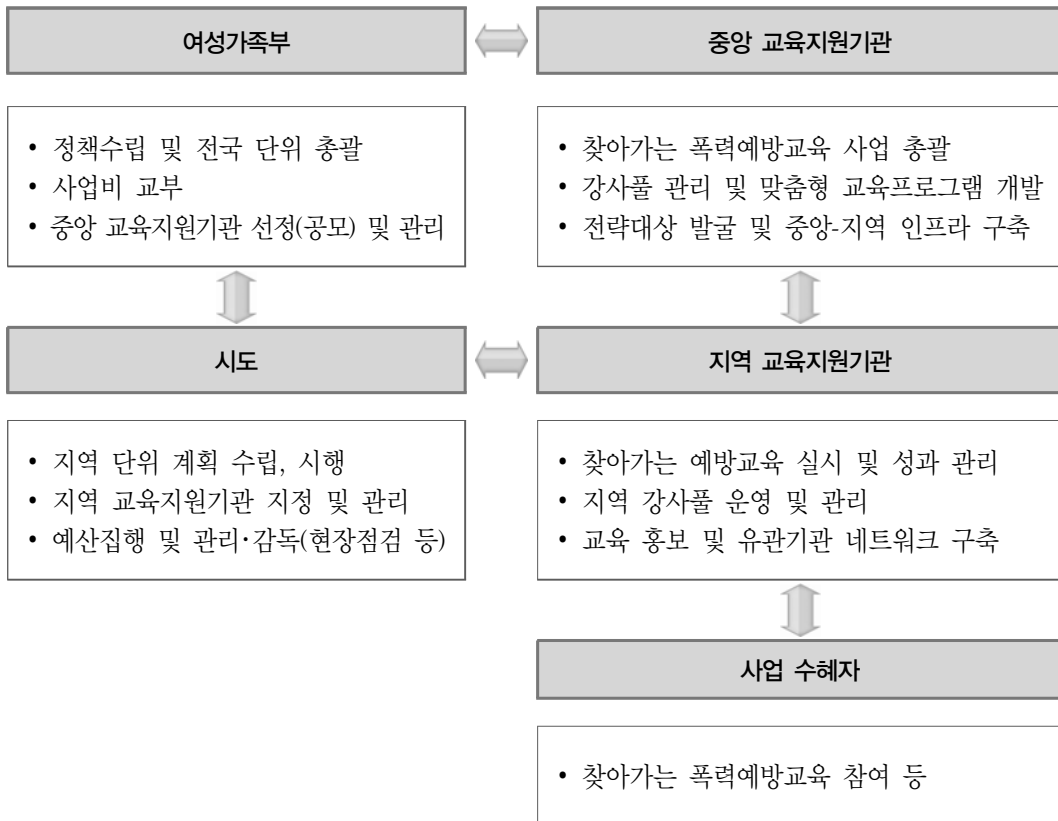
※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 : 여성가족부 → 지자체 → 지역 교육지원기관

5 성과목표

성과지표	내 용	'19년 목표치
교육실적	교육 횟수	(성 폭 력) 4,550회 이상 (가정폭력) 600회 이상
만족도조사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측정	(교육만족도) 87.2점 이상

6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추진체계도



나. 사업 주체별 역할

- 여성가족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
 -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관련 법규 제정 및 정비
 -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의 관리 감독 및 지도
 - 사업비의 교부 및 정산, 평가
- 지방자치단체(시·도)
 - 지역 단위 계획 수립 자체 지원 계획 수립
 - 여성가족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단위 자체 기본계획 수립
 - 지역 교육지원기관 공모 및 선정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의 협력 강화(우선 교육지역 지정 등)
 - 예산 집행 등 사업수행기관 관리·감독(현장점검 및 결과보고)
- 중앙 교육지원기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총괄 및 성과관리
 - 맞춤형 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다양한 직군의 강사 역량강화 지원 및 매뉴얼 개발
 - 사업성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수시 환류 기반 구축
 - 사업 관계자(시·도, 지역지원기관 등)간 정보 교류의 구심점
 - 전국 단위 효율적 폭력예방교육 확대 방안 마련
- 지역 교육지원기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및 성과 관리
 - 유형별·대상별 교육 목표에 따른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실시
 - 지역별 강사풀 구축·운영 및 워크숍 실시
 - 교육 모니터링 및 교육만족도 조사 실시 등 사업 성과관리
 - 폭력예방교육 지역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Ⅱ.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1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지정

가. 지정절차

- ‘중앙 교육지원기관’의 사업수행기관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에 따라 위탁자 선정
- 시·도에서는 ‘지역 교육지원기관’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① 공개모집 또는 ② 여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등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지정 기간은 사업의 연속성 등 고려하여 2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지역 교육지원기관’의 사업수행기관은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의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됨
 - ※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과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 사업은 동일한 사업임
 - ※ 사업 운영 및 보조금 사용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 시·도의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지정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운영 등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해 허가받거나 여성·아동 권익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운영 중인 단체 및 기관
 - ※ 컨소시엄 구성(공동 수급) 사업 수행 가능
 - ※ 부정수급, 정부의 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는 기관은 신청 불가

다. 심사방법 및 기준

- 시·도에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되, 서류 심사, 실사 및 프리젠테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 ※ 기존 협의체 활용 가능
- 사업 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 수행 방법 및 내용의 합리성, 지역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
 - 여성폭력예방교육 관련 사업수행경력
 - 여성폭력예방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수준
 -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지역연계성 등 실행가능성 종합평가
 - ※ 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기관은 지원 선정에서 제외

라. 지정취소 기준

-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함
 - 필요시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기관 의견 청취 포함)를 거쳐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지정 취소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력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유용하여 사업비가 환수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및 위탁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지정·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가. 명칭 및 현판 설치, 대표번호 사용

- 명칭은 “여성가족부 지정 또는 지원 ○○(중앙 및 시·도)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으로 함
 - 여성가족부 지정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 여성가족부 지원 ○○(시·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 각 기관에서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전국 대표번호(1661-6005)를 사용해야 하며, 현판, 현수막, 책자 등 홍보물 제작 시에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명칭을 반드시 포함하여 사용하여야 함
- 중앙 및 지역 교육지원기관은 이용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현판 설치(운영비로 제작 가능)
 - ※ 현판 설치 시 중앙 교육지원기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함

나. 운영인력 관리

- 기관장(총괄책임자) 1인 및 교육관리 담당자* 1인이 필수 참여하여야 하며, 이 중 1인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사업수행기관 대표자 및 사업 담당자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여성학, 사회학, 상담심리학, 아동학, 법학 등 관련분야 전공 또는 관련 자격증·수료증(사회복지사, 성폭력전문상담원,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상담사 등)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 기관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업 담당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와 겸임할 수 없음. 다만,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기관장과 그 밖의 인력은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장은 직원 간 업무가 균형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관장, 사업 담당자 등 내부 직원에 의한 강의는 ‘시도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량의 15% 이내에서 가능함. 단, 사업 담당자는 업무시간(9~18시) 중에는 내부 강사로 활동할 수 없으며, 기관장 등은 사업 관리 및 자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 강사로 활동 가능함

다. 사업 관리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작성·제출
 - 각 지역 교육지원기관장은 전년도 사업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 교육지원기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19.1.10일까지)
 - ※ '지역 교육지원기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중앙 교육지원기관의 컨설팅을 적극 활용
 - 중앙 교육지원기관장은 각 지역 교육지원기관의 자료를 종합 평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
- 기관장은 교육지원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2년간 비치해야 함. 단, 여성가족부 지원 사업비 예산 집행(재무·회계장부 등)과 관련한 사항은 5년간 보존

관리·사업에 관한 장부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① 종사자 관리 대장(채용 및 자격 관련 서류 등) ②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문서철) ③ 문서접수·발송대장 ④ 사업운영 관련 문서(교육실시대장, 강의안 등) ⑤ 사업 착수·중간·결과보고서	① 총계정원장 및 사업별 수입·지출부 ②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③ 예산서 및 결산서 ④ 비품수불대장, 비품관리대장(필요시) ⑤ 각종 증빙서류 및 그밖에 필요한 서류

라. 변경사항 등의 보고

- 기관장은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제출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후 승인 받아야 함
 - 지역 기관장은 중앙기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교육지원기관의 변경된 자료를 검토·승인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중앙 기관장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함
- 기관장은 인력 및 시설, 소재지 등에 변동사항 발생 시 시·도지사 및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인력 변경 시에는 새로 채용하는 인력 관련 경력사항 등을 공문으로 제출

Ⅲ. 세부 사업 운영

1 기본방향

- 성 평등 관점의 이해 및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과 ‘성 평등 교육’을 연계하여 실시
 - 지역사회 내 교수, 전문가 등 다양한 직군의 강사풀 확충 및 역량강화 지원
 - 강사 워크숍, 교육 모니터링 확대 등으로 강사 질 관리 강화
- ※ ('19년 목표) 총 5,150회(폭력예방교육 4,550회, 가정폭력예방교육 600회)

< 2019년 시도별 폭력예방교육 사업목표 > *

구 분			성폭력예방교육 소 계(A)	가정폭력 예방교육 소 계(B)	총 목표횟수 (A+B)
1	서울시	(가)	420	50	470
2	부산시	(나)	280	40	320
3	대구시	(나)	280	40	320
4	인천시	(나)	360	20	380
5	광주시	(다)	160	35	195
6	대전시	(다)	160	35	195
7	울산시	(다)	160	35	195
8	세종시	(라)	70	30	100
9	경기남부	(가)	450	50	500
10	경기북부	(다)	210	35	245
11	강원도	(다)	255	20	275
12	충청북도	(나)	320	40	360
13	충청남도	(다)	210	35	245
14	전라북도	(다)	210	35	245
15	전라남도	(나)	360	20	380
16	경상북도	(나)	360	20	380
17	경상남도	(다)	210	35	245
18	제주도	(라)	75	25	100
총 계			4,550회	600회	5,150회

* 세부내용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2 교육대상

가. 교육대상 선정

- 폭력예방 파수꾼 역할 수행이 기대되는 지역 성원 등 전략 대상 발굴
 - ※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은 원칙적으로 제외. 단, 전략 집단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

- * 성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각 급 학교,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학생, 보육아동 및 원생 포함)
- *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각 급 학교,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사람(학생 포함)

- 폭력예방교육 비의무 일반국민(교육 사각지대 우선 발굴 필요) 등

주요 교육 대상	
비의무 일반국민	도서벽지
• 통반장, 학부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문화예술인 • 소상공인, 민간사업장 종사자 등	• 도서벽지, 산간오지 지역 주민 등

나. 전략집단 및 특별지원 대상

- 예방교육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접근성 제고 및 교육 활성화가 필요한 대상
 - ※ 특별 교육의 경우 중앙 교육지원기관에서 별도 교육계획 수립 후 지원

고3 예비사회인, 대학 신입생	• (필요성) 예비사회인으로서 폭력예방에 대한 맞춤형 교육 필요 • (내용) 인지발달 정도에 맞춰,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된 성문화 의식개선에 초점을 두고 교육
학교 밖 청소년	• (필요성) 고등교육과정에 소속되지 않아 교육 접근성이 낮은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적 예방교육 지원 • (규모) 20명 미만 • (내용) 성 인지적 관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

- 다회차 교육이 필요한 대상(최대 3회기)

장애인 등	• (형태) 교육대상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 (규모) 20명 미만 / 소규모 다회차 교육(1~3회기) ※ 다회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회차 교육의 필요성, 교육 내용, 시간, 강사활용 등의 교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실시(중앙 교육지원기관 승인)
-------	--

3 교육 운영

가. 교육 운영 절차

절차	교육 신청	강사 연계	교육 실시			강사비지급
관련 서류	교육신청서	강의계획서	교육 확인서	만족도	강의 확인서	지출결의서 (교육관련 서류 일체)
작성자	신청기관 담당자	강 사	신청기관 담당자	교육생	강사	사업담당자

- 교육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 및 지역을 고려하여 강사 연계
- 강사에게 강의계획서 작성 독려
- 교육 실시 후 관련서류(만족도 2종, 강의확인서 등)수합 및 내용 확인 후 강사비지급 등 행정처리

나. 교육 신청

- 규모 : 20명 ~ 100명 내외
 - ※ 노인, 장애인, 그룹홈, 아동보호시설, 청소년 쉼터 등 교육 효과성 및 교육집단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규모 조정(20명 미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 교육지원기관과 협의 후 교육 실시 가능
- 기간 : '19년 1월 ~ '19년 12월
- 내용 : 강사*에 의한 1시간 무료교육 지원(폭력예방교육)
 - * 지역 교육지원기관은 '시도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풀'을 별도로 구성해야 함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 * 교육 수요자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교육 가능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중복 지원하는 경우

- * 교육시간은 총 2시간(성폭력, 가정폭력 각 1시간) 엄수
- * 교육만족도 조사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각각 별도 실시

다. 교육 콘텐츠 활용

□ 기본방향

- 성 평등 관점의 이해 및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성 평등 교육’을 연계하여 실시
- 성인지 관점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점검하고 성차별적 의식의 문제, 왜곡된 성문화 등을 성찰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둠
 - 폭력의 피해·가해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인 통합의 관점에서 폭력상황에 대해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 조성의 적극적 행위자로서 역할 부여

□ 분야별 주요내용의 구성

- 기본 교육(1회)은 폭력예방교육 및 성 평등 교육을 연계하여 실시
- 통합 교육(2회)은 성 평등 관점에서 총론 교육을 실시하고, 각 폭력의 특수성을 살린 각론교육을 세부내용으로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실시
 - 교육대상의 특성에 따라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등 각론 교육을 결합하여 교육 효과성을 제고
 - ※ (예시)도서벽지·안전취약지역 인근 주민·지역사회 성원 등은 성폭력예방교육, 중소기업·민간사업장 등은 성희롱 예방교육, 노인·학부모·다문화가정 등은 가정폭력예방교육 등을 결합하여 실시

4 강사풀 구성 및 운영

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풀 구성

- 지역 교육지원기관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 외에도 교수, 전문가 등 역량 있는 일반강사를 포함한 강사풀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구성해야 함
- 각 지역 교육지원기관장은 강사풀 구성 현황을 중앙 교육지원기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최종 승인한 강사 명단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1분기)

나. 강사 자격기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

- 성폭력 및 통합교육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폭력예방교육 분야 전문강사
- 가정폭력예방교육 : 가정폭력, 양성평등교육 분야 전문강사

○ 다수의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강의 경험이 있는 일반 강사 중 아래 ①~⑤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일반 강사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풀’에 포함할 경우 자체 점검 1회 이상 실시(필수)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서의 입학학력으로 인정되는 학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③ 성폭력·가정폭력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④ 상담소·보호시설·긴급전화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강사로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 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 ⑤]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관련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중 2.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준용

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 관리

○ 중앙 및 지역 교육지원기관 강사 워크숍 개최(각 기관별 연 2회 이상)

- 지역 교육지원기관장은 사업 착수 1~2개월 이내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시·도별 사업추진계획 공유 및 '18년 강사 활동 방향 안내
- 지역 교육지원기관 및 강사 간 네트워킹, 우수 교육 사례 공유 등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사는 반드시 중앙 및 지역 교육지원기관의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야 함

○ 효과적 교육수행을 위한 강사 지원·관리

- 지역 교육지원기관과 강사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 파트너로서 상호존중 및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해 상호 노력하여야 함

- 교육 실시 전 교육 대상에 대한 기본 정보를 포함한 강의 준비에 필요한 제반 사항 (교육신청서 등)을 해당 강사에게 전달하여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강사의 내실 있는 교육준비를 위하여 강의계획서 작성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의 매뉴얼」 준수하여야 함
- 강사는 교육대상자의 현황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추천콘텐츠 등을 활용한 강의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만족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 성과관리 필요
- 지역 교육지원기관에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의 의뢰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강사풀에서 해당 강사를 제외 할 수 있음

5 교육 만족도 조사

□ 교육 만족도 조사 및 자체 점검

-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으로 교육 효과성 평가 및 품질 제고
- 강사의 교육내용 뿐 아니라 교육현장에 대한 평가결과 수시 환류를 통해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교육만족도 조사 및 다각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사업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 도출

< 교육 만족도조사 및 자체 점검 개요 >

구 분	조 사 자	대 상
교육만족도 조사	교육생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교육신청기관 담당자	
교육지원기관 자체 점검	시·도 담당자	
	지역 교육지원기관 대표 및 담당자	

□ 환 류

- 지역 교육지원기관은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강사에게 환류하고 확인서를 구비해야 함
- 집중 관리가 필요한 강사를 대상으로 강의 역량강화를 위한 2차 모니터링 실시 및 (필요시) 해당 강사의 재교육 기회 부여
- 교육만족도 및 자체 점검 정성평가 분석결과를 교육콘텐츠 개발 등에 반영함으로써 현장과 교육의 연계성 강화
 - 폭력예방교육 대상별 표준강의안 개발 및 기존강의안 수정·보완

IV. 예산의 지원 및 관리

1 예산의 지원 및 집행기준

가.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 * 본 지침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 규정에 따름

나. 시·도별 보조금 편성 및 교부

- 사업 예산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실비로 편성하고 아래 기준을 준수
 - 강사지원비, 인건비, 기본운영비로 구성
 - ※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 사업비는 강사지원비, 기본운영비에 한해 편성(인건비 제외)
- 교육규모별 차등 지원(권역별 기준 참조)
- 보조금은 2회 분할 교부(1차 70%, 2차 30%)

다. 보조금 집행

- 사업기간: '19.1.1~12.31
- 집행기한: '19.12.31일까지 완료
 - 최종 확정 통보된 최종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예산집행계획서상의 보조금 예산

라. 보조금 정산

- 정산시기: '19.12월(※ 정산보고서 제출: '19.12.15일까지)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사용의 회계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불용액, 부적정 사용액, 이자발생액 반납 조치

2 보조금 집행 및 관리

가. 인건비

- 사업 담당자 1인의 인건비로 교육 규모별 차등 지원
-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사업비로 편성 '가급'은 2인 인건비지원
 - 가정폭력예방교육 미해당
- 인건비 편성기준
 - 원천징수 및 사용자 부담금 포함 금액
 -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담당자의 시간외 수당 지급 가능
 - 가급의 경우 '사회복지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인력구성 및 인건비 지급 가능(지자체 승인 필수)
 - ※ 전담 2인 또는 전담 1인, 보조 1인 등
- 인건비 편성기준

(단위: 개, 천원, 명)

구 분	기관수	인건비 총액	종사자수
가	2	40,200	2인
나	6	26,100	1인
다	8	25,400	1인
라	2	24,700	1인

나. 강사비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의 강사료
 - 일반/도서벽지: 1시간 / 1회 기준 150,000원
 - 강사료 지급시 강의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 강사료는 반드시 강사 본인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여야 함
 - ※ 내부 직원(대표자, 사업담당자 등)에 의한 강의 시 어떠한 경우에도 강사료를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비 통장과는 별도로 제3의 통장(기타 수입)에 입금하여 자체 집행 기준에 따라 활용 가능함

다. 기본 운영비

○ 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제경비로 교육규모별 차등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개수	교육 횟수	기본운영비
성폭력 예방교육	가급	2	450~420	25,960~23,080
	나급	6	360~280	23,810~17,360
	다급	8	255~160	15,966~9,920
	라급	2	75~70	5,070~3,974
구분		개수	교육 횟수	기본운영비
가정폭력예방 교육	가급	2	50	5,150
	나급	3	40	4,120
	다급	7	35	3,605
	라급	6	30~20	3,190~2,060

※ 워크숍 경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우편료, 업무보조원 등

※ 인건비 편성 기준에 따른 인건비만으로 지출이 어려운 경우 운영비에서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지급 가능

○ 기본 운영비는 아래 범위 내에서 집행

교육 지원경비	가. 강사워크숍 및 소모임 실시 - 강사료 : 1인, 1시간당 최대 200,000원 지급 가능 • 초과 1시간당 최대 120,000원 지급 가능 - 임차료(워크숍 장소) : 최소임차료 계상 - 워크숍 진행비 • 문구비 3,000원/인, 다과비 3,000원/인, 식비 10,000원/인 이내 - 자료집 인쇄비 : 10,000원/권 이내 나. 보조강사비 - 최대 50,000원 / 1시간 • 초과 1시간당 최대 20,000원 지급 가능	• 정산 시 워크숍 자료집과 참석자 명단을 함께 제출 • 보조강사비는 내부직원 지급불가
	가. 자문회의비 - 자문비: 100,000원/2시간 이내, 150,000원/2시간 초과 - 진행비: 10,000원/외부자문위원, 5,000원/내부참석자 나. 사무용품비 - 복사용지: 21,000원/BOX (1개월), 토너: 150,000/1개 (6개월) - 기타 사무용품: 실비 다. 유인물 등 제작비 : 홍보물품 제작 등 - 10,000원/권(부) 이내 라. 교육운영비 - 교육용 다과 및 문구 등 : 40,000원/1회(필요시) - 교육 장소 임차 : 최소임차료 계상	• 자문회의 참석비는 외부 자문위원이 포함된 자문 회의에만 지급(1일 1회에 한함) ※ 내부직원 지급 불가 • 기타 사무용품은 자산성 물품 구매 불가 • 교육운영비는 도서벽지 교육 실시 등 필요시 지출

교통 통신비	가. 출장비 ① 강사 여비 - 도서벽지 및 권역 내 왕복 100km 이상 • 교통비 : 50,000원(1회) • 식비 : 20,000원(1일) / 숙박비 : 50,000원(1일) ② 사업 담당자 및 기관장의 사업 관련 출장 관련 - 교통비 • 시(도) 내 출장 : 왕복 50km 미만 : 2만원 왕복 50km 이상~100km 미만 : 3만원 왕복 100km 이상 : 5만원 • 시(도) 외 출장 : 실비(대중교통 운임) - 일비 및 식비: 각 20,000원(1일 5시간 이상 출장 시) 나. 도서벽지 교육 시간보상수당(강사) : 1일 100,000원 다. 통신비, 우편료 등 : 실비 (대표전화 1661-6005 사용요금·문자 발송비 등 포함)	• 교통통신비는 세부 지침에 의해 지급 가능 • 강사여비의 경우, 교육 시간강사가 원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지출가능
업무 보조원	가. 단순인건비(2019년 최저임금 기준 이상 계상) - 8,350원 이상 / 1시간 - 주휴수당, 고용·산재보험(사용자부담금) 등 법정 부담금 산정 필요, 1인당 월 60시간(주휴수당 포함) 초과 금지, 원천징수 실시	• 내부직원 지급 불가

라. 집행 관련 문서의 관리

○ 관련 문서의 작성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각 기관양식)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 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집행 관련 문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지출결의서 세부내용 작성 시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
- * 지출결의서 내용 및 증빙이 일치하도록 상세히 기재
- * 물품영수증(세금계산서)의 금액과 통장출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하나의 증빙을 여러 가지 비목으로 나누어 설정하지 않도록 함)
- * 지출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를 반드시 명시
ex) 단가 × 인원 × 횟수 = 지출비용

○ 관련 증빙문서

- 관련 증빙문서는 지출내역에 기재된 항목순대로 편철하여 제출(제출된 증빙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영수증 원본은 각 기관에서 향후 5년간 보관)
- 국고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

V. 지도·점검 및 평가

1 지도·점검

가. 기본방향

- 기관 사업 및 예산 집행이 지침에 부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통하여 폭력예방 교육의 질적 제고 도모
- 지침 변경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변경 내용의 조기 정착 및 현장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나. 지도점검 개요

구 분	내 용
점검주체	시·도
실시기간	5~6월(지자체 자체 계획 수립 후 실시)
결과보고	시·도 → 여성가족부
점검내용	○ 종사자 채용관리 - (당해년도 신규 채용 시) 공개경쟁채용 준수,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 ○ 직원복무상황 ○ 예산회계관리 - 집행지침 준수 여부, 회계관련서류 보관 여부 등 ○ 사업운영 - 사업비 집행내역 및 집행률 현황,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
결과활용	지역 교육지원기관 최종 사업평가 시 반영
향후계획	○ 지자체 점검결과 제출(여가부): 7월 ○ 중앙 교육 현장점검 실시: 6~8월 예정 ※ 점검주체: 여성가족부, 중앙 교육지원기관, 외부전문가 등

다. 현장점검

- 교육현장 및 지역 교육지원기관 운영과 관련한 현장 점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 수행의 적절성 도모, 사업 현황 및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향 제시

구 분	내 용
점 검 단	여성가족부, 중앙 교육지원기관, 외부 전문가 등
실시기간	6~8월
결과보고	중앙 교육지원기관 → 여성가족부
점검내용	○ 교육 현장점검 - 수업진행의 충실도(대상별 맞춤형 강의 등) 점검 - 사업 운영에 대한 이해 및 현장 적용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 기관 운영 점검 - 당초 사업 계획 대비 이행 현황 - 지역 협력관계 등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등
결과활용	○ 지역 교육지원기관 사업운영 컨설팅 및 최종 사업평가 시 반영
향후계획	○ 지역 교육지원기관 사업평가 실시(11월)

2 사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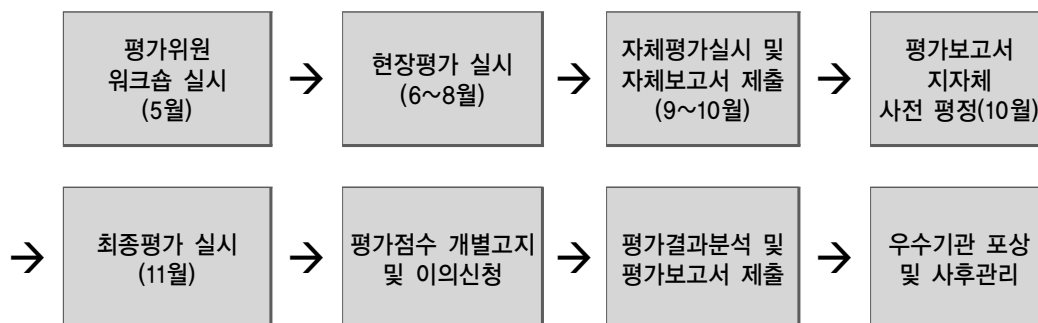
- 목적: 지원 기관별 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사업 내실화 도모
- 평가시기: '19.11월 중
- 평가대상: '19년도 지역 교육지원기관 18개소
- 평가 기준일: '19.9.30
- 평가방법: 사업수행기관별로 아래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
 - 각 기관별 자체 평가보고서에 근거하여 배점 환산

구 분	정량평가	정성평가
보고서 평가(100점)	40점	60점

※ 예산 처리 및 적정성 등은 관할 시·도의 지도점검 및 현장점검 결과에 근거함

※ 세부내용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평가 과정



○ 평가기준(안)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
정량 평가	• 권역별 목표 대비 교육 추진 실적	40점
	• 강사워크숍 실시 등 강사역량강화 지원 실적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실적	
	• 보고 시한 준수 및 제출(첨부) 자료 누락 여부	
정성 평가	• 사업 수행의 적절성 및 시의성	60점
	• 교육 사각지대 및 전략대상 발굴	
	• 대상 맞춤형 교육기획 및 실행	
	• 강사 관리 체계 구축	
	• 지자체 사업 협조도	
합 계		100점

※ 세부내용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9년 1월 인 쇄

2019년 1월 발 행

발행인 : 진 선 미

발행처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383
FAX / 02-2100-6484

인쇄처 : 중앙인쇄·기획
전화 / 02-736-2866~7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133-10